

2009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총5권중 제5권

2008. 12.



일 러 두 기

1. 이 지침서는 총5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소관 사업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2. 제1권에는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대한 해설과 주요변경사항 및 농림수산사업 대출안내를 수록하였고, 제2권부터 제4권까지는 분야별 사업시행지침을, 제5권에서는 균특회계사업을 상세하게 수록하였습니다.
3. 이 지침서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까운 시군구, 읍면동,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출장소, 농업기술센터, 농협·수협·산림조합, 한국농촌공사 지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시행지침의 2009년도 사업비는 정부예산의 국회심의나 기금사업의 계획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5. 각권별 수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권 : 관계규정 및 사업별 주요변경사항
 - 제2권 : 식량·원예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3권 : 농촌개발 및 임업·산촌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4권 : 축산·수산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5권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시행지침
6. 이 지침서의 내용은 인터넷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faff.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개별적으로 지침서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적 구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입문의

- 문의기관명 :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경영지원실
- 연락처 : 전화 031-460-8816~7, fax 031-460-8819

차 례

제1권 관계규정 해설

I.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해설	1
1. 배경	3
2. 2009년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의 주요골자	4
3. 주요 변경사항	8
4. 해설	9
제1장 총칙	9
제2장 농림수산사업심의위원회	13
제3장 전문가위원회	14
제4장 농림수산사업	15
제5장 농림수산사업의 관리	23
제6장 신규사업의 선정절차	24
제7장 보칙	27
II.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29
III.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해설	81
1. 배경	83
2. 주요골자	86
3. 주요 변경사항	90
4. 해설	95
IV.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115
V. 농림수산사업별 주요변경사항	145
VI. 기타 주요사항	261
1. 농림수산사업자금 대출안내	263

제2권 식량·원예분야

【식량분야】

I. 생산기반 확충	269
1. 농지은행사업	271
① 영농규모화사업	272
②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298
2. 수리시설개보수사업	308
3. 중규모 용수개발사업	325
4. 농업용수 수질조사개선사업	348
5. 개인육종가 활성화 지원사업	359
6. 우수품종 증식보급사업	370
II. 농업기계화	385
7. 농기계 구입지원사업	387
8. 농기계 임대사업	409
9. 농기계 생산 및 사후관리 지원사업	422
III. 생산 및 유통개선	433
10.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435
① 고품질쌀 브랜드육성사업	435
②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	454
③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사업	464
11.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사업	477
12. 농작물 병해충방제 지원사업	494

【원예분야】

I. 생산 및 유통개선	501
13.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503

14.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517
15. 시군유통회사설립·운영지원	530
16. 농식품 소비지·산지상생협력	540
17. 산지유통종합자금지원	558
① 산지유통활성화사업	560
② 원예작물수급안정사업	569
③ 수매지원(저장용·산지가공)사업	580
18.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590
19. 인삼계열화사업	600
20.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	609
21. 농산물 자조금지원	622
22. 소비지유통활성화	633
23. 농산물브랜드육성지원사업	651
24.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662
25.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676
26.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	688
27. 수출업체 운영활성화 지원사업	692
28. 전통·발효식품육성지원사업	696
29. 농식품시설현대화	702
30. 생산자용·복합형 식품제조기업 육성지원사업	710
31. 우수농산물관리(GAP)제도 운영	714
32. 천일염산업육성지원	735
①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SPC) 설치사업	735
② 염전생산시설개선사업	746
II. 과수생산 및 유통개선	753
33.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	755
①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771
② 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	784

③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799
④ 과실브랜드육성지원사업	821
34. 과원영농규모화사업	835
35. 과수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853
36. 과수원정비지원사업	862

제3권 농촌개발 및 임업·산촌분야

【농촌개발분야】

I. 생산 및 유통개선	883
37. 친환경농업기반구축(지구조성)사업	885
38. 생물적 병해충방제(천적)사업	906
39. 녹비작물 종자대지원사업	921
40. 친환경비료지원사업	929
41. 농업종합자금지원	957
II. 기술개발	981
42.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	983
43. 농림기술개발	994
44. 신기술보급사업	1002
III. 인력육성	1011
45. 창업농업경영인육성사업	1013
① 창업농업경영인 육성	1013
② 농산업인턴제 및 창업농멘토제	1027
③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	1043
46. 농업경영컨설팅사업	1055
47. 농촌출신 대학생학자금 융자지원사업	1079
48.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	1090

IV. 소득보전	1107
49. 경영이양 직접지불제	1109
50.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119
51.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1137
52.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1154
53. 농업인 재해공제사업	1174
54.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1180
55.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1195
V. 소득원개발	1207
56.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	1209
① 농어촌관광휴양단지	1209
② 관광농원	1224
③ 농어촌민박사업	1240
57. 한계농지정비사업	1249
58.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1260
59. 농축산경영자금지원	1271
VI. 생활환경개선	1279
60. 농어촌주택개량사업	1281
61.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	1298
【임업·산촌분야】	
I. 경영기반 확충	1315
62. 산림경영계획	1317
II. 생산 및 유통개선	1327
63. 산림사업종합자금지원	1329
64. 산림소득증대사업	1348
65. 임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	1369

66. 산림바이오매스사업	1414
67. 별채운재로시설지원사업	1420
68. 사립수목원지원사업	1429
69.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사업	1435

Ⅲ. 산림자원조성

70. 조림·숲가꾸기	1449
-------------------	------

제4권 축산·수산분야

【축산분야】

I. 사육기반확충

71.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1467
① 조사료 사일리지제조비 및 유통비지원	1468
② 조사료용 기계·장비지원	1470
③ 볏짚 등 부존자원활용지원	1473
④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지원	1474
⑤ 조사료용 종자구입비지원	1476
⑥ 조사료가공 시설지원	1478
72. 사료산업종합지원	1495
73.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1504
74. 마필산업육성	1529
75. 송아지생산안정사업	1538
76.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지원	1546
77. 양봉산업육성사업	1561
78. 낙농체험 관광사업	1565

II. 생산 및 유통개선

79. 축산물도축 가공업체지원사업	1579
80. 브랜드육 타운조성	1611

81. 가축 및 계란수송 특장차량지원	1617
82.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1626
83. 브랜드경영체 종합지원	1643
① 가축계열화사업	1643
② 브랜드 경영체지원사업	1657
③ 축산물브랜드 컨설팅지원사업	1680
84. 축산종합지도(HACCP)지원사업	1694
85. 축산공제사업	1705
86. 품질고급화 장려금지원	1713

【수산분야】

I. 생산기반 확충	1729
87.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지원	1731
88. 수산자원 보호구역관리	1741
89. 소규모바다목장사업	1749
II. 생산 및 유통개선	1755
90. 수산물소비촉진사업	1757
91. 환경친화형 양어용 배합사료지원사업	1766
92.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공급	1775
93. 고밀도부표보급지원사업	1781
94. 양식장HACCP적용지원	1789
95. 수산시장시설개선사업	1803
III. 기계화	1811
96. 고효율 어선유류절감 장비지원	1813
97. 어선기관 및 장비개량	1822
98. 양식장비 임대사업	1832
99.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1845

IV. 인력육성	1857
100.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1859
101. 수산업인턴제 및 창업어가 후견인제	1887
V. 소득보전	1911
102.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사업	1913
103. 수산부문 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	1924
104. 어업인 정책보험사업	1940
105. 수산인 안전공제지원사업	1949

제5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06. 배수개선사업	1957
107. 방조제 개보수사업	1968
108.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978
109. 소규모용수개발사업	1987
110. 지표수보강개발사업	2006
111. 농업생산기반조성	2023
112. 광역클러스터활성화지원사업	2038
113.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사업	2053
114.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건립	2070
115.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2082
116.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2093
117. 전원마을조성사업	2110
118.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2127
119.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사업	2139
120.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2154
121. 농공단지조성사업	2170
122. 농촌활력증진사업	2182
①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2182

② 향토산업육성사업	2187
③ 특화품목육성사업	2199
123.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지원사업	2209
124. 산촌생태마을 조성	2221
125. 수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	2231
126. 수산식품 거점단지조성사업	2239
127. 양식어장정화사업	2245
128. 수산물유통시설건설사업	2253
129. 어항기반시설조성	2261
130. 어촌·어항 관광조성	2273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시설안전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시설안전과	과장 김일환 서기관 전경구	02-500-1841 02-500-1847
한국농촌공사	조사기획팀	처장 나정우 팀장 윤홍일	031-420-3115 031-420-3621

I. 사업개요

1. 목 적

- 홍수 발생시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문, 배수로 등 배수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침수피해를 방지하고, 논에서의 원예작물 등 다양한 작물재배 여건을 구축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6조, 제7조, 제8조, 제12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3년까지 상습침수 농경지 188천ha에 대한 배수개선사업을 추진
- 2009년에는 4.1천ha를 준공, 침수농지 감소율을 74.8%에서 77.0%로 2.2% 제고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 방식
		'06	'07	'08		
▪ 상습침수 농지 감소율(%)	77.0	71.3	73.1	74.8	2010.1.	· 침수농지 감소율(%) = (배수개선 완료면적/ 대상면적)*100

* 전국적인 실태조사('08.11~12월) 결과를 토대로 목표면적 조정예정('09.2월)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이후
합 계	2,693,566	210,263	208,532	212,851	999,988
보 조	2,693,566	210,263	208,532	212,851	999,988
용 자					
지방비					
자부담					

▶ '09년 예산(212,851백만원) 내역 : 사업비 209,518백만원, 조사설계비 3,333백만원

II. 200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 대상자

- 사업비(균특회계) : 시장·군수·구청장, 한국농촌공사사장
 - * 시·군·구에서 관리하는 농경지에 대한 배수개선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 한국농촌공사에서 관리중인 농경지에 대한 사업은 한국농촌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 조사설계비(농특회계) : 한국농촌공사사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비(균특회계)는 기본계획 수립 또는 세부설계가 완료된 지구 중 신규 착수지구와 시행중인 지구 중 2009년 예산이 편성된 지구를 대상으로 당해 지구 농경지를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농촌공사사장에게 지원
- 조사설계비(농특회계)는 시·도의 신청을 받아 농림수산식품부가 기본조사 대상지로 선정한 지구를 대상으로 한국농촌공사사장에게 지원

3. 지원대상

- 홍수 발생시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겪고 있고 농지로의 보전 가능성이 높은 농업진흥지역내 농경지에 대한 배수개선사업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
 - 다만, 개발제한구역 및 제주도종합개발계획 등에 포함된 지구로서 사업후 장기간 농지활용 전망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경지라도 대상지로 선정
 - 기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경지는 장기간 농지보전 가능성이 높고, 투자되는 사업비 이상의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지구 중에서 사업 시행후 농업진흥지역 편입을 전제로 면밀한 검토·분석을 거쳐 신중하게 선정
- 동일수계에 여러 사업지구가 있는 경우 하류의 지구부터 단계적으로 선정
- 사업시행에 대한 주민 호응도가 낮은 지구, 타법·타사업 등으로 사업에 제약이 있는 지구, 배수 본천의 하천정비가 시행되지 않았거나 배수개선과 병행시행이 어려운 지구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업비(균특회계)는 배수장·배수문·배수로 등의 공사비(자재대 포함) 및 용지 매수보상비, 시설부대경비(세부설계비,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 등)으로 집행
- 조사설계비(농특회계)는 농어촌정비법 제7조의 기본조사에 소요되는 인건비, 경비, 관리비 등으로 집행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구 분	사 업 비	조사설계비(기본조사비)
예산항목	민간자본보조	자치단체 자본보조
지원조건	국고 100%	국고 100%
재 원	균특회계	농특회계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비는 지구별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지원
 - * 총사업비는 배수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공사비 및 용지매수보상비, 시설부대경비(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52호 ; '08.11.5.참조)
 - * 사업시행 인가후의 낙찰가격(계약)을 기준으로 총사업비를 조정·관리하고, 이미 집행된 기본조사비는 제외
- 조사설계비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기본조사비 소요액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예정자(시·군·구, 한국농촌공사)

[기본조사 대상지] ; 조사설계비(기본조사비) 집행관련

- 시·군·구 및 한국농촌공사는 매년 농림수산식품부가 시달하는 사업예정지 조사요령을 참조하여 지구당 50ha이상 사업예정지를 조사하여 시·도에 제출
 - 현황, 투자소요액, 사업효과, 위치도, 그밖에 사업 타당성 판단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리한 자료 첨부(농림수산식품부가 별도 시달하는 예정지 조사요령 참조)

[사업시행 대상지] ; 사업비 집행관련

- 시·군·구 및 한국농촌공사는 기본조사 또는 세부설계가 완료된 지구를 대상으로 한 신규착수와 시행중인 지구의 시행에 필요한 익년도의 예산을 신청

시·도

[기본조사 대상지]

- 시·도는 사업 타당성 및 시행여건 등을 감안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예정지조사결과 및 기본조사 대상지를 제출('09.1월)
 - 시·군·구에서 제출한 자료, 시도의 우선순위 결정 및 평가·검토 자료 등 첨부

[사업시행 대상지]

- 시·도는 시·군·구의 예산신청 지구에 대한 타당성 및 우선순위, 예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 및 일정 등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 익년도 예산을 요구
- 시·도는 시행중 지구의 사업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시행중 지구의 조기 완공에 소요되는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고, 신규지구는 시행중인 지구의 추진공정 및 잔여 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반영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기본조사 대상지]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에서 제출한 지구당 50ha이상 사업예정지 조사내용을 감안하여 기본조사 대상지를 선정하고, 한국농촌공사가 기본조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조사 대상지를 시·도 및 한국농촌공사에 통보('09. 2월)
- 농림수산식품부는 한국농촌공사의 기본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및 한국농촌공사에 송부(수시)
- 다만, 50ha미만 지구는 시·도지사가 기본조사 시행여부 판단 및 기본조사자를 선정하고, 기본계획도 시·도지사가 수립(수시)

[사업시행 대상지]

- 시·도는 사업비 예산에 반영된 지구를 대상으로 농림수산식품부가 수립한 기본계획과 자체 수립한 기본계획 등을 토대로 사업시행 대상지를 선정하고 농어촌정비법 제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선정

기본조사자(시·도, 한국농촌공사)

- 기본조사자는 타법·타사업관련,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 사업시행에 제약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기본조사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 및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50ha미만 지구는 시·도 협의로 종결)
- 기본조사자는 당해지역 주민, 하천관리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촌공사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인근에 경지정리 및 농촌마을종합개발 계획 등이 있을 경우 병행 시행여부를 검토

- 기본조사자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8조 규정사항과 다음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안을 작성,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50ha미만 지구는 시·도에 송부)
 - 조사지역의 과거 피해이력 및 피해잠재성 등 피해정도
 - 하천정비 상태와 하천정비계획, 배수장설치로 인해 하천 상·하류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농업진흥지역 편입여부와 미편입지역에 대한 해당 시·도 및 사업시행예정자의 조치계획
- 사업효과는 식량생산 차원뿐만 아니라 재해방지효과를 최대한 계량화하되, 경제성이 결여될 경우 기본조사를 중단하고 농림수산식품부와 처리방안 협의(50ha미만 지구는 시·도와 협의)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세부설계 실시와 시행계획 수립》

시·도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시급성 등에 따라 세부설계지구를 선정·실시하며, 한국농촌공사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 중에서 세부설계자를 선정. 세부설계는 예산이 확보된 지구에 대해 실시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중에서 타당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신규사업 시행지구를 선정하고, 익년도 예산요구서 제출 전까지 예산신청사업량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

시·군·구, 한국농촌공사

- 세부설계자는 타법·타사업관련,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 사업시행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세부설계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 및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50ha미만 지구는 시·도와 협의)
- 세부설계자는 기수립된 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설계를 실시하되, 수혜면적의 변경 또는 기본계획의 주요한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도 및 농림수산식품부와 사전 협의(50ha미만 지구는 시·도와 협의)
- 세부설계서에는 완공후 배수장, 배수문 및 배수갑문 등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설계기준 및 빈도별 강우에 대한 시간별 추정 홍수유하량과 홍수위에 대한 조건표 및 시설운영지침 등을 제시
- 거주지·농경지 혼재지역이나 집단적 특용작물 재배지역에 있는 배수펌프장과 향후 신·증설되는 배수펌프장은 정전발생시 배수펌프장 가동중단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전원을 우선적으로 확보

《사업시행인가와 공사발주》

시·도

- 시·도지사가 신규사업 시행지구를 선정 통보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공고 내용과 동의서를 첨부하고, 시설의 인수·관리에정자를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
- 시·도지사는 사업인가시, 인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하되,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내역과 검토내역을 첨부하고, 공사비가 기본계획보다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내역을 첨부

시·군·구, 한국농촌공사

-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의 사업시행인가를 토대로 용지매수 및 공사발주, 계약 등을 이행

《공사추진》

시·도

- 총사업비는 농림수산식품부가 별도 시달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조정·관리하되, 설계 또는 착수이후 물가변동, 시설물 안전성 제고 및 법령 개정 사항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설계변경에 의한 물량 증가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물가변동에 의한 총사업비 변경은 그 사유가 발생한 후 3개월 이내에 시·도지사가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시행계획에서 정한 수혜면적의 10%를 초과하는 수혜면적의 증감, 시행계획에서 정한 공사비의 10%를 초과하는 증감, 농업기반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물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구조물의 변경 등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변경승인할 때에는 설계보완내용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사유(당초설계자와 보완설계자의 의견서를 첨부)와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하여 책임설계·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 준공 정산을 하며, 시설물 인수 관리자에게 시설을 인수토록 함

- 준공지구에 예산이 부족한 경우는 동일 시·도에서 사업시행중인 기존 계속 지구에 배정된 예산을 조정하여 충당하고, 예산이 남는 경우에는 타지구 사업비로 예산배정을 조정하여 예산불용이 없도록 함

시·군·구, 한국농촌공사

- 사업시행자가 공정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배수장, 배수갑문 등 주요공종의 공사시기를 신중히 검토하여 조기에 사업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고 배수로 등 간단한 공작물이나 잔사업량이 경미한 공정 등은 영농기 이전에 완공하도록 하며,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하절기 호우기간 중에는 수해를 대비하여 수방자재(마대, 말뚝, 중장비 등)를 확보하는 등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함
- 공사감리는 한국농촌공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신고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 중에서 선정하여 위탁 시행
- 공사감리자는 전문분야별로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배치상황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 사업시행자는 배치상황을 검토한 후 시·도지사에게 보고
-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업무를 장기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현장을 일시적으로 떠나거나 교체시에는 사업시행자와 사전협의
-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이 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
- 공사감리자는 착공전에 설계도면과 현지를 대조하여 설계미비 여부 및 공정순위를 파악하고 시공중에는 철저한 공사감리 뿐만 아니라 굴착, 집토, 골재의 야적 등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수혜민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여 민원을 사전에 방지
- 사업시행자는 소속 기술직원을 현지 전담자로 지정하고 공사감리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공사를 촉진하고 시공상황을 파악하며 수시 현장확인(사진촬영 포함), 공정계획의 수립 및 업무일지를 기록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감리위탁계약서에 의하여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공회사의 준공계(공사감리자 확인),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공사감리자가 작성), 예비검사 결과, 매수한 토지 등의 현황을 포함하여 사업준공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신청

4. 자금배정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월별 배정계획에 따라 시·도에 자금 송금

시·도

- 사업시행지구의 사업기간을 가능한 확정 관리토록 하고, 사업지구별로 사업기간과 년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조기 완공위주로 사업비를 지원함
- 준공지구를 우선하여 지원함
- 배수장시설 등 핵심공종은 수해대비 공정을 감안하여 지원함
-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세부설계와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시·도지사 책임하에 지방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5. 이행점검 단계

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지구의 국고지원 자금의 운용관리상황을 수시로 확인 점검
- 시·도지사는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비를 검정 및 결산하고 결산 결과는 익년도 3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준공 정산을 하며, 시설물 인수 관리자에게 시설을 인수
- 준공지구에 예산이 부족한 경우는 동일 시·도에서 사업시행중인 기존 계속지구에 배정된 예산을 조정하여 충당하고, 예산이 남는 경우에는 타지구 사업비로 예산배정을 조정하여 예산불용이 없도록 함

사업시행자(시·군, 한국농촌공사)

- 사업시행자가 국고보조 사업비를 받았을 때는 세부설계비와 용지매수 보상비를 우선하여 지급
- 사업시행자는 사업비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 잡수입 등 수익은 당해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조치하여 재투자

6. 성과측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의 계획에 따라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점검
- 계획대비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집행지연, 부당집행 등의 사례 조사
- 지자체의 예산 조기집행상황을 파악하여 농림사업 지자체 평가시 반영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가 평가한 결과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자체 시·도별로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이를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
- 평가시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평가
 - 사업대상지구 선정시 선정기준 부합 여부
 - 사업대상지구 선정을 위한 지구별 우선순위 부여에 대한 적합 여부
 - 준공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여부
 -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자금집행실적 포함)
 - 기타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

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지구 선정부터 사업시행과정을 시·군별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반영

IV. 201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0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2010년도 추진할 사업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예산신청
- 농림수산식품부사업담당자는 시·도 예산 요구안을 기초로 2010년도 예산 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2. 201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9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지구 배수개선사업 시행인가 결과

○ 지구명 : (내지구명 :) ○ 면적 : ha
 ○ 위치 : 도 시·군 읍·면 ○ 사업시행자 :

(단위 : 백만원)

구분		최종 승인액	'08까지	'09예산	'10이후	비고
과목	공종별					
합계						
○ 공사비						
- 순공사비	소계					
	배수장					
	배수로					
	배수문					
	기타					
- 지급자금대						
○ 용지매수 및 보상비						
○ 기타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지출·기타						

< 기본계획 대비 변경내역 >

- 변경액 : → 백만원(%)
- 공종별 변경내역 및 사유 :

< 농림수산식품부 지시내용 이행내역 >

구분	지시내용	이행내역

※ 기본계획 수립 및 기타 지시내용

[별지 제2호 서식]

배수개선사업 진도보고

(단위 : 백만원)

지구명	도		면적 (ha)	총사업 비	'08까 지	'09계획 및 실적				'10이 후	사 업 시 행 자	
	위치					총예산 액 (A)	집행계 획 (B)	집행실 적 (C)	%			
	시 군	읍 면							C/ B			C/ A

[부진 사유] : 집행계획 대비 80%미만인 지구명 및 부진사유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지구 배수개선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신청·결과보고

1. 지구명 : 2. 수해면적 : ha 3. 사업시행자 : 4. 주요공사 :

5. 사업비 지원(변경전 기준)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변경전)	'08까지	'09예산	'10이후

6. 시행계획 변경내역 : 수해면적 (현행) (변경)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현행	변경	증 감		
			소계	물가변동	물량변동
계					
- 공사비					
- 용지매수보상비					
- 기타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지출, 기타					

[물가변동] 기준시점 비교시점 인상율 인상액
 [물량변동] ※ 공종별 변경내역을 “1. 필요성, 2. 변경내역, 3. 미반영시 문제점, 4. 당초 설계자 의견, 5. 기타 도면 및 참고자료” (필요시 표로 작성)
 [농림수산식품부 지시내용 이행내역]

[별지 제4호 서식]

○○지구 배수개선사업 준공처리 결과보고

1. 사업지구현황

- 위치 : ○ 수해면적 : ha ○ 총사업비 : 천원 ○ 사업시행자 :
- 주요시설 - 배수장 : m × m × 대 (Q = m³/sec), 유역면적 ha
 - 배수로 : m (최대단면 : b= , B= , h= , H=)
 - 배수문 : m × m × 련, SILL m, 유역면적 ha
- 사업시행인가일 : ○ 착공 연월일 : ○ 준공년월일 :
- 설계기관 : ○ 공사감리 : ○ 시공업체 : ○ 사업효과 :

2. 연도별 검정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인가액	준공검정액	증감	연도별 검정내역				
수입								
지출								

107	방 조 제 개 보 수 사 업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시설안전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시설관리과	과 장 김일환	02-500-1841
		서기관 전경구	02-500-1847
한국농촌공사	시설관리처	처 장 박해성	031-420-3116
		팀 장 전건영	031-420-3821

I. 사업개요

1. 목 적

- 방조제(국가관리, 지방관리)중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기능이 저하되고 집중호우·태풍·해일 등으로 재해우려가 있는 취락시설을 개보수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도모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8조, 제94조
- 방조제관리법 제6조, 제7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09년에는 145지구(국가 31, 지방 114) 추진
 - 준공 74지구(국가 12, 지방 62), 계속 21지구(국가 3, 지방 18), 신규착공 50지구(국가 16, 지방 34)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6	'07	'08		
▪ 방조제 개보수율 (누계%)	42.0	35.4	38.0	39.9	2010.1	방조제개보수율(%)= (개보수완료지구수/개보수 대상지구수)*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합 계	919,863	90,429	97,857	100,286	1,129,759
보 조	743,662	73,500	82,000	84,000	895,899
지방비	176,201	16,929	15,857	16,286	233,860
국가관리방조제	438,122	34,000	45,000	46,000	350,223
- 보 조	438,122	34,000	45,000	46,000	350,223
- 지방비					
지방관리방조제	481,741	56,429	52,857	54,286	779,536
- 보 조	305,540	39,500	37,000	38,000	545,676
- 지방비	176,201	16,929	15,857	16,286	233,860

II. 200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 대상자

- 시설관리자 및 관리대행자(시장·군수, 한국농촌공사사장)

2. 지원자격 및 요건

- 방조제개보수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2009년 예산이 편성된 지구를 대상으로 당해 지구 방조제를 관리(관리대행자 포함)하는 시장·군수 또는 한국농촌공사사장에게 지원

3. 지원대상

- 방조제관리법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라 국가관리방조제 또는 지방관리방조제로 지정된 방조제로서 다음의 사유로 개·보수가 필요한 방조제
 - 노후·파손 등 시설물의 안전 또는 기능상실로 인해 재해발생시 인명·재산 피해가 예상되어 방조제개보수 기본계획을 수립한 시설
 -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해위험판정(D,E등급) 시설
 - 시설 운용관리상 획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시설
 - 태풍·해일·호우 피해 방조제 중 개선복구가 필요하나, 지원되는 복구비가 부족하여 재해 반복이 예상되는 시설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방조제, 배수갑문 및 부속시설 등의 공사비(자재대 포함) 및 용지매수보상비, 시설부대경비(세부설계비,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 등)으로 집행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민간자본보조(균특회계)

구 분	지원비율(%)	
	국 고	지방비
국가관리방조제	100	-
지방관리방조제	70	3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비는 지구별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지원
 - * 총사업비는 방조제개보수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공사비 및 용지매수보상비, 시설부대경비(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52호 ; '08.11.5.참조)
 - * 사업시행 인가후의 낙찰가격(계약)을 기준으로 총사업비를 조정·관리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시설관리자(시장·군수, 한국농촌공사)

- 시설관리자(시장·군수, 한국농촌공사사장)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하여 현지답사후 시·도지사에게 방조제개보수사업 예정지(이하 ‘예정지’라 함) 조사 신청
- 지방관리방조제는 시설상태와 지방비 확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도지사에게 예정지조사 신청

시·도

- 신청된 예정지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재해예방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정지조사를 실시
- 시·도지사는 농업기반시설관리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를 토대로 사업시행자가 예정지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되, 한국농촌공사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예정지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함.
- 시·도지사는 사업의 규모, 시급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부장관에게 예산을 신청(국가관리방조제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전 농식품부와 정밀안전진단결과를 반영한 주요공사 및 사업비 등에 대해 사전협의)
 - 재해대비 등 시급한 개보수를 요할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결과를 토대로 농식품부와 협의 후 예산신청

2. 사업지구 선정단계

- 선정기준
 - 방조제관리법 규정에 의한 관리방조제로서 노후·파손 등으로 기능이 저하되고 재해우려가 있는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함
- 우선순위
 - 노후·파손 등 시설물의 안전 또는 기능상실로 인해 재해발생시 인명·재산 피해가 예상되어 방조제개보수 기본계획을 수립한 시설
 -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해위험판정(D,E등급) 시설
 - 시설 운용관리상 획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시설
 - 태풍·해일·호우 피해 방조제 중 개선복구가 필요하나, 지원되는 복구비가

부족하여 재해 반복이 예상되는 시설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세부설계 실시와 시행계획 수립》

시·도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시급성 등에 따라 세부설계지구를 선정·실시하며, 한국농촌공사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증을 교부 받은 자 중에서 세부설계자를 선정. 세부설계는 예산이 확보된 지구에 대해 실시
- 시·도지사는 세부설계를 완료한 때는 성과품을 엄격히 검수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후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시·군·구, 한국농촌공사

- 세부설계자는 타법·타사업관련,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 사업시행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세부설계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와 협의
- 세부설계자는 기수립된 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설계를 실시하되, 기본계획의 주요한 변경, 방조제 및 배수갑문 형식 및 구조의 변경, 주요 공법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도 및 농림수산식품부와 사전 협의

《사업시행인가와 공사발주》

시·도

- 시·도지사가 신규사업 시행지구를 선정 통보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공고 내용과 동의서를 첨부하고, 시설의 인수·관리예정자를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
- 시·도지사는 사업인가시, 인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하되,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내역과 검토내역을 첨부하고, 공사비가 기본계획보다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내역을 첨부

시·군·구, 한국농촌공사

-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의 사업시행인가를 토대로 용지매수 및 공사발주,

계약 등을 이행

《공사추진》

시·도

- 총사업비는 농림수산식품부가 별도 시달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조정·관리하되, 설계 또는 착수이후 물가변동, 시설물 안전성 제고 및 법령 개정 사항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설계변경에 의한 물량 증가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물가변동에 의한 총사업비 변경은 그 사유가 발생한 후 3개월 이내에 시·도지사가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시행계획에서 정한 수혜면적의 10%를 초과하는 수혜면적의 증감, 시행계획에서 정한 공사비의 10%를 초과하는 증감, 농업기반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물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구조물의 변경 등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변경승인할 때에는 설계보완내용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사유(당초설계자와 보완설계자의 의견서를 첨부)와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하여 책임설계·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 준공 정산을 하며, 시설물 인수 관리자에게 시설을 인수토록 함
- 준공지구에 예산이 부족한 경우는 동일 시·도에서 사업시행중인 기존 계속 지구에 배정된 예산을 조정하여 충당하고, 예산이 남는 경우에는 타지구 사업비로 예산배정을 조정하여 예산불용이 없도록 함

시·군·구, 한국농촌공사

- 사업시행자가 공정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방조제, 배수갑문 등 주요공종의 공사시기를 신중히 검토하여 조기에 사업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고 비교적 간단한 공작물이나 잔사업량이 경미한 공정 등은 영농기 이전에 완공하도록 하며,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하절기 호우기간 중에는 수해를 대비하여 수방자재(마대, 말뚝, 중장비 등)를 확보하는 등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함
- 공사감리는 한국농촌공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

- 과학기술부에 신고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 중에서 선정하여 위탁 시행
- 공사감리자는 전문분야별로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배치상황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 사업시행자는 배치상황을 검토한 후 시·도지사에게 보고
 -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업무를 장기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현장을 일시적으로 떠나거나 교체시에는 사업시행자와 사전협의
 -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이 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
 - 공사감리자는 착공전에 설계도면과 현지를 대조하여 설계미비 여부 및 공정순위를 파악하고 시공중에는 철저한 공사감리 뿐만 아니라 굴착, 집토, 골재의 야적 등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수해민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여 민원을 사전에 방지
 - 사업시행자는 소속 기술직원을 현지 전담자로 지정하고 공사감리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공사를 촉진하고 시공상황을 파악하며 수시 현장확인(사진촬영 포함), 공정계획의 수립 및 업무일지를 기록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감리위탁계약서에 의하여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공회사의 준공계(공사감리자 확인),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공사감리자가 작성), 예비검사 결과, 매수한 토지 등의 현황을 포함하여 사업준공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신청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월별 배정계획에 따라 시·도에 자금 송금

시·도

- 사업시행지구의 사업기간을 가능한 확정 관리토록 하고, 사업지구별로 사업기간과 년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조기 완공위주로 사업비를 지원함
- 준공지구를 우선하여 지원함
- 방조제, 배수갑문 등 핵심공종은 수해대비 공정을 감안하여 지원함
-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세부설계와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시·도지사 책임

하에 지방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5. 이행점검단계

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지구의 국고지원 자금의 운용관리상황을 수시로 확인 점검
- 시·도지사는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비를 검정 및 결산하고 결산 결과는 익년도 3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 준공 정산을 하며, 시설물 인수 관리자에게 시설을 인수
- 준공지구에 예산이 부족한 경우는 동일 시·도에서 사업시행중인 기존 계속 지구에 배정된 예산을 조정하여 충당하고, 예산이 남는 경우에는 타지구 사업비로 예산배정을 조정하여 예산불용이 없도록 함

사업시행자(시·군, 한국농촌공사)

- 사업시행자가 국고보조 사업비를 받았을 때는 세부설계비와 용지매수 보상비를 우선하여 지급
- 사업시행자는 사업비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 잡수입 등 수익은 당해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조치하여 재투자

6. 성과측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의 계획에 따라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점검
- 계획대비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집행지연, 부당집행 등의 사례 조사
- 지자체의 예산 조기집행상황을 파악하여 농림사업 지자체 평가시 반영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가 평가한 결과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자체 시·도별로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이를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
- 평가시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평가
 - 사업대상지구 선정시 선정기준 부합 여부
 - 사업대상지구 선정을 위한 지구별 우선순위 부여에 대한 적합 여부
 - 준공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여부
 -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자금집행실적 포함)
 - 기타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

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지구 선정부터 사업시행과정을 시·군별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반영

IV. 201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0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2010년도 추진할 사업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예산신청
- 농림수산식품부사업담당자는 시·도 예산 요구안을 기초로 2010년도 예산 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2. 201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9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지구 ○○관리 방조제개보수사업 시행인가 결과

○ 지구명 : ○ 면 적 : ha,
 ○ 위치 : 도 시·군 읍·면 ○ 사업시행자 :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 중 승인액	'08까지	'09예산	'10이후	비 고
과 목	공 종 별					
합 계						
○ 공 사 비						
- 순공사비	소 계					
	방 조 제 배수갑문 기 타					
- 지급자재대						
○ 용지매수 및 보상비						
○ 기 타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지출·기타						

< 기본계획 대비 변경내역 >

○ 변경액 : → 백만원(%)

○ 공종별 변경내역 및 사유 :

< 농림수산식품부 지시내용 이행내역 >

구 분	지시내용	이행내역

※ 기본계획 수립 및 기타 지시내용

[별지 제2호 서식]

○○관리 방조제개보수사업 진도보고

도

(단위 : 백만원)

지구명	위치		면적 (ha)	총사업 비	'08까 지	'09계획 및 실적				'10이후	사 업 시 행자	
	시 군	읍 면				총예 산액 (A)	집행 계획 (B)	집행실 적 (C)	%			
									C/ B			C/ A
						()	()	()				
						()	()	()				
						()	()	()				

※ ()내서 :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의 경우 지방비

[부진 사유] : 집행계획 대비 80%미만인 지구명 및 부진사유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지구 ○○관리 방조제개보수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신청·결과보고

1. 지구명 : 2. 수혜면적 : ha 3. 사업시행자 : 4. 주요공사 :

5. 사업비 지원(변경전 기준)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변경전)	'08까지	'09예산	'10이후

6. 시행계획 변경내역 : 수혜면적 (현행) (변경)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현행	변경	증 감		
			소계	물가변동	물량변동
계					
- 공사비					
- 용지매수보상비					
- 기타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지출, 기타					

[물가변동] 기준시점 비교시점 인상율 인상액
 [물량변동] * 공종별 변경내역을 “1. 필요성, 2. 변경내역, 3. 미반영시 문제점, 4. 당초 설계자 의견, 5. 기타 도면 및 참고자료” (필요시 표로 작성)
 [농림수산식품부 지시내용 이행내역]

[별지 제4호 서식]

○○지구 ○○관리 방조제개보수사업 준공처리 결과보고

1. 사업지구현황

- 위치 : ○ 수혜면적 : ha ○ 총사업비 : 천원 ○ 사업시행자 :
- 주요시설 - 방 조 제 : L= m(평균높이= m, 제정폭= m)
 - 배수갑문 : 개소(m × m × 려)
- 사업시행인가일 : ○ 착공 연월일 : ○ 준공년월일 :
- 설계기관 : ○ 공사감리 : ○ 시공업체 : ○ 사업효과 :

2. 연도별 검정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인가액	준공검정액	증감	연도별 검정내역				
수입								
지출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용수자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용수자원과	과장 이봉훈 서기관 이성홍	02-500-1831 02-500-1835
한국농촌공사	환경지질사업처 지하수관리팀	팀장 이종수 차장 전병철	031-420-3711 031-420-3717

I. 사업개요

1. 목 적

- 가뭄발생지역의 당면영농을 위한 관정 및 간이용수원 개발·관리, 양수급수 유류대 및 전기료 지원 등의 용수대책비를 지원하여 가뭄으로 인한 영농피해 최소화

2. 근거법령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 제2항, 제6항
- 농어촌정비법 제18조제1항, 제94조제1항, 제2항, 제3항

3. 성과목표 및 지표

- '01년도부터 '13년도까지 관정 3,575공을 개발하여 가뭄대책 집중관리 면적 58천ha중 13천ha 가뭄해소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6	'07	'08		
▪ 관정개발공수 (공, 주지표)	275	245	275	275	2010.1	연말 준공실적
▪ 관정개발율 (%, 부지표)	7.7	6.8	7.7	7.7	2010.1	연말실적/3,575공 (개발추진 목표공수)
▪ 가뭄대책집중관리 면적(ha, 부지표)	1,000	1,704	1000	1,000	2010.1	개발공에 의한 수혜면적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합 계	718,562	18,560	31,250	28,750	112,500
보 조	438,020	14,848	25,000	23,000	90,000
지방비	280,542	3,712	6,250	5,750	22,500

II. 2009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시·군·자치구, 한국농촌공사

2. 지원자격 및 요건

- 시·군·자치구, 한국농촌공사

3. 지원대상

- 가뭄발생지역의 당면영농을 위한 관정개발 및 관리, 간이용수원 개발, 양수저류, 저수지준설, 양수급수 유류대 및 전기료 지원 등의 용수대책비를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가뭄발생지역 관정개발, 간이용수원 개발, 양수저류, 저수지준설, 양수급수 유류대 및 전기료 지원, 지하수시설물 점검·정비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이미 개발된 지하수시설물의 활용성 증대와 점검·정비 등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시·도별로 배정된 예산의 10% 이상을 지하수시설물 관리에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형태 : 국고보조 80%, 지방비 2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시·도별 예산 배정액 내에서 시·군 등 사업대상자에게 지원

III.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에서 신청한 당해 연도 사업대상에 대한 예산신청서를 검토·조정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가직접편성사업으로 기획예산처에 예산 요구 신청(전년도 6월말)
 - 시·도에서 신청한 내역에 대해 가뭄대책 집중관리지역 면적, 사업의 타당성, 연내 집행가능성, 사전이행절차의 완수 여부, 지방비부담 가능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조정(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 반영)

시·도

- 시·도는 관할 시·군의 당해 연도 사업대상 신청, 지방비 부담능력 및 지역혁신발전계획 등을 토대로 예산신청서를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예산 요구 신청(전년도 5월말)
 - 시·도별 예산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시·군 및 지역혁신협의회 등을 통해 지역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신청서를 작성

시·군

- 시·군은 가뭄지역조사 결과,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대책 등을 고려하여 당해 연도 세부사업별 사업대상 후보지를 시·도에 요구 신청(전년도 5월중)
 - 한국농촌공사 관리구역의 사업대상 후보지는 해당 시·군에서 시·도에 신청

< 사업대상 후보지 선정기준 >

- 가뭄으로 물이 부족하여 영농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천수답 등 농경지)
 - 가뭄상습지 가뭄대책 집중관리지구 등(1,633지구, 58천ha, 농림수산식품부 용수51320-610(2002.8.30)호)
 - 지자체별 가뭄대책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지구 관리 및 선정 지원
 - 예) 수혜면적 5ha이상 집단화된 우량농지(농업진흥지역)로 수리시설 미비 또는 내한능력 부족으로 작은 가뭄에도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 단, 5ha미만 우량농지는 지자체에서 별도 선정 기준 마련 추진 등
- 가뭄을 대비하여 기존 시설물의 점검·정비 및 관리 철저
 - 지하수시설물의 경우 지자체별 보유관정을 대상으로 영농기전 점검·정비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정비대상 관정을 선정
 - ※ 지하수시설물의 관리(지하수법 제7조의3, 제9조의5, 제20조)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청소, 검사 및 정비, 수질검사 및 허가연장 영향조사 등
- 관정개발 지구선정시에는 농촌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수자원관리사업 성과(농촌지하수넷, <http://www.groundwater.or.kr>)를 적극 활용하여 사업대상지구 선정

2. 사업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당해 연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확정된 예산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시·도에 시달(전년도 12월말)

시·도

- 시·도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당해 연도 배정예산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군별 사업대상 우선순위, 지방비 부담능력 및 지역혁신발전 계획 등을 토대로 예산을 확정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토록 시·군에 시달(2월말)

시·군

- 시·군은 당해 연도 배정예산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대상 후보지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지구 선정(3월말)
 - 한국농촌공사 관리구역의 사업대상지 포함 선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군

- 시·군은 당해 연도 배정예산에 대하여 지방비 확보 등 세부사업별 사업시행 계획 수립(3월말)
 - 한국농촌공사 관리구역의 사업시행자는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유의사항 >

가. 계획수립 유의사항

- 기상예보 및 전망에 따라 지역의 부존수자원과 절수대책 및 가뭄대처능력을 사전에 검토
-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비는 가뭄대책 예비비 성격임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당면영농을 위한 가뭄대책사업을 우선하는 계획 수립
- 시장·군수는 가뭄을 효율적으로 사전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 시설물의 점검·정비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 지하수시설물의 기술진단 및 정비 필요시는 「농업용 지하수시설물 관리지원단(농림수산식품부 기반정비과-4013(2006.12.22)호)」에 기술지원을 받는 등으로 관리 철저

나. 사업시행 유의사항

- 하천굴착 등은 소나기성 강우에 대비 제방안전, 기자재의 유실 및 전동기 등의 침수방지 등에 대비하고 배수장애물을 제거하면서 풍수해 사전대비 간이용수원 개발을 추진하여야 함
- 전기모타를 설치 양수할 경우 감전사고 예방대책 강구

다. 가뭄대책 장비 및 자재 확보

- 간이용수원 개발을 위한 중장비 등 확보
 - 하천굴착용 백호, 도자, 트럭 등 확보에 노력
- 자재확보 공급
 - 양수기, 송수호스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
 - 비우심지역의 장비 및 자재 활용방안 강구

라. 가뭄지역조사 및 사업시행 건의

- 시장·군수는 가뭄이 발생하면 현지의 가뭄상황 및 대책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
- 가뭄상황 및 대책보고서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사업예정지구 현황(위치도, 가뭄상황, 농지의 고갈, 균열, 저수율, 항구대책 시설가능성 등)
 - 사업의 필요성과 개발효과
 - 공사계획과 소요사업비
- 중·소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 등 항구적 대책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규사업 추진 건의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당해 연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확정된 예산에 대하여 시·도에 국고보조금 교부

시·도

- 시·도는 당해 연도 확정된 예산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교부된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방비를 확보하여 시·군에 재교부
 - 체계적인 지하수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기술진단 및 정비비 등을 「농업용 지하수시설물 관리지원단」에 직접 지원 가능

시·군

- 시·도에서 배정된 당해 연도 자금에 대한 지방비를 확보하여 자금 집행
 - 한국농촌공사 관리구역에 대한 자금은 한국농촌공사에 재교부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시·군

- 사업시행자인 시·군(또는 한국농촌공사)은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점검을 실시
 - 사업추진 상황을 매 반기별로 시·도에 보고(별지 제1호 서식)
- 시·군은 농업기반시설물 관리규정 등에 따라 준공시설에 대하여 사후관리
 - 농업용 공공 대형관정의 개발·이용, 점검·정비 등의 기술지원은 「농업용 지하수 시설물 관리지원단」을 활용하고, 관리 내용은 농업용 관정관리시스템(농촌지하수넷, <http://www.groundwater.or.kr>) 및 시설물관리카드에 기록하여 이력관리

시·도

- 사업주관기관인 시·도는 자금집행 적정여부,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시·도에 대한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
 - 농림수산식품부는 상·하반기별로 사업추진 상황, 현장의견 및 기타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해 점검 실시
 - ※ 점검일정 및 방법 : 반기별 1회 이상(4월, 11월), 현지 점검

《제재》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 및 사업대상자의 보조금 집행상황 등에 대하여 점검
 - 시·도 및 시·군에서는 교부된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을 반드시

확보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가 사업비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 잡수입, 불용액, 이월액 등 수익은 당해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조치하여 재투자하여야 함

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의 자금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

6. 성과측정단계

- 매년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의 전년도 사업성과를 평가
 - 평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
 - 대상기간 :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
 - 평가요소 : 사업의 계획, 집행, 성과, 홍보 등 프로세스별 성과달성여부 등
 - 평가방법 : 평가요소별 답변보고서에 대하여 평가전담부서에서 평가
- 시·도(지자체) 농정업무 평가
 - 평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상반기)
 - 대상기간 :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
 - 평가요소 : 관정 및 양수장비 관리
 - 주요내용 : 대형관정 및 양수장비의 가동율, 정비비 확보 등 재해대책 시설물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가뭄 사전대비의 효율성 제고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별지 1」 :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추진현황 보고(양식)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추진현황 보고

1.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추진계획

가. 총괄

(금액 : 백만원)

시·도 (시·군)	농업용수개발계획(개소)						사업비			비고
	계	관정개발	소규모양수장	저수지준설	관정관리	기타	계	국고	지방비	
계										

나. 세부내역

○ 사업명 :

시·도 (시·군)	지구명	위치		수혜면적 (ha)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비고
		시군	읍면			계	국고	지방비	
계									

※ 1. 사업명 : 관정개발, 양수장설치, 저수지준설, 관정관리, 기타

2. 사업량 : 관정개발(공, 비고에 암반대형관정, 소형관정 구분), 양수장설치(개소), 저수지준설(천m³)

관정관리는 청소, 정비, 수질검사, 허가연장영향조사 등을 구분 표시(공), 기타(개소, 배수로보수, 저수지보강, 보수 등)

2. 2009 추진 현황

(금액: 백만원)

사업명	계 획		추진실적 (개소수)				비 고
	사업량	사업비 (A)	착 수 준비중	공사중	완 료	실형액 (B)	
계							
○ 관정개발							
○ 양수장설치							
○ 저수지준설							
○ 관정관리							
○기 타							

※ 1. 사업량 : 관정개발(공), 양수장설치(개소), 저수지준설(개소), 관정관리(공), 기타 (개소)

2. 사업비 : 국고기준, ()외서 지방비

3. 추진실적 : 상단에 개소수, 하단에 ()로 완료예정일 기재

- 착수준비중 : 미착수지구(개소)수 기재

* 사업량(계획) = 착수준비중 + 공사중 + 완료지구수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용수자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용수자원과	과 장 이봉훈 서기관 이성홍	02-500-1831 02-500-1835

I. 사업개요

1. 목 적

-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촌용수를 확보·공급함으로써 식량의 안정적생산 및 영농기계화로 안전·편의 영농에 기여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5조, 제8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가뭄상습지에 대해 농촌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공급하여 안정 영농 기반 구축
 - 2013년 까지 국고 839억원을 투입하여 가뭄상습지 11.0천ha에 대해 저수지 양수장, 취입보, 용수로 등 수리시설을 설치 농촌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06	'07	'08		
▪ 사업추진율 (%, 주지표)	13.6	7.3	10.0	11.8	2010.1	(준공면적누계/개발목표 면적)*100
▪ 재정투입율 (%, 부지표)	95.9	50.6	68.8	83.1	2010.1	(재정집행실적누계/투자 목표)*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합 계	84,962	30,402	24,146	21,558	6,704
보 조 용 자	42,481	15,201	12,073	10,779	3,352
지방비 자부담	42,481	15,201	12,073	10,779	3,352

II. 200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시장·군수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촌정비법 제9조(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3. 지원대상

- 소규모용수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소규모용수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형태 : 국고 50%, 지방비 50%
- 사업의무량 : 지구별 사업계획서상 사업량(저수지, 양수장, 취입보, 용수로 등 소규모용수개발사업에 필요한 공종)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별도의 지원한도액을 설정한 것은 없으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국고 및 지방비로 전액지원.

III.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사업대상지구선정》

- 수혜면적이 50ha미만이며 사업시행에 제약사항이 없고 효율이 양호한 지구
- 농업진흥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함.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제주도 특별법에 의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된 지구로 상당기간 영농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 등 특별한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밖을 선정할 수 있음.
- 지역주민 2/3이상의 동의와 광업권등 권리자 모두의 동의가 가능한 주민숙원사업지구

《계획수립시 유의사항》

<저수지>

- 저수지 위치선정은 지역실태(저수지 상류부 포함), 주민의 개발 희망 사항, 수문, 입지조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여러 안을 충분히 비교 검토하

여야 하며, 기존농지가 과다하게 수몰되거나 마을이 수몰되어 집단 이주 되지 않도록 위치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

- 가뭄상습지역에서는 지역 가뭄특성에 맞는 가뭄대응능력을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함.
- 유역면적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수지 계산을 Carry - over System 등으로 비교 검토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하고 특히 간접유역에서 도수할 경우에는 그 유역의 하류부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함.
- 축제용 토취장 및 석재장은 가까운 거리순으로 매장량을 조사한후 토지 소유자의 사용동의 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사업시행시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선정하여야 함.
- 신설되는 저수지의 수혜구역내 소류지, 취입보 등 소규모 수리시설에 대하여는 저수지 설치후의 기능을 정확히 검토하여 이를 저수량 결정에 반영하여야 함.
- 저수지 하류부에서의 생활용수, 공업용수, 과수, 축산, 초지, 화훼, 특용단지, 하천 유지용수 등의 용수수요도 조사하여 저수지 규모결정시 고려하여야 하고 필요시 재해대책차원에서 비상수문 설치를 고려하여야 함.

<양수장>

- 양수장 위치는 하천유심변동으로 매몰되지 않을 장소에 선정하여야 하고, 홍수시 침수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함.
- 갈수량 산정시는 상·하류부에서의 취수량을 충분히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함.
- 유사가 많은 곳은 양수기 기종선정과 취입구조에 대하여 유의하여야 하고 도수 압거의 퇴적토사 제거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용·배수로>

- 용·배수로 설계는 경지정리사업을 고려하여 설계함이 원칙임
- 용수지거는 조립식 구조물을 활용함.
- 마을, 집단분묘, 과수원 및 특작지역 등에서는 민원발생 요인이 많으므로 설계시 신중을 기하여야 함.

《예정지 답사 및 사업시행 신청》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예정자(시장·군수)는 예정지에 대한 답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을 신청함(시장·군수 의견서 첨부)
- 예정지답사보고서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사업예정지구 현황(농업진흥지역지정, 수리현황, 농지이용현황, 경지정리현황, 배수현황 등)
 - 공사계획과 소요사업비
 - 사업시행 효과
 - 위치도
 - 지역개발 여건(사업의 필요성, 사업제한 여건, 연관사업계획 등)
 - 지역주민 의견

《기본조사지구 선정》

시·도(지자체)

- 시·도지사는 농어촌정비법 및 동법시행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 여부, 중장기계획의 추진, 예산형편,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기본조사지구를 선정함.
- 시·도지사는 기본조사지구 선정 시 전문가위원회(10인 이하로 민간전문가 포함)를 운영하여 사업성과 시급성, 형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업장기화를 방지하는 예산규모를 감안한 적정사업량 범위내 추진

《기본계획수립》

시·도(지자체)

- 시·도지사는 기본조사지구가 확정되면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고 기본조사를 지시함.
- 기본조사자는 타법·타사업관련,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확인하여 사업시행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기본조사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함.
- 기본조사시에는 수혜민의 개발희망도 조사(비농업진흥지역일 경우 농업진흥지역 편입의향 조사 등)와 사업시행예정자의 의견을 첨부하고 지역의

특수성(기존 수리시설의 물리 및 내한능력, 생활용수확보계획등)을 감안하여 사업예정지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되 용수개발외에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계개발이 가능한 사업이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함.

- 용수개발계획은 지표수와 지하수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조사한후 당해 지구에 부존하고 있는 수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개발·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평야부는 특수한 지형여건을 제외하고는 경지정리사업과 병행을 전제로 한 용수로 간·지선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기본조사시에는 사업시행후 유지관리를 감안하여 물관리자동화시스템(홍수예경보, 급수관리, 수질관리 등) 구축 및 용수로의 관수로(Pipe Line)화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함.
- 기본조사자는 기본조사가 완료되면 기본계획서(안)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서(안)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함.
 - 기본계획의 개요 및 사업대상지역의 위치도
 - 사업지구현황(진흥지역 지정, 수리현황, 농지이용현황, 경지정리 현황 등)
 - 기본설계도서
 - 개발계획과 주요공사 내용
 - 사업비 수지예산서 및 사업비 내역
 - 사업효율 분석결과
 - 사업시행 여건(지역주민 사업시행동의 여부, 시장·군수 의견, 연관사업, 권리설정 내역, 제약사항 등)
 - 조사자 인적사항
 - 조사자 종합의견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서(안)의 내용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함. 이때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시·도지사의 지시에 의거 기본계획(안)의 내용을 보완하여야 함.
- 기본조사비는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하는 요율에 의하여 산정함.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그 결과를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함.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예정자(시장·군수)는 예정지에 대한 답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을 신청함(시장·군수 의견서 첨부)
- 예정지답사보고서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사업예정지구 현황(농업진흥지역지정, 수리현황, 농지이용현황, 경지정리현황, 배수현황 등)
- 공사계획과 소요사업비
- 사업시행 효과, 위치도
- 지역개발 여건(사업의 필요성, 사업제약 여건, 연관사업계획 등)
- 지역주민 의견

2. 사업자 선정단계

- 농어촌정비법 제9조(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에서 정하는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자임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세부설계 실시 및 시행계획수립》

시·도(지자체)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사업시행예정자로 하여금 세부설계를 실시하도록 함.
단, 기본계획 중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경우 세부설계시 반영토록 지시
- 시·도지사는 세부설계 내용을 심의확정하고 경제성과 타당성 또는 시급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예정자에게 통보함.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예정자는 세부설계를 농어촌정비법 제101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한국농촌공사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위탁시행할수 있고, 이경우 우수한 설계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며, 완벽한 설계가 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세부설계자

- 세부설계시는 시도지사 및 사업시행예정자와 수혜민의 희망사항 등에 관하여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사전협의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시행하여야 함.
- 세부설계자는 타법·타사업관련,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 사업시행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세부설계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함.

- 주요 시설의 설계도에는 현장 시공시 기능공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공상세도를 포함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시공상세도 작성을 의무화하여야 하고, 적절한 기간을 부여하여 완벽한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함.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시·도(지자체)

- 사업시행인가 보고 : 사업시행 인가 (시·도지사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사업시행자

- 시·도지사가 시행계획 수립결과를 통보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며,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인가를 한 즉시 인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의 제규정에 의거 입찰을 실시하여 시공자를 선정함.
- 공사입찰은 과도한 제한경쟁이나 불필요한 수의계약으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

《공정계획》

시·도(지자체)

- 시·도지사는 제출된 공정계획서를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무리한 공사시행으로 인한 사고 및 재해방지를 위해 계획의 적정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공정계획에 의거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 및 공사도급자와 협의하여 당해년도 예산에 맞는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함. 또한 예산액 또는 시행계획의 변경에 따라 공정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음.(별지 제3호 서식)
- 공사의 추진은 사업의 효과를 조기에 거양하고 가뭄발생시 시설물의 이용 가능성과 재해방지를 고려하여 당해 년도 사업목표량을 설정함.

- 공정계획은 인력, 장비 및 자재의 확보외에도 기상여건 및 각종 절차를 고려하고 무리한 공기단축 등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립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공사감리원 및 공사도급자는 공정계획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공정계획에 미달하였을 경우 공사도급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평야부 공사는 경지정리사업과 병행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년도로 지정되기 전에 평야부 계획을 재검토하여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야 함.
- 경지정리사업과 병행시행할 때에는 농촌용수개발사업계획서와 경지정리사업 계획서를 별도로 분리하여 작성하되, 농촌용수개발사업은 수원공, 도수로, 용수간·지선 및 경지정리구역외의 용수로 등으로 함.
- 준공예정지구는 전년도 3월 이전에 사업계획을 재검토하여 준공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보완이 완료되어야 하며 준공지구 지정 후 설계변경이 없도록 미리 대비하고, 준공지구 지정후의 설계변경으로 준공이 불가능한 지구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관계자에 대하여 응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준공지구로 지정된 이후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증액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 사전에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함

《시행계획변경》

시·도(지자체)

-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변경함에 있어서 설계보완 내용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사유와(당초설계자와 보완설계자의 의견서를 첨부)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여 설계자에 응분의 책임을 물어 책임설계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지여건상 부득이한 사유로 시행계획변경을 하고자 할때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용지매수 및 보상》

사업시행자

-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의 보상 규정에 의하여 집행하되,
 - 다음년도 공사계획물량은 전년도에 매입토록 하여 협의불응을 이유로 계획 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 보상평가서는 대법원판례, 공시지가, 실거래가 등을 비교 검토하여 적정보상이 되도록 할것.
- 농작물 보상등은 공사기간과 용지매수등의 시기를 조정하여 원칙적으로 피하도록 함. 다만, 공사추진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급박한 공사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작물보상을 할 수 있음.
- 용지매수 및 보상비를 지급한 수물대상가구의 건물 및 토지에 대해서는 미이주 경작 등으로 인하여 공사추진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집단민원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사전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수물지내 오염원은 담수전에 필히 제거하여야 함.
 - 건 물 : 계약서에 정한 기간내에 철거조치를 하여야 함.
 - 농경지 : 경고문 등을 제시하여 임의경작을 방지할것.
- 과목 등의 보상은 물건조사를 철저히 하고, 평가서 검토시에는 경제수령 등도 검토하여 보상에 적정을 기할 것
- 사업목적에 활용되지 않은 불용토지를 사업기간 중 매각하여 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집행

《공사감리》

사업시행자

- 공사감리는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와 동법시행령 제82조규정에 의거 한국 농촌공사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에 의하여 신고한 공사감리 용역업체 중에서 선정하여 위탁시행함.
- 공사감리자는 전문분야별로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배치상황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배치상황을 검토한 후 시·도지사에게 결과보고 하여야 함.
- 공사감리원은 감리수행지침, 설계도서 등을 숙지한 후, 감리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공정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이 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공사감리자는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교체하여야 함.
- 공사감리원은 착공전에 설계도면과 현지를 대조하여 설계의 미비여부 및 공정순위를 파악하고 시공중에는 철저한 공사감리 뿐만 아니라 굴착, 집토, 골재의 야적 등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수혜민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여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공사감리를 위탁시행 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소속 기술직원을 현지 전담자로 지정하고 공사감리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공사를 촉진하고 시공상황 파악 등 현장확인과 공정계획의 수립 및 업무일지를 기록하게 함
- 공사감리비는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의 요율에 의거 산정. 단, 당초 구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의 요율을 적용하여 공사감리를 시행하고 있는 지구는 구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의 요율을 적용하나 공사비의 변경으로 요율을 변경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의 요율을 적용함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6-60호('06. 10. 30)로 제정하여 시행중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기준과 공사감리 위탁계약지침(용수51340-893('96. 10. 25)호)에 의하여야 함.
- 시·도별로 3개지구 이상 사업지구에 명예감독원을 선정하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감시는 물론, 대농민홍보, 민원 사전해소등 사업주체와 지역주민간의 교량역할로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여야 함.

《사업준공 및 검사》

시·도(지자체)

- 시·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준공 정산을 함
- 농어촌정비법 제97조제3항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는 준공검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거나 한국농촌공사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감리전문회사에 위탁할수 있음. 단, 준공검사를 위탁한 경우에 시·도지사는 준공검사자를 공사감리자가 아닌자 중에서 선정하여 수행하여야 함
- 준공인가결과 보고 : 사업준공인가 직후 (시·도지사 → 농식품부장관)

사업시행자

- 농어촌정비법 제97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완료한때에는 시공회사의 준공계(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어야 함), 예비검사결과 및 지적사항 시정내용,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공사감리자가 작성)등을 포함하여 사업준공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신청함

4. 자금배정단계

《예산의 지원》

시·도

- 시·도지사는 년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익년도사업예산을 신청함.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의 자금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사업비에 대하여 각각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운영함
- 사업시행자는 배정받은 사업비 자금의 집행을 특별한 사유없이 지연시켜서는 안됨.
- 사업시행자는 배정받은 사업자금을 조사설계비 및 용지매수보상비로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공사비는 자금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회계 관계규정에 의거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음.

《자금운용 관리》

사업시행자

- 교부된 국고금은 지구별로 경리함을 원칙으로 함
- 지방비 부담액은 반드시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함
- 자금은 조사설계비 및 용지매수보상비를 공사비 보다 우선하여 집행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비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 잡수입 등 수익은 당해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조치하여 재투자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시·도

-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세부이행계획을 수

립하고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사업시행인가 보고 : 사업시행 인가 (시·도지사 → 농식품부장관)
- 준공인가결과 보고 : 사업준공인가 직후 (시·도지사 → 농식품부장관)

사업시행자

- 공사감리자는 사업준공시 준공도서 및 시설물관리규정을 검토하여야 함
- 하자 및 미비사항은 즉시 보완 조치후 시설물을 관리자에게 인계인수 하여야 함.
- 관리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 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인계·인수 등과 관련한 사항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 기준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6-60호('06. 10. 30)에 의하여야함

《제재》

사업시행자

- 예산지원목적에 위배 되는 용도로 사용할시는 부당하게 사용한 예산을 전액 회수조치
- 지원예산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될 시는 반납조치

6. 성과측정단계

- 지원된 예산 투입에 대한 적정성 평가(신규지구에 한함) 측정
 - 지구선정, 기본조사, 시행중 과도한 변경, 전문가위원회 운영여부 등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식품부장관은 지자체의 사업추진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예산당국과 협의, 인센티브 또는 역인센티브 제도로서 해당 지자체에 대하여는 예산지원 규모를 증감토록 한다.
 - 사업평가 주요항목은 신규착수에 관한 것으로 하고 필요시 조정
 - 지자체별 적정사업량 범위내 착수(사업장기화 여부등)

- 전체지구별 우선순위에 의해 신규지구 선정
- 선정된 신규지구의 기본조사 등 사전 실시
- 신규지구 사업규모, 사업성, 시급성 등 타당성(제약요건 포함)
- 시행중 사업지구의 과도한 임의 변경(지구변경, 규모확대 등) 여부
- 준공 또는 주수원공 완공여부 추진 여부
- 전문가위원회 운영 여부

시·도(지자체)

- 지방자치단체는 사업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함

사업시행자

- 하자 및 미비사항은 즉시 보완 조치후 시설물을 관리자에게 인계인수 하여야 함.
- 관리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 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인계·인수 등과 관련한 사항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 기준(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1996-31호, '96.6.18)에 의하여야함

IV. 201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0년도 사업수요조사

- 해당없음

2. 201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도지사
- 신청자격 : 사업시행예정지역 관할 시장·군수
- 신청절차 : 사업시행자 → 시·도지사 → 농식품부, 기획재정부
- 기타사항

- 2010년도 소요되는 시·도의 총조사비(기본조사) 예산은 시·예산으로 별도 편성

[별지 제1호서식]

소규모용수개발사업 예산배정 결과

시·군

(단위 : 천원)

사업 시행자	위 치			지구명	주요 시설명	수혜 면적 (ha)	총 사업비	○○년 까지	○○년 계획			○○년 이후	비 고
	군	면	리						계	국고	지방비		
계													

주) 비고란에는 준공 또는 계속지구별로 구분 표시할 것

[별지 제2호서식]

○/4분기 소규모 용수개발사업비 집행상황

시·군

년 월 일 현재

(단위 : 천원)

사업 시행자	지구명	예산액	예산재 배정액	시·도 자 금 수령액	사업시행자 자금집행액					비고	
					공사비	자재대	용지매수 및 보상비	기타	계		

주) 비고란에는 준공 또는 계속지구별로 구분 표시할 것

[별지 제3호서식]

소규모용수개발사업 공정계획

확인자(사업시행자) : (인), 검토자(공사감독) : (인), 작성자(시공자) : (인)

도 명 : 지구명 : 수혜면적 : ha, 착공년월일 :

(단위 : 백만원)

구 분	물량 단위	00연도계획		분기별 공정계획								비 고
		물량	금액 (C)	1/4		2/4		3/4		4/4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합 계												부분급수면적 ○○○까지 : ha ○○○년도 : " ○○○이후 : "
순공사비												
개답비	ha											
자재대												
양회	대											
철근	M/T											
기타												
용지매수 및보상비												
수원공	ha											
평야부	ha											
측량설계비												
공사감독비												
관 리 비												
잡 지 출												
조합채 비												
영 선 비												
예 비 비												

소규모용수개발사업 추진상황

시·군

(년 월 일 현재)

(단위 : 천원)

위치		사업시행자	지구명	구분	시설명	수혜면적	총사업비			기정액	잔사업비	당해년도예산			실형액	진도(%)		공후계형 착이누실	%	비고 (부진사유)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획	실적				
시	읍면																				
계																					

- 주) 1. 구분은 준공, 계속, 신규로 구분
 2. 시설명 : 저수지, 양수장
 3. 진도(%) : 계획은 당월까지, 실적은 예산대비
 4. 부진지구는 부진사유 및 대책을 별지로 첨부

[별지 제5호서식]

소규모용수개발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신청

1. 사업명 :
2. 지구명 :
3. 위치 :
4. 개발면적 : ha(신규 ha, 보강 ha)
 - ○○지 ha(신규 ha, 보강 ha)
 - ○○지 ha(신규 ha, 보강 ha)

5. 주요공사개요

공 종	당 초	변 경	증 감

6. 공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7. 사업시행자 : 시공회사 : 공사감리자 :

8. 추진현황(물량)

항 목	총 계 획		○○까지	○○계획	○○이후
	당 초	변 경			
○수원공 -○○저수지 · 제당 · 이설도로 · · -○○양수장 · · ○평 야 부 · · ○용지매수보상 - 수원공 - 평야부					

※ 항목은 수원공별로 작성

9. 변경내용

구 분	변 경 내 용			사업비 (천원)	변경사유 및 검토의견
	사 업 량				
	당초	변경	증감		
○ 단가인상 ○ 낙찰차액 ○ 물량보완 - - ○ 용지매수보상 ○ 공감비 등				증액사업비	
계					

10. 설계자 의견

구 분	전 설계자 의견	금회 설계자 의견
	소속 성명	소속 성명

11. 지시조건 이행사항

○ 시도지사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사항

지시사항	검토 및 이행사항

12. 종합의견

년 월 일
 직 성명 (인)

※ 첨부서류

- 가. 사업비 수지예산서 및 증감대비표
- 나. 시행계획변경승인공한사본
- 다. 사업계획 개요
- 라. 시행계획변경 심사서(8번항목을 자세히 심사)
- 마. 용지매수보상비, 공사감독비, 관리비 잡지출 등에 대한 항목별 산출 및 변경내역
- 바. 시행계획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내역
- 사. 년도별 공사비 명세서
- 아. 지급자재조서
- 자. 공사수량 이동조서
- 차. 시행계획변경도서 (농업용수개발사업 수지예산서 작성요령에 의함)
- 카. 사업계획 위치평면도(1/25,000)-변경사항 표시
- 타. 기타 필요한 사진 및 기타 증빙서류

[별지 제6호서식]

공사감독배치상황

도	사업 시행자	지구명	공사감독소장			공사 감독원수	비 고
			소속	직급	성명		

주) 비고란에는 소장임명(배치) 년월일을 기재할 것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용수자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용수자원과	과장 이봉훈 서기관 이성홍	02-500-1831 02-500-1835
한국농촌공사	사업관리팀	팀장 박종대	031-420-3651

I. 사업개요

1. 목 적

- 농촌용수가 부족한 지역의 수원공(저수지, 양수장, 취입보 등)의 시설을 확장·보강하여 안정적인 영농생산기반 조성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5조, 제8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가뭄상습지에 대해 농촌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공급하여 안정 영농기반 구축
 - 2013년 까지 국고 7,300억원을 투입하여 가뭄상습지 31.8천ha에 대해 수원공을 확장 보강하여 농촌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06	'07	'08		
▪ 사업추진율 (%, 주지표)	83.0	71.1	75.5	78.6	2010.1	(준공면적누계/개발목표면적)*100
▪ 재정투입율 (%, 부지표)	80.3	64.0	72.5	80.5	2010.1	(재정집행실적누계/투자목표)*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합 계	476,671	66,617	58,847	61,039	81,108
보 조 용 자 지방비	476,671	66,617	58,847	61,039	81,108

II. 200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시장·군수, 한국농촌공사 사장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기반정비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촌공사 또는 토지소유자

3. 지원대상

-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형태 : 국고 100%
- 사업의무량 : 지구별 사업계획서상 사업량(저수지, 양수장, 취입보, 용수로 등 지표수보강개발사업에 필요한 공종)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별도의 지원한도액을 설정한 것은 없으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전액 국고지원.

III.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사업대상지구 선정》

<선정기준>

- 내한능력이 부족하여 시설확충이 필요한 지역의 수리시설을 대상으로 함

<우선순위>

- 농업진흥지역내 수리시설
-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계속하여 영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수리 시설도 개발가능
- 농업·농촌용수종합계획에 포함되고, 가뭄 상습지에 급수하는 수리시설
- 장기적으로 수질 오염의 우려가 없고, 충분한 수량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시설
- 사업비 투자에 따른 수혜면적 혜택 등 경제성 분석을 통해 경제성이 있는 지구

《사업시행 예정지 신청》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예정자(시장·군수, 한국농촌공사)는 우선 기존 수리시설의 내한능력을 검토한 후 예정지를 답사하고, 저수지나 양수장의 규모확장 등 보강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을 신청
- 사업시행예정자가 시·도지사에게 사업을 신청할 경우에는 내한능력조사표, 위치도 등을 첨부

《기본조사지구 선정 및 기본계획수립》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50ha이상의 지구에 대하여는 기본계획 수립

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신청한 예정지에 대하여 예정지조사를 실시하고 시설의 내한능력, 사업효율성, 시행여건 등을 종합검토하여 기본조사지구를 선정함

<예정지조사보고서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 예정지구현황 및 위치도 (경지정리현황 기재)
- 주요공사계획 및 소요사업비 - 사업시행효과
- 개발여건 (기존시설현황, 사업계약여건, 연관사업계획 등)
- 지역주민의견
- 기타 사업타당성 판단에 필요한 사항

* 시·도지사는 기본조사지구 선정 시 전문가위원회(10인이하로 민간전문가 포함)를 운영하여 사업성과 시급성, 형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업장기화를 방지하는 예산규모를 감안한 적정사업량 범위내 추진

- 시·도지사는 50ha미만의 지구에 대하여는 기본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결과 보고하고, 50ha이상지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승인 요청함
- 50ha미만지구의 기본조사는 한국농촌공사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은 용역업체(이하 조사설계전문기관이라함)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음
- 기본조사자는 우선적으로 타법, 타사업관련성, 주민호응도, 현지시행여건 등을 확인하여 사업시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기본조사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지사 및 농식품부와 협의하여야 함

-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 8조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수자원 확보·이용 체계의 개선 또는 재해 대책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포함

<공 통>

-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은 기존시설에 대한 보충용수 개발이므로 유역상황 및 당해지역의 기존시설의 이용체계나 용수계통을 고려하여 기본계획 수립
- 대단위농업종합개발, 농업용수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등의 농촌정비사업을 당해지역내에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계 또는 병행가능여부 검토

<저수지>

- 수혜지역 수자원의 수급과 수질의 변화 전망
- 기존저수지 유역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자원
- 내한능력을 10년빈도 이상으로 제고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미흡할 시 그 대책안(案)
- 저수지 제당의 안정성(단면부족, 누수 등), 여수토방수로의 홍수배제능력을 검토하고, 불충분할 시 그 대책안

<양수장>

- 하천의 갈수량, 수질현황 및 전망에 대한 대책
- 홍수시 침수방지대책과 취입부의 퇴적에 대한 대책

<용수로>

- 현행 용수이용체계와 수로조직표 및 수로조직체계 개편 구상안

2. 사업자 선정단계

- 농어촌정비법 제9조(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에서 정하는 시·도지사, 한국농촌공사 사장이 사업시행자임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세부설계 실시 및 시행계획수립》

시·도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세부설계를 실시토록하고, 사업시행자는 조사설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세부설계를 실시함
- 시·도지사는 성과품을 엄격히 검수하여 설계미비사항에 대하여는 사유를 규

명하고 사업시행전에 보완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

사업시행자

- 세부설계자는 조사설계과정에서 기본계획서의 주요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와의 사전 협의하되, 기본조사 미흡으로 변경될 경우 기본 조사자에 대하여는 조사비 감액 등 응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세부설계자는 사업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없도록 조사설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개산설계는 허용되지 않음
- 세부설계자는 저수지, 양수장의 설계도서를 제출할 때에 시설관리자가 시설물 운용지침을 요청할시는 제공하여야 함
- 수혜면적은 수리안전담면적, 보강개발면적 및 신규편입면적의 합계 면적과 개발 면적으로 표시

(예) 수혜면적 100ha(수리안전담 60ha, 보강개발 30ha, 신규 10ha)

개발면적 40ha(보강개발 30ha, 신규 10ha)

※ 면적구분

- 수리안전담 : 내한능력 10년빈도 미만의 기설 수원공의 수리담을 내한능력 10년빈도 담면적으로 환산한 면적
- 보 강 개 발 : 기설수원공의 수리담면적에서 수리안전담 면적을 뺀 면적
- 신 규 : 보강개발로 인근 수리불안전담 신규 편입면적

《세부설계 실시 및 시행계획수립》

시·도

- 시·도지사는 신청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시행인가를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인가서 사본(계속지구는 예산배정결과 포함)을 첨부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지역을 개발할 경우에는 사업시행후 한국농촌공사 관리구역으로 편입
- 시행인가 보고시는 사업계획 관련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 및 검토내역을 첨부하여야 하며, 공사비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시행계획의 변경내역서를 첨부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신규지구로 선정된 지구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서, 사업계획 고시내용 및 동의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
- 사업계획과 관련된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조기 이행

《공정계획》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가 공정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공사중 영농급수와 하절기 홍수대책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고,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수원공과 용수로 공사의 공정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되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사업시행자는 하절기 우기중에는 수해를 대비하여 수방 기·자재(마대, 말뚝, 중장비 등)를 확보하고,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현장 관리를 하여야 함

《시행계획의 변경》

시·도

- 시·도지사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농림수산식품부 훈련 제1251호 : 2006.10.13.)에 의한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지구의 총사업비 변경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고, 협의한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계획변경 내용을 승인한 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다음연도에 완공되는 사업의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불가피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연도 정부 예산안이 적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당해연도 3월말까지 농식품부장관에게 총사업비 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가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관계도서를 첨부하여 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 ① 준공예정지구인 경우에는 재원확보계획 등 향후 조치계획
 - ② 사업계획 위치평면도(1/25,000~1/50,000, 1/3,000~1/6,000)
 - ③ 변경되는 공종의 주요 설계도면(평면도, 표준도, 주요구조도)
 - 설계도면은 보완전 도면에 보완사항을 붉은색 선으로 삽입하여 비교가 쉽도록 하고, 복잡한 도면은 변경전·후 도면을 함께 첨부
 - ④ 보고 서식 (별지 제3-1~3-5호 서식)
 - ⑤ 기타 주요사항

《용지매수 및 보상》

사업시행자

-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감정평가에관한법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 보상규정에 의하며 실거래 등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적정 비용이 산정되도록 하여 계획변경 요인 최소화

- 공사기간과 용지매수 등의 시기를 조정하여 원칙적으로 농작물 보상 등은 피하도록 공정계획을 수립
- 토취장, 채석장 및 기타 사유로 매입한 토지 중 시설부지에 편입되지 않은 토지는 매입 목적이 종료되면, 공사 중 매각하여 사업비에 재 투자하여야 한다

《공사감리》

사업시행자

- 공사감리는 한국농촌공사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은자 중에서 선정하여 위탁시행
- 공사감리자는 전문분야별로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자 배치상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
-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업무를 장기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현장을 일시적으로 떠나거나 교체시에는 사업시행자와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공사감리 업무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이 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하고, 용역업체는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감리원을 교체하여야 함
- 공사감리원은 착공전에 설계도면과 현지를 대조하여 설계의 미비 여부 및 공정계획을 파악하고, 시공중에는 철저한 공사감리뿐만 아니라 굴착, 집토, 골재의 야적 등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혜민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소속 기술직원을 현지 전담자로 지정하고, 공사감리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공사를 촉진하고, 시공상황을 수시 확인(사진촬영 포함)하여 업무일지 등의 기록을 남겨놓아야 함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감리 위탁계약서에 의함

《사업준공》

시·도

- 시·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조치
- 준공지구에 예산이 부족한 경우는 기존 계속지구 예산을 전·이용하여 충당

하고, 예산이 남는 경우에는 타지구 사업비로 전·이용하여 예산 불용이 없도록 함.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완료한 즉시 시공회사의 준공계(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어야 함),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공사감리자가 작성), 예비검사 결과, 매수토지 등의 현황을 포함하여 사업준공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기 타》

-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농어촌정비법, 건설기술관리법, 대중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 시행지침을 준용

4. 자금배정단계

《예산의 지원》

시·도

- 시·도지사는 년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익년도사업예산을 신청함.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의 자금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사업비에 대하여 각각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운영함
- 사업시행자는 배정받은 사업비 자금의 집행을 특별한 사유없이 지연시켜서는 안됨.
- 사업시행자는 배정받은 사업자금을 조사설계비 및 용지매수보상비로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공사비는 자금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회계 관계규정에 의거 개산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자금운용 및 관리》

사업시행자

- 교부된 국고금은 지구별로 경리함을 원칙으로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비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 잡수입 등 수익은 당해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조치하여 재투자하도록 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사업시행자)

- 시설관리자는 농어촌정비법 및 농업기반시설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비진흥지역이 포함된 지구의 경우에는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가능한 한 사업시행후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
-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지역을 개발한 경우에는 한국농촌공사 관리구역으로 편입

자금관리주체(사업시행자)

- 사업목적에 맞게 자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자금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분기별 자금집행상황을 매분기 종료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지사 및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시·도

- 시행하고 있는 사업추진상황 점검, 자금의 적정집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당해연도 사업시행계획승인(변경승인) 결과를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제3-1호 서식등 시행계획에 포함될 사항) : 당해연도 사업시행계획승인(변경승인) 후
-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사업시행인가결과보고(시·도 총괄표) : 즉시 보고 (별지 제1호 서식)
 - 시행계획변경승인결과보고 : 즉시 보고 (별지 제3호 서식)
 - 준공결과보고 : 즉시 보고 (별지 제4호 서식)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추진상황 점검, 자금의 적정집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실태 점검(상·하반기별)

《제재》

사업시행자

- 예산지원목적에 위배 되는 용도로 사용할시는 부당하게 사용한 예산을 전액 회수조치
- 지원예산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될 시는 반납조치

6. 성과측정단계

- 지원된 예산 투입에 대한 적정성 평가(신규지구에 한함) 측정
 - 지구선정, 기본조사, 시행중 과도한 변경, 전문가위원회 운영여부 등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식품부장관은 지자체의 사업추진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예산당국과 협의, 인센티브 또는 역인센티브 제도로서 해당 지자체에 대하여는 예산지원 규모를 증감토록 한다.
 - 사업평가 주요항목은 신규착수에 관한 것으로 하고 필요시 조정
 - 지자체별 적정사업량 범위내 착수(사업장기화 여부등)
 - 전체지구별 우선순위에 의해 신규지구 선정
 - 선정된 신규지구의 기본조사 등 사전 실시
 - 신규지구 사업규모, 사업성, 시급성 등 타당성(제약요건 포함)
 - 시행중 사업지구의 과도한 임의 변경(지구변경, 규모확대 등) 여부
 - 준공 또는 주수원공 완공여부 추진 여부
 - 전문가위원회 운영 여부

IV. 201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0년도 사업수요조사

- 해당없음

2. 201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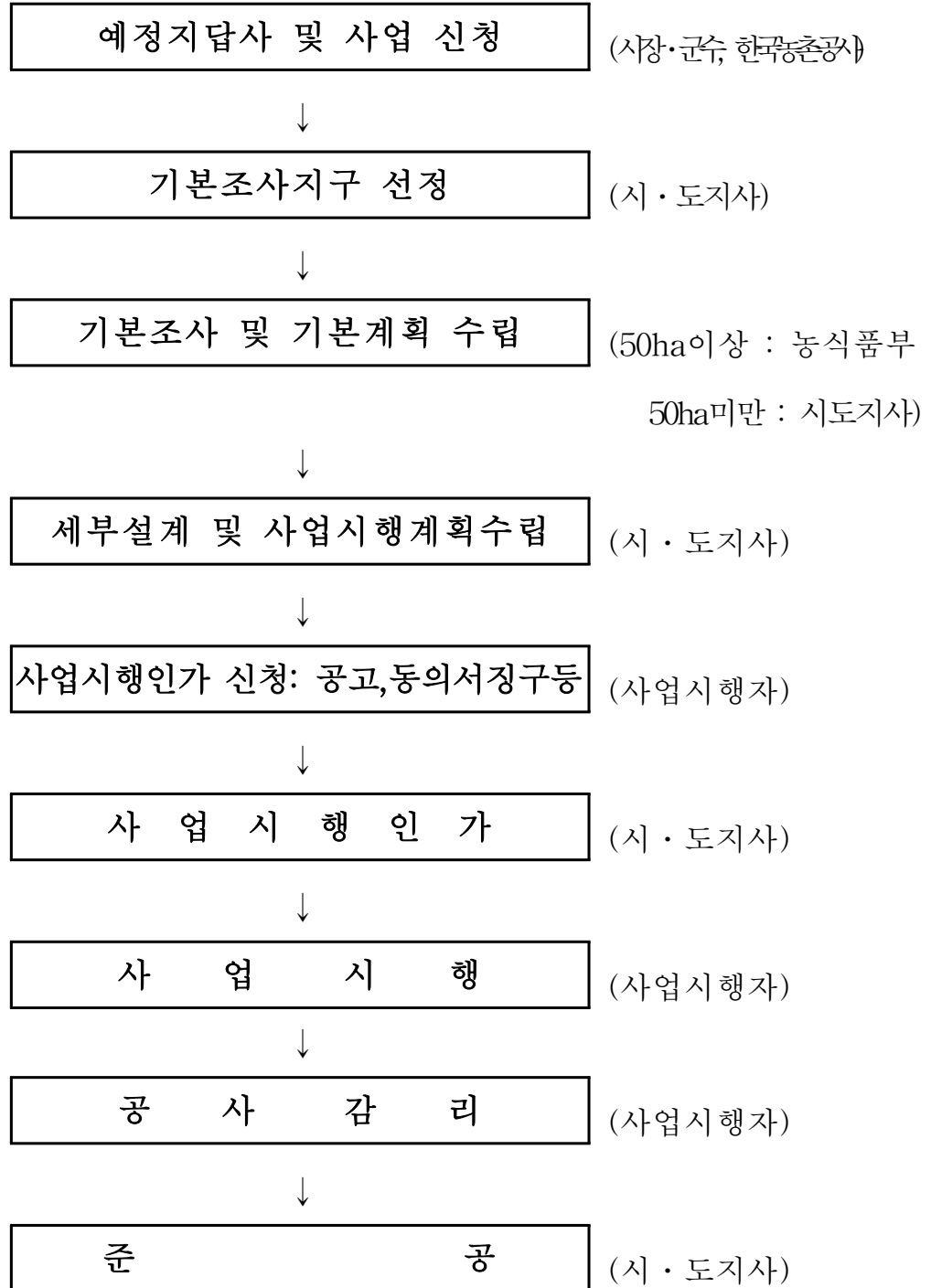
- 신청서 제출기관 : 시·도지사
- 신청자격 : 사업시행예정지역 관할 시장·군수, 한국농촌공사 사장
- 신청절차 : 사업시행자 → 시·도지사 → 농식품부, 기획재정부
- 기타사항

- 2010년도 소요되는 시·도의 총조사비(기본조사) 예산은 시·도예산으로 별도 편성

[별표 1]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추진체계도

(근거 : 농어촌정비법)



[별지 제1호 서식]

총 26-36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시행인가(예산배정) 결과보고(총괄)

(시·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시·군, 농가공)	지구명	위 치		수원공		주요사업내용		사업착수년도	사업비 현황				주요공사	분기별 사업비				
		시·군	읍·면	시설명	개발면적	시설명	사업량		총사업비	○○까지	○○계획	○○이후		1/4	2/4	3/4	4/4	
합 계																		
- 준공																		
- 계속																		
- 신규																		

※ 지구내역은 사업시행자별 준공, 계속, 신규지구 순으로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총 26-36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추진상황 보고(○○년 /4분기)

(시·군)

(단위 : 백만원)

구분 (시군, 농조)	지구명	위 치		시설명	개발면적 (ha)	사업착수년도	총사업비	○○까지	○○예산	○○년 실액	진도(%)		공래누계 누계실형	누계 진도 (%)	○○이후	기 타 (부진사유)
		시·군	읍·면								계	실				
합 계																
- 준공																
- 계속																
- 신규																
농조계																

※ 1) 매분기말 현재를 익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

2) 예산추가지원 등 변경조치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조정하여 보고

총 26-36

○○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신청 (승인결과보고)

1. 사업계획개요

- 위치 : 도 시·군 읍·면 리·동외(※사업구역위치도 S=1:25,000 첨부)
- 수혜면적 : ha(기설 , 보강 , 신규)
- 사업시행자 :
- 주요공사내역
 - 저수지 : L= → m, H= → m(제당승상 m)
 - 여방수로 : L= → m, H= → m
 - 양수장 : HP × mm × 대 → HP × mm × 대
 - 용수로 : L= m(B×H= ×)
 - 이설도로 : L= m(B= m, con'c포장, 아스팔트포장, 사리부설 등 구분)
 - 기타
- 공사기간 : 20 . . ~ (당해년도 준공계획지구 표기)

2. 주요 보완내용

- 단가인상 : 백만원(%)
- 단가개정 : 백만원(구체적인 사유 및 금액변동내역 기재)
- 낙찰차액 : 백만원
- 물량변경 : 백만원

(작성예)

- 제당 덧쌓기(L= m, H= m →) : 백만원
- 여수로·방수로 (L= m, H= m →) : 백만원
- 양·배수장 (HP x mm x 대 →) : 백만원
- 용수로 (B x L x H m →) : 백만원
-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까지	계획	이후	증감내역				
	기승인	변경				계	단가인상	단가개정	낙찰차액	물량변경
합계										
공사비										
- 순공사비										
·저수지										
·양수장										
·평야부										
·부대공사										
- 자재대										
용지매수보상										
기타										

[별지 제3-3호 서식]

사업비 수지예산서

수 입

(단위 : 천원)

과 목	기승인액	금회승인액	증(△)감	연 도 별 내 역			비 고
				○○까지	○○계획	○○이후	
합 계							
국 고							
지 방 비							
기 타							

지 출

(단위 : 천원)

과 목	기 승인액	금회승인액	증(△)감	연 도 별 내 역			비 고
				○○까지	○○계획	○○이후	
합 계							
○ 공 사 비							
- 순공사비							
· 저 수 지							
· 양 수 장							
· 평 야 부							
· 부대공사							
- 자 재 대							
○ 용자개추보상비							
○ 기 타							
-측량설계비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							
-잡 지 출							
-예 비 비							

[별지 제3-4호 서식]

용지매수 및 보상비 내역

(면적 : m², 금액 : 천원)

구분	공종	지목	기승인액		금회승인액		증 감		○○까지		○○계획		○○이후		비고 (증감 사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 증감사유를 반드시 명기할 것

[별지 제3-5호 서식]

계획보완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내역

(단위 : 천원)

공종별	기승인액	금회승인액	연도별 내역			보완후 증감액				비고
			○○까지	○○계획	○○이후	계	단가인상	단가개정	수량이동	
계										

※ 순공사비, 자재대에 대하여 작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시설안전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시설안전과	과 장 김일환 서기관 전경구 사무관 박재수	02-500-1841 02-500-1847 02-500-1849
시군/한국농촌공사	건설과/사업계획처	직제에 따름	

I. 사업개요

1. 목 적

- 집단화된 논을 대상으로 경지정리, 경작로확포장 및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하는 밭기반정비 등 생산기반을 정비하여 생산성 향상과 품질제고 도모
 - 대구획경지정리 : 집단화된 논을 대상으로 필지규모화, 농로, 용·배수로 등 생산기반 정비
 - 기계화경작로확포장 : 경지정리지구 내 주요농로와 농산물 생산지, 가공·유통 시설간 농로 확포장
 - 밭기반정비 : 집단화 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개설 등 생산기반 정비
 - 농업생산기반종합정비 : 농업용수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경작로확포장 등 생산기반정비사업을 수계 또는 권역단위로 종합정비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5조부터 제9조, 제40조부터 제42조, 제94조부터 제95조 및 제99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성과목표 : 연도별 재정투입계획에 의한 총 계획 참조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6	'07	'08		
▪ 주민만족도(%)	91	91	91	91	12월	- 수혜민 만족도 조사
▪ 경지정리투자효과	66	66	66	66	12월	- 사업량(ha)×ha당 편익(1.4백만원)
▪ 경작로포장투자효과	115	117	104	104	12월	- 사업량(km) × km 편익(9백만원)
▪ 발영농개선율(%)	74.0	62.3	66.3	70.5	2010.1	- (사업실적/총대상면적)*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합 계	6,234,992	382,715	336,615	310,307	3,862,669
보 조	4,898,749	289,738	270,291	248,915	3,217,963
지 방 비	1,336,243	92,977	66,324	61,392	644,706
○ 대구환경지정리	2,612,096	128,699	99,547	91,895	1,756,363
- 보 조	2,004,717	85,661	79,913	73,516	1,519,393
- 지방비	607,379	43,038	19,634	18,379	236,970
○ 기계화경작로확포장	1,793,136	140,567	131,886	114,310	1,527,203
- 보 조	1,436,620	112,546	105,509	91,378	1,222,849
- 지방비	356,516	28,021	26,377	22,932	304,354
○ 밭기반정비	1,690,282	109,419	101,582	99,012	579,103
- 보 조	1,331,530	87,904	81,629	79,514	475,721
- 지방비	358,752	21,515	19,953	19,498	103,382
○ 농업생산기반종합정비	139,478	4,030	3,600	5,090	0
- 보 조	125,882	3,627	3,240	4,507	0
- 지방비	13,596	403	360	583	0

- ▶ 밭기반정비사업 '09년 예산내역 : 79,514백만원(사업비 77,993, 조사설계비 1,521)
대구환경지정리, 기계화경작로확포장, 농업생산기반종합정비사업은 전액 사업비

II. 200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비(균특회계) : 시장·군수·구청장, 한국농촌공사사장
 - 시·군·구 관리구역 : 시장·군수·구청장
 - 한국농촌공사 관리구역 : 한국농촌공사 사장
 - * 시·군·구 관리구역과 한국농촌공사 관리구역이 혼합된 구역은 상호 협의결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시·도지사가 결정
- 조사설계비(농특회계) : 한국농촌공사사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비(균특회계)는 사업시행중인 지구중 2009년 예산이 편성된 지구와 기본계획 수립 또는 세부설계가 완료된 지구 중 신규 착수지구로 선정된 지구를 대상으로 당해지구 농지를 관리하는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농촌공사사장에게 지원
- 조사설계비(농특회계)는 시·도의 신청을 받아 농림수산식품부가 기본조사대상지로 선정한 지구를 대상으로 한국농촌공사사장에게 지원

3. 지원대상

- 농업진흥지역 위주로 지원. 단, 비진흥지역은 사업시행후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하는 조건으로 사업시행, 준공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관리
 - 경지정리는 '08년 조정된 대상지를 우선 지원대상으로 하되, 수혜면적 50ha 미만 지역에 대해서도 기반정비가 시급한 지역은 기본조사후 사업시행
 - * 전국적인 실태조사('08.11~12월) 결과를 토대로 목표면적 조정계획
 - 받기반정비는 '01~'02년 기간중 조사한 받기반정비 대상지에 포함된 지구 중 받면적인 30ha이상인 지구를 우선 선정
 - 마을도로 위주 개발, 생활용수개발 목적으로 관정개발을 희망하는 지역, 주택단지, 공단 등 타용도로 전용이 예상되는 지구는 반드시 제외
 - 소양강댐 및 임하댐 탁수저감대책 관련 사업지구(받기반정비 및 받주변정리)
 -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은 농업진흥지역과 대구획경지정리 시행지구의 주요 농로 및 이에 연계되는 농산물의 가공·유통시설간의 농로 등
 - 경작로 폭이 좁아 농기계 통행에 지장이 있는 농로는 확포장 가능
 - 농업생산기반종합정비는 시행중인 덕실지구('09년 준공) 완료후 사업종료
- 신활력지역지원, 농촌마을종합개발,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원예특작생산유통 지원 및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등과 연계추진이 가능한 지구 우선 선정
 -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은 겨울철 유희농지활용지구와 연계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업비(균특회계)는 대구획경지정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받기반정비 및 농업생산기반종합정비 등의 공사비(자재대 포함) 및 용지매수보상비, 시설부대 경비(기본조사, 세부설계비,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 등)으로 집행
 - * 기계화경작로확포장은 예정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계획 수립
 - * 50ha미만의 대구획경지정리, 받기반정비 지구는 시·도지사가 기본조사 시행여부 판단 및 기본계획도 시·도지사가 수립
- 받기반정비 조사설계비(농특회계)는 농어촌정비법 제7조의 기본조사에 소요되는 인건비, 경비, 관리비 등으로 집행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구 분	사업비 및 조사설계비		비 고
세부사업	대구획경지정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받기반정비	농업생산기반종합정비	
지원조건	국고 80%, 지방비 20%	국고 90%, 지방비 10%	
예산항목	지자체자본보조		
재 원	국고(균특회계)		

※ 받기반정비 기본조사비(농특회계, 민간자본보조, 국고 10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사업비 및 조사설계비>

- 지원한도액 기준 : 대구획경지정리, 경작로확포장, 받기반정비는 기준단가 지원 (지원단가는 '09년도 착수지구부터 적용), 예산단가 초과소요액은 지방비 부담
 - 대구획경지정리 : 재개발형 기준단가(32,090천원/ha)를 기준으로 집단화형은 90%, 시설개량형은 80%수준 지원
 - 재개발형 : 경지정리 미시행지역, 용·배수체계 정비, 농도 확장 및 신규개설 등
 - 집단화형 : 필지규모 확대, 용·배수체계 유지 및 부분개선, 농도 확장 등
 - 시설개량형 : 필지규모 부분 확대, 용·배수체계 유지·현대화, 농도 확장 등
 - 기계화경작로확포장 : 기준단가 119,690천원/km
 - 받기반정비 : [일반지역] 기준단가(28,970천원/ha)를 기준으로 단순정비형은 90%이내, 복합정비형은 100%, 종합정비형은 110%이내 지원 [탁수대책지역] : 39,000천원/ha(기준단가)
 - 단순정비형 : 용수개발, 농로개설, 받경지정리 중 단일공종 사업
 - 복합정비형 : 용수개발+농로개설, 받경지정리+농로개설, 용수개발+받경지정리
 - 종합정비형 : 용수개발+농로개설+받경지정리 사업
 - 다만, 농업생산기반종합정비는 국고보조 90%, 지방비 10%
- 지원범위
 - 지구별 총사업비는 지원하는 단가(농업생산기반종합정비사업 제외)로 하되, 지방비를 추가 증액 부담하는 경우는 총사업비를 해당액만큼 증액할 수 있음
 - 사업시행중 노임·물가변동에 따라 조정되는 사업비와 면적 증가없이 사업시행중 증가되는 사업비는 지방비로 부담하고, 공사후 예산이 남는 지구는 부족한 지구로 지구간 예산을 조정하여 불용이 없도록 하여야 함
 - 다만, 지구별 국고예산은 80%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 농업용수개발, 배수개선, 하천개수 등 타사업 병행지구의 관련사업비는 당해 사업비에서 확보·지원하여야 함
 - 시·도지사가 위탁 또는 계약으로 조사,설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준요율 내에서 지방비 또는 자체예산으로 시행하고, 착수시 사업비 등에서 충당
 -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의 세부설계, 공사감리, 사업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농어촌정비법 기준요율의 70%이내에서 사용

<받기반정비 기본조사비>

- 농림수산식품부가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하여 기본조사를 실시한 50ha이상 받기반정비 지구는 확보된 예산(국고)과 농어촌정비법 요율범위 내에서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예정자(시·군·구, 한국농촌공사)

[기본조사 대상지] 기본조사비 집행 관련

- 농림수산식품부가 시달하는 사업예정지 조사요령 등을 참조하여 사업예정지 조사결과를 시·도에 제출(별도 시달하는 조사요령 참조)
 - 기계화경작로확포장, 50ha미만 지구는 시·도지사가 기본조사 시행여부 판단
- 농지상태와 영농불편사항, 주민호응도, 지방비 부담능력 등이 포함된 예정지답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사업 신청
 - 단위사업별 사업대상지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
 -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를 포함하는 경우 농업진흥지역으로의 편입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의향을 조사하여 기술

[사업시행 대상지] 사업비 집행관련

- 기본계획수립 또는 세부설계가 완료된 지구를 대상으로 한 신규착수와 시행 중인 지구의 시행에 필요한 익년도의 예산을 신청

시·도

[기본조사 대상지]

- 사업 타당성 및 시행여건 등을 감안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예정지조사 결과 및 기본조사(기본계획수립) 대상지를 제출('09.1월)
 - 사업시행예정자가 제출한 자료, 시·도의 우선순위 결정 및 평가·검토 자료 등 첨부

[사업시행 대상지]

- 시·군·구, 한국농촌공사의 예산신청 지구에 대한 타당성 및 우선순위, 예산 규모 등을 감안하여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 및 일정 등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 익년도 예산을 요구
- 시행중 지구의 사업효과가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시행중 지구의 조기 완공에 소요되는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고, 신규지구는 시행중인 지구의 추진공정 및 잔여 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반영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기본조사 대상지]

- 시·도가 제출한 사업예정지 조사내용을 감안하여 기본조사 대상지를 선정하고, 한국농촌공사가 기본조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조사 대상지를 시·도 및 한국농촌공사에 통보('09.2월)
- 한국농촌공사의 기본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및 한국농촌공사에 통보(수시)
- 다만, 50ha미만 지구는 시·도지사가 기본조사 시행여부 판단 및 기본조사자를 선정하고, 기본계획도 시·도지사가 수립(수시)

시·도

[사업시행 대상지]

- 농어촌정비법 제8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가 수립한 기본계획과 자체 수립한 기본계획 등을 토대로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자를 선정

기본조사자(한국농촌공사)

- 타법·타사업 관련, 지자체·주민 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 사업시행에 제약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기본조사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 및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50ha미만 지구는 시·도 협의로 종결)
 - 당해지역 주민, 하천관리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촌공사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경지정리사업의 경우 인근에 배수개선사업 계획 등이 있을 경우 병행 시행여부를 검토
-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기본조사를 위탁받은 발기반정비의 경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조 규정사항과 다음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안을 작성,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작부체계 및 농업인의 재배작목 전환 가능성
 - 경사도, 재배작목, 경지이용형태 등 지역입지여건에 맞는 토양유실방지 시설물 설치계획
 - 수혜민들의 유지관리조직 구성, 지하수 이용에 따른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 등 비용부담 방안, 기타 수혜민들이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수혜민 대표 등과 협의하여 제시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세부설계 실시와 시행계획 수립》

농림수산식품부

-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시급성 등에 따라 세부설계지구를 선정하여 시·도 및 한국농촌공사에 통보
 - 기계화경작로확포장, 대구획경지정리, 50ha미만의 밭기반정비는 시·도에서 세부설계지구를 선정

시·도

-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중에서 세부설계를 실시하며, 한국농촌공사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 중에서 세부설계자를 선정. 세부설계는 예산이 확보된 지구에 대해 실시
-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된 지구중에서 타당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신규사업 시행지구를 선정하고, 익년도 예산요구서 제출 전까지 예산신청 사업량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

시·군·구, 한국농촌공사

- 세부설계자는 타법·타사업 관련,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 사업시행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세부설계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 및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50ha미만 지구는 시·도와 협의)
 - 세부설계를 하더라도 무조건 사업을 착수하는 것은 아님을 현장에서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차기 영농준비에 차질 없도록 함
- 세부설계자는 수혜면적의 변경 또는 기본계획의 주요한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도 및 농림수산식품부와 사전 협의(50ha미만 지구는 시·도와 협의)
- 세부설계서에는 사업완공후 지하수 이용에 따른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 등 비용부담 방안과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설운영지침 등을 제시

《사업시행인가와 공사발주》

시·도

-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인가가 신청되면 사업계획 공고내용과 동의서 등을 확인하고, 사업시행을 인가
- 사업인가시, 인가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하되,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시 사항 이행내역과 검토내역을 첨부하고, 공사비가 기본계획보다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내역을 첨부

시·군·구, 한국농촌공사

- 시·도지사가 신규사업 시행지구를 선정 통보하면 사업계획 공고내용과 동의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
- 시·도지사의 사업시행인가를 토대로 용지매수, 공사발주 및 계약 등을 이행

《공사 추진》

시·도

- 총사업비는 농림수산식품부가 별도 시달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조정·관리하되, 설계 또는 착수이후 물가변동, 시설물 안전성 제고 및 법령 개정사항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설계변경에 의한 물량 증가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기계화경작로확포장, 대구획경지정리, 발기반정비사업 등 기준단가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비로 추가 부담함
- 물가변동에 의한 총사업비 변경은 그 사유가 발생한 후 3개월 이내에 시·도지사가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시행계획에서 정한 수혜면적의 10%를 초과하는 수혜면적의 증감, 국고지원을 수반하는 10%를 초과하는 공사비의 증감, 농업기반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물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구조물의 변경 등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행계획을 변경승인할 때에는 설계보완내용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사유(당초설계자와 보완설계자의 의견서를 첨부)와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하여 책임설계·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준공지구 예산이 부족한 경우는 동일 시·도에서 사업시행중인 기존 계속지구에 배정된 예산을 조정하여 충당하고, 예산이 남는 경우에는 타지구 사업비로 예산배정을 조정하여 예산불용이 없도록 함

시·군·구, 한국농촌공사

- 공정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용수 급·배수 시설 등 주요공종의 공사시기를 신중히 검토하여 조기에 사업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되, 공사로 인해 영농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하절기 호우기간 중에는 수해를 대비하여 수방자재(마대, 말뚝, 중장비 등)를 확보하는 등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함
- 공사감리는 한국농촌공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에 신고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 중에서 선정하여 위탁 시행
- 공사감리자는 전문분야별로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배치상황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 사업시행자는 배치상황을 검토한 후 시·도지사에게 보고
-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업무를 장기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현장을 일시적으로 떠나거나 교체시에는 사업시행자와 사전 협의
-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이 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
- 공사감리자는 착공전에 설계도면과 현지를 대조하여 설계미비 여부 및 공정순위를 파악하고 시공중에는 철저한 공사감리 뿐만 아니라 굴착, 집토, 골재의 야적 등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수혜민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여 민원을 사전에 방지
- 사업시행자는 소속 기술직원을 현지 전담자로 지정하고 공사감리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공사를 촉진하고 시공상황을 파악하며 수시 현장확인(사진촬영 포함), 공정계획의 수립 및 업무일지를 기록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감리위탁계약서에 의하여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공회사의 준공계(공사감리자 확인),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공사감리자가 작성), 예비검사 결과, 매수한 토지 등의 현황을 포함하여 사업준공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신청
- 경지정리사업의 경우, 농로, 용·배수로 등 공공시설부지는 구획정비로 감보처리하고, 용지매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사업시행자 및 공사감리자는 여건이 허용하는 한 4월말~5월초에 현장에서 수혜자회의를 개최하고, 수혜민들의 공사만족도 및 불만사항을 조사하여 사안별로 모내기전 또는 추수후 보완공사 등 민원해소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환지 추진》

시·군·구, 한국농촌공사

○ 환지업무 요령

- 환지업무는 「농어촌정비법」 환지관련 규정과 농림수산식품부가 시달한 ‘환지업무 추진요령’에 따라 추진
- 사업시행자는 수혜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반드시 문서로 작성, 수혜자총회시통보하는 등의 조치로 환지로 인한 민원발생 사전 방지
- 수혜자총회 및 대의원회 결정사항
 - 종전 토지 및 환지후 토지의 평정가격, 등급, 환지구역 분할결정
 - 창설환지에 관한 사항의 의결
 - 일시 이용지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협의
 - 미납청산금에 대한 가산금부과(5/100) 여부
 - 1000㎡이하의 토지소유자에게 환지지정 여부
 - 기타 사업지구에서 발생한 중요사항의 의결(환지청산금교부의 우선순위, 환지청산금 처리시 소요경비 처리방법) 등
- 사업지구내 공공이용시설부지를 확보, 농업경영 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는 창설환지제도 활용
 - 사업시행인가 고시후 필요한 경우 창설환지에 관한 사항을 14일이상 공고하여 신청접수
 - 창설환지지정은 반드시 수혜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은 시설부지에 한하여 시행
 - 사업시행자는 농지관리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집단환지(교환·분합) 청산금지원자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농지가 집단화될 수 있도록 추진
- 사업시행자는 환지업무를 수혜자, 환지업무대행자, 지적관서, 지적측량수행자, 등기소 등 환지업무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

○ 환지사업비 지원 및 집행

- 기준단가 : ha당 351천원
 - ※ 기준단가를 참고로 지구(지역)별 특성을 감안, 현실에 맞게 조정 집행
- 국고보조율 : 국고보조 80%, 지방비 20%
- 집행 방법 : 일시이용지 및 분환지는 당해연도에 집행하고, 등기비는 다음 해에 이월집행. 다만, 이월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자체 별도 예산을 편성·집행
 - ※ 환지비는 시·도에서 사업비(국고) 예산편성시 포함하여 신청(균특회계)

○ 환지계획인가

- 농어촌정비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추진. 다만, 사업시행 관할구역이 일부 타 시·도의 구역이 포함되는 지구는 사전에 해당 시·도와 사업계획, 사업비 부담문제 등 사업시행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협의후 추진
- 사업시행자는 환지계획의 인가를 받고자 할때 농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공고내용을 각각 통지하고,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진

《사업시행후 행정처리》

가. 농업진흥지역 지정 관련

- 경지정리 시행시 농업진흥지역밖 농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다음 절차에 따라 지정함 [참조: 정비16330-229('99.5.25)]

시·군·구, 한국농촌공사

- 시·군·구의 사업부서는 사업시행계획 수립시 농지관리부서와 농업진흥지역밖 농지 포함여부 협의
- 사업시행 전에 징구하는 동의서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사업시행 후 농업진흥지역 편입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 시·군·구의 사업부서는 사업 준공시에 농지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승인 요청에 필요한 토지조서, 지형도, 지적도 등을 첨부하여 농지관리 부서로 통보
- 시·군·구의 농지관리부서는 농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구비하여 시·도 농지관리부서에 제출
- 경지정리된 농업진흥지역이 타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최대한 농지 보전에 노력하여야 함

시·도

- 시·도지사는 농지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변경 고시 후 농림수산식품부장관(농지관리부서)에게 보고하고 관할 시·군·구에 통지

나. 지하수공급시설 관련

시·군, 한국농촌공사

- 사업 구역내 관정은 최대한 존치, 활용토록 하여 사업 시행에 따른 폐공은 최소화하고, 폐공이 불가피할 경우는 「지하수법」에 따라 폐공처리하여 지하수오염 방지 및 사후관리 철저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월별 배정계획에 따라 시·도에 자금 송금

시·도

- 사업시행지구의 사업기간을 가능한 확정 관리토록 하고, 사업지구별로 사업기간과 년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조기 완공위주로 사업비를 지원함
- 준공지구를 우선하여 지원함
- 세부사업별로 편성·배정된 예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함. 다만, 불가피하게 세부사업간에 사업비 변경(내역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세부설계와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시·도지사 책임하에 지방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5. 이행점검단계

시·도

- 사업지구의 국고보조금의 운용관리상황을 수시로 확인 점검
-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비를 검정 및 결산하고 결산 결과는 익년도 3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준공 정산을 하며, 시설물 인수관리자에게 시설을 인수함
- 준공지구 예산이 부족한 경우는 동일 시·도에서 사업시행중인 기존 계속지구에 배정된 예산을 조정하여 충당하고, 예산이 남는 경우에는 타지구 사업비로 예산배정을 조정하여 예산불용이 없도록 함

시·군, 한국농촌공사

- 국고보조 사업비를 받았을 때는 조사설계비와 용지매수보상비를 우선하여 지급
- 사업비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 잡수입 등 수익은 당해사업 특별회계의 세입 조치하여 재투자

6. 성과측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의 계획에 따라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점검
- 계획대비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집행지연, 부당집행 등의 사례 조사
- 지자체의 예산 조기집행상황을 파악하여 농림사업 지자체 평가시 반영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가 평가한 결과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자체 시·도별로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이를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
- 평가시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평가
 - 사업대상지구 선정시 선정기준 부합 여부
 - 사업대상지구 선정을 위한 지구별 우선순위 부여에 대한 적합 여부
 - 준공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여부
 -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자금집행실적 포함)
 - 기타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

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지구 선정부터 사업시행과정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반영

IV. 201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0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2010년도 추진할 사업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예산 신청
-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시·도 예산 요구안을 기초로 2010년도 예산 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2. 201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9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사업명) 시행인가 결과보고

< 총괄 > : 대구획경지정리, 기계화경작로확포장, 받기반정비 (단위 : 천원)

지구명	위치		면적(ha)			사업개발 시행자 유형	총사업비			'09년			'10년이후			ha/km 당
	시군	읍면	계	진흥	진흥밖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 지구별 > ; 대구획경지정리

일반 현황	코드번호																
	지구명							사업시행자									
	위치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면적	구역:	ha		시.군구역	ha		농촌공사구역	ha		진흥지역	ha		진흥지역밖	ha		
		수혜:	ha		ha		ha		ha		ha		ha				
	사업비	백만원 (국고 , 지방비)										ha당	천원				
주민동의율	%	수혜자		명			진흥지역 편입가능여부										
주요 사업 내용	정지	필지		표준구획		m× m		감보율		%							
	도로	m		구조물		m (구조물율 %)											
	용수로	m		구조물		m (구조물율 %)											
	배수로	m		구조물		m (구조물율 %)											
	객복토	ha, cm		습지				기타									
제약요인 해소계획	*용수공급계획(용수확보율 70%이하지구), ha당 40백만원 초과지구 등																
병행사업	*농업용수, 배수개선사업 등 (사업명,계획,진도,완공예정일 등)							병행사업비 확보여부		(백만원)							
조사.설계기관	기본조사기관							세부설계기관									
사업비 수지 예산서	구분	과목			총사업비			1차년도 (_년 가을)		2차년도 (_년 봄)		비고					
	수입	계			천원												
		국고															
		지방비															
	지출	계															
		순공사비															
		자재대															
		보상비															
		기본조사비															
		세부설계비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																	
확정측량비																	

- ※ 1. 사업비 외에 별도 국고로 지원된 기본조사비, 세부설계비는 ()내서로 표기
- 2. 축척 1/25,000 도면 첨부(병행지구는 병행사업 계획을 표기)

[별지 제2호 서식]

(사업명) 시행계획변경 승인신청·결과보고

(단위 : 백만원)

지구명	위치		사업시행자	면적 (ha)			사업비						주요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증가사업비 확보방안	
	시군	읍면		기승인 (a)	금회승인 (b)	증감 (c=b-a)	재원	총사업비			연차별계획				
								기승인 (A)	금회 (B)	증감 (B-A)	계	_년			_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 농업생산기반종합정비사업은 배수개선사업 시행지침 참조

[별지 제3호 서식]

(사업명) 추진상황 보고

(단위 : 백만원)

지구명	위치		면적 (ha)	총사업비	'08까지	'09계획 및 실적				'10이후	사업시행자	
	시군	읍면				총예산액 (A)	집행계획 (B)	집행실적 (C)	%			
									C/B			C/A

* 부진 사유 : 집행계획 대비 80%미만인 지구명 및 부진사유 기재

[별지 제4호 서식]

(사업명) 준공결과 보고

1. 사업지구현황

- 위치 : ○ 수혜면적 : ha ○ 총사업비 : 천원 ○ 사업시행자 :
- 주요시설 :
- 사업시행인가일 : ○ 착공 연월일 : ○ 준공년월일 :
- 설계기관 : ○ 공사감리 : ○ 시공업체 :

2. 연도별 검정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인가액	준공검정액	증감	연도별 검정내역				
수입								
- 계								
- 국고								
- 지방비								
지출								
- 계								
- 공사비								
- 용지매수보상비								
- 기타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지출, 기타								

112	광역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사업
-----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팀	팀 장 김홍우 사무관 류승규	02-500-2025 02-500-2033

I. 사업개요

1. 목 적

- 지역에 특화된 농수산업을 중심으로 기술과 경영이 조화롭게 융합된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한 농어가소득 증대 도모
- 지역 핵심 농수산업을 중심으로 산·학·연·관의 혁신역량을 체계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양

2.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1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3. 성과목표 및 지표

- '08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여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100개소 육성
 -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지역핵심농산업 육성을 통해 클러스터 특화품목 매출액 증가율 제고
- ⇒ 지역경제 발전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6	'07	'08		
▪ 클러스터 특화품목 매출액 증가율 (%)	14.0%	12.0	13.0	13.5(P)	익년 2월	클러스터 참여 농기업체의 장부상 매출액 직접 조사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합 계	64,000	45,800	46,000	51,400	211,000
보 조	32,000	22,900	23,000	25,700	105,000
용 자 지방비	32,000	22,900	23,000	25,700	105,000

II. 200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클러스터 사업단

2. 지원자격 및 요건

- 클러스터사업단으로 인정되는 법인 또는 법인화 계획이 있는 사업단

◆ 클러스터 사업단(본 지침에서는 사업단으로 일원화)

- 명칭, 조직형태는 지방의 자율의사에 의해 결정하며 반드시 사업단은 법인화 조치를 의무화 하여야 한다
- 구성범위 : 복수 시·군, 도 단위의 산·학·연·관으로 구성
- 역할 : 클러스터 사업계획 수립
- 클러스터 사업계획수립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사업시행주체
- 농산업클러스터사업단에는 다수의 주체 및 기관이 참여

3. 지원대상

-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지원

- 클러스터사업단 설치 및 운영지원, 전문경영인 지원, 참여주체 전문 교육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킹 구축 등

- 산업화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

- 브랜드 개발 및 관리, 유통전문조직 구축, R&D, 홍보 및 공동마케팅,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등 S/W
- 친환경 종합지원센터, 통합물류센터, 홍보시설물 등 공동이용시설(H/W)

< 지원 배 제 >

- 부지매입비, 농어가 및 작목반의 개별소유시설

- 음식점 및 숙박시설 설치비

- 단, 음식점은 클러스터 사업목적달성에 불가피하고, 직접 연계되어 있는 경우 총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 사용하되 아웃소싱을 하거나 개인이 운영하는 것은 불허하며 사업단에서 생산되는 제품만을 판매할 경우에 한하여 부분인정

- 생산기반정비사업

- 농가 단위 생산재 투입(비료, 종자, 농기계, 밀소 생산, 종돈정액지원 등)
- 생산시설현대화(관정, 축사환경개선, 조사료 생산 장비, 퇴비제조시설 등)

- 타 농림사업으로 지원 가능한 시설

- APC(거점산지유통센터), RPC(미곡종합처리장), DSC(건조저장시설), 농기계임대, 가축수송 특장차량, 가축분뇨자원화 시설,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종축등록 등

- 수산분야도 어가단위 생산재 투입 및 생산시설현대화 등 타 수산사업으로 지원 가능한 시설 등은 지원 불가

- ※ 단, 클러스터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수사업으로서 사업계획에 타 농림수산사업 연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해당 사업 과에서 검토하여 적합 시 차기 사업에 우선 선정토록 유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혁신체계 구축 네트워크 분야

- 지역 내 개별 농어업 경영체의 역량을 집중 시킬 수 있는 산·학·연·관
결집체를 육성하여 농수산업 혁신체계 구축

사업 내용	세부 내역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참여 농어가 교육,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클러스터 주체 간 네트워크 촉진	토론회 및 워크숍 개최, 자문단 운영, 사업단 운영
전문 CEO 영입 비용	사업단 전담인력 비용
사업단 컨설팅 및 자체평가	사업단 사업계획·추진방향 등 컨설팅 및 평가

○ 산업화 및 마케팅 분야

- 지역의 특색을 살린 농림수산물 개발과 공동 브랜드화를 통한 산업화 및
마케팅 추진

사업 내용	세부 내역	
S/W	브랜드 개발 육성	브랜드 개발 및 관리 지원
	R&D 지원	현장애로 기술지원, 상품개발 기술지원 등
	홍보 및 공동 마케팅	홍보프로그램 운영, 유통전문 조직 구축, 공동 마케팅 등
H/W	공동이용시설	친환경농업지원센터, 홍보전시관, 통합물류센터 등

○ H/W분야는 지원조건을 강화하여 타 농림사업과의 불균형 최소화

- 지원분야 : 해당 품목 등을 2·3차 산업화 할 수 있는 시설로써, 건립 기간이
2년 이내인 공동이용시설로 전체사업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 종합지원센터(공동교육장 및 홍보관), 문화센터, 체험관, 공동연구개발센터 등
- * 종합물류센터, 전문판매장 등 가공·유통 시설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 원 : 균특회계 지역혁신계정

○ 지원기간 : 기본 3년 지원, 평가를 통해 추가지원(1-2년) 여부 결정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단 시설비의 경우 자부담 20% 부과

- * 추가비용은 자부담으로 추가가 가능하며 시설물은 사업단 소유로 지상권 등기를
하거나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절차를 통하여 사업단에서 관리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단별 평균 30억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단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선정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시·도에 시달
 - 신규사업단 선정은 3년차 계획으로 격년제 선정으로 하고 10~20개소 내외로 선정

시·도(지자체)

- 시·도는 사업단 선정 추진계획을 시·군·구 등에 시달하고 기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사업자 선정 공고
 - 주요 공고내용 :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선정절차 등

사업단

- 신청 사업단은 광역클러스터 사업 신청서 「별지1호」가 포함된 사업계획서 20부를 작성하여 해당 지자체에 제출(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참조)
 - 복수 시·군 범위 사업단 : 거점 시·군 또는 시·도에 신청
 - 광역 범위 사업단 : 해당 시·도에 신청

<신청서 작성 및 제출요령>

1.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를 포함한 사업계획서 20부(A4용지 크기)
 - 좌철 양면

2. 신청서 규격

- 작성 워드프로세서 (한글 2002)
 - 본문 12포인트, 장평100, 줄간격 160, 신명조체 기본
 - 용지여백 : 위쪽15, 아래쪽15, 왼쪽20, 오른쪽20, 머리말15, 꼬리말15
- 신청서 분량 : 200쪽 내외

3. 신청서 작성요령

- 사업시행지침서의 신청서 작성요령을 숙지한 후 작성
 -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 비율 산정 시에 소숫점 첫째 자리까지 기재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금액의 경우 제시한 금액단위 이하는 버림
 - 반드시 면수(page)를 기재
 - 모든 증빙자료는 사업계획서와 1권으로 합철하고, 별도 목차를 작성
 - 사업계획서 본문 작성시 관련 증빙자료의 페이지를 기재
- ※ 신청서 양식은 첨부자료 참조(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농림자료실 →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음)

시·도(지자체)

- 시·도는 자체 심사(지역농산업혁신전문가위원회)를 실시하고 심사의견을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하되 사업단별 우선순위는 기재하지 않음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지자체에서 제출된 사업단의 사업신청서에 대해 사업부서 심사, 전문평가단 주관평가(서면·현장·발표) 또는 전문평가기관을 통해 선정 평가를 실시하고, 중앙농산업혁신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사업부서 사전검토 : 농식품부 정책방향과의 일치 여부, 기존 농림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의 적정성 등을 검토
 - 식품산업진흥팀에서 사업계획서 및 사업지침 준수 실태 등을 심사
 - 전문평가단 주관 평가(평가위원 지정 및 평가기준 제시)
 - 서면평가, 현장평가, 공개발표 평가 등 3단계 평가 실시
 - *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선정평가지 별도의 평가계획 수립 시달
 - 중앙농산업혁신위원회에서 전체 순위 및 품목 비율 등을 고려하여 최종 사업단 결정
 - 사업단 선정결과 확정·통보
 - * 사업단 선정 및 사업내용은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인 결과임

시·도(지자체)

- 시·도는 농림수산식품부 심사일정에 따라 심사에 협조하고 추가 자료 요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특히 전문평가단의 서면, 현장, 공개발표 평가 또는 전문평가기관의 평가에 적극 협조

사업단

- 신청 사업단은 지자체, 농림수산식품부의 추가 자료 요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특히 전문평가단 또는 전문평가기관의 평가에 적극 협조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지자체)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최종 확정되어 통보된 사업에 대해 시·도에서는 사업단에 전달하고, 사업단이 작성한 세부추진계획을 검토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제출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확정된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주체, 사업대상지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사업단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의 내용 및 사업비가 조정·확정된 사업 결과를 통보 받은 사업단은 30일 이내에 세부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시·군)에 제출
-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 주관기관(시·도, 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물량 및 지원 분야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주관 기관(시·군 또는 시·도)에서 검토하여 승인 시행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다만,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방침이나 지시사항, 세부사업비의 30%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집행

4. 자금배정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시·군)의 자금배정 신청을 근거로 시·도로 자금을 배부하고 시·도는 사업단으로 자금을 교부

시·도(지자체)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 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관련 법령과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사업자금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등 소요자금을 정확히 파악한 후 전월 15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농림수산식품부에 자금배정을 요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
- 시·도지사는 사업의 이월을 한 경우 이월명세서(사업별 금액 및 사유 등)를 작성하여 3월 10일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5. 이행점검 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사업담당부서, 사업단 등과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다음년도 사업계획을 사업단으로부터 제출받아 사업내용 및 사업비의

-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12.2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시·도지사는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별지3호서식]에 의거 조치 결과를 포함하여 보고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함
 -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하도록 함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사업담당부서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3월 2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서식 별도통보]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37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하여는 유사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의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함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된 다음연도 사업계획은 선정당시의 사업계획 및 사업비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비 조정
- 광역클러스터 사업 추진현황 모니터링 실시
 -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사업별 추진상황 및 현장어로 사항 등 점검을 수시로 실시

6. 성과측정단계

- 클러스터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농수산기업체의 장부상 품목 매출액을 토대로 익년 2월까지 도출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업 착수시 각 사업단의 사업특성에 적합한 지표를 사업계획서에 사업단의 역량 및 추진성과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사업 1년차 말에 H/W 사업 진행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부지 및 지방비

- 확보 미흡 등으로 정상적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단은 H/W 예산지원 중단
- 지원종료 이후에도 사업단 지속관리를 통해 혁신주체들의 네트워킹을 지속시키고 신규사업단과 성과 공유
 - 컨설팅실시, 교육 프로그램 제공, 워크숍 참여 유도하여 사업단 지속 점검 및 관리
 - 신규사업단에게 성공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모임 정례화

《환 류》

- 사업 2·3년차 상반기 중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사업단에게는 인센티브 지급하고 부진 사업단에 대해서는 정상적 사업 추진을 위한 컨설팅 실시

IV. 201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0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0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해 2009년도에 사업신청을 받을 계획
 - 신청시기, 방법 등은 사업신청과 동일

2. 201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별도통보

3. 기타사항 : 보고 등

- 사업신청 : [별지 제1호 서식]
- 사업계획서 제출방법
 - 제본 후 제출(한글작성 File은 별도 CD로 제출)
- 월별 자금배정 요구 : [별지 제2호 서식]
 - 시·도 → 농림수산식품부 : 전월 15일
- 사업추진이 부실한 사업 및 부진한 사업에 대한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 보고 : [별지 제3호 서식]
- 이월 현황보고 : 익년도 3월 10일까지 [별지 제4호 서식]
- 사업정산 결과보고 : 익년도 3월 20일까지 [서식 별도통보]

[별지 제1호 서식]

광역클러스터 사업 신청서

(단위: 백만원)

신청자	지방자치단체	시·도 (시·군)					
	클러스터사업단	기관명	주소				
		총괄책임자	기관명	소속(부서)	담당직위	성명	전화
	참여기관 (총 개)	産	농협, 영농법인, 식품기업 등				
學		대학					
研		연구소					
官		지자체					
신청내역	사업명						
	사업유형	광역 클러스터 구축(안) 유형 참조					
	사업목표						
	주요사업내용						
연차별 투·융자계획	구분	보조	국고	'09	'10	'11	계
			지방비				
	자부담						
계							
분야별 투·융자계획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구축						
	산업화 및 마케팅						

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신청서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자

총괄책임자 :

(서명 또는 인)

지자체장:

(서명 또는 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의 협약서
- 농산업클러스터사업단(법인의 경우) 및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각 1부

[첨부 1]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사업계획서

I. 사업개요(3개년 계획)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클러스터 추진 동기를 포함
- 사업내용
- 현재까지 활동 및 추진실적
 - 사업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중앙정부의 지원이 있었던 분야는 별도 표시
-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 등을 단계별(연차별)로 구분하여 작성
- 자체성과지표 및 평가방법
 - 클러스터 사업 이전과 사업시행후의 연차별 성과(지표)의 변화를 포함하되 단계별 성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II. 사업운영계획

- 분야별·사업별 세부추진계획
-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 사업개요의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와 연계하여 단계별로 작성
- 연계지원 분야 및 추진 방안
 - 타 농림사업 분야 등
- 사업추진일정

Ⅲ. 재원조달계획

Ⅳ. 당해년도 사업계획

Ⅴ. 중장기 발전계획

○ 현재의 단계를 스스로 평가하고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 등을 단계별(연차별)로 구분하여 작성

※ 단계별 구분(예) : 준비 → 도입 → 성장 → 도약(변화) → 안정

Ⅵ. 지방자치단체,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 현황

○ 각 기관의 현황 및 역할을 작성

[첨부2] 예시

지방자치단체, 사업단, 참여기관 협약서

본 사업 수행을 위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광역클러스터 사업관련 규정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며, 지방자치단체, 사업단, 참여기관들의 주체별 역할, 국고보조에 수반되는 지방비 및 자부담의 확보, 소유권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합니다.

- 1.
- 2.
- 3.

200 년 월 일

(지자체장)	_____	(인)	직인
(총괄책임자)	_____	(인)	직인
(참여기관장A)	_____	(인)	직인
(참여기관장B)	_____	(인)	직인

※ 국고보조에 수반되는 지방비 및 자부담의 확보, 시설물의 소유권 등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00월 국고보조금 자금 신청서

(○○시·도)

(단위 : 백만원)

사업별	예산액	교부 결정액	자금배정			사업 추진 진도
			기배정	금회 배정	누계	
합 계						

※ 시·도지사는 사업진도가 부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문제점 및 대책을 구체적으로 별지에 작성 제출

[별지 제3호서식]

광역클러스터 추진실적(년 현재)

00 시·도

(금액단위 : 백만원)

위치 (시군)	세부사업명	사업량	총사업비				사업진도(%)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획	실적	
	합 계								

※ 단위사업까지 분리하여 작성

○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경우(조치 결과)

[별지 제4호서식]

광역클러스터 이월 현황

○○시·도

(단위 : 백만원)

위치 (시군)	사업명	총사업비				이월액				이월사유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합 계									

※ A4 횡서식으로 하되, 다음사항에 유의하여 작성 보고

- 1) 이월범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준수
- 2) 이월사유는 6하원칙에 준하여 자세히 기술(별지사용 가능)

▶ 이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팀	팀장 김경규 서기관 김상근	02-500-1975 02-500-1986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조성팀	팀장 성창현 차장 유영배	02-6300-1581 02-6300-1586
농협중앙회	산지유통부	부장 김용주 팀장 임규수	02-2080-6220 02-2080-6251

I. 사업개요

1. 목적

- 주산지별로 품목 특성에 맞는 규모화·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하여 농산물 생산·유통 계열화의 거점으로 육성
- 원예농산물 선별·저장·포장시설과 상품화시설 등을 생산지의 유통조직에게 일괄 지원하여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부가가치를 제고
- 농산물 물류효율화와 규모화로 유통체계 개선 및 물류비용 절감

2.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1조(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운영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3년까지 산지유통센터 380개소 건립을 목표로 10대 주요 원예농산물의 산지유통센터 처리비중을 30%까지 확대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6	'07	'08		
▪ 주요 원예 상품 취급 비중(%)	19.5	11.8	14.0	17.0	2010.1	(APC 10대 원예농산물처리량 / 10대 원예농산물생산량) × 100
▪ APC운영 전문조직의 규모화율 (%)	29.2	26.4	27.2	28.2	2010.1	(∑ 상위10% APC운영조직 매출액 / ∑ 전체 APC조직의 매출액) × 100

* 10대 원예농산물 : 사과, 배, 감귤, 단감, 토마토, 마늘, 양파, 배추, 감자, 당근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총사업비	2006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이후
사업량(개소)	380	242	12	18	23	85
사업비(억원)	824,557	375,690	39,028	46,132	59,326	304,381
- 국 고	350,104	190,971	13,650	18,490	23,891	103,102
- 지방비	229,319	109,644	10,563	13,821	18,386	76,905
- 자부담	199,043	75,116	14,815	13,821	17,049	78,242

※ 사업량은 신규지원 개소수

II. 사업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 :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공동출자법인,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시군유통회사
 - 지방공사는 연간 총 매출액대비 농산물(쌀 제외) 취급비중이 60%이상인 조직
 - 생산자단체와 일반유통업체가 공동 투자하는 경우는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 연합이 지분의 50% 이상 점유하여야 함
- ※ 사업대상자 제외 : 최근 산지유통종합평가(농수산물유통공사 시행) 결과 하위 5% 이하 사업자(운영주체 포함) 및 거점APC(FTA기금) 설치 지역내 동일품목의 신규 APC

2. 지원자격 및 요건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훈령 38호, '08.7.23) 제 48조 요건에 적합해야 함
- 기 지원한 시설 중 일정규모 이상이며 실질적으로 산지유통센터의 기능을 하는 시설로써 유통시설(집하선별포장장, 저온저장 및 예냉시설) 규모가 총 660㎡ 이상인 경우
 - 지원제한기준 :
 - 2년 연속 보완·확장을 지원받은 APC는 2년간 지원제한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포기년도부터 향후 3년간 지원제한

3. 지원대상

- 농안법시행령 제2조제2호에 의한 청과류 및 화훼류를 취급(특용·약용작물 포함)하는 경우(임산물만을 취급하는 경우는 지원 제외)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세부시설 및 사업비 기준단가 (단위 : 백만원/3.3㎡)
 - 건축물류 : 집하장·출하장·선별장·포장장(1.5), 저온선별장(2.2), 사무실·회의실·일반창고·기타 시설 등(1.3), 차압식 예냉고(3.8), 저온저장고(3.3), 품질검사실(2.0), 전처리시설(저온공조, 3.0)
 - 선별·포장장비류 : 선별기 및 선별시설, 결속기, 봉합기, 제함기, 컨베어, 마늘박피기, 전처리 및 단순가공시설 등
 - 유통시설장비류 : 수송차량(화물용), 파렛트, 운반상자, 지게차, 에틸렌가스 제거기 등
 - 전체사업비 3%내에서 시설설치 타당성 진단비용, 설계비 및 감리비 등 사용 가능
 - ※ 기준단가와 다른 단가를 적용할 경우 산출단가 및 근거서류 구비하여 제출
 - ※ 단순가공시설은 잼, 과일쥬스, 가공시설 등을 말함
- 집하·선별·포장장, 예냉·저온저장고는 각각 330㎡ 이상이어야 함
 - 다만,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정한 친환경농산물 및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만을 취급하는 경우, 생산량이 소량이어서 330㎡이상의 시설설치가 부적합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때에는 최소 165㎡ 까지 가능
- 산지유통센터에 설치할 시설 중 물류표준화사업 지원대상인 것은 물류표준화사업에서 우선 지원함. 다만, 공정상 독립적인 설치가 가능한 시설로서 설치하려는 수량이 물류표준화사업의 지원한도를 초과할 경우는 초과수량을 산지유통센터건립사업에서 지원가능
 - ※ 산지유통센터 건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시에 없는 시설장비도 설치할 수 있으며 단가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함
 - ※ 시장·군수는 산업자원부 물류표준설비인증요령(고시 제2004-074호/07.7.9)에 의한 물류표준설비인증 대상 품목을 우선 지원하여야 함
 - ※ 단순히 선별·포장·유통시설 장비류(2억원 미만)만을 지원하는 경우는 지원 불가
 - ※ 신규로 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할 경우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5(별표3의 3)에 의한 우수농산물(GAP)관리시설 기준에 적합한 위생요건 구비

5. 지원형태

- 지원형태 : 국고40%(균특회계), 지방비30, 자부담30
 - * 기 지원한 지자체형 APC는 보완·확장사업만 지원가능(국고40%, 지방비60)
 - * 시·도(시·군)비는 시·도와 시·군이 각각 50%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하여 변경가능하며 지자체(시도, 시군)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방비는 증액가능

- 사업비에 부지매입비, 부지 기반정비 등 기초토목공사 경비는 포함할 수 없음
- 사업기간 : 1년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신규시설은 20억원 내외, 기존시설 보완은 8억원을 기준사업비로 하되, 사업자의 능력과 사업성, 매출규모, 원료조달권 등에 따라 사업비 증감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각 시·도 및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사업추진지침 시달(전년도 12월말)

사업자

- 사업신청서를 시·군에 제출 (2.15일까지)
 - 회원농협의 경우 사업계획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 * 사업신청시 구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산지유통센터 설치에 관한 의제),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 계획인원, 지적도 축척(1/500), 자부담금 조달계획서(입증자료), 대표자 및 임원이력서, 최근 1개년간 결산재무제표, 농산물 공동출하 등 유통사업 실적 입증서류, 산지유통센터 설치 예정지 조서

농협중앙회

- 회원농협이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의견(고정투자한도, APC필요성, 과투자, 원물확보 등)을 회원농협에 통보(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

지자체

- 시장·군수는 우선순위를 작성하여 사업신청서 첨부 후 시·도에 제출(3.15일까지)
- 시·도지사는 사업신청자 명세서 작성하고, 농수산물유통공사와 협의하여 사업성진단일정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 해당 시·군에 제출(통보)(3월말)
- ※ 사업성 진단, 지원대상자 적격여부 심사 등은 시·도지사 주관으로 실시

2. 사업자 선정단계

< APC지원 3원칙 >

원칙 1 : 先 조직화, 後 시설지원

- 농림수산물부에서 매년 선정하는 공동마케팅조직 및 전문조직(농림수산물사업시행 지침 제2권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참고) 등 안정된 원료 확보, 사업능력이 검증된 조직을 지원

원칙 2 : 기존시설 및 상품화설비 보완

- 기존에 활용중인 중소규모 유통시설 및 산지공판장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설비보완 및 확장을 우선추진하고, 사업자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중소규모 신규 APC 억제
* 거점 APC권역내 원료 확보 경합이 가능한 동일품목 중소규모 APC 신규지원 중단

원칙 3 : 지자체 차원의 사업관리 강화

-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지원 및 관내 산지유통관련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기존 및 신규시설간 경합여부, 통합조정 등 철저한 사업관리

농수산물유통공사

- 사업성진단 실시 후 사업성진단 보고서를 농림수산물부 및 시도에 제출
- 사업성진단은 시·도에서 추천된 모든 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각 시·도별 균특사업 예산신청 기한(5월중순) 이전까지 완료
* 단, 총 사업비 10억원 미만 사업자중 공동마케팅조직 및 최근연도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B등급 이상인 경우 사업성 진단 없이 지원가능
* 10억원 미만 사업자중 농협조직의 보완사업자는 농협중앙회 자체 실시 가능

지자체

- 시도지사는 「APC지원 3원칙」에 따라 투자 효율성, 지원방향의 일관성, 중복투자 최소화, 운영능력이 검증된 사업자를 선정
- 사업성 진단 결과 및 심사를 반영한 잠정 선정사업자를 대상으로만 해당 시·군에서 균특회계 사업 예산한도를 신청하도록 하여야 함
* 단, 동 지침의 『사업추진 절차 및 요령』에 의거 사업자 선정 및 예산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앙부처 균특회계 예산신청서 검토시 불인정을 원칙으로 함
- 시·도지사는 지자체별 균특회계 예산안 한도를 최종 확정·통보를 받은 경우 기 보고한 시도별 선정결과를 정정하여 농림수산물부에 보고

- 시·도지사는 사업성진단결과 및 심사를 선정에 반영하고, 최종 사업자 선정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우선 보고(5월말까지) 후, 시·군에 통보
 - * 제출자료 : 사업계획서, 산지유통센터 설치 예정지 조서, 신청자 명세서, 시군별 신청자 현황, 신청자 심사기준표, 사업성 진단결과 반영현황, 시도별 선정결과, 사업성진단보고서
- 시·도(시·군)는 다음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하여야 함
 - ① 공동마케팅조직
 - ② 산지유통전문조직
 - ③ 기존 유휴 또는 부진 사업장 산지유통시설을 인수하여 시설보완(확장)을 추진하려는 생산자단체
 - ④ 농협연합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농협(출하물량 또는 매출액기준 50% 이상을 연합사업단으로 출하하는 경우)의 시설 설치 및 보완
 - ⑤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이력추적제(Traceability) 참여 조직
 -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승인한 농산물 자조금단체 가입 조직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에서 선정, 제출한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기재부에 제출(6월중순)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별 확정예산 및 사업자 선정결과를 시도에 통보(익년도 1월중)

사업자

- 세부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

지자체

- 시장·군수는 승인 결과, 월별 공정계획, 사업비 집행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제출, 시·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1월말)
 - 시·도지사는 세부시행계획 중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 지시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대상자가 사업포기한 경우 사업 포기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사업포기에 따른 사업대상자 변경(추가)선정시 사업성진단, 사업타당성·심사 등을 거치고 그 결과를 시도별 선정결과와 사업포기서 사본을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세부시행계획 변경은 다음과 같이 처리
 - 대표자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 : **시장·군수 승인**(시·도에 보고)
 - 지원금액 범위내 또는 자부담 추가된 사업계획·설계·사업부지 변경 : **시·도지사 승인**
- * 단, 시·도지사는 사업타당성 검토 후 세부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변경 승인 결과를 변경사유 및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 총 사업비의 20% 이상 초과 또는 사업계획을 현저히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승인 불가
 - 단, 사업의 기본 취지를 감안할 때 현저한 사업계획 변경이 아닌 단순 사업계획 변경일 경우 총사업비의 25%이내까지는 시·도지사가 변경가능 여부 판단

《 설계 및 시설업체 선정 》

- 건축·건설관계법령상 유자격업체가 작성한 설계서 이용(단, 자체 설계서를 이용할 경우 공사착수 전에 시장·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시설업체의 자격
 -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자(단, 부득이한 경우 일반면허 보유자 참여 허용)로서 하자 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자에 한하여 설비에 참여 허용
 - 건축, 전기, 통신, 소방, 환경 등 시설별로 각각의 관계법에 의한 면허 보유자
 - 저온저장고, 예냉시설의 경우 공조냉동기계기사 2급 이상 자격증 보유업체
- 시설업체 선정방법
 - 사업자는 지자체, 농협중앙회, 연구기관(한국식품연구원)과 협의하여 자율 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유도 등을 통해 최대한의 설치비용 절감
 - 기 설치한 APC의 A/S부실, 현저한 공사하자발생, 시공업체의 원인에 의한 사업 이월 시 공사참여 제한가능
- 장비업체 선정방법
 - 일반장비(일반선별기, 결속기, 봉합기, 제함기, 컨베이어, 마늘박피기, 세척기)는 검증장비 구매, 사후관리를 위해 가급적 검증기관(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의 보증을 받은 장비를 구매하여야 함
 - 비파괴 선별기(당도, 설탕, 중량)는 업체별 표준모델에 대해 공공기관(국립농업과학원)의 형식검사(기기의 구조, 성능, 조작의 난이도, 안전성 등을 시험하여 합부판정) 후 합격된 모델만 선정하고 설치 후에는 성능시험을 받아야 함

《건축 및 기계설비 기술검토》

- 건축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의 기술검토를 거쳐야 함
- 저온저장고, 예냉고의 기계설비는 한국식품연구원의 기준설계도를 기본으로 사업장 여건에 맞게 설계해야 함
- 비파괴선별기 설치는 전문기관(국립농업과학원 등)의 자문과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함

선별기 선정시 고려 사항

산지유통센터에 설치할 선별기(중량, 당도, 영상)는 품목별 선별 항목을 감안하여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당도 허용 오차(SEP) : 0.5°Brix 이내(농관원 고시 제2000-8호, 수치계산방법의 4사5입 적용)
 - 검량선(Calibration)은 품종별 프로그램 등으로 신속히 전환 가능한 기종
2. 산도 허용 오차(SEP) : 0.2%이내(감귤선별기에 한함)
 - 당도, 산도는 1회의 캘리브레이션으로 동일 지역, 동일 품종의 과실을 적용하더라도 상당기간 상기오차 범위내를 재연하여야 함
 - 캘리브레이션은 품종별로 프로그램 등으로 신속한 전환이 가능한 기종
3. 영상선별 : 선택선별이 필요한 품목의 색깔별, 착색 비율별(착색패턴별) 선별이 가능한 기종
(육안선별 수준)
4. 상기조건을 충족하고, 당도·착색·무게 등에 따른 다양한 조합의 선별이 가능한 제품

<부대사항>

1. 투입은 자동투입과 수동투입 선택 가능 제품
2. 세척 설비 선택 등
 - 물세척으로 인한 품질저하를 막을 수 있는 제품 또는 진공흡입, 공기분사 등 물세척 이외의 방법으로 오물 제거가 가능한 제품
3. 선별시설은 품목간 호환성이 높아 효율성 제고 가능 제품 우선
4. 유통시설의 처리 물량에 따라 연도별 분할 설치가 가능한 제품 우선
5. 비파괴 선별기의 도입으로 인한 속도저하가 최소화되는 기종
6. 감귤은 당도와 산도를 허용오차 범위내에서 정밀 측정이 가능하면 선택
 - 당도와 산도 측정 정밀도에 대한 분석은 국내 농업관련 연구기관에 의뢰
7. 중장기적으로 A/S확보가 가능하고 시간당 처리능력이 우수할 것

4. 자금배정 단계

가. 사업비 집행

지 자 체

- 보조금집행자(시장·군수)는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자부담 우선 집행)한 후에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
- 시·도지사는 시군별 사업자의 사업공정비율 및 사업비 실집행액을 매분기말 파악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나. 감 리

사 업 자

-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감리 실시(시공업체는 감리 불가)
 - 저온저장시설 중 건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유자격 설계감리업체, 기계설비는 한국식품연구원 및 공조냉동기계설비를 전문으로 하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또는 기계설비 기술사사무소)가 건축설계사무소와 공동으로 설계감리 수행
 - 저온저장고, 예냉시설 설치시 전문기관(한국식품연구원 등)의 기술검토(진단, 감리)를 반드시 거쳐야 함
 - 예냉시설 중 외국산 완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성능시험만 받도록 함
- 감리비는 시장·군수의 책임하에 감리기관에 직접 지급

다. 준공검사

지 자 체

- 토목·건축부문 준공검사는 시·군 기술직(토목, 건축) 공무원이 직접담당 다만,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가능

라. 기타 사항

- 시장·군수는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함
 - 지원시설물이 법인(지자체형 시설일 경우 시장·군수)명의로 등기여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여부 확인

- 시설규모 산정을 위한 상담 및 문의는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등에 하고, 기술적인 내용과 공사 감리 감독, 기계설비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식품연구원,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기계협동조합 등 전문기관에 자문을 요청

5. 이행점검단계

《 사후관리 》

사업자

- 시설물의 등기(법인 또는 공동명의)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산지유통센터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생산자 또는 다른 생산자단체의 시설이용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안됨

사업자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산지유통 관련시설을 「농산물산지유통시설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기)
- 사업자가 시장·군수인 경우 위탁운영자로부터 이용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는 연간 매출액의 0.5% 범위내로 함(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2항 참조)
- 시설물을 이전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고, 시·군을 달리할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는 승인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 시·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해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주요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 시·도지사는 사업 완료 후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다음 해 3월말까지)
- 기타사항은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을 준용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업자의 전년도 경영성과를 평가
 - 평가기관 : 외부 전문컨설팅업체, 농수산물유통공사
 - 평가지표 확정 : 전년도 평가지표 등을 감안하여 설명회 개최 후 확정 (3월)
 - 주요평가지표 : 매출액, 영업이익, 취급물량 및 규모, 경영성과 등
 - 평가일정 : 자체평가서 제출(4월), 현지실사 (4~6월), 사업자별 경영성과 분석 (7~9월), 조직별 경영평가결과 통보 (9월)
 - 성과지표 측정(11월~익년도 1월) : 각 조직별 산지유통종합평가를 토대로 주요원예농산물 취급물량, APC 운영 우수조직(상위10%)의 규모화율 등을 취합하여, 농림수산물식품부 통계연보의 주요원예농산물 생산량, 평가결과 전체 사업자의 매출액 등을 모수로 각 지표별 성과지표를 측정

<만족도 조사>

- 산지유통시설 운영실태, 운영상의 문제점, 경영성과 등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농정현장 중심으로 농가 또는 생산자 단체 등 관련 종사자들이 실제 느끼고 있는 만족도를 인터넷·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매년 11월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경영자 및 관련 지자체 공무원 연찬회)
 - 조사대상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책임자 등 관련 종사자 약 200명
 - 조사방법 : 전화, 이메일, 설문지 배포 등을 활용하여 조사
 - 주최 :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협조)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산지유통종합평가》

가. 원칙

- 매년 정부로부터 시설 또는 운영자금을 지원받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산지유통종합평가」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산지유통의 규모화·전문화·광역화·조직화 등을 적극 유도

나. 2009년 사업실적 평가요령

- 평가대상 : 농림수산물식품부에서 지정·관리중인 산지유통센터
 - * 신규사업자는 산지유통센터 설치 후 운영 및 가동실적이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함

- 평가주관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협조 : 농협중앙회)
 - 평가지표개발 및 보완 등은 외부 전문컨설팅기관에 의한 연구용역 추진
- 평가기간 : 2~8월 상순까지
- 평가기준 : 산지유통센터 사업평가지표 기준 참조
- 사업실적 평가 대상기간 :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또는 평잔기준)까지를 원칙으로 함(농협 이외 법인은 결산일 기준)

다. 평가결과 환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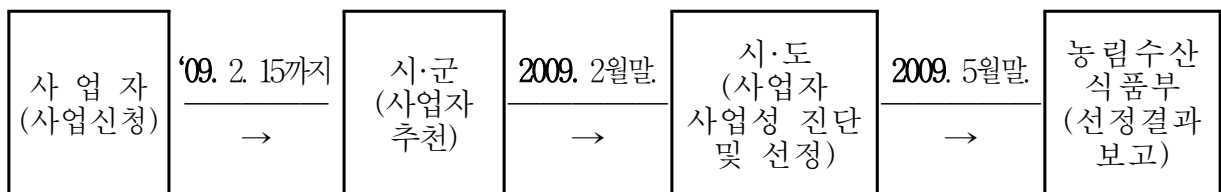
- 산지유통센터 사업자 중 산지유통활성화사업 대상조직에 대해 평가결과 핵심 컨설팅 및 맞춤형 경영개선 교육 지원
 - 상위 5개소 : 경영컨설팅 지원
 - 하위 30개소 : 경영개선교육 지원

IV. 201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0년도 사업수요조사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경영자 및 관련 지자체 공무원 연찬회
 - 참가대상 : APC경영자 및 시도, 시군 관계공무원(350여명)
 - 주요내용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발전방안, 경영정보 교류, 분임별 토론 등
 - 시기 : 매년 11~12월경
 - 주최 : 농림수산식품부, 농수산물유통공사

2. 201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지원내용, 우선순위 등은 2009년 사업추진요령 내용 참조(다만, 여건변화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 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계획서, 산지유통센터 설치 예정지 조서, 신청자 명세서, 시·군별 사업 신청자 현황 등의 서식은 [www. apcmanager.co.kr](http://www.apcmanager.co.kr)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

<붙임 1>

2010년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 신청자 심사기준표

평가항목		등급				등급기준	평점
		A	B	C	D		
1. 규격상품화 추진여건 성숙도 (25점)	1-1. 규격상품화로 발전가능성	3	2	1	0	고유상표	평점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 출하	A
						자체 고유상표로 출하 또는 특허출원중	B
						고유상표를 개발 중에 있음	C
						고유상표 미개발	D
	1-2. 공동계산제	12	10	8	4	공동계산제	평점
						매출액의 20%이상 실시	A
						매출액의 10~20%미만 실시	B
						매출액의 10%미만 실시	C
						공동계산제 미실시	D
	1-3. 규격상품화 참여정도	5	4	3	2	A : 법인은 조직구성원 농협은 작목반소속 조합원 200명 이상 또는 연간출하량 5000톤이상 B : 법인은 조직구성원 농협은 작목반소속 조합원 100-200명 미만 또는 연간출하량 3000-5000톤 미만 C : 법인은 조직구성원 농협은 작목반소속 조합원 20-100명 미만 또는 연간출하량 1000-3000톤 미만 D : 법인은 조직구성원 농협은 작목반소속 조합원 20명 미만 또는 연간출하량 1,000톤 미만 * 법인은 출자조합원(준조합원 포함)	
	1-3. 공동사업 실적	5	4	3	2	A : 포장재 지원사업에 따른 농관원 평점이 90점 이상(최우수조직) B : 80-90점 미만(우수조직 중 상) C : 70-80점 미만(우수조직 중 하) D : 70점 미만(일반조직, 미분류조직)	

평가항목	등급				등급기준	평점																				
	A	B	C	D																						
2.사업수행 능력 (25점)	2-1.경영구조 및 경영 관리능력	5	4	3	2	A : 평점 10점 B : 평점 8점이상 10점 미만 C : 평점 6점이상 8점 미만 D : 평점 6미만																				
						경영구조	평점	경영관리	평점																	
						독립채산제 책임경영	5	회계 및 내부관리 장부정리상태 우수	5																	
						분사형 책임경영	4	회계 및 내부관리 장부중 한가지만 우수	4																	
						판매사업전담 (상무이상)부서	3	회계 및 내부관리 장부미흡	3																	
판매사업전담 부서 없음	2	회계 및 내부관리 장부불량	2																							
	2-2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 인력	5	4	3	2	A :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4명이상 B :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3명 C :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2명 D :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1명																				
	2-3.재무구조의 건전성	5	4	3	2	A : 평점 10점 이상 B : 평점 8점 이상 10점 미만 C : 평점 6점 이상 8점 미만 D : 평점 6점 미만																				
						<table border="1"> <thead> <tr> <th>출자규모</th> <th>평점</th> <th>유동비율</th> <th>평점</th> </tr> </thead> <tbody> <tr> <td>법인 5억원이상, 농협 30억원이상</td> <td>5</td> <td>150% 이상</td> <td>5</td> </tr> <tr> <td>법인 3~5억원 미만 농협 20~30억원 미만</td> <td>4</td> <td>100%이상 150% 미만</td> <td>4</td> </tr> <tr> <td>법인 2~3억원 미만 농협 10~20억원 미만</td> <td>3</td> <td>50% 이상 100% 미만</td> <td>3</td> </tr> <tr> <td>·법인 2억원 미만 농협 10억원 미만</td> <td>2</td> <td>50% 미만</td> <td>2</td> </tr> </tbody> </table>	출자규모	평점	유동비율	평점	법인 5억원이상, 농협 30억원이상	5	150% 이상	5	법인 3~5억원 미만 농협 20~30억원 미만	4	100%이상 150% 미만	4	법인 2~3억원 미만 농협 10~20억원 미만	3	50% 이상 100% 미만	3	·법인 2억원 미만 농협 10억원 미만	2	50% 미만	2
출자규모	평점	유동비율	평점																							
법인 5억원이상, 농협 30억원이상	5	150% 이상	5																							
법인 3~5억원 미만 농협 20~30억원 미만	4	100%이상 150% 미만	4																							
법인 2~3억원 미만 농협 10~20억원 미만	3	50% 이상 100% 미만	3																							
·법인 2억원 미만 농협 10억원 미만	2	50% 미만	2																							
	2-4.자부담 능력	10	8	6	4	A : 자본금에서 고정자산 투자액을 뺀 금액이 자부담금을 초과 B : 자본금에서 고정자산 투자액을 뺀 금액이 자부담금의 50%를 초과 C : 자본금에서 고정자산 투자액을 뺀 금액이 자부담금의 50%이하 D : 고정자산 투자액이 자본금을 초과 * 공통기준 ; 자본조달계획 미제시할 경우 차 하위등급 부여																				

평가항목	등급					등급기준	평점																							
	A	B	C	D	E																									
3.사업계획의 적정성 (50점)	3-1.투자의 효율성	5	4	3	2	A : 투자효율성 15% 이상 B : 투자효율성 10% 이상 15% 미만 C : 투자효율성 5% 이상 10% 미만 D : 투자효율성 5% 미만 ※ 투자의 효율성(%) = $\frac{\text{경상이익}}{\text{투자비}} \times 100$																								
	3-2.부지확보 계획	15	12	9	6	0	A : 평점 15점 이상 B : 평점 13점 이상 15점 미만 C : 평점 9점 이상 13점 미만 D : 평점 7점 이상 9점 미만 E : 평점 7점 미만																							
								<table border="1"> <thead> <tr> <th>부지소유권</th> <th>평점</th> <th>관련법규 제한여부</th> <th>평점</th> </tr> </thead> <tbody> <tr> <td>법인 명의</td> <td>15</td> <td>제한 없음</td> <td>0</td> </tr> <tr> <td>대표자 명의</td> <td>13</td> <td rowspan="2">조건부로 설치가능</td> <td rowspan="2">-1</td> </tr> <tr> <td>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계약 체결(중도금지급)</td> <td>10</td> </tr> <tr> <td>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계약 체결(중도금 미지급)</td> <td>8</td> <td>제한 있음</td> <td>-3</td> </tr> <tr> <td>타인 명의</td> <td>6</td> <td>설치불가</td> <td>-5</td> </tr> </tbody> </table>	부지소유권	평점	관련법규 제한여부	평점	법인 명의	15	제한 없음	0	대표자 명의	13	조건부로 설치가능	-1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계약 체결(중도금지급)	10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계약 체결(중도금 미지급)	8	제한 있음	-3	타인 명의	6	설치불가	-5
	부지소유권	평점	관련법규 제한여부	평점																										
법인 명의	15	제한 없음	0																											
대표자 명의	13	조건부로 설치가능	-1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계약 체결(중도금지급)	10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계약 체결(중도금 미지급)	8	제한 있음	-3																											
타인 명의	6	설치불가	-5																											
	3-3.입지조건 (관내 유사시설과의 경합, 사업물량확보 여건)	5	4	3	2	A : 관내 동종품목을 취급하는 유사시설이 없으며, 물량확보 양호 B : 관내 동종품목을 취급하는 유사시설이 있으나, 물량확보 양호 C : 관내 동종품목을 취급하는 유사시설이 없으나, 물량확보 곤란 D : 관내 동종품목을 취급하는 유사시설이 있으며, 물량확보 곤란																								
	3-4.예상가동율	5	4	3	2	A : 평점 10점이상 B : 평점 8점 이상 10점 미만 C : 평점 6점 이상 8점 미만 D : 평점 6점 미만 ※ 선별장, 저온저장고의 예상 조업도에 근거하여 평가																								
							<table border="1"> <thead> <tr> <th>선과기 가동일수</th> <th>평점</th> <th>저온창고 가동일수</th> <th>평점</th> </tr> </thead> <tbody> <tr> <td>150일 이상</td> <td>5</td> <td>300일 이상</td> <td>5</td> </tr> <tr> <td>120일 이상 150일 미만</td> <td>4</td> <td>250일 이상 300일 미만</td> <td>4</td> </tr> <tr> <td>100일 이상 120일 미만</td> <td>3</td> <td>200일 이상 250일 미만</td> <td>3</td> </tr> <tr> <td>100일 미만</td> <td>2</td> <td>200일 미만</td> <td>2</td> </tr> </tbody> </table>	선과기 가동일수	평점	저온창고 가동일수	평점	150일 이상	5	300일 이상	5	120일 이상 150일 미만	4	250일 이상 300일 미만	4	100일 이상 120일 미만	3	200일 이상 250일 미만	3	100일 미만	2	200일 미만	2			
선과기 가동일수	평점	저온창고 가동일수	평점																											
150일 이상	5	300일 이상	5																											
120일 이상 150일 미만	4	250일 이상 300일 미만	4																											
100일 이상 120일 미만	3	200일 이상 250일 미만	3																											
100일 미만	2	200일 미만	2																											

평가항목	등급					등급기준	평점	
	A	B	C	D	E			
3-5.산지유통 종합평가 결과	15	12	9	6	3	A : 공동마케팅조직, 평가결과 상위 25%이내 <u>전문조직</u> B : 평가결과 상위 26%~50%이내 <u>전문조직</u> C : 평가결과 상위 51%~75%이내 <u>전문조직</u> D : 평가결과 상위 76%~95%이내 <u>전문조직</u> E : 평가결과 상위 96%~100% <u>전문조직</u> , 일반 조직 및 산지유통종합평가 미대상조직		
3-6.사·도지사 조정	5	4	3	2	-	신청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점을 강제배분 하되,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 <신청자 수가 1개소인 경우 : D등급> <신청자 수가 2개소인 경우 : C,D등급 배분> <신청자 수가 3개소인 경우 : B,C,D등급 배분> <신청자 수가 4개소인 경우> A, B, C, D 중 1개 등급에 1개소만 배분 <신청자 수가 5-9개소인 경우> A : 총 신청자 수의 20% B : 총 신청자 수의 25% C : 총 신청자 수의 35% D : 총 신청자 수의 20% <신청자 수가 10-19개소인 경우> A : 총 신청자 수의 10% B : 총 신청자 수의 20% C : 총 신청자 수의 50% D : 총 신청자 수의 20% <신청자 수가 20개소 이상인 경우> A : 총 신청자 수의 5% B : 총 신청자 수의 10% C : 총 신청자 수의 50% D : 총 신청자 수의 35%		
합 계	100점 만점					기본점수 계		
◦가점 : 기존 유타 또는 부진 사업장의 산지유통시설을 인수하였거나 인수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조직(4점), <u>GAP인증(시설과 조직 둘 다 인증시 3점, 하나만 인증시 1점)</u> ◦임산물을 전체 취급액의 50%이상 취급할 계획 : △5점(감점) * 가점은 가장 유리한 사항 1개만 적용							가 점	
							감 점	△
							기본점수+가감점 합 계	

< 평가자의 종합의견 >

※ 전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통보내용 기재 : 1.0~3.0%(예 : 1.0%)

지원가	지원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가능 - D등급이 3개 이하이고, 총점이 70점 이상인 사업자 ○ 지원불가능 - D등급이 4개 이상인 사업자 - 총점 70점 미만인 사업자 - 70점 이상 득점을 하였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이 경우 심사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 - 전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하위 5%(F등급) 			
심사자	소 속	부 서	직 급	성 명	서 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팀	팀 장 김경규 사무관 김병준	02-500-1975 02-500-1985

I. 사업개요

1. 목 적

- 기존 도매시장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물류체계를 구축하여 유통경로를 다원화하고 농어민의 출하선택의 폭을 확대
- 산지 생산자조직과 소비지 소매상 또는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여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생산자의 수취가격 제고와 소비지의 가격 안정 도모

2.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69조(종합유통센터의 설치)

3. 성과목표 및 지표

-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설로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생산자의 수취가격 제고와 소비지 가격안정 도모
 - 농축산물(청과, 축산) 매출액 증가율을 전년대비 3.0%이상 유지하고
 - 도매시장 경유시 보다 농가수취가격 제고 및 소비자가격 인하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6	'07	'08		
▪ 농축산물도매 매출액 증가율(%)	3.0	3.8	△4.0	△2.2	'10. 2	· ('08매출액-'07매출액 /'07매출액)×100 *종합유통센터 결산자료('10.2)
▪ 농가수취가격 제 고율(%)	20.3	27.2	20.5	20.3	'10. 2	· (유통센터-도매시장경 유/도매시장경유출하 시농가수취가격)×100 *“주요농산물유통실태” ('10.2.)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합 계	522,800	3,000	6,727	5,000	17,440
보 조	452,400	3,000	6,727	5,000	17,440
용 자	74,900				
○종합유통센터건립	522,800	3,000	3,000	5,000	17,440
- 보 조	452,400	3,000	3,000	5,000	
- 용 자	74,900				

II. 200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단독추진 :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 전문유통업체
 - * 단,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건물 소유는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생산자단체 또는 민간유통업체에 위탁 운영하여야 함
- 컨소시엄추진 :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 전문유통업체가 공동출자하여 건설 및 운영을 담당하는 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에 따라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건설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라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건설하고자 하는 자(생산자단체, 전문유통업체, 컨소시엄 등)
- 지원요건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제3항의 시설기준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건설하여야 함
 - 부지는 20,000㎡, 건물은 10,000㎡ 이상이어야 하며, 기타 필수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함
 -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시설기준 및 운영지침,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의 평가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운영 및 서비스개선을 위한 지시를 준수하여야 함

3. 지원대상

- 부지매입비 : 집배송장, 소매매장, 지원시설 등 설치용 부지

○ 시설비

- 집배송장

- 농산물(양곡, 청과, 축수산, 가공농산물) 집배송을 위한 용도로 사용
- 집배송장과 소매매장의 합계가 연면적의 60% 이상일 것

* 연면적계산 : 옥내주차장, 별도로 된 쓰레기처리시설·수위실, 예외적으로 인정한 시설 제외

- 소매매장

- 설치기준 : 소매매장 면적은 전체매장(집배송장+소매매장) 면적의 50% 이하일 것
- 계산방법 : 집배송장과 소매매장 면적은 저온저장고, 냉동·냉장창고, 소포장·가공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제 매장으로 제공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함

- 필수지원시설

- 종류 : 소포장·가공시설, 저온저장고, 냉동·냉장창고, 하역장 및 일반창고

- 기타 지원시설

- 종류 : 물류센터의 기능수행에 필수적인 사무실, 편의시설 및 기타공간
- 직원용 : 사무실, 전산실, 출하주 및 거래처상담실, 식당, 강당, 회의실, 강의실, 샤워실, 경비실, 기계실, 전기실 등
- 고객용 : 간이휴게실, 간이식당, 간이금융점포, 주차장 등
- 기타 : 품질관리실, 쓰레기 및 오·폐수처리시설, 용역업체사무실, 공용면적 등
- * 옥내주차장, 별도로 된 쓰레기 및 오폐수처리시설, 수위실, 예외적으로 인정한 시설은 기타 지원시설 면적 속에 포함되지 않음

○ 물류설비

- 지원대상 : 종합유통센터의 기능수행에 필수적인 기계 및 장비(종합유통센터운영지침의 [별표] 참조)

구 분	종 류	기 능
물류기계	지게차, 대차, 카고테이너, 파렛트	집배송장의 기계화·자동화
저온저장고	예냉시설	신선도유지 및 상품차별화
소포장·가공실	자동소분기, 삼면포장기, 수축포장기, 랩포장기, 파렛트랩핑기	부가가치창출 및 위생처리
축수산장비	자동라벨포장기, 현수시설, 절단기, 육절기, 고압세척기, 자외선소독기, 작업대	“
전산장비	주컴퓨터(서버), 팀 POS	전자수발주 시스템 구축

* 다만 업무용 PC, 업무용 집기류, 주방기구 등 업무지원 장비는 제외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수산물의 가공, 소포장, 보관, 현장판매 및 산지 물류체계 개선 선도 기능까지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설사업비 지원
- 사업계획 승인 전에 이루어진 사전 기성고
 - 사업승인 이후에는 대규모 부지구입이 어렵고, 인·허가, 설계 등 복잡한 사전 준비 등에 시일이 소요되는 계속사업으로 사업기간 축소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부담 우선 투입을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인정할 필요
 - 사전기성고 인정요건
 - ① 시점 : 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에 접수한 이후에 계약·착공 등이 이루어진 것
 - ② 내용 : 지원대상시설 및 장비로서 사업계획으로 승인된 것
 - ③ 사전보고 : 공사의 필요성 및 공사내역 등을 사전에 신고
 - 사후관리 및 목적 외 사용방지
 - ① 미선정시에는 잔여공사를 전액 자부담으로 건설하고 사전기성고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에 일체의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 ② 지원금액이 종합유통센터 사업비 상환에 소요되는 증명서 제출
- 설치기준을 초과한 면적은 자금지원 배제(사업비 정산대상이 아님)
 - 예) ① 집배송장 설치기준 미달면적(필수지원시설 및 기타 지원시설의 초과면적)
 - ② 소매매장 설치기준 초과면적 등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입지,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인정한 것은 자금지원에 포함
 - 예) 취급부류, 매장면적변경, 지자체의 정책적 추진시설, 특수한 물류설비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자금의 재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사업계정
- 지원 기준
 - ① 단독추진

유 형	'95~'96 신청지역	'99~'02	'03년이후
<공공유형> -지방자치단체 단독 소유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 업체에 위탁운영)	부지구입비 : 70%용자 건설비 : 70% 보조	총사업비의 70% 국고보조, 30% 지방비	총사업비의 50% 국고보조, 50%지방비
<생산자단체유형> -생산자단체가 소유 및 운영	“	부지구입비 : 50%용자 시설비 : 50%보조	부지구입비 : 50%용자 시설비 : 50%보조

* 용자조건 : 연리 4.0%(민간 5.0%), 5년거치 10년상환

② 컨소시엄추진

- 각 주체의 출자액을 그 주체의 총사업비로 하여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 전문유통업체가 단독 추진시의 지원비율을 각각 적용

○ 사업 의무량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제3항의 시설기준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건설

* 승인된 사업계획서에 의한 당해 년도 사업물량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대상에 따른 지원한도액은 설정하지 아니함

- 총사업비 규모와 국가재정계획에 따라 연차별 지원한도 결정

○ 총사업비가 500억원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기획재정부 주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 결정

- 사업추진여부, 추진시기와 최적사업규모 등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사업 예산을 내시(전년도 12월까지)

* 계속사업 진행을 위한 절차임

시·도(지자체)

- 사업추진주체는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제출된 건설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추진여부를 검토하여 자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예산 범위 안에서 예산안으로 제출

* 총사업비가 500억원이상이고 국가재정지원규모 300억원이상인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선행하여야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가 제출한 예산안을 검토하여 기획예산처에 통보

- 사업대상자 선정은 정부의 예산안 심의와 국회의 예산의결로 결정

시·도(지자체)

- 시·도 및 사업추진주체는 정부의 예산 심의와 현지실사 등에 필요한 증빙 서류 등을 제출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계속사업에 따른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사업 예산을 내시(전년도 12월까지)
- 신규 사업이 확정되면 해당 시·도에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하도록 조치
 - 세부사업추진계획은 연차별계획에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포함하여 작성
- 농림수산식품부는 제출한 세부사업추진계획을 검토하여 추진여부를 결정

시·도(지자체)

(1) 계속 사업

-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된 사업추진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농림수산식품부에 변경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

(2) 신규 사업

- 시·도는 2009년 1월 30일까지 세부사업추진계획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된 사업추진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농림수산식품부에 변경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확정된 예산에 대해 배정계획을 확정하여 시·도에 통보(예산배정계획)

시·도(지자체)

(1) 계속 사업

- 시·도는 2009년 1월 30일까지 2008년도 사업추진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첨부하여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개산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총사업비 예산 범위내에서 개산금 교부신청을 할 수 있음

(2) 신규 사업

- 시·도는 2009년 1월 30일까지 세부사업추진계획과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농림수산물식품부에 제출
 - 개선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총사업비 예산 범위내에서 개선금 교부신청을 할 수 있음

농림수산물식품부

- 시·도의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추진계획서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 배정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는 공사추진에 대한 지도·감독의 책임을 지고 건설추진상황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에게 보고

농림수산물식품부

- 점검대상 및 점검일정
 - 대상조직 : 국고보조금 및 융자금으로 건설 중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이상 (5월, 11월)
- 점검항목
 - 정부자금 집행상황 및 건설 사업 추진실적

《제 재》

- 사업의무량 미이행시 : 익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농가수취가격 제고율
 - 정의 : 대형유통업체 출하시 농가수취가격 평균 증감율
 - 측정방법 : 농수산물유통공사 ‘주요농산물유통실태’
- 농축산물 매출액 증가율
 - 정의 : 농축산물에 대한 매출액 증가율 비교
 - 측정방법 : 종합유통센터 결산자료 조사
- 측정방법 : (당해년 농축산물 매출액-전년 농축산물 매출액)/전년 농축산물 매출액 × 100

<만족도 조사>

- 종합유통센터의 운영실태, 도·소매 실적, 각종 지원자금 등에 대하여 현장 중심으로 관련 종사자들이 실제 느끼고 있는 만족도를 설문지, 인터넷·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매년 11월중 (10일간)
 - 조사대상 : 종합유통센터 종사자 100명
 - 조사방법 : 전화 또는 이메일을 활용하여 설문(지)조사

IV. 201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0년도 사업수요조사

- 기존 유통센터 내실화를 위해 현재 건설중인 양산유통센터만 ‘10년까지 건설완료하고, 신규건설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
- 울산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완공으로 농산물도매시장(32개소)과 종합유통센터 (16개소)등 농산물 도매유통망이 완비되어 추가건설의 필요성이 적음
 - ⇒ 정부의 자금 지원은 과잉투자로 인식될 수 있음
-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설 사업은 균특회계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요구가 있을 경우 타당성조사, 경제성분석, 인근 대형유통업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관련 부처에 의견 제출

2. 수요조사 방법 및 홍보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교육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설명

3. 201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9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년도 사업추진계획서

1. 사업의 목적

○

2. 사업개요

○

3. 자금조달 및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08까지	2009	2010이후
○총사업비 -국 고 -시·도비 -시·군·구비 -용 자 -자 부 담				
합 계				

4. 항목별 사업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08까지	2009	2010년이후
○부지매입비 ○건설비 -설계비 -감리비 -토목공사 -건축공사 -전기·통신공사 -기계설비공사 -소방공사 - 자재대금 ○물류장비 ○기 타				
합 계				

5. 세부사업내역

가. 부지매입비

○ 총 괄

(단위 : 백만원)

지목	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이후		
	필지수	면 적	사업비	필지수	면 적	사업비	필지수	면 적	사업비	필지수	면 적	사업비
계 답 전 · ·												

○ 당해연도 부지매입대상 필지현황

지 번	지 목	면 적	매 입 비	토지소유자

나. 건설비(당해연도)

(단위 : 백만원)

사업내역	물 량	단 가	사업비	비 고
○ 설계비				
○ 감리비				
○ 토목공사				
○ 건축공사				
○ 전기공사				
○ 통신공사				
○ 기계설비공사				
○ 소방공사				
○ 자재대금				
○ 기타 사업비				
합 계				

다. 물류장비(당해연도)

(단위 : 백만원)

장 비 명	수 량	단 가	사 업 비	비 고
합 계				

라. 기타 사업비(당해연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합 계				

마. 개설준비반 운영계획(당해연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운영주체 선정					
○ 조직 및 인원					
○ 운영준비사항					
- 출하처 개발					
- 거래처 개발					
- 전산시스템 개발					
- 운영시스템 개발					
- 기타 운영계획 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도농교류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식품부	도농교류과	과장 손건수 사무관 이형주	02-500-1808 02-500-1813
시·도	농업정책(농촌개발·농업기반)과	-	-
시·군	농업정책(농업지원·건설)과	-	-

I. 사업개요

1. 목 적

- 도시와 구별되는 농어촌 특유의 독특한 자연·문화·사회자원을 토대로 다양한 형태의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농촌주민과 도시민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레저·체험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도농교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어촌지역의 자연경관과 전통, 역사, 음식, 특산물 등의 문화·사회자원 등 지역 특성을 살린 테마공원 조성
- 자연경관, 전통문화 및 농촌다움을 유지·보전하는 친환경적인 개발
- 테마공원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위주로 지원
- 테마공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의 농·특산물 가공·판매, 숙박·음식 제공 등 볼거리, 살거리, 쉴거리, 먹거리 등이 조화되게 연계

2. 근거법령

-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 「농어촌정비법」 제24조(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의 원칙) 내지 제32조(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의 내용)
-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9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특유의 테마공원을 조성

- 2018년까지 85개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준공기준)
- '09년 기준 신규 10지구, 계속 12지구 총 22지구 추진
- * ('07년) 4지구, ('08년) 8지구, ('09년) 10지구 *4년차 사업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 기	측정방식
		'06	'07	'08		
▪ 사업추진율(% , 주지표)	25.8	-	4.7	14.1	2010. 2	(지구지정누계/전체목표지구)*100
▪ 재정투입율(% , 부지표)	7.8	-	0.7	3.3	2010. 2	(재정집행실적누계/투자목표)*100

* 테마공원조성사업은 '07년에 4년차 신규사업으로 입안·추진하고 있는 태동기로 준공지구가 없어 “사업추진율”을 주지표로 하고, “재정투입율”(국고기준)을 부지표로 채택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지구)

구 분	2006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합 계	-	3,140	11,248	19,094	391,518
국 비 보조	-	1,570	5,624	9,547	195,759
지방비 보조	-	1,570	5,624	9,547	195,759

II. 200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07년 착수한 경기 안성지구는 준공시까지 농협을 시행자로 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주체 : 시장·군수
 - 사업시행자는 기본(시행)계획수립, 사업시행 등을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농어촌정비법 제30조, 101조에 의해 한국농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시행할 수 있음
- * 민간사업자는 사업시행자(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레저·휴양시설 등 민자유치에 대하여 참여 가능

3. 지원대상

- 지원 대상지역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지역
- 지원 대상지구 : 농식품부장관이 사업대상지구로 선정한 지구
- 지원 대상시설 : 기반시설, 휴양·체험시설, 소득기반시설 등
 - 기반시설 : 생태공원, 경관시설, 진입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공중화장실 등

- 휴양·체험시설 : 야영장, 자동차캠핑장, 학습전시관, 산책로, 탐방로, 공연장 등
- 소득기반시설 : 농특산물판매장, 숙박시설, 음식점, 휴게소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자금은 도입예상시설 및 지원비율<붙임1>
- 특산물판매장, 유료체험·체육시설, 숙박시설, 음식점 등의 수익사업과 방문객 유치를 위한 홍보 등의 비용은 민자유치 또는 지방비를 추가로 투입하여 시행
- 기본계획은 사업시행자인 시장·군수가 자체자금(지방비)으로 추진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및 지원조건 : 균특회계,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의무량 : 지구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테마 적용이 가능하나, 특산물 판매장, 유료체험·체육시설, 숙박·음식점 등과 같은 수익사업 부문은 보조사업 의무량에서 제외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 : 50억원~100억원(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한도는 50억원으로 하되 지구여건 및 지자체 의지를 고려하여 100억원까지 지원
 - 대상지로 선정된 지구의 해당 시·군은 지방비를 확보하여 2009년 12월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0년도 실시설계 및 공사착공에 필요한 자금은 균특예산으로 확보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예비계획서 및 대상지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10월말)

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예비계획서중 사업성이 인정되는 지구는 시·도지사의 검토의견과 다음서류를 첨부하여 농식품부에게 사업시행을 건의하여야 함

- 시장·군수가 수립한 예비계획서
- 예비계획서에 대한 시·도지사의 검토의견(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음)
- 타 부문 투자계획 등 기타 필요사항

시장·군수

- 동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비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대상지역의 개요 : 위치도(1/50,000지형도 포함)
 - 일반현황(인구, 가구수, 지형, 기후 등) 자연, 토지이용, 인문사회, 생활기반(교통여건, 대상지역 접근체계 등 포함), 지역농업(주요재배작목, 지역특산물 등), 역사문화, 농촌관광, 다른 관련 계획 등 **현황자료**
 - 주요테마내용, 테마선정사유 및 육성계획
 - 테마공원조성계획도(1/25,000지형도 포함)
 - 자원분포현황, 자원평가 및 지역특성 분석
 - 총사업비, 공종별·연차별 투자계획, 민자유치계획(필요시)이 포함된 투자계획
 - 지역개발 사업 등 관련 사업과의 연계 추진방안 등
 - 사업타당성 분석
 - 해당 지역주민의 호응도 및 집객(지역주민 포함) 가능성
 - 다른 상·하위 관련계획 및 유사 공원계획과 중복 또는 배치여부
 - 사업대상지로서의 적정성(향후 유지관리 검토) 및 파급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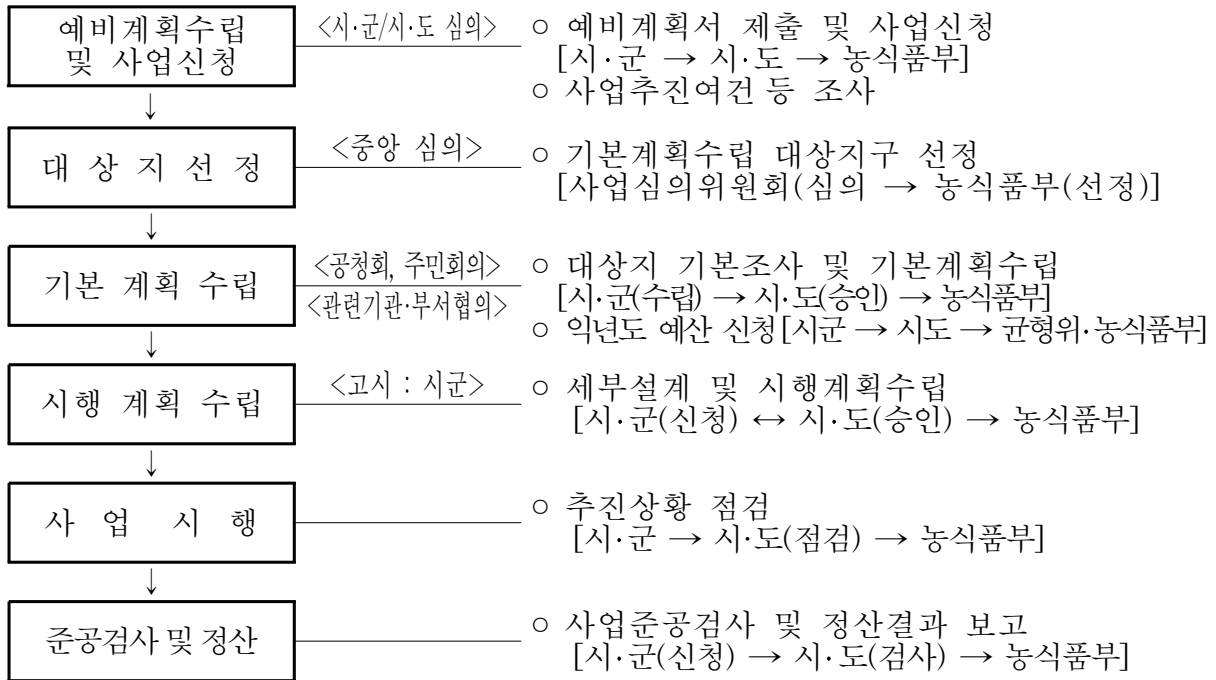
<대상지 선정요건>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농지법」, 「산림법」, 「산지관리법」, 「자연공원법」 등 타법에 의하여 개발에 제약요인이 없는 지역
- 지역주민, 자치단체의 개발의지가 높아 원활한 사업시행이 가능한 지역
-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접근성이 양호하며, 독특한 문화·생태환경을 갖추고 있어 특화된 테마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지역
- 농촌 고유의 어메니티를 보전·유지하기 유리하고, 향토문화나 지역축제의 계승·발전과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마을종합개발, 전원마을조성사업 등과 연계 추진이 용이하여 시너지 효과가 높을 뿐 아니라,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고,

도농교류 및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향후 지역 단위 축제·문화행사, 동호회 활동의 거점 등으로 지원·육성이 가능한 지역
- 농·축·수산물 등의 주산지, 명소 등으로 잘 알려져 테마조성이 용이한 지역

< 사업추진절차 >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식품부장관은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 대상지(기본계획수립)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
 - 대상지 선정이후 당해년도 12월말까지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지방비를 확보하지 않는 지구는 대상지 선정 취소

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수립 대상지 선정내용을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 기본계획수립 및 익년도 예산신청 등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시·도지사는 관련기관·부서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기본계획서 및 승인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농식품부에게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 신청하고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승인한 결과에 대해 지체 없이 고시
-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수립시 예비계획서를 토대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대상지구 현황, 지역특성 및 잠재력 분석
 - 공간별 토지이용계획, 지역자원(토지이용, 산업, 문화, 역사 등) 활용계획
 - 기반시설, 특화된 테마에 적합한 시설 및 경관 정비계획 등
 - 시설 운영 등 사후 운영관리 계획
 - 공종별(시설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사업비 조달계획(민자유치계획 포함)
 - 기타 관련사업 연계개발 계획 및 테마공원조성에 필요한 사항 등
- 기본계획(안) 수립은 한국농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 가능
-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안) 작성이 완료되면 공청회 등을 거쳐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의견이 타당할 경우 기본계획에 반영
- 기본조사비 및 세부설계비는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54조의 [별표5]에 의함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가. 세부계획수립

시장·군수(농협)

- 사업시행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변경승인 포함)을 받아야 함.
- 시행계획수립시 기본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변경하여야 함. 다만, 다음의 경미한 사항은 시장·군수가 변경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
 - 지구명칭의 변경 및 지구범위의 조정(당초 대상지구면적의 10% 범위내 증감)
 - 다른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시설의 변경
 - 기타 단순 착오 및 현지 지형사정으로 인한 시설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시장·군수는 시행계획이 승인되면 시행계획 내용을 고시
- 시행계획 수립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수립하거나,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의거 한국농촌공사 등에 위탁시행 할 수 있음
- 시행계획은 사업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수립(예산지원 계획에 맞추어 년차별(4년) 계획으로 작성)하되, 공종별로 분리하여 수립 가능

-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업대상지 선정 및 기본계획수립 등에 참여한 전문가의 자문의견을 4호 서식에 의해 수렴하여야 함

시장·도지사

- 시·도지사는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시장·군수에 통보(농식품부 보고)
 - 시행계획승인시 보고서식 1,4호(추후 별송)에 따라 농식품부에 30일 이내에 보고
 - 시행계획변경 승인시 보고서식 2호에 따라 농식품부에 30일 이내에 보고

<기타사항>

- 사업계획수립시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환경관련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시·도지사가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의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승인하여야 함.
- 사업계획 수립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국토이용계획 결정권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나.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시행

시장·군수(농협)

- 사업시행자는 매년도 확보된 사업비에 대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시행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함
 - 시공자 선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제규정(농협; 자체규정)에 의거 입찰을 실시하여야 함.
 - 용지매수 및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제반규정을 따름

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보고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사업시행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농식품부에 보고)
 - 시·도지사는 매년도 사업시행인가후 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가한 내용 및 월별 공정계획을 보고서식 3호(추후 별송)에 따라 농식품부에 보고

다.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

- 공사감리는 시장·군수 등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농어촌정비법」 제 101조에 의거 위탁할 수 있음
 - 공사감리자는 전문분야별로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배치상황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는 등 관련 규정(감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공사감리비는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54조의 [별표5]에 의함
- 사업시행자는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민원의 사전예방 등을 위해 지역주민을 명예감독원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음

라. 공사준공 등

- 사업시행자는 사업완료 농어촌정비법 제9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에 의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준공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보고서식 6호(추후 별송)에 따라 농식품부에 보고
- 위탁받아 사업을 시행한 경우, 위탁시행자는 준공(부분준공 포함)후 공공시설물과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를 시장·군수(농협)로 하여 등기하고, 시설물을 인계함
 - 시장·군수는 인수한 시설물(토지 포함)을 선량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과정에서 공사하자가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위탁시행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하자담보 책임 기간내에 하자보수가 완료되도록 하는 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

4. 자금배정단계

시장·군수(농협)

- 대상지구 총사업비중 국고는 지원한도(25~50억원) 이내로 하며,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지방비 및 민자유치를 통해 확보하여 추진토록 함
-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을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시행자와의 계약에 의거 수탁자가 보조사업비를 신청시 지급하여야 하며,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으로 일괄 집행할 수 있음

시·도지사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다음연도 소요사업비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신청하여야 함.(신규 착수지구는 기본계획수립지구로 선정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예산신청은 국고(25억원)기준시 1년차 1억원, 2년차 9억원, 3년차 20억원, 4년차 5억원비율로 신청하여 사업비 집행에 부담되지 않도록 하여야함

5. 이행점검단계

시장·군수(농협)

- 사업시행의 주체로서 예비계획수립 및 시행건의, 사업계획 수립, 예산 신청 (균특예산), 사업추진, 민간자본유치, 사후 유지관리까지 종합적으로 관리
- (시·군이 사업시행자가 아닐 경우) 사업시행자와 사업시행계획을 협의하여 지역특성에 부합된 특화된 테마공원이 조성되도록 유도하고 기본계획수립, 시행계획수립시 필요한 행정 지원
- 시장·군수는 준공 후 주요시설물의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한국농촌공사 등 시설관리 전문기관에 유지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유지관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소요경비를 위탁관리자에게 지불하여야 함

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시·군의 사업추진에 대한 지도·감독(자체점검 수시)하여야 하며, 매 분기말 기준 익월 10일 이내에 보고서식 5호(추후 별송)에 따라 지구별 추진상황을 농식품부에 보고
- 시·도지사는 당해연도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결산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연도말 검정 및 결산은 농식품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의하여 실시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전반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평가, 보완대책 추진

6. 성과측정단계

- 성과지표 측정 : 계속지구 및 신규지구에 대하여 계획대비 목표치 측정
- 만족도 조사 : 사업시행 지구의 수혜주민에 대한 사업인지도, 만족도 조사 및 평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종합평가 : 전년도 사업추진 지구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부진지구가 속한 시도에 대한 패널티 부과 등을 통해 경쟁촉진 및 사업성과 극대화 도모
- 사업성과에 대한 환류측면에서 매년 1월10일 전년도 사업추진성과(실적)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부진지구가 속한 시·도에 대한 패널티 부과(대상지 선정량 축소 등)등을 통해 경쟁촉진 및 사업성과 극대화 도모

IV. 2010년도 사업신청 및 기타사항

1. 2010년도 사업신청

- 2010년도 농어촌테마공원조성을 희망하는 시장·군수는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예비계획서를 동 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시·도에 '08.12.15까지 제출
- 시·도지사는 해당 시·군의 예비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09.1.15까지 농림수산식품부로 신청

2. 신청서 작성

- 예비계획서작성 및 사업신청 : 농식품부('08.11.4, 도농교류과-2728호)

3. 2010년 사업신청 및 선정안내

- 신청자격 및 절차 : 사업시행자(시·군) → 시·도지사 → 농림수산식품부
- 신청서 제출기관 : 시·도지사(시·도지사 → 농림수산식품부)
- 지원대상자 선정 : 농식품부는 시군의 예비계획서 및 시도지사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사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0년도 사업대상지를 선정('09.2월경)
 - 대상지로 선정된 '10년도 신규지구 '09년에 지방비를 확보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당년도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못할 경우, 선정 취소
- ※ '10년도 예산신청 : '10년도 신규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의 해당 시장·군수는 '09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면서 사업비(균특예산)를 신청(시·군 → 시·도 → 농식품부, 기획재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도입예상시설 및 지원비율

지원대상	세 부 내 용	지원기준
계획수립	세부설계비, 문화재 지표조사·시굴조사비, 사전환경성검토비, 환경영향평가비, 사전재해영향성검토비 등 ※ 기본조사비는 시·군 자체자금으로 부담	100%
기반시설	도로(진입도로, 공원내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 처리시설, 전기·통신시설, 공동이용시설(주차장, 화장실, 광장 등), 택지조성 등	100%
관리시설	관리사무소, 대피시설 등 공원 관리지원시설	100%
편의시설	과고라, 벤치, 안내판, 음수대, 전망대, 다목적 체육시설 등 ※ 유료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100%
테마·체험 시설 등 공공시설	경관(녹지)·공원조성, 식물원, 동물원, 전시관, 박물관, 산책로, (생태)탐방로, 온실, 어류 육성장, 학습관, 체험관, 농산물 가공체험, 곤충·야생관찰체험, 전통문화체험, 공예품 체험, 천체 관측소 등 ※ 유료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100%
부 지 매 입 비	도로, 상하수도 등 기초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분에만 제한적으로 허용	총보조금의 50%이내
위락시설	사격장, 수영장, 승마장, 궁도장, 썰매장, 낚시터, 놀이시설, 극기훈련장, 관광·유람시설, 찜질방, 피크닉장 등	민자유치 (지자체 자체자금)
판매시설	판매장, 기념품점, 매점 등	
음식·숙박시설 등 기타 사업	음식점, 카페, 펜션, 방갈로, 야영장, 가족호텔 등 기타 사업	

116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도농교류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도농교류과	과장 손건수 사무관 김홍철	02-500-1808 02-500-1815

I. 사업개요

1. 목 적

- 친환경 농업, 자연경관,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증진시키고, 농가의 소득 향상 및 농촌지역의 공동체를 형성·복원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2조(도시와농촌간의교류활성화 등)제1항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5조(도시와농산어촌의 교류 확대)제1항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제1항

3. 성과목표 및 지표

- 도시민의 여가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한 체험·휴양 공간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마을방문 유도 및 농촌관광매출액 증대 도모
 - 2017년까지 녹색농촌체험마을 850개소 조성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6	'07	'08		
▪ 방문객 수(천명)	2,713	1,343	1,579	2,359	12월말	· 지자체에서 마을을 대상으로 행정 조사
▪ 매출액(억원)	354	183	233	308	12월말	· 지자체에서 마을을 대상으로 행정 조사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사업량(마을)		850	190	84	90	78	408
사업비	계	255,200	38,000	16,700	18,100	15,600	166,800
	보 조	127,600	19,050	8,362	9,030	7,840	83,318
	용 자	-	-	-	-	-	-
	지방비	127,600	18,950	8,338	9,070	7,760	83,482
	자부담	-	-	-	-	-	-

II. 200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촌체험관광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농촌지역의 마을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함
 - 마을이란 농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동(洞)·리(里) 또는 같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리를 말함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상의 준농어촌지역의 마을은 해당되지 않음

2. 지원자격 및 요건

[대상마을 요건]

- 전통적인 농촌모습, 주택, 자연경관이 적절히 배치된 마을
- 접근이 용이하고 도시민의 방문, 숙박이 활발한 마을
- 친환경농업에 대한 실천의지가 강한 마을
- 최소 1년 이상의 준비기간을 가져 마을주민들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마을 대표자의 리더십 구축, 참여주민의 교육 등으로 사업추진 능력이 갖춰진 마을
- 농촌관광 추진을 위해 마을협정(별지서식2)을 체결한 단일 마을 또는 둘 이상의 마을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
 - ① 단일 마을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 전체 20호 이상으로 과반수 이상이 협정에 참여하여야 함
 - ② 둘 이상의 마을이 공동마을협정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 전체 30호 이상으로 각 마을 전체가구의 과반수 이상이 협정에 참여하여야 함
 - ※ 마을 내 비농가도 마을협정에 참여가 가능하나 참여가구의 50% 이상이 농가이어야 함
 - ※ 마을협정에서 정할 사항
 - 참여가구의 역할분담(농장·숙소 제공, 도시민 안내, 음식 등 서비스 제공), 시설이용료(산정기준), 공동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배분원칙 등
 - 주민 자체의 노력부담·장비사용, 마을 내 토지 이용 등에 관한 사항
 - ※ 마을협정 체결 시 여성참여비율이 20%이상이어야 함
- 마을심사를 거쳐 선정된 ‘관광자원 및 여건, 주민합의와 사업추진의지,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천가능성’ 등이 우수한 마을
- 또한 마을협정,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소요자금의 적정성이 입증된 마을
- 가급적 마을 공동 소유의 부지를 마련한 마을

3. 지원대상

- 농촌관광 추진을 위해 마을협정을 체결한 단일 마을 또는 둘 이상의 마을로서 위의 <대상마을 요건>을 갖춘 마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도시민 유치를 위해 필요한 마을 공동의 농촌체험기반시설, 마을경관 조성, 생활편의시설, 기타 S/W관련사업 등에 포괄적으로 사용 가능
 - 생활편의시설 : 마을안길 정비, 마을회관 개보수, 정자, 주차장 등
 - 체험기반시설 : 체험관, 체험농장, 승마장, 캠핑장 조성 등
 - * 폐교나 고가(古家)를 활용하여 마을공동의 체험기반시설로 활용할 경우 그 리모델링 및 활용 프로그램개발 등에도 사용가능
 - 마을경관조성 : 화단·꽃길, 흙담·돌담, 산책로 조성, 빈집 및 고가(古家) 정비 등
 - 기타 S/W관련사업 : 컨설팅, 설계비, 주민교육훈련, 각종 체험프로그램 개발, 팜플렛 제작 등

※ 단, 다음사항의 경우는 지원하지 아니함

- 본 지침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이외에 개인이나 개별 법인이 수익자가 되는 세부사업은 제외
- 토지·시설의 매입·임차비용, 관리·운영비용 등
 - : 다만, 개인이나 법인 등이 소유하는 창고·축사 등을 마을에서 공동 시설로 이용하고자 10년 이상 장기 임대할 경우 개조비용은 지원가능
- 농업생산기반을 포함한 농업용 시설, 농산물 가공 시설의 설치
 - : 다만, 농사체험을 위한 체험관찰코스 등 부대시설 설치지원 가능
- 추진 마을에 지역개발 및 생활여건개선사업(농촌마을종합개발·정주권개발·전원마을조성·농어촌생활용수사업 등) 등의 우선순위 부여

5. 사업기간 : 1년

6. 지원한도액 및 지원형태

- 지원금액 : 마을당 2억원 수준에서 지원(국고50%, 지방비 50%)
 - ※ 마을협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지방비 추가지원 가능
-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7. 2009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 합계	예산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용자		
계	78개 마을	15,600	7,840	7,840	-	7,760	-
○ 체험마을조성	78개 마을	15,600	7,840	7,840	-	7,760	-

8.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시·도지사)

나. 사업담당부서

- 농식품부 : 도농교류과(02-500-1815)
- 시·도 : 농업정책과, 농어업정책과, 농정유통과, 농정과
- 시·군 : 농정과

다.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라. 사업추진절차

- 사업시행지침 시달(농식품부) → 마을협정 체결 및 사업계획 수립(마을) → 대상지 신청(마을→시·군→시·도) → 대상마을 선정(시·도) → 사업시행 준비(마을, 시·군) → 사업시행계획 수립(마을) → 사업시행계획 승인(시·군, 시·도) → 사업시행 및 체험마을 운영(마을), 추진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시·군)
- ※ 마을 사업계획은 시장·군수 추천 및 마을 선정에 앞서 각각 시·군, 시·도와의 협의를 거쳐 수정계획 입안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대상마을 요건,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 및 사업지침을 수립하여 각 시·도에 시달(전년도 12월말)

시·도(지자체)

- 각 시·도에서는 농식품부에서 시달한 기본계획 및 사업지침을 시·군으로 통보(전년도 12월말)

시·군(지자체)

- 각 시·도에서는 통보된 기본계획 및 사업지침을 마을단위에 홍보하여 마을에서 사업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유도(1월초)
- 시장·군수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추진의향서를 제출한 마을에 대하여 내용의 사실여부를 반드시 현지실사를 통해 확인하고 신청마을의 마을협정 작성 및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
 - ※ 마을에서 시장·군수에게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첨부 제출
 - ※ 농협조합장, 읍·면·동장의 추천서와 협조·지원계획 첨부 가능

<마을 추천(2.28일까지) : 시장·군수 → 시·도지사>

- 시장·군수는 제출된 마을협정과 사업계획에 대해 타당성 검토를 거쳐 시·도에 추천
 - 세부사업별 법상 제약요인 검토
- 추천시 특히 마을협정의 실현가능성, 사업계획서상 제반 사업내용의 인허가 관계 등 적법성, 지침상 요건과의 부합 여부, 선정효과 등을 검토
 - 추천대상마을과 협의하여 사업계획 수정가능
 - * 농업기술센터 : 사업계획서 작성, 마을리더 및 참여농가에 대한 교육 등 지원
- 시장·군수는 추천대상마을에 대해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과 중앙부처의 사업·시책이나 시·도, 시·군이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사업·시책을 연계 지원하는 계획(행정지원계획)을 입안하여야 함

[의무포함사항]

- ① 마을담당 공무원 지정
- ② 체험마을 홈페이지 미구축시 홈페이지 구축 지원
- ③ 시·군 담당공무원 교육 및 마을 주민 교육방안
- ④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대한 관내 공공시설·유희시설 활용계획

[권장포함사항]

- ⑤ 녹색농촌체험마을에서의 문화예술행사, 체육행사 개최
- ⑥ 마을진입로 정비, 하수·오수처리시설 지원
- ⑦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정주권개발사업, 전원마을조성사업 등 사업과의 연계지원 등
- ⑧ 도시민 방문객 증가에 따른 쓰레기 수거 및 처리대책
- ⑨ 녹색농촌체험마을 방문객의 역사·문화유산 탐방시 전문해설가 지원계획

- 추천서류
 - 녹색농촌체험마을 선정 추천서 및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서
 - 마을협정과 사업계획서 등 첨부서류, 당해 시·군의 행정지원계획
 - 마을선정 심사시 참고할 수 있는 서류 등

마을단위

- 각 시·군에서는 통보된 기본계획 및 사업지침을 참고하여 사업신청 유무를 마을협의회를 개최하여 결정(1월초)
<사업신청(1.31일까지) : 마을 → 시장·군수>
-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선정받고자 하는 마을은 주민총회 또는 마을협정참여자들의 의결을 거쳐 녹색농촌체험마을 추진의향서(별지서식1), 마을협정(별지서식2)과 소정의 사업계획서(별지서식3)를 작성, 시장·군수에게 제출

2. 사업자 선정 단계

시·도(지자체)

<마을선정(4.30일까지) : 시·도지사>

- 선정절차 및 방법
 - 시·도지사는 각 시·군에서 제출한 추천서류를 마을심사위원회에 송부
 - 마을심사위원회는 (별지5서식)의 심사기준에 따라 마을협정과 사업계획, 농협 등의 협조·지원계획, 시·군의 행정지원계획 및 시·군 검토의견서에 대한 서면 검토 후 사업계획 설명회 및 현지실사를 거쳐 지원대상마을을 선정
 - ※ 기타 심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마을심사위원회가 정함
- 마을심사위원회 구성
 - 마을심사위원회는 시·도에 설치
 - 마을심사위원회 구성(10~15인)
 - 마을심사위원회 구성 시 여성전문가 참여비율 10%이상 의무화
- 마을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 마을심사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3. 심사결과 통보 및 보고

- 각 시·도지사는 선정결과를 시·군에 통보하고 농식품부에 보고

4.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마을단위

- 선정된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전문가의 컨설팅지원을 통해 시·군의 행정지원 계획이 반영된 사업추진계획 및 운영계획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추진계획은 당해연도 및 중장기계획으로 입안토록 권장

○ 사업시행 준비

- 선정된 녹색농촌체험마을에서는 체험마을 선진지 견학, 주민교육 등 마을 역량을 강화하여 사업시행 준비를 하여야 함

시·군(지자체)

- 시·군에서는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선정된 마을에서 제출한 사업추진계획 및 운영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 요청
 -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추진계획은 당해연도 및 중장기계획으로 입안토록 권장
- 마을 주민교육
 - 시·군에서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주민에 대한 소집교육 및 현장방문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역량을 강화토록 하여야 함

시·군(지자체)

- 시·도에서는 시·군에서는 제출한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추진계획 및 운영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시행 승인
- 시·도에서는 사업시행 승인내용을 농식품부에 보고
- 마을 주민교육
 - 시·도에서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주민에 대한 소집교육 및 현장방문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역량 강화에 노력 하여야 함

5.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량에 대한 분기별 자금배정계획을 수립하여 각 시·도의 분기별 자금 수요를 파악하여 분기별 자금배정

시·군(지자체)

- 시·도에서는 분기별 배정된 국비와 함께 지방비를 매칭하여 시·군에 자금배정
 - * 사업완료 후 검정·정산

시·군(지자체)

- 시·군에서는 분기별 배정된 자금(국비 및 지방비)을 사업계획서와 실제 사업진도를 대조·확인하여 소요액을 전액 지원하고 사업완료 후 검정·정산
- 자금지원시기와 각 시기별 지원금액은 사전에 마을과 협의하여 정함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도, 시·군)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체험마을로 선정된 마을이 사업시행 후 5년 동안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반기별로 점검
 -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사업추진을 매년 점검
- 시·도 및 시·군은 체험마을의 홍보와 도시민 유치를 적극 지원
- 시·도 및 시·군은 최초 사업시행 후 3년 이내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주민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
- 시·도 및 시·군은 평가를 통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컨설팅 지원 실시

자금관리주체(시·군)

- 시·군에서는 자금 집행시 사업추진에 따른 현장점검 및 증빙서류를 확인 후 사업진도에 맞게 보조금을 집행하고 분기별 자금집행 현황을 파악하는 등 자금을 정확하게 관리하여야 함

농림수산식품부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의 사업 추진상황을 매년 2회 이상 점검
 - 자금집행 및 사업추진현황, 사업추진과정상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방안으로사항 등
- 농촌체험마을의 홍보와 도시민 유치를 적극 지원
- 최초 사업시행 후 3년 이내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주민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
- 농촌체험마을 평가를 통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컨설팅 지원 실시

《사후평가》

농림수산식품부

- 농식품부장관은 시·도의 사업추진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반영
- 평가에는 사업대상지 선정과 관련 마을심사평가기준(별지 5서식)의 부합 여부,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기타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포함

시·군(지자체)

- 사업추진실적 점검 및 지도 철저
 -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수시 점검
 -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자금 지원 및 사업추진과정상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방안 마련

시·군(지자체)

- 사업추진실적 점검 및 지도 철저
 - 시장·군수는 소속공무원 1인을 현장지도 책임자로 선정하여 마을지원
 -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수시 점검
 -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자금 지원 및 사업추진과정상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방안 마련

《 제 재 》

사업관리주체(시·도, 시·군)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에 적합하지 않게 사용(집행)시
 - 자금지원 중단 및 기 지원자금 전액 회수
- 사업취소 및 자금회수 사유 :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따름

자금관리주체(시·군)

- 사업비 정산결과 집행실적이 저조한 경우(50%미만)
 - 당해연도 사업비 집행실적이 저조한 시·군이 다음연도 예산 신청시에는 사업량 일부 조정
- 사업취소 및 자금회수 사유 :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따름

7.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수입재원과 지출사항을 세부적으로 검정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기재
-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발행한 자필서명 세금계산서에 입각하여 사업비 검정·정산을 해야 하는 경우
 -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사업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행하는 경우
 - 체험마을 조성을 위한 자재구입, 전문가컨설팅, 설계비, 안전진단비용
- 농림사업시설 설치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중 환급받게 되는 금액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리스도입시설비는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정산

8. 기타사항

- 전문가 컨설팅 이외에 건물·구조물의 신축, 증축, 개보수, 용도전환시에는 한국농촌공사 등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을 받아야 함

○ 마을협정과 사업계획변경

- 녹색농촌체험마을 선정 후에도 당해 마을은 시장·군수를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마을협정과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업계획에 따른 자금집행은 사업비로 인정되지 아니함
- 사업계획서에서 제시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완료한 후에 중요한 마을협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사후 보고함

9. 농식품부에 대한 보고사항

- 마을 선정 직후 결과보고
-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계획서, 농협 등의 협조·지원계획, 행정지원계획,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계획서(별지4)를 제출 : 사업시작년도 1월 말
- 사업비 정산 보고 : 사업종료 익년 3. 20까지
- 사업추진실적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10. 성과측정단계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 행정조사를 통해 성과 측정
 -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에서는 녹색농촌체험마을을 대상으로 방문객 수 및 매출액을 조사하여 제출(다음년도1월15일까지)

11.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조성된지 5년이 경과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향후 발전방향 모색(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평가대상, 평가절차, 평가방법 등은 별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실시

《환 류》

- 사업평가 결과 일정수준 이상으로 평가된 마을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부여
 - 사무장채용지원, 보험가입지원, 마을홍보 등 적극 지원
 - * 해당 시·군에 대하여는 각종 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 사업평가 결과 일정수준 이하로 평가된 마을에 대하여는 패널티 부여
 - 사무장채용지원, 보험가입지원, 마을홍보 등 지원 제외
 - * 해당 시·군에 대하여는 각종 사업 신청시 패널티(감점) 부여

IV. 201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0년도 사업수요조사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촌마을에 사업홍보 및 수요조사 실시(1월초)

2. 201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코자 하는 마을의 주소지 관할 시·군

나. 신청자격 : '09년 대상마을요건과 동일

다. 사업기간 및 지원금액

- 사업기간 : 1년
- 지원금액 : 마을 당 20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라. 사업추진절차

- 사업추진의향서 및 마을협정과 사업계획서 제출(마을 → 시장·군수) : '09. 1. 31일까지
- 마을 추천(시장·군수 → 시·도지사) : '09. 2. 28일까지
- 마을 선정(시·도지사) : '09. 4. 30일까지
- 예산 신청(시·도지사 → 농식품부(검토) → 기획재정부)
- 선정된 마을대상으로 사전준비교육 등 실시(시·도, 시·군) : '09. 5~12월

마. 구비서류

- 녹색농촌체험마을 추진의향서, 녹색농촌체험마을 협정서,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바.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마을 심사 기준표에 따라 선정

사. 기타사항

- 정부시책방향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신청할 수 있음
- 지자체 농림업무 평가사항에 농촌관광 관련 분야 포함

[별지1]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추진의향서

1. 대상마을:	도	시군	읍면	리	부락
2. 마을 현황					
○ 가구수:	호	(농가: 호,	비농가: 호)		
○ 인구수:	명	(남: 명,	여: 명)		
○ 농지면적:	ha	(논: ha, 밭: ha,	과수원: ha, 초지 ha)		
○ 산림면적:	ha				
3. 주요 문화재:					
○ 유형 문화재:					
○ 무형문화재:					
4. 주요 관광 자원					
5. 내방 관광객 수: 명					
○ 민박 관광객 수: 명 , ○ 단순 내방객 수: 명					
6. 녹색농촌체험사업 참여 실태					
○ 사업 참여 가구 수: 호 (농가 호, 비농가 호)					
○ 사업 내용					
민박: 호, 농사체험농장: 호, 주말농장: 호					
농가 식당: 호, 농산물 판매장: 호, 기타: 호					
우리 마을은 마을 주민 총회의결로 녹색농촌체험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의하고 첨부된 내용과 같이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니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도 시군 읍면 리 부락					
이장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 1. 도 군 읍면 리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추진계획서 1부					
2. 마을총회 기록 1부 및 위원회 결의서 1부					

시·도 시·군 읍·면 리 부락

[별지2]

녹색농촌체험사업 마을협정서

시·도 시·군 읍면 리 마을

우리 마을 주민들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녹색농촌체험사업 취지에 적극 참여하여 깨끗하고, 아름답고, 살기좋은 마을을 주민 스스로 만들어 갈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과 체험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상호 이해 증진과 마을 발전에 기여하기로 결의합니다.

200 년 월 일

마을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첨부: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실시를 위한 주민 총회 결의 기록 1부

시장·군수 귀하

[별지3]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계획서

1. 녹색농촌체험사업을 위한 마을의 여건

- 가. 마을의 역사
- 나. 마을의 자연경관과 환경
- 다. 마을의 전통문화
 - 무형문화재
 - 유형문화재
- 라. 주요 관광자원 및 관광객 내방 현황
 - 산과 계곡
 - 강과 하천
 - 습지
 - 저수지
 - 해안과 해수욕장
 - 철새도래지, 천연기념물 등 생태 관광자원
 - 기타 관광자원
- 마. 친환경 농업 현황
- 바. 도·농교류 프로그램
- 사. 기타

2. 마을의 공동체 활동

- 영농회, 부녀회, 청년회, 4-H클럽, 노인회 등 마을 공동체 조직 여부와 주요 활동 내역
- 기타 마을의 전통적 사회조직 여부와 활동 내역

3. 주요 농산물 및 특산물

- 가. 주요 농산물
- 나. 주요 특산물

4. 녹색농촌체험사업 참여 계획

- 가. 기존의 관광농업 등 관광실태
 - 참여자
 - 주요 프로그램 내용
- 나. 신규 녹색농촌사업 참여 계획 및 주요 체험 프로그램 내용
 - 민박, 체험농장, 농가식당, 주말농장, 농산물 판매장, 식품가공공장, 떡공장 등을 연
계한 기타 사업의 운영 형태
 - 참여 가구 수

5. 녹색농촌체험사업 추진 준비계획 및 주민교육계획

- 사업계획수립 전 주민의 사업추진능력 구축을 위한 준비계획
- 사업추진단계별 주민교육계획
- 주민교육대상자별(마을 대표자, 참여주민, 사무장, 부녀자 등) 교육계획

6. 관광객 유치 계획

- 자연 내방
- 도·농교류사업 추진
- 홍보 등 기타

7.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을정비 계획

- 마을 조경, 마을 환경 정비 계획
- 마을 공공시설 정비 계획
- 친환경농업 육성 계획
- 기타 계획

8. 녹색농촌체험사업 추진에 따른 컨설턴트 확보 계획

- 대학, 연구기관, 컨설팅 전문가 등 활용계획

9. 녹색농촌체험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계획

- 민박, 체험농장, 농가식당, 농산물 판매장 등 참여자 별 자부담 및 지원 요청 내역

<녹색농촌체험마을 실시에 따른 투자 계획>

	자부담	보조	융자	계
민박시설 ○○○ ○○○ ○○○				
체험농장 ○○○ ○○○				
농가식당 ○○○ ○○○				
공공시설 - 주차장 - 마을도로 - 마을조경 -				
계				

※사업계획서는 마을실정에 맞게 작성

[별지4]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계획서

1. 체험마을 운영계획 요약
2. 기반시설별 이용 계획
3. 농수산물, 민예품, 전통음식, 토산품 등 지역특산품 연계판매 계획
4.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계획
5. 추가 참여농가가 있는 경우 참여농가 참여계획서
6. 구체적 운영계획

시기별	운영프로그램	프로그램 및 운영내용	비 고

* 운영프로그램으로 분기별 또는 월별로 구분, 대표적인 프로그램 기준으로 작성하
되,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나도록 한다.

예시) 1/4분기 : 눈썰매장 개장-마을내의 내방객에게 썰매장 제공

2/4분기 : 시골저녁 풍경감상하기- 농촌의 저녁 놀과 저녁 짓는 저녁 풍경 감상하기
피서지개장-원두막 제공, 마을에서 생산된 과일 등 직판
낙시대회 개최- 마을내의 양어장에서 낙시대회 유치
어린이 자연학습행사개최-유치원생을 유치하여 농사체험· 미꾸라지체험 등

3/4분기 : 과수따기행사-과수원개방, 과실을 직접 수확할 수 있도록 함
자매결연단체 유치-자매결연을 맺은 단체 유치, 특산품 등 판매행사 개최
버섯큰잔치-인근 마을에서 생산된 버섯 판매 또는 버섯요리 체험

4/4분기 : 김장담그기 대회-김장담그기 체험

마을심사평가기준

평가항목	배 점	평 가 기 준	
		평 점	내 용
	300		
① 관광자원 및 여건	100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적인 농촌모습의 보전, 경관주택의 보유여부 ○ 자연경관의 조성현황 및 생태보전이 잘 되어 있는지 여부 ○ 마을인근에 문화유적 등 관광자원과 스키장 등 레저시설이 발달되어 있는지 여부(문화유적 보유현황 및 연간 방문객수, 레저시설 연간 이용객수 현황) ○ 정주권개발사업 등 마을정비사업을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지 여부 ○ 지역고유축제, 지역특산물, 향토음식 등 보유여부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이 용이하고, 도시민의 방문, 숙박이 활발한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편의 다양화 여부 - 연간 관광객수 및 민박관련 숙박시설 수 고려
② 주민합의와 사업추진 의지	100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1년 이상 사업추진능력을 갖춘 마을인가 ○ 영농회, 부녀회, 청년회 등 자발적인 마을공동체가 조직되어있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지 여부, ○ 사업추진 준비 등 주민의 사업참여가 적극적인지 여부 ○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가 있고, 적극적인가 여부 ○ 마을 토지이용조감도 작성·제출여부
③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천가능성	100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의 부존자원의 활용 정도, 체험프로그램 등 활용계획, 마을기반시설의 운영계획 등 사업계획내용의 충실성 여부 ○ 마을조성사업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장의 관심도 ○ 마을내 고가(古家) 활용 여부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가 마을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지원계획 수립·추진 여부 ○ 사업계획서작성·교육·사후관리지원 등의 지원계획 수립·추진 여부

※ 심사의 세부기준은 마을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친환경농업에 대하여 가점 부여(30점범위내에서)**

- ① 친환경농산물 인증서를 기초로 산출
- ② 계산식 도입

- {참여농가 중 친환경실천농가 비율 × (전체 참여농가수 / 마을 전체가구수)} × 30(점)

예시) 마을전체 100가구 중 50가구가 사업에 참여시, 35농가가 친환경농업을 실천, 15가구는 실천하지 않는 경우 - 계산식 : {(35÷50) × (50÷100)} × 30(점) = 9(점)

★ **농촌지역개발 교육과정(농림수산식품부 주관) 수료자 참여시 가점 부여(15점범위내)**

- ① 교육수료증을 근거로 산출
- ② 배점기준
 - 리더쉽육성과정 수료자 2명 이상 : 6점
 - 사업주제별 특화과정 수료자 2명 이상(모듈별) : 4점 (* 국외견학 모듈 제외)
 - 동기화과정 수료자 4명 이상 : 3점
 - 공무원 특별과정 수료자 1명 이상(시·군단위) : 2점

★ **마을내 고가(古家)를 체험프로그램화하여 활용시 가점부여(10점범위내)**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지역개발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지역개발과	과장 고태수 사무관 김동권	02-500-1797 02-500-1803
한국농촌공사	전원마을사업처	처장 강상기	031-420-3124

I. 사업개요

1. 목 적

-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 조성을 지원하여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촌인구유지 및 지역 활성화 도모
 - 지역특성을 살린 전원마을을 조성하여 여유롭고 쾌적한 삶의 공간제공
 - 도시민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농촌지역 활성화
 - 지역 주민간 공동체 형성을 강화하여 마을의 지속적인 유지·발전 도모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6내지 제32조, 제91조, 제94조, 제96조 내지 제99조, 제101조, 제109조 및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29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13까지 전원마을 300개소를 조성하여 도시민 8,400가구 농촌유입 목표로 추진

성과지표	09 목표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6	'07	'08		
▪ 도시민 유치비율(% ,누계)	35	11	15	25	12월	도시민 가구수/도시민 유치 목표x100
▪ 도시민 유입인구(가구,누계)	2,940	924	1,260	2,100	12월	도시민 가구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합 계	67,138	28,829	12,840	30,253	260,740
국 고	53,710	23,063	10,272	21,177	182,518
지방비	13,428	5,766	2,568	9,076	78,222

II. 200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 시장·군수, 한국농촌공사사장

2. 지원자격 및 요건

(1) 지원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경기)과 광역시를 제외한 농촌의 읍·면지역(다만, 읍지역은 신활력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시·군에 속한 지역에 한함 : '09년 신규지구부터 적용) * 지원대상 읍지역이 포함된 신활력사업 대상 시·군(2기, 08~10)

(2) 지원대상 지역 의무사항

- 지원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보전관리·생산관리)내 취락지구(취락지구로 지정 또는 변경될 예정지역 포함)
 - 위의 지역과 그 주변의 농경지 등 토지 및 연안해면을 포함하는 지역
 - 농림지역이 포함되는 경우 전체 면적의 50%를 넘지 않도록 하며,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지역 해제 후 사업신청
 -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취락지구와 『자연공원법』 제18조 제1항 제4호의 공원밀집마을지구로 지정된 곳에 한함
 -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예정) 면적이 20,000m² 이상인 지역
- 일정 수준 이상 사업 준비가 완료된 지역
 - 입주자 주도형은 사업신청시 입주예정자로 확정된자가 20가구 이상이며, 입주예정자 또는 지방이전기업이 사업부지 면적 2/3이상의 권원을 확보한 지역
 - 공공기관 주도형은 사업부지 면적의 2/3이상, 토지소유자의 2/3이상에 해당하는 동의서를 확보한 지역
- 다른 법령에 의한 개발제한 요인이 없는 지역이거나 타 사업에 저촉되지 않는 지역으로서 전원마을조성사업 기본방향에 부합되는 지역
 -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령에 의한 개발제한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개발제한 요인을 사업신청 이전에 해소 하여야 함(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및 광역시지역과 토지소유자 또는 민간이 개발하여 일반에 분양하고자 하는 지역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지원 대상지역 권고사항

- 기존마을 주민의 사업시행에 대한 호응도가 크고, 기존 마을내 또는 기존 마을과 연결해서 주택신축 및 마을정비하여 도시민을 유입코자 하는 지역 우선 지원
- 도시민 또는 지방이전기업 임직원 50%이상 입주 등 농촌인구 유지를 위한 노력이 크며, 도시민이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의지가 큰 지역
 - * 도시민이란 사업신청일 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시의 지역 중 동 지역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로 함
- 타 사업과의 연계추진으로 시너지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
- 쾌적한 전원 공간 조성을 위해 건폐율은 30%이내, 단독주택의 세대별 주택용지는 호당 330㎡이상, 주택은 3층이하(높이 10m이하), 주변경관과 잘 어울리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태양열·태양광 등 신 재생 에너지 활용 등을 권고함
- 환경분야에 대한 입지여건 예비검토를 위해 지방(유역)환경청에 사전입지 상담하여 환경분야에 대한 사업추진상 제약요인이 없는 것으로 검토된 지역
-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우량농지로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가능한 한 제외
- 기타 토지이용상황, 토양 및 지질, 자연경관, 환경적·생태적 요소 및 재해 위험 요인 고려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 사용용도

- 전원마을조성 세부설계 등 계획수립 비용
 - 기본조사, 마을기반시설 설치 및 단지조성을 위한 세부설계, 문화재지표조사·시굴조사,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경관형성계획수립비 등 * '10년 신규지구부터 기본계획수립, 마을정비구역 지정소요비용은 국고지원대상제외
- 마을기반시설 사업비
 - 진입도로, 마을내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전기·통신시설(단지내 포함), 공동이용시설(공동주차장, 사면·공원·녹지포함)등, 인근 기존마을에 대한 기반시설 정비
- 공공성이 있는 사업
 - 전기·통신시설의 지중화 등 경관형성을 위한 사업, 도시민 유치 등을 위한 빈집 철거·정비 사업비
 -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회관 설치 및 마을운영·관리 프로그램 개발
 - 노인 또는 장애자를 위한 시설 설치

4.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균형발전특별회계 : 국고 70%, 지방비 30%(시행중지구 '09이후 잔사업비도 적용)
- 사업추진방식 : 마을의 규모, 부지확보 및 주택건축 시행주체에 따라 입주자 주도형, 공공기관주도형으로 구분

< 입주자 주도형 >

- 시·군 또는 농촌공사가 동호회, 지방이전기업 등 입주예정자가 사업부지를 확보하여 제안한 주택건축 등 사업계획을 조성계획에 반영, 추진하는 방식
 - 동호회 등 입주예정자는 시·군 또는 농촌공사가 수립한 전원마을조성 계획을 바탕으로 부지정리 및 주택건축 등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
 - 마을기반시설 설치 및 단지조성사업은 시·군 또는 농촌공사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범위와 비용의 부담 및 집행에 관해서는 시·군 또는 농촌공사와 입주자가 협의하여 결정
- 주택규모는 20호~49호, 다만, 주택을 일괄건축하고 시·군이 입주자가 제출한 사업의 안정성 담보계획(주택건축자금 관리, 시공사의 사업이행 보험가입등)을 검토하여 계획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0호이상도 가능(09신규지구부터 시행)

< 공공기관 주도형 >

- 시·군 또는 농촌공사가 전원마을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
 - 시·군 또는 농촌공사가 마을기반시설 설치 및 단지조성, 주택건축 및 분양·임대 등 사업을 일괄하여 시행

5.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마을의 규모(주택 신축 기준)에 따라 10~30억원 범위내에서 차등 지원
 - 20~29호 10억원 이내, 30~49호 15억원 이내, 50~74호 20억원 이내, 75~99호 25억원 이내, 100호 이상 30억원 이내
 - * 보조금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입주자가 부담
 - * 공공기관주도형 사업의 부지매입비는 지방비 또는 농촌공사 자체자금 등으로 부담
- 주택신축 융자금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지원
 - * '10년 이후의 신규지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절차 이행준비가 완료된 지구를 대상으로 예산 지원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제안 단계

입주예정자

- 입주예정자들은 Ⅱ.2의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추고 전원마을조성사업 제안서 (별표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사업을 제안할 수 있음
 - * 입주예정자 : 토지소유권 취득자, 토지매매계약 체결자, 전원마을조성 추진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입주 신청금을 납부한 자(서면에 의한 단순입주희망 신청자는 입주예정자로 분류하지 않고 입주희망자로 분류)
 - * 권원 확보 : 토지소유권 취득, 토지매매계약 체결(매매계약서에 토지가격과 계약금을 명시하여 공증을 받은 경우에 한함),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신탁
- 입주예정자는 사업계획 제안시에 「전원마을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를 구성·운영할 것을 권고함('09신규지구부터 의무적용)
 - 추진위원회는 법인으로 할 수 있으며 시·군 및 농촌공사 관계자는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음
- 추진위원회는 자치규약(정관)을 작성하여 아래의 활동을 할 수 있음
 - 사업추진 계획에 관한 의견수렴 - 사업계획 홍보 및 입주자 모집
 - 입주자가 시행하여야 할 부지정리, 주택건축(건축형식, 건축추진시기 등 포함), 조정, 마을가꾸기 협의 등 의사결정
 -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토지매입비, 공사비, 분할측량 및 등기정리 등 공부정리비, 주택건축비 등의 분담금 배분 및 정산 등 추진
 - 기타 전원마을조성 관련 부대사업의 추진

한국농촌공사

- 사업 제안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안할 수 있음
 - 사업동의서에는 토지매매가격 산정방법이 포함('09년 신규지구부터 의무적용)
 - 시·군 또는 농촌공사는 사업부지에 대한 권원을 기본계획수립 이전까지 2/3이상 확보함을 원칙으로 함(사업신청 시 입주예정자 모집 생략 가능)

시장·군수

- 제안하거나 제안한 지구에 대하여 사업취지와 지구선정 기준, 다른 법령 또는 상위계획, 타 사업 등에 의한 개발제한 요인이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함

- 입지여건의 적절성 조사, 사업제안요건 충족여부(입주예정자 모집, 토지권원 확보 등), 입주예정자가 실수요자인지 여부 등을 검토하며, 지역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청취 할 수 있음
 - * 1인이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19인이 토지소유권을 확보한 1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시장·군수는 매매계약서에 토지가격 명시 여부, 계약금 납입상황, 입주예정자가 실수요자인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신청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필요시 토지를 신탁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사업제안 지구에 대한 사업시행의 타당성·가능성 등 검토를 위해 인근 지역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2. 기본계획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 지정 단계

입주예정자

- 시장·군수의 기본계획 수립 작성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함
- 입주자 모집은 기본계획수립 이전까지 입주예정자모집계획의 80%이상, 사업시행계획수립 이전까지 100% 모집 완료함을 원칙으로 하며(다만, 계획된 주택 전체를 동시에 일괄하여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 모집계획 대비 80%이상 모집되면 사업시행계획 수립 가능), 사업부지에 대한 권원은 기본계획수립 이전까지 100% 확보 완료하여야 함

시장·군수

- 사업 제안서를 검토하여 지원자격 요건이 맞는 경우에는 시군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예정지를 선정하고 기본계획서를 작성함(시장·군수는 시·군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한 경우에는 심의 결과를 사업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마을기반시설 설치 및 단지조성 계획, 주택건축계획 등을 일괄하여 기본계획 수립할 것을 권고함('07년 신규지구부터는 의무적으로 적용)
 -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별표 2]와 같음
-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입주자의 토지전매방지, 주택건축 이행 담보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제시 할 것을 요구 할 수 있음
 -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장·군수와 입주자가 사업추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것을 권고함('08년 신규지구부터 의무적용)
- 시장·군수는 관계부처·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관련사업과 연계를 권장할 수 있음

- 소규모(마을)하수처리시설은 소규모하수도사업통합지침(환경부 생활하수과-3437(07.11.16), 하수종말 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하수도 시설 설치사업 업무처리 일반지침(환경부 생활하수과-81(07.1.24)호)에 부합되도록 계획함
- 시장·군수는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협의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이때 마을정비 구역 지정 준비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사업대상지를 신청(예산요구) 함(3.30까지)
 - 예)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도시관리계획업무 관련부서와 협의 등
- 시장군수는 사업제안자와 협의하여 기본계획수립에 필요한 기본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군이 부담하거나, 사업제안자에게 부담토록 할 수 있음
 - 제안자 비용부담으로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하고자 하는 용역업체의 적격성, 용역업무 범위 등에 대하여 사전협의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추진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업이 원활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함
 - '08년이전에 선정된 지구는 '09년 6월말까지 기본계획수립을 완료 해야 함
- 사업대상지 선정이후 2년 이내에 마을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대상지 선정이 취소된 것으로 봄. 자세한사항은 7.이행점검단계 제재 참조
- 시장·군수는 보조지원 사업지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사업대상지를 변경할 수 있음

도지사

- 기본계획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타당성이 있고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준비가 완료된 지구에 대하여 전원마을조성사업 세부검토서, 마을정비구역 지정승인 신청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사업대상지를 신청함
 - 사업대상지 신청에 앞서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 및 사업우선순위를 감안,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하여야 함
- 도지사는 마을정비구역지정 승인을 득하면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며, 시장·군수는 마을정비구역 지정내용을 고시함.(농어촌정비법 제29조 제3항 내지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토해양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사전환경성검토 협의)과 협의하여 마을정비구역지정을 승인함

3. 사업대상지 선정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예산지원 협의결과를 각 시·도에 통보하여, 사업준비를 하도록 할 수 있음. 예산이 확정되면 시·도별로 예산을 배정하며, 시·도는 시·군에 예산을 배정함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농촌공사

- 기본계획수립 및 마을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되면 세부설계 실시 및 사업시행 계획을 수립함 *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음
- 입주자 주도형 사업의 경우 입주자로 하여금 부지정리 및 주택계획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제출한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전원마을조성 시행계획을 수립함
 - 사업시행자는 기반시설 설치, 부지정리 및 주택건축 등의 계획에 대해 사업시행자와 입주자가 추진하거나 부담하여야 할 사업의 범위, 비용부담, 사업추진일정 및 공정계획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 마을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세부설계비는 보조지원할 수 있으며, 주택건축 설계비와 부지정리 및 주택건축 공사비는 입주자가 부담
- 공공기관 주도형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농어촌정비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기반시설설치 및 단지조성, 주택건축 및 분양·임대 등을 일괄하여 시행함
-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수립을 위한 업무를 농촌공사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음(농어촌정비법 제95조)
 - 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수질환경보전법등에 의거 민간전문업체에게 위탁 가능함
-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은 농어촌정비법 제29조 및 제92조 제3항의 규정과 하수도법 제11조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7조의2의 제1항에 의하여 마을정비구역 지정 후 또는 시행계획 승인 전에 시·도지사(시장)와 협의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신청함
(사업시행자가 농촌공사인 경우는 시장·군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계획 승인 신청)

입주예정자

- 입주자주도형의 경우 입주예정자는 부지정리 및 주택 건축계획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주택건축 등 시행계획에는 주택배치도, 주택건축 방법, 주택건축비, 주택건축 일정 및 공정계획을 포함함
 - 입주자가 주택건축계획 등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시 세부설계도서(주택 연면적 100㎡이하로서 신고에 의해 주택을 건축 하고자 하는 경우는 주택 평면도 및 배치도)을 포함할 것을 권고하며 경관계획을 준수하여 주택건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입주예정자가 주택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는 사업시행계획 승인 이전 또는 승인시 주택건축 인·허가를 완료할 것을 권고함
- 입주예정자가 50호이상인 추진위원회는 입주자가 부담하는 주택건축 자금의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에 제시한 세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계약시에는 시공사로 하여금 사업이행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① 시·군-입주자 추진위원회 공동 관리 ② 입주자 추진위원회-시공회사 공동관리
 - ③ 신탁회사가 관리

도지사

- 사업시행계획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승인하며, 사업시행자는 승인내용을 고시하고 이를 일반에게 열람시켜야 함
 - 도지사는 사업시행인가 시 주택건축계획 포함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하며, 용도지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함
 - ※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2008전원마을사업시행지침에 따름

4. 사업시행 및 자금배정 단계

가. 사업시행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농촌공사

- 사업시행자는 입주자주도형의 경우, 입주예정자의 2/3이상이 주택건축 인허가를 득하고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등 주택건축공사 준비를 완료한 이후에, 마을기반시설 공사를 착공 할 것을 권고함('08.7.1부터 사업시행계획 승인 되는 지구부터 의무적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예정자의 2/3이상이 사업시행계획 승인후 6개월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주택건축 인허가 및 공사착공 준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공공기관 주도형의 경우 사업시행계획 승인후 입주 계획가구수의 2/3이상 확보된 이후에 마을조성공사를 착공할 것을 권고함('09.7.1부터 사업시행 계획승인 되는 지구부터 의무적용)
 - 지방자치단체장은 승인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취소할수 있음
- ※ 기타 세부사업 시행, 주택건축, 조성용지 및 농촌주택의 분양등에 대하여는 농어촌 정비법령, 2008전원마을사업시행지침에 따름

나. 자금배정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농촌공사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예산 집행함
 - 사업시행자가 농촌공사사장이거나, 시장·군수가 농촌공사사장에게 사업을 위탁 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보조사업비(국고, 지방비)를 농촌공사에게 “민간에 대한 대행(보조) 사업비”등으로 일괄집행 할 수 있음
 - 사업 지연지구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동의서 징구 및 관련계획의 변경,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사업관리비 범위 내에서 실비로 계상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자금배정을 도지사에게 요청, 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에 요청,

- 도지사에게 자금교부, 도지사는 시·군에 교부 함
- 용자금 지원 :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침』에 따라 지원함

5. 사업 준공 단계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농촌공사

-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제99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권자(도지사)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함

시·도지사

-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준공검사 하도록 하고 결과를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입주예정자

- 입주자가 자부담으로 추진한 단지조성 및 주택건축 등에 관한 준공처리는 시·군에서 준공검사하여 처리함

6. 운영 및 유지관리 단계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농촌공사

- 공공·공용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 보조금을 투자하여 설치된 공공·공용시설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는 시장·군수가 담당함을 원칙으로 하며, 주민 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입주자와 시·군 간에 협의하여 입주자가 관리하게 할 수 있음
 - 입주자가 투자하여 설치된 공공·공용시설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는 입주자가 담당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공성이 큰 시설에 대하여는 시·군과 협의하여 시·군에 기부채납 등을 통하여 시·군에서 관리할 수 있음
 - 시·군에 기부채납하지 않는 단지내 도로, 공용시설 등은 입주자가 유지관리함
- 마을하수처리시설의 사후관리
 - 사업시행자는 마을하수도시설 설치가 완료(준공)되면 당해 시설물에 대하여

소유자를 시장·군수로 등기하고 시설물을 인계함

※ 기타 시설의 운영, 유지관리등에 대하여는 2008전원마을사업시행지침에 따름

7. 이행점검 단계

《 사후관리 》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농촌공사

- 사업시행자는 입주예정자가 사업추진과정(주택건축 공사기간 포함)에서 부동산 전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군에 알리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시장·군수

-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함
- 지역주민과 입주민간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민원발생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 함
- 전원마을조성 사업지구의 부동산투기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관찰하여야 함(시·군은 입주예정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토지를 전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가격이 과다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함)

도지사

- 사업추진상황, 자금집행상황 등을 연 3회 이상 현지점검
- 사업추진상황을 매 분기별 익월 1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
- 사업시행계획 승인, 시행계획 변경, 사업준공시에는 지체없이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함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사업추진상황 및 자금집행 실태를 점검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
- 사업추진상황 등 사후관리 및 점검 일정(반기별 1회(4~6월, 9~11월))
- 점검항목 : 사업추진 상황, 자금집행 상황, 토지권원 확보 상황, 입주자 모집 상황, 사업관련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 발굴 등

《 제재 》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

- 사업시행자, 입주예정자 등이 이 지침에서 규정한 내용이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시정하도록 계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어 시정토록 조치 하였음에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단계적으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농어촌 정비법 제102조 (허가취소 등) 참조)
 - 사업시행 중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마을정비구역 지정 취소, 보조금지원 중단, 사업 준공 유보
 - 사업시행 완료 후에 주택건축, 임대 및 분양, 입주자 선정 등 추진과정에서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주택건축 용자혜택 배제, 관련 인허가의 취소 등
- '08년이전에 선정된 지구는 '09년 6월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09년 신규 지구는 '09년 말까지 토지에 관한 권원을 확보(공공기관 주도형의 경우 부지면 적의 2/3이상)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사업대상지 선정이후 2년 이내에 마을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대상지 선정이 취소된 것으로 봄
 - 사업 대상지 선정시점은 당해지구에 대한 예산이 최초로 편성된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며, 대상지구를 변경한 경우의 사업대상지 선정시점은 최초 사업 대상 지구를 선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함
 - 다만,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업대상지 선정취소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예정자의 2/3 이상이 사업시행계획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주택건축 인허가 및 공사 준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기관 주도형의 경우 사업시행계획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입주계획 가구수의 2/3이상 확보가 어려워 공사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등은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09.7.1부터 시행계획 승인 되는 지구부터 의무 적용)
 - ※ 지방자치단체장은 제재내용 등을 입주예정자, 사업시행자 등에게 사전에 공지 하여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

-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입주예정자가 토지전매 계획을 사전에 시장·

군수에게 통지하지 않고 과도한 금액(매매대금 및 비용, 기준시가 상승률 등을 감안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매한 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지구지정 또는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8. 성과측정 단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매년 12월말기준으로 사업추진상황 점검결과를 토대로 성과 측정(* 성과평가 지표 : 목표 대비 도시민 유치 가구 비율)

9.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농식품부장관

- 농림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편성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시 반영
-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홍보 실시

IV. 201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

1. 2010년도 사업신청

- 시·군은 사업예정지에 대한 시·군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전원마을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09.3.30까지)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기본계획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있고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준비가 완료된 지구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09.4.30까지)사업대상지를 신청함
 - 사업신청지구가 여러 지구일 경우에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기재하여 신청함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상황을 고려하여 다음연도 예산을 요구하여야 함
 - 농식품부장관은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사업비 예산을 미반영할 수 있음
 - '09년부터 국고지원 보조율이 조정됨에 따라 시행중 지구의 '09년 이후 잔사업비는 조정된 보조율을 적용함(국고 70%, 지방비 30%)

2. 2010년도 지원대상 선정

- 2009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

[별표 제1호 서식]

전원마을조성사업 제안서									
사 업 명	○○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					추진방식			
지정대상 지역의 개요	위 치	○○도 ○○시·군 ○○읍·면 ○○리							
	면 적	m ² (토지 확보 m ² , %)							
	토 지 이 용 현황(m ²)	지목별	계	전	답	임야	대지	기타	
		면 적							
		비율(%)							
	용 도 지 역 현황(m ²)	용도별	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	
면 적									
사업개요	계획가구수	○○○가구(입주자 모집 실적 : 가구, %, 도시민 가구)							
	소요사업비	○○○백만원(국고 , 지방비)							
	사업시행자								
	주요 사업내용	- 진 입 로 : m (B= m) - 마을내도로 : m (B= m) - 상 수 원 : (필요수량 m ³ /일) - 상수관로 : m (B= m) - 하수관로 : m (B= m) - 오폐수처리장 : 개소(처리용량 m ³ /일) - 기타(커뮤니티센터 등) :							
	주택 건축계획	-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동시에 일괄 건축 : 가구 - 개인별 주택 건축 : 가구							
	사업추진 관련 기타 특이사항	- - -							
전원마을조성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 . 제안자(대표) : (인) ○ ○ 시 장(군수) 귀 하									
< 별첨 > ○ 전원마을조성사업 제안서(2008전원마을조성사업 지침 준용)									

[별표 2]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내용
개요	사업목적	
	추진배경	
	비전	마을이 추구하는 개념 및 비전 등
	계획의 범위	시간적, 공간적 범위 * 입주자 주도형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입주자간 사업의 범위, 비용부담, 사업추진일정 등을 명확히 구분
개발여건	지역현황 및 개발여건분석	위치, 생활권, 지형·지세, 기상, 인구, 가구, 주택현황, 토지이용, 경제, 도로·교통, 상하수도 등
	토지확보현황	편입용지조서, 토지 권원확보 현황
	입주예정자 현황	입주예정자 모집현황, 계획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검토	국토종합계획, 도 종합계획, 시·군 종합계획
기본구상	관련법규검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어촌정비법, 환경정책기본법, 전원마을조성사업시행지침, 도시계획시설기준 등
	기본목표 및 개발방향	농촌주민, 은퇴자, 출향민 등의 농촌정주 유도 자연친화적인 친환경 주거공간 확보
	계획지표 설정	계획대상지의 인구, 상수도 급수량, 오수량 등 전반적인 개발지표 및 수요 파악
	동선체계 구상	부지 및 지형여건에 맞는 동선체계 구상
부문별계획 부문별계획	토지이용계획	마을의 장기발전방향 제시, 합리적인 단지배치 및 토지이용계획, 지역 특성과 전통문화를 반영한 미래형 농촌마을의 모델 제시
	단지조성	단지계획의 기본방향, 토지이용계획, 정지토공계획, 택지분할배치 및 면적산출
	도로	도로구성의 기본방향 및 설계기준, 가로망 계획 및 구체적인 도로선형 계획 등 세부적인 도로계획
	상수도	기본방향 제시, 상수관로, 용량 및 배수지용량 산출
	하수도	오수관로계획, 오수처리 용량산출, 오수처리장 계획
	공동이용시설	다목적광장, 공동이용시설, 쉼터, 산책로, 체육시설 등
	전기통신	전력사용량 추정, 가로등계획, 통신시설계획
	주택계획	주택배치 기본방향, 주택건축 주체 및 건축일정, 주택건축 방법, 주택의 형태·규모·높이 등 제시 * 입주자 주도형의 경우는 입주자가 제출한 주택계획 등을 참고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주택건축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제시
경관계획	경관계획 기본방향, 경관형성을 위한 색채 가이드라인 제시, 지역별·요소별 색채계획(주택포함),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 높이 및 단지배치 등	
사업비	생활지원서비스	입주자를 위한 소득확보 프로그램 계획, 지역 생활 서비스 연계 방안 제시
	사업비의 조달계획	국고보조, 지방비, 입주자 부담
운영 관리 계획	사업의 시행기간	공정계획에 따른 시행기간
	공정계획	부문별 공정계획
	전원생활프로그램	교육·의료·문화·복지 프로그램, 기타
	경관계획실행방안	경관협정 및 입주자 협의서, 전원마을 경관조성 기준, 경관형성 시책 구상, 실행, 완성 등 단계별 실행계획 제시
법령 지침 등 미이행 시 제재 조치 사항 기 타	공동체 형성 방안	주민교류 프로그램 등
	일거리 창출 방안 등 지역발전 기여방안	소득사업 개발, 기존 지역의 소득사업에 자본출자 등
법령지침 등 미이행시 제재조치사항 기타	사업추진 지연 및 토지전매 행위 발생시 제재 조치방안 등 전원마을추진 관련 협약서, 회의내용, 설문조사, 부서 협의 내용 등	

별표 3]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내용
사업개요	사업목적	
	사업효과	
	사업시행기간	
	사업시행자	
	사업 위치	
	연차별 투자계획	
개발여건	지역현황 및 개발여건분석	위치, 생활권, 지형·지세, 기상, 인구, 가구, 주택현황, 토지이용, 경제, 도로·교통, 상하수도 등
	토지확보현황	편입용지조서, 토지 권원확보 현황
	입주자 현황	입주자 모집 현황, 공급자의 범위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검토	국토종합계획, 도 종합계획, 시·군 종합계획
	관련법규검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어촌정비법, 환경정책기본법, 전원마을조성사업시행지침, 도시계획시설기준 등
부문별 계획 및 세부설계도서	경관계획	경관계획 목표 및 방향설정, 경관계획 지표설정, 경관형성 이미지규제, 주택 및 건축물 색채계획, 높이, 배치계획, 마을환경 디자인
	토지이용계획	지역특성과 전통문화를 반영한 합리적인 단지배치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
	단지조성	단지계획의 기본방향, 토지이용계획, 정지토공계획, 택지분할배치 및 면적산출
	도 로	가로망 및 도로선형 등 세부적인 도로 설계도
	상 수 도	상수관로, 용량 및 배수지용량 산출 및 세부 설계도
	하 수 도	오수관로, 오수처리 용량산출, 오수처리장 세부 설계도, 오수처리장 관리에 관한 사항(오수처리비용 부담 포함)
	공동이용시설	다목적광장, 공동이용시설, 쉼터, 산책로, 체육시설 등 세부설계도
	전기통신	전력사용량 계산, 가로등, 전기요금 부담에 관한 사항, 통신시설 세부설계도
	주택 계획	주택건축주체, 주택건축방법, 주택건축일정, 주택배치도, 주택유형별 건축 세부 설계도, 주택 동수, 동별 개요 * 주택건축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생활지원서비스	입주자를 위한 소득확보 프로그램 계획, 지역 생활 서비스 연계 방안 제시
사업비	사업비의 조달계획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사업의 시행기간	공정계획에 따른 시행기간
	사업비 명세서	총사업비 및 공종별 사업비 명세서, 대지조성비, 주택건축비, 부대시설 설치비
	공정계획	부문별 공정계획
분양계획	분양시설물 내역	분양 범위, 분양가격
	분 양 방 법	분양공고, 분양대상자 자격, 분양시기·방법 및 조건, 분양신청절차 등
운영관리계획	전원생활프로그램	교육·의료·문화·복지 프로그램. 기타
	경관계획실행방안	경관협정 및 입주자 협의서, 전원마을 경관조성 기준, 경관형성시책구상, 실행, 완성 등 단계별 실행계획 제시
	공동체 형성 방안	주민교류 프로그램 등
	일거리 창출 방안 등 지역발전 기여방안	소득사업 개발, 기존 지역의 소득사업에 자본출자 등
법령·지침 등 미이행시 제재 조치사항	사업추진 지연 및 토지전매 행위 발생시 제재 조치방안 등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기타	공공시설물의 운영 및 유지관리, 마을하수처리시설, 도로, 공용시설 등 기부채납관련 처리방법 등.
	기타	전원마을추진 관련 협약서, 회의내용, 설문조사, 부서 협의 내용 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지역개발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지역개발과	과 장 고학수 사무관 김동권	02-500-1803 02-500-1806

I. 사업개요

1. 목 적

- 상대적으로 개발이 뒤떨어진 농촌 지역의 기초생활환경,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여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4조부터 제39조까지

3. 성과목표 및 지표

- '13년까지 1,157개면(구)을 대상으로 현 단계 사업 마무리
 - 1,205개면 중 도서면(53), 무인·무면사무소 면(10)을 제외한 1,142개면과 15개 광역시 준농어촌자치구를 대상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6	'07	'08		
▪ 사업시행면 수	550	507	519	551	2월	사업시행면 합산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합 계	692,257	402,032	447,460	449,905	2,078,666
보 조	572,218	305,464	313,222	314,934	1,455,066
지방비	120,039	96,568	134,238	134,971	623,600
○ 정주면	380,397	240,049	262,877		
- 보 조	353,918	192,073	184,014		
- 지방비	26,479	47,976	78,863		
○ 오지면	311,860	161,983	184,583		
- 보 조	218,300	113,391	129,208		
- 지방비	93,560	48,592	55,375		

- 주] 1. '08부터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지원
 2. '90~'04까지는 지방양여금으로 지원완료, '05년부터 균특회계로 지원

II. 2009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시·군, 구(광역시 중 15개 준농어촌자치구)

2. 지원자격 및 요건

- 전국 1,205개 면중 도서면(53), 무인/무면사무소 면(10)을 제외한 1,142개면과 15개 광역시 준농어촌자치구

3. 지원대상

- 마을기반정비 : 마을내·마을간도로, 상·하수도시설, 교량, 주차장, 등
- 농촌경관개선 : 세천정비, 수변공원화, 소공원, 담장정비(식생담조성 등), 빈집의 철거·정비, 체육공원 조성 등
- 문화복지시설 : 복지회관, 마을회관 등
 - 필요시 농산물유통, 작목반등 활용 및 주민정보화수준 향상 목적의 정보통신기반 시설을 회관내에 설치
- 환경보전시설 : 쓰레기처리시설, 마을하수처리시설 등
- 생산기반 및 소득확충사업 등 타부문에서 지원이 가능한 사업은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고 본 사업에서는 제외
- 폐지된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수립된 제3차 오지종합개발 5개년('05~'09) 계획에 따라 사업추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개발계획내의 사업 중에서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을 대상으로 지원
 -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비, 공사감리비 등 용역비 집행가능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형태 : 보조
- 보조율 : 국비 70%(균특회계), 지방비 30%
- 정주면은 완료면 위주로 지원
- 오지면은 제3차 오지종합개발 5개년 계획의 연도별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규모
 - 정주면 : 면당 30억원
 - 오지면 : 면당 평균 25억원(면에 따라 15~49억원)
- 지원방법 : 면단위별로 한도액내에서 2~5년내 완료 위주로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지자체에서 신청한 사업 대상면 검토 및 조정(예산확보 시)
 - 한도액 초과여부
 - 면별 나눠먹기식 분산투자를 방지하고 완료면 위주 선정
-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국비예산 확보

시·도

- 시·군, 구에서 신청한 사업대상면 검토 및 농림수산식품부 제출(예산신청 시)
 - 한도액 초과여부 검토
 - 면별 나눠먹기식 분산투자를 방지하고 완료면 위주 선정
- 시·도에 할당된 지방비 확보

시·군·구

- 지역개발전문가 및 지역주민이 참여한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면 선정(예산신청 시)
 - 한도액 및 제3차 오지종합개발 5개년계획의 계획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 완료면 위주로 선정하고 나눠먹기식 분산투자 방지
 - 지역개발전문가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

2. 개발계획수립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생활환경정비사업 개발계획 수립 지침 시달
- 시·도지사가 보고한 생활환경정비사업 개발계획 총괄관리

시·도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제출한 개발계획서와 단계별 추진계획이 중심마을에 집중투자 되도록 수립되었는지의 여부, 해당지역주민 및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쳤는지 등을 검토하고 조정하여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시·군·구

- 생활환경정비사업 개발계획 수립
 -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매 5년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농촌정주기반확충 2단계 및 제3차 오지종합개발 5개년('05~'09) 계획이 완료된 시·군·구는 시·군·구단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 시·군·구단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수립지침 별도시달 계획
 - 생산기반정비사업 및 소득확충사업은 연계사업으로 계획하고 기초생활환경정비 사업에 치중
 - * 제 3차 오지종합개발 5개년 계획 대상면은 동 계획에 따라 생산기반정비사업 및 소득확충사업 추진가능
 - 면별 나눠먹기식 분산투자 지양
- 계획수립절차
 - 면개발계획 수립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지역별 중·장기 개발방향과 지역주민의 개발수요 등을 조사하여 개발계획서(안) 작성
 - 면개발계획은 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1단계 추진계획은 지원사업비 범위내에서 중심마을 생활권(지역실정에 따라 3개내외)을 대상으로 계획수립
 - 시장·군수는 개발계획서(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 수립
 - 시장·군수, 구청장은 개발계획서(안)과 단계별 추진계획 사업시행 우선순위를 작성하여 해당지역주민 및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승인요청

- 시장·군수, 구청장은 시·도지사로부터 개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지역주민에게 열람
- 개발계획 수립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태양열·태양광 등 신 재생 에너지 활용계획, 지역의 문화전통, 상징적인 마을조성계획 등 마을기반정비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 확대
- 개발계획의 내용
 - 농촌생활환경정비의 중·장기 목표와 개발방향
 - 지역현황
 - 농촌 정주체계 정비계획
 - 중심마을 정비계획
 - 각 부문별 개발계획 : 생활환경, 산업기반, 편익·복지시설 등
 - 중·장기 투융자 계획 등(단계별 투융자계획)
 -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자원조사 대상항목 중 농촌생활환경정비분야
- 개발계획의 변경
 - 개발계획의 변경은 개발계획수립절차와 동일
 - 다만, 아래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시·군·구 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 구청장이 조정
 - 타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시설의 변경, 물가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변경
 - 사업시행기간의 변경과 지형사정으로 인한 시설의 근소한 위치 변경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세부계획수립》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시행계획을 종합관리
 - 실적관리 및 예산배정 계획 수립

시·도

- 시·도지사는 매년 정주권개발계획과의 관계, 개발계획서상의 단계별 추진 계획과의 관계, 별도의 재원확보가 가능한 타부문의 사업시행 여부, 중심마을

생활권에 대한 집중시행 여부 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시달하고 그 내용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시·군·구

- 사업시행계획 수립
 - 시장·군수, 구청장은 대상사업이 확정되면 당해년도 투자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
 - 필요시 사업착수전에 「면단위 정주권개발계획」(또는 제3차 오지종합개발 5개년 계획)을 보완 또는 변경 한 후 시행
 - * 보완/변경 계획 수립비용은 개발사업비에서 집행 가능
 - 농림수산 관련단체등이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규모(제3차 오지종합개발 5개년 계획 대상면은 동 계획금액, 그 외면은 30억원 범위)에 맞도록 총괄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에 맞추어 단위사업별 완공위주로 추진

《사업시행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추진상황 및 예산집행상황 모니터링
 - 반기별(6월 및 12월) 사업추진상황 모니터링, 현지 점검 및 사업추진상황 평가
- 자금배정계획에 따라 지자체 자금배정

시·도

- 사업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농림수산식품부 제출
- 자금배정계획에 따라 시·군, 구별 자금배정

시·군·구

- 사업시행
 - 사업시행은 당해년도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시행하며, 설계도서에 맞게 실시하여야 함
 - 사업시행시에는 관련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급수시설 : 수도법 , 먹는물관리법 등에 의거 관리
- 도로시설 : 「농어촌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행정자치부)」 및 「농림사업시행지침서(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 하수도정비 : 수밀성 하수도관 사용, 맨홀은 청소가 용이하도록 「마을하수도 업무편람(환경부)」에 의거 설치
- 소하천정비 : 「소하천실무지침서」의거 추진
- 군사보호구역 등 군부대시설과 관련 시 관할부대와 사전협의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친환경적 사업계획 수립
- 설계 단계에서부터 지형지물을 활용한 환경친화적 설계
-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관광기반 차원의 생태 환경 관리 등
- 사업추진시 획일적인 사업추진 지양,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자연환경 및 경관과 조화되는 환경친화적인 새로운 공법 적극 도입
- 정보통신기반시설은 지역실정에 맞도록 최소한의 비용으로 설치하되, 전문가의 자문을 들어 활용도, 사후비용부담, 편의성 등을 마을주민과 협의후 시행
- 농어촌 빈집의 철거·정비는 농촌경관개선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농어촌주택개량사업시행지침(빈집정비사업)에 따라 빈집 철거비(석면 등 방진시설설치 포함)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면당 지원액 범위내에서 지원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사시행과정중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전·후의 현장사진 등을 보관하여야 함

○ 사업계획 변경

- 사업선정시 년도별 세부사업계획의 임의변경 추진지양
- 사업시행자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을 시행과정에서 이를 취소하고, 새로운 사업 및 위치를 변경하고자할 경우에는 대상사업선정절차에 따라 해당지역주민 및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
 - ※ 면 개발계획에 없는 사업을 추가하거나 대체하는 변경을 할 경우에는 면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시·도지사로부터 득한 후 시행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후 추진
- 다음 경미한 사항은 시·군에서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자체적으로 변경 할 수 있다
 -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과 관련되는 다른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시설의 변경

- 사업시행기간의 변경과 지형사정으로 인한 시설의 경미한 위치변경
- 물가상승 등에 의한 사업비의 변경

○ 사업의 위탁

- 농어촌정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수산 관련단체 등에게 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음

○ 설계·감리등 사업비 요율

- 실시설계 및 공사감독, 사업관리를 위탁할 경우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49조 (별표5)를 준용
-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경우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49조 (별표5)의 사업관리비 요율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경비(공사감독추진 출장비, 소모품비등)를 실비로 계상할 수 있음

○ 용지매수 및 보상

- 용지매수 및 보상업무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수탁시행자가 담당
- 공공시설에 대한 시설용지의 확보는 매수·보상을 원칙으로 하며, 주민편익시설의 경우 주민들이 시설용지를 부담할 수 있음
- 사업시행에 필요한 용지확보 및 보상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법률』의 규정에 따름

○ 사후관리

-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수탁시행자)은 용지매수보상, 공사발주 및 재산관리(등기수속 등)에 철저를 기하고 시설물의 관리자를 지정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의 반영, 시설물관리대장 및 시설물관리요령 작성등을 하여야 함
- 공사실명제
 - 주요시설물(도로, 교량, 공동이용시설등)에는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39조제4항에 의거 준공전(공사중)·준공 후 사업 안내문을 표시하여야 함

○ 지역개발사업 등과의 연계추진

-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역개발 시책사업 등과 연계추진도록 함

- 타부문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은 본 사업에서 제외하고, 단위 지역 개발사업의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은 연계추진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자금배정계획 수립 및 배정
 - 시·도별 자금배정계획을 수립하여 배정

시·도

- 시·군, 구별 국비 및 지방비(도분) 배정

시·군·구

- 예산집행계획 수립 및 집행
- 지방비(시·군 분) 확보
- 국비 및 지방비(도 분) 신청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모니터링》

농림수산식품부

- 반기별 사업추진상황 취합·정리
 - 반기별(6월 및 12월) 추진상황을 익월 15일까지 취합·정리
- 반기별 현장 확인·점검
 - 사업추진이 부진한 시·군 사업 추진독려
 - 사업추진 상 애로사항 파악 및 대책 마련
- 익년 2월말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시·도

- 반기별로 시군별 면(구)별 사업추진상황 취합·정리
 - 반기별(6월 및 12월) 추진상황을 익월 10일까지 취합·정리 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현장 확인·점검(수시)

- 사업추진이 부진한 시·군, 구 사업 추진독려
- 사업추진 상 애로사항 파악 및 대책 마련
- 농림수산식품부 현장·확인 점검 협조
- 익년 1월말 자체평가보고서에 대한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등을 거쳐 재평가

시·군·구

- 반기별(6월 및 12월) 사업추진상황 점검 결과서 작성 및 시·도지사에게 제출(반기 말일까지)
- 사업추진상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파악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한 후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
- 연말(12월)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제재》

시·도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법령을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 받았을 경우
 - 사업취소, 자금회수 명령을 하고 조치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시·군·구

- 시·도로부터 사업취소, 자금회수 명령 등을 받았을 경우 지체없이 조치하고 시·도에 보고

6. 성과측정단계

- 지방자치단체 사업평가계획에 따라 평가결과를 토대로 성과 측정
 - * 성과평가 지표 : 사업시행면 수
 - * 성과지표 산출시기 및 측정방식 : 매년 2월, 사업시행면 수 합산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농림수산식품부

- 지방자치단체 사업평가계획 수립, 총괄정리 및 지역개발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지 확인 평가

-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배정 및 우수공무원 포상계획 수립

시·도

- 시·도지사는 대상사업 선정부터 사업시행과정에 대해 시·군별로 자체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아 현지확인 등을 거쳐 검토한 후 검토결과 및 평가보고서 2부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시·군·구

- 시·군, 구는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
- 평가 시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사업계획의 적정성
 - 대상면 및 사업내역 선정의 적정성, 시행계획승인 시기, 심의기구 구성 및 심의절차 이행 등
 -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
 - 국비 및 지방비확보, 조직정비, 기관장의 관심도 등
 -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 상황
 -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 실적, 계획변경 시기, 사업추진상황 보고 등
 - 사업추진 성과
 - 성과지표 수립 및 달성 정도, 주민만족도 등
 - 사업홍보추진상황
 - 사업홍보 계획 및 홍보실적, 부정보도에 대한 대응 등

《환 류》

-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시·군·구에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09년 사업추진에 환류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
 - 우수 시·군, 구에 대하여 인센티브 사업비 배정 및 정부포상 실시
 - '09 인센티브 예산 12,300백만원 지원
 - ※ 제주특별자치도는 계정 구분상 자체평가 실시
 - 정부포상은 포상규모, 훈격 등 별도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IV. 201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0년도 사업수요조사

- '10년 예산편성 시 제출
 - 시장·군수, 구청장 → 시·도지사 (2009. 3.28까지)
 - 시·도지사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2009. 4.31까지)
 -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예산요구시 시·군별 세부 추진계획 제출

2. 201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9년 12.31일까지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
- 시·도지사가 시·군, 구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을 승인함으로써 지원대상자 선정완료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지역개발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지역개발과	과장 고태수 사무관 이행우	02-500-1797 02-500-1805

I. 사업개요

1. 목적

-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농어촌지역 마을에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 다목적 용수를 공급하여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향상에 기여
 - * 농어촌지역 :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으로써 읍·면을 포함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 3, 7

3. 성과목표 및 지표

- '12년까지 7,060개 마을에 농촌 농업생활용수 공급시설을 설치하여 일반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마을에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 다목적 용수를 공급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6	'07	'08		
▪ 상수도 보급 기여율	24.5%	22.9	23.5	24.1	익년 2월	누계수혜인원/면지역 총인구
▪ 수질검사율	98.0%	97.4	98.0	98.0	익년 2월	수질검사 시설수/ 가동중인 마을상수도 시설수

* 면지역 인구는 2005년 인구총조사를 기준으로 함(4,781,138명)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94~2006	2007	2008	2009	2010 이후	
사업량(개소)	7,060	5,364	252	226	216	1,002	
사업비	계	1,226,340	887,495	42,727	38,940	36,738	220,440
	국고	767,595	496,829	34,151	30,872	29,391	176,352
	지방비	458,745	390,666	8,576	8,068	7,347	44,088

※ 2003까지 : 국고 50%, 지방교부금 50%, '04부터 : 국고 80%, 지방비 20%

II. 200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시행주체 : 시장, 군수

2. 지원자격 및 요건

- 20호 이상 농어촌지역 마을 중 우물, 하천수 등 자연수 또는 마을(간이)상 수도를 이용하는 마을로서 수량이 부족하거나 수질이 오염된 마을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수원공 개발
 - 지하수조사·개발 : 지질조사, 물리탐사, 시추조사(오염방지 그라우팅 포함), 영향조사, 착정, 우물자재설치, 우물소독, 수질검사 등
 - 암반관정 준공 전 확인검사
 - 수원공시설 : 수중모터펌프, 양수장옥, 전기시설
- 이용시설 : 송·배수관, 수조(물탱크), 정수시설, 계량기, 소화전 등
- ※ 농가별 내부배관시설은 수혜자 부담(수도법 제 38조)

4.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국고보조 80%, 지방비 20%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1지구당 평균 170백만원
 - 수원공개발(지하수조사 포함)과 이용시설 설치 및 폐공처리비가 포함된 것으로 시·도지사가 지역여건(관정심도, 마을인구 등)에 따라 조정 지원

III.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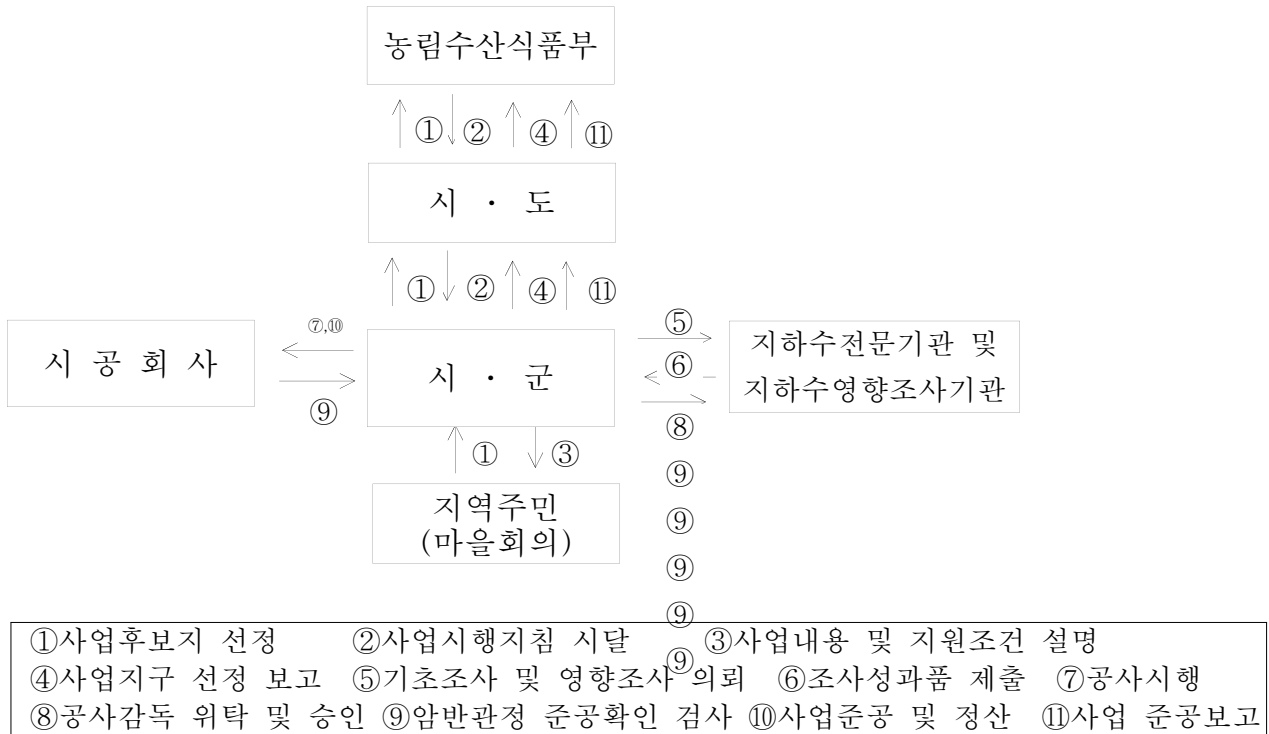
(1) 선정절차

- 사업희망마을(신청) → 면 → 시·군(예정지 선정) → 시·도(확정)
 - ※ 시군에서 수혜대상자의 의견수렴(마을회의) 후 사업예정지 선정
 - 생활용수 : 마을규모, 전기료부담 가능호수(호, 인) 및 인구
 - 농업용수 : 공급면적(논, 밭 구분), 필요시 축산용수 등 추가
 - 유지관리조직 구성가능성 및 대표자 선정
 -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신청서(별지 1호 서식) 제출

(2) 사업시행순서

- 사업지구선정 → 사업시행인가 → 공사계약 → 지하수조사 → 지하수개발(우물) → 암반관정 준공 전 확인검사 → 수원공시설(수중모터펌프, 전기시설, 압상관) → 이용시설 → 송수관(수조 및 배수관시설) → 사업준공 → 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 급수시설 등록 → 시설유지관리

(3) 사업시행 체계도



2. 사업자(대상지) 선정단계

(1) 선정기준 (사업지구 적정성 검토)

- 일반 상수도계획수립 또는 수립예정지는 중복개발방지를 위하여 제외 (상수도부서와 협의하고 중복이 안 된다는 확인을 받음)
- 댐 수몰 예정지 또는 공해로 마을이전을 해야 하는 지역은 제외
- 우물, 샘 등 자연수 이용마을이라도 수량이 풍부하고 수질오염이 안 된 지역은 제외
- 주민의견 수렴 시 호응도가 높아 농가부담 내부배관시설을 설치하고, 자체 유지관리조직을 구성하며, 전기료 등 관리비용을 부담하여 시설물 활용이 가능한 지역
- 장기적으로 지하수 수량 및 수질의 변화가 적은지역을 개발하도록 주변개발 지역을 검토하여 지하수부존 및 수질이 적합한 지역 선정(섬, 해안, 간척지, 특수지질지역은 염분함유, 수량부족에 유의)
- 관정개발지구 선정시에는 농촌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수자원관리사업 성과(농촌지하수넷, <http://www.groundwater.or.kr>)를 활용하여 사업대상지구 선정

(2) 지구선정 우선순위 (선정기준에 적합한 지역중)

- 시·도별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추진계획 지구(농촌지역개발과-1031호 : '08.6.2)
- 상수도부서와 협의하여 간이급수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마을 중 수질이나, 수량이 부족하여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역

- 수혜가구 및 급수인구가 많은 마을을 우선
- 제한급수지역등 상습적으로 식수가 부족하거나 수질이 오염되어 시급한 개발이 요구되는 지역
-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등 다목적으로 이용 가능한 마을
- 주민호응도가 매우 높고 개발 후 시설을 활용,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마을
- 기존의 생활용수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마을
- 농촌정주기반확충, 농촌관광 등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마을

(3) 사업지구 확정 (시·도)

- 시·도지사는 시·군의 지구선정이 선정기준(상수도계획과 중복여부 및 개발 후 이용저조 예측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상주인구에 따라 시설규모가 적정할 경우 사업시행지구를 확정
- 시설 완공 후 이용이 저조하거나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유지관리조직 구성 및 운영이 미진한 마을이 있는 시·군에 대하여는 전년대비 지원 사업량 축소방안 강구 (역 인센티브제)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1)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 사업시행인가 :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시행계획수립 시 농어촌정비법 제9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상수도 관련부서(도의 수도과 및 당해 시·군 수도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수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마을상수도 인가를 의제 처리
- 사업시행인가시에는 마을회의에 따른 공급대상자 및 수혜농지와, 개발후 시설관리운영계획(주민자체 유지관리조직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사항)을 첨부함
- 공사발주 : 시장·군수

(2) 공정계획

- 수 립 자 : 시장·군수
- 수립방법 : 당해연도 예산규모를 감안 지하수조사 및 개발(지하수영향조사 포함), 수원공시설 및 이용시설로 공종을 구분 수립 (별지 제3호 서식)
 - 사업시행자는 공사 진척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시행상의 문제점을 해소함

(3) 시행계획변경

- 현지여건상 계획보완을 요하는 경우는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예산범위내에서 변경하고 결과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함. 다만, 사업지구를 변경할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승인하고 그 결과(변경사유 명시)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4) 용지매수 및 보상

-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며 실거래 등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적정 비용이 산정되도록 하고 농작물보상 등은 용지매수 및 공사시기를 조정하여 원칙적으로 피함.

(5) 조사·설계 및 시공

(가) 지하수조사·개발

- 지하수조사는 일반적으로 답사 → 물리탐사 → 착정위치선정 → 시추(케이싱 설치 및 그라우팅) → 양수시험 및 간이수질검사 → 검층 (필요시) 순으로 하고 시추 결과, 성공공인 경우 확공하고 실패공일 경우 폐공처리함.

※ 시추조사는 적정심도까지 1공을 시행 후, 실패시는 1공을 추가시추

- 시장·군수는 지하수 부존조사가 안된 지역에 대하여는 지질조사, 원격탐사, 물리탐사, 시추조사 등 지하수조사를 하여야 하며, 지하수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지하수조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음. 다만, 시·도지사는 지하수보존관리를 위하여 지하수계 조사자료가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국지적인 조사보다 광역적인 측면에서 조사가 되도록 지하수전문기관(한국농촌공사 등)에 과업을 지시하여 지하수개발 조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조사분야중 시추조사는 지하수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을 등록한 업체도 참여하게 할 수 있음.
- 또한, 지하수개발로 영향권내 지하수의 수량을 현저하게 감소시키거나,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지하수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지하수조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지하수개발시에는 지하수법 제7조 내지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시공시는 지하수법시행령 제25조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 오염방지 그라우팅 등 지하수의 보전조치를 하여야 함.

※ 암반관정에서의 케이싱과 오염방지그라우팅 시공

- 지하수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케이싱 관입 깊이는 견고한 암반층까지로 하며, 일반적으로 암반선 이하 1m 이상의 깊이까지 그라우팅을 실시
- 그라우팅은 지표의 오염수 유입방지를 위해 미고결층과 암반 접촉부 안정을 주목적으로 함
- 그라우팅을 한 후 주입재가 소요의 강도로 굳을때 까지 암반층에 충격을 주는 보링작업을 48시간 이내에는 하지 아니함.

- 그라우팅시에는 사업시행자, 공사감독원, 이장 등 마을주민을 입회시켜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을 필히 확인하고, 입회자 대표의 확인서 작성·비치
- 지하수(수자원)의 개발은 지역에 필요한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목표로 하고 생활용수공급기준은 1인당 1일 300~350ℓ(특별한 경우 250~400ℓ)로 하며 농업용수는 지하수부존량과 가뭄피해 농지를 고려하여 정하고 필요시 축산용수나 농산물 세척·가공용수도 공급 가능
- 지하수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대수층이 발달한 곳에 관정을 시설하며, 일반적으로 적정양수량은 1일 100톤 이상, 관정(우물자재)직경은 20cm로 함. 이때, 적정양수량 산정을 위한 단계양수시험(3~4 단계)은 48시간 이상 연속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 ※ 일반적인 우물기준심도는 150~200m로 적정양수량 확보심도까지 굴착하고, 산간, 해안, 도서지역 등 특수지역은 시·도지사가 조정함
- 마을규모(상주인구)가 적고 농업용수 수요가 적으나, 용수원확보가 어려운 지역으로서 대수층이 발달되지 않아 지하수 부존량이 적어서 지하수개발 가능량이 1일 100톤 이하인 경우 상주인구 1인당 1일 350ℓ의 생활용수를 상시 공급할 수 있으면, 폐공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음.
 - 이때 지하수 수량감소 및 수질악화 예방을 위하여 계획양수량은 단계양수시험량의 50%(안전율 2.0배)로 낮추고, 양수량이 적으면 관정직경을 축소하여 15cm로 할 수 있음.
 - 다만, 해수침입 영향을 받는 도서 및 유역이 작은 반도나 해안지역과 상습제한급수지역 등은 공급기준을 1인당 1일 250ℓ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음.
- 대수층이 발달되지 않은 지역(개발가능량 1일 100톤 이하)에서 시추공의 성공여부 판단은 적어도 그 지역의 선구조도, 3지점의 물리탐사(쌍극자 및 수직탐사) 자료와 당해 시추공 자료(필요시 과거 시추실패공 자료 포함)를 시공회사로부터 제출 받아 도 및 시·군 담당공무원, 농업용 지하수 시설물관리지원단(한국농촌공사) 등 3인이 심의하여 합의로 판단할 수 있음.
- 우물의 확공은 안정수위 이하 심도까지 적절하게 계획·시공하며, 확공후에는 공내청소(에어써징)를 하고 우물자재 설치후 공내소독을 실시하며 이때 공사감독자가 반드시 입회하고, 수질검사용 원수채취를 확인한다.
- 우물을 완공한후에는 지하수(원수)를 채취,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전항목검사를 실시함.
 - 검사결과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관정시설을 폐쇄하거나 농업용수 등으로 전환하여 이용토록 하고, 대체시설을 추진

- 시장·군수는 수원공에 대한 준공검사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계획에 계상하여 수원공 개발과 별도로 집행하여야 한다.
 - 검사항목 : 공내TV검층, 양수시험, 수질검사, 규격자재 사용여부 판단 보고서 비용 등 기타 필요한 사항
- 각종 시설 및 자재는 수도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9조,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
- 단가적용 :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되 표준품셈에 없는 공종은 공인기관(지하수조사 전문기관)의 품셈 적용

(나) 수원공시설

- 관정 및 이용시설계획은 마을규모등에 의한 계획수량에 따라 적정규모의 수중모타펌프, 송수관, 수조, 배수관 별로 각각 산정하며, 본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계획설계요령(정비 51370 -246('95. 7. 21)호)”을 활용하여 지역실정에 따라 정함.
- 수중모타펌프의 설치위치 및 규격은 양수시험결과에 의한 안정수위, 양수량, 전양정길이 등을 고려하여 안정수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
 - 수중모타펌프의 용량은 필요한 용수공급측면과 이용자의 비용부담여력 측면이 있으므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정함.
- 지하수법 규정에 의한 유량계, 출수장치, 수위측정관 등을 설치
- 식수부족은 심각하나, 유지관리비(전기료 등) 부담이 어려운 영세한 마을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수중모타펌프 및 전기시설을 생활용수 부분만 우선 계획하여 전력기본요금 부담을 줄이고 나중 농업용수분 등의 용량확대에 대비 전선 및 수전반 판넬을 계획할 수 있음
(극심한 가뭄시 수전반 내의 마그네트와 브레이크 등 일부 부품교체로 용량을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구조)

<참고 : 수중모터펌프 규격 예시>

가 구 수(호)	30~50	51~100	101~150	비고
펌프규격(HP)	3~7.5	5~7.5	7~10	

(다) 이용시설

- 송수관은 생활용수공급을 주 대상으로 하며, 지역여건에 따라 축산용수, 농산물세척가공용수를 포함할 수 있음.
- 송수관이 긴 경우 관마찰손실수두가 증가하므로 적정유속으로 관경을 계획하여 모타펌프의 동력이 과대하게 되지않도록 함(모타펌프 기종과 연계하여 계산).

- 케이싱 덮개 설치는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밀폐식 공법으로 설계
- 수조(물탱크)의 용량은 생활용수를 주 대상으로 하고, 수조의 재질은 위생, 내구연한, 수온(저온)유지 등을 감안하고, 수질유지를 위하여 저류시간 단축 및 공기접촉을 최소화하는 구조로 한다. 종래의 콘크리트 수조, FRP 수조의 선택은 신중을 기함.
- 수조(물탱크) 용량은 관정의 고장시 인구 1인당 식수 80~100ℓ 정도를 공급할 수 있고 또한 Peak 시간대의 수급 조절용(1일 사용량의 20~30%)으로 사용하며, 수조의 용량은 지역특성에 맞게 정하되 마을상주 인구에 비하여 과대크기로 설치하지 않도록 함. 다만, 고장시 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섬지역 등은 예비펌프를 확보하고 수조를 다소 크게 할 수 있음

<참고 : 수조 용량 예시>

가 구 수(호)	30~39	40~59	60~79	80~99	100~120호
인 구(명)	90~121	122~183	184~245	246~307	308~372
수조용량(m ³)	10	15	20	25	30

- 수조(물탱크)는 물공급이 원활한 곳에 경관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동파 및 수온변화가 없도록 설치하고, 송·배수관 등은 동결심도 이하 및 중차량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
- 수조(물탱크)는 외부인의 출입을 방지토록 하고(필요시 울타리시설) 출입문과 물탱크덮개는 시건장치를 하여 안전을 도모함.
- 지역주민이 천재지변, 화재등 긴급 재난발생시 비상급수 시설을 희망할 경우 민방위 시설 규격의 소화전을 설치할 수 있음.
- 수량부족 또는 수질불량으로 발생한 폐공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하수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폐공처리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암반관정 개발시 발생한 폐공처리 (부록1 참조)

(6) 공사감리

- 시장·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101조 및 동법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적격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여 공사감리를 실시토록 하며, 필요시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함

(7) 사업준공

- 시장·군수는 수원공개발이 완료되면 이용시설 설치전에 먹는물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또는 지하수법시행령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향조사기관으로 하여금 공내 TV검층, 장기양수시험, 수질검사 등 준공전에 확인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 후 준공처리 하여야 함(별지 제9호 서식)

- 준공전 확인검사는 당해 수원공 개발자외의 자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함.
- 시장·군수는 허위 또는 부실한 확인검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검사자에 대하여서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지하수법 제25조 및 제29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 및 지하수 영향 조사기관의 등록 취소 등을 시·도지사에게 건의
 - 지하수 영향조사 및 개발공사 입찰 제한
 - 허위 또는 부실한 확인검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허위 또는 부실검사로 인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지진 등 천재지변, 발파 또는 주변 굴착 등 인위적 주변환경 변화로 인한 수질수량의 변화
 - 기타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
- 공사완료 후 계약서, 설계서 등 이행여부 확인 검사
- 시설완공후 생활용수 공급을 개시하기 전에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 관한규칙”에 따른 전항목 수질검사를 재실시하여 수질기준에 적합여부를 재확인함.
- 완공된 수원공, 이용시설 및 폐공발생 처리사항등의 인수인계에 철저히 기하고 지하수법 등 제규정에 따라 조치
- 공사착공, 시공중, 준공사진을 촬영하여 시공대장에 첨부 비치

4. 자금배정단계

- 지구당 평균지원단가 170백만원(국비 80%, 지방비 20%)
 - 시·도지사는 마을규모, 관정심도, 송수관로 길이 등에 따라 지원사업비를 탄력적으로 조정집행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공정을 감안하여 매분기별로 농림수산식품부에 국고 배정을 요청
 - 시·도의 요구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국고금 교부
- 추가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지방비를 지원하여 설치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1) 시설관리자 : 시장·군수

- 수도법 제21조, 시행령 제33조,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적격한 공무원 (시·군 수도과 등)을 담당자로 지정하고 생활용수유지관리조직(계) 대표 1인을

관리자로 지정하여 관리

- 농어촌정비법 제92조 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해 사전 협의를 하지않아 마을상수도 등록이 어려운 시설은 수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수도 사업 인가절차를 받아 간이상수도로 등록·관리

(2) 관리방법

- 시설물의 관리대장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함.
-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급배수시설을 수도법 규정에 따른 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로 지정·등록하고 시·군 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에 따라 유지관리
- 일반적인 시설운영은 마을자체 유지관리조직(계)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함이 원칙이나 마을자체의 유지관리조직 구성 및 운영이 어려울 경우 시장·군수가 직접관리하는 방안 강구.
- 시장·군수는 관리조직으로 하여금 유지관리비(전기료, 소독약품대, 시설개 보수비 등)를 징수하여 발생한 비용을 지불하고 일정액을 적립(지역주민 자치로 운영)토록 지도함.
 - * 대부분의 시·군이 어려운 농어가 현실을 반영하여 청소 등 일상적인 관리 외 소독 약품대, 소 모품, 수리비, 수질검사 등 유지관리 경비를 부담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 필요한 유지관리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 할 것
- 또한 시장·군수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수질검사나 전문 관리기관의 정기적인 시설물 점검·정비 순회서비스 및 교육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수시로 시설이용상황을 파악하며,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애로사항을 지원함.
- 시설점검정비 : 관리조직이 우선실시하고, 자체 점검정비가 불가능한 시설물은 시장·군수가 기술인력을 지원(한국농촌공사의 “농업용시설물관리지원단” 등 전문기관 활용)
- 유지관리조직(계)은 관정개발 후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하여 영향구역 내 잠재오염원 (축산폐수 등)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 노력을 함.
- 수질검사
 -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수질검사 횟수)의 규정에 따라 분기별 검사, 전항목 검사(년 1회)를 시행 (검사비용은 시·군 부담)
 - 개발완료후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관정시에는 사용을 중지토록하고 대체시설 개발 등 사후조치 후 결과보고
- 시설물 보호 : 시설물이 손상 오염되지 않도록 관정 및 수조에는 안내판을 제작설치하여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방지(별지 제6, 7호 서식)하여야 하며, 특히, 양수장, 물탱크, 염소소독기 관리철저

○ 유지관리 실태확인

- 시장·군수는 수시로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반기별(6월말, 12월말기준) 이용실태 (이용하지 않거나 저조한 시설은 지구명, 위치, 미사용 또는 저조한 이유 및 대책) 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 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함

(3) 이용이 저조한 시설 또는 수질·수량 변화시설 등에 대한 대책

- 전기료 등의 비용부담을 하지 않아 이용이 저조한 시설은 전력기본요금을 낮추기 위하여 시·군지원으로 소형모타펌프로 대체(기 설치된 모타펌프는 가뭄대비 보관, 타지구로 활용 전배 등)하는 방안을 검토함.
- 지역여건변화로 상수도가 개발되었거나 관정만 시설을 하고 이용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는 시장·군수가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후 농업용수용으로 전환
- 지하수가 먹는물수질기준에 미달하거나, 수량부족등으로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지하수시설물관리지원단”(한국농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원인조사(우물검층 등 대수층조사)를 의뢰하고 결과에 따라 보강공사(우물그라우팅, 정수시설치 등) 또는 사용량을 조정하며, 조사결과가 농업용수용으로 전환 등 계속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민의견 수렴후 시·군에서는 시·도에 보고하고 대체수원을 개발 함.

《보 고》

- 익년도 사업대상지 보고 : 별지 제2호 서식, 매년 10월말까지
- 사업시행 인가 결과보고(지구선정결과) : 별지 제2호 서식, 매년 2월말까지
- 공정계획 수립 결과보고 : 별지 제3호 서식, 매년 2월말까지
- 사업추진상황 보고 : 별지 제4호 서식, 매분기말 추진현황을 익월 10일까지
- 시장·군수는 매분기 실시한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매분기 종료후 익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 시·도지사는 12월말 현재 전항목에 대한 수질검사결과를 익년도 1월 3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기 타》

- 시장·군수는 농림업무 지방자치단체 평가지침서에 명시된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공공) 평가내용과 항목을 준수하여 효율적 사업추진이 되도록 함.

- 선개발시설 이용 : 가뭄 등 긴급한 사유로 공사중에 지하수를 우선 식수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질검사를 실시한후 이용함.
- 기타 본 요령에 명시되지 않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지하수개발실시요령, 관정 및 양수장비 관리지침, 지하수관계법령, 상수도 공사표준시방서, 상수도 시설기준 등 제규정을 적용

6. 성과측정단계

- 매년 지자체의 전년도 사업에 대해 평가 실시
 - 평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평가방법 : 서류조사, 필요시 현장 점검
 - 평가시기 : 매년 2월
 - 평가지표 : 예산 집행율, 수질검사비율, 마을상수도 등록율 등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효율적인 지구선정 및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을 평가
- 평가할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구선정시 농촌 농업·생활용수 중장기계획에 따라 선정되었는 여부
 - 사업시행인가 전 상수도 부서와 사전협의 절차 이행여부
 - 광역 및 지방상수도계획과 중복되지 않는지 여부
 - 사업준공후 적정한 수질검사 및 마을상수도 등록 여부
 - 시설물 유지관리 조직구성 및 각종 대장 비치 활용 여부
 - 지하수이용시설 관리실태 (관정 및 송배수관, 정수시설 등의 관리)

《환 류》

-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토록 함

IV. 201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나. 신청자격

- 면단위 이하 농어촌지역의 20호 이상 자연마을중 우물, 하천수 등 자연수 이용마을
- 마을상수도 이용마을중 필요수량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수질이 오염된 마을

다. 신청절차

- 희망마을 → 면 → 시·군 → 시·도

라. 구비서류

-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 신청서 (별지8호 서식)
- 위 치 도
- 시설현황 및 생활용수대상 현황

V.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붙임)

별첨 목록	2008년도 사업시행 지침	
	참고목록	변경사항
1.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별지 제1호 서식	
2. 대상지(시행인가, 계획변경)보고(별지 제2호)	별지 제2호 서식	
3.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공정계획(별지 제3호)	별지 제3호 서식	
4.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진도보고(별지 제4호)	별지 제4호 서식	
5.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진도보고(별지 제5호)	별지 제5호 서식	
6. 농촌 농업·생활용수 수질검사 결과보고(별지 제6호)	별지 제6호 서식	
7. 농촌 농업·생활용수용 암반관정 시설 안내판(별지 제7호)	별지 제7호 서식	
8. 농촌 농업·생활용수 배수지 시설 안내판(별지 제8호)	별지 제8호 서식	
9. 수원공시설 점검결과 보고(별지 제9호)	별지 제9호 서식	
10. 수원공시설 점검방법 및 결과보고서 작성항목	별지 제10호 서식	

<부 록 1>

암반관정 폐공처리 유의사항

1. 관정개발 관련 법령 및 지침서

□ 지하수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조항

- 지하수개발 이용신고 (법 제8조, 영 제13조, 시행규칙 제8조)
- 지하수 영향조사 (법 제7조, 영 제9조 및 제12조)
- 허가 사항의 변경(시행규칙 제7조) ○ 준공신고 (법 제9조)
- 원상복구 (법 제15조, 영 제24조),

□ 지하수관련 지침서

- 농촌지역지하수오염방지대책 (1999. 12 농림수산식품부, 농진공 발간)
- 지하수업무수행지침서 (2006. 12 건설교통부 발간)
- 폐공관리통합지침 (2002. 5 건설교통부 발간)

2. 폐공발생 예측 및 사전대비

- 착정위치는 지적도(1/1200 등)에 정확히 표시
- 폐공처리비 확보는 지구당 1개소를 우선 설계에 계상하거나 입찰차액으로 예산을 확보한 후 최종정산시 시도에서 일괄 가감정산처리 방안을 검토
- 시·군에서 지하수전문기관(한국농촌공사 등)에 위탁하지 않고 공사 감독등을 직접시행할 경우는 착정의 주요공정인 케이싱 외부 밀크액 주입상태(그라우팅) 검사 및 폐공처리시 모래의 충전과 밀크액 주입상태 검사(표면처리공사 직전)에 대하여 공사감리를 일부 용역하는 방안을 강구
 - ※ 시군에서 전문기술 또는 인력 부족시 시·도는 농업용지하수시설물관리 지원단(한국농촌공사)이 지하수오염방지의 공익에 기여토록 실비로 주요 공정만 감리를 협조 요청
- 폐공처리 작업시기는 착정장비 이동직전에 실시, 불확정공(수량 일부부족 및 수질관련)은 성공공에 대한 우물작업이 완료되기 전에 실시하고 폐공처리 전경과 근접사진을 필히 촬영하여 보관
- 지하수전문기관에 공사감리를 위탁하지 않은 지구는 시공업체가 착정 장비를 현장투입한 때부터 철수시 까지는 작업일지(착정위치, 공정, 착 정심도, 실패공 되메움등 기재)를 매주 1회 이상 시·군에 제출토록 함
- 사업지구별로 사업관리자(군1인, 면1인)를 지정하고 담당자는 가능한 착정장비 투입시부터 각자 주1회 이상 현지를 출장하여 시추위치 및 변경위치를 확인하고, 폐공처리 마무리는 표토를 되메움하기 전에 시공상태를 직접 확인하며, 전문기술이 필요하면 농업용지하수시설물관리지원단에 지원요청

3. 폐공처리방법

- 폐공처리에 대한 기술적인 방법은 농촌지역지하수오염방지대책('99.12 농림수산식품부, 농진공 발간)와 page44~49와 폐공관리통합지침 (2002. 5 건설교통부 발간) 적용
- 케이싱은 가능한 인양하여 제거하되, 인양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표하 1m이상을 절단하며, 되메움 방법은 공의 구조, 지층의 성질, 재료 및 장비의 확보조건, 주변 우물에의 영향, 주변오염원까지의 거리, 비용 등을 고려함.
- 폐공 전구간을 투수성재료 되메움구간, 불투수성재료 되메움구간 및 표면처리구간으로 구분하여 각 구간별로 적합하게 되메움을 실시
- 폐공처리 작업기간은 케이싱 제거, 모래충진, 밀크액(시멘트1:물1) 주입 등에 2일 이상 실시하며, 공내 되메움은 공동이 발생되기 쉬우므로 주입재(모래등)를 2~3회에 나누어 충진하고, 24시간 경과 후 다짐상태 및 공동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표면처리공사를 시공
- 주입재가 분리현상이 심하거나 균열된 틈새로 침투가 어려우며, 빈틈메우기에 체적 팽창이 필요한 경우 벤토나이트를 혼화재로 사용할 수 있고, 시멘트중량의 2%(부피의 3%)를 일반적으로 사용

4. 방치된 폐공의 처리

□ 폐공유무의 확인

- 개발을 신고한 지점과 준공처리 지점의 상이 여부를 우선 확인
- 폐공처리비가 당초(계획보완을 포함) 설계서에 계상여부를 확인
- 지하수전문기관(한국농촌공사 등)에 위탁하여 시행하지 않고, 민간업체 시공분은 철저히 확인하며, 특히 폐공발생을 보고하지 않은 지구는 주민청문조사를 실시(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및 주민에게 탐문 확인)
⇒ 시·군은 미처리폐공을 발견한 즉시 규정대로 폐공처리 조치

□ 폐공처리의 적정시공 여부 확인 및 조치

- 폐공처리의 부적정 유형에는 모래·시멘트 주입은 했으나 상부매움 콘크리트 두께부족 및 타설불량, 모래·시멘트주입량이 부족하거나 처리깊이 부족, 모래·시멘트 주입없이 콘크리트 타설하는 경우 등이 있음
 - 시공상태에 대하여 주민 청문조사를 실시(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 폐공처리대장 비치 및 기록을 확인하고 작업일지 등에서 폐공처리 작업기간(2일이상 여부)과 폐공처리 사진을 검토하여 전경과 근접사진 2매 유무및 내용을 확인
- 준공정산서에서 폐공처리비 내역을 확인하고, 공법(투입재료 및 양)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 미흡한 곳은 포크레인등으로 굴착 확인하고 제대로 폐공처리 실시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지역개발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지역개발	과장 고태수 사무관 이행우	02-500-1797 02-500-1805
한국농촌공사	농촌지역개발처 지역본부 및 지사	팀장 심좌근	031-420-3451

I. 사업개요

1. 목 적

-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 소득기반확충 등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농촌사회 유지 도모

2. 사업추진 기본방향

- 생활권·영농권 등이 같은 발전 잠재력이 있는 마을들을 상호 연계하여 소권역(1개 법정리 이상) 단위로 개발
- 지역주민과 지자체, 관련전문가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으로 추진

3. 근거법령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8조에 의하여 계획, 농어촌정비법 제24조 내지 제39조를 준용하여 시행

4. 성과목표 및 지표

- '17년까지 1,000개 권역 추진하여 농어촌의 400천 가구 혜택부여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6	'07	'08		
▪ 수혜가구 목표 달성율(%)	22.1	11.3	15.8	19.8	3월	수혜가구(누계)/400천 × 100(%)
▪ 권역주민 만족도(%)	80	-	77	80	12월	권역주민 대상만족도조사

5.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09년이후
합 계	141,075	89,798	163,845	245,692	5,430,291
국 비	115,520	73,068	132,271	174,017	3,829,553
지방비	25,555	16,730	31,574	71,675	1,600,738
○ 기본계획 등	13,300	6,150	5,975	6,775	94,500
- 국 비(농특)	13,300	6,150	5,975	6,775	94,500
○ 사업시행	127,775	83,648	157,870	238,917	5,335,791
- 국 비(균특)	102,220	66,918	126,296	167,242	3,735,053
- 지방비	25,555	16,730	31,574	71,675	1,600,738

II. 200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내용

- 지역실정에 따라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기초생활환경정비, 소득기반확충, 지역사회 유지를 위한 인구유치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을 종합 추진
- 소권역별 잠재자원을 발굴·활용하여 지역특성에 맞도록 다양한 유형의 농촌공간정비 추진
 - 권역별 고유 테마형성에 맞는 중점 개발과제를 개발하여 집중 육성

2. 사업 시행자

- 시장·군수(한국농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일부 또는 일괄 위탁 가능)

3. 지원 대상지역 선정요건

- 근거법령에 의한 농산어촌지역 중 읍·면 지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자연환경보전법, 농지법, 산림법, 자연공원법 등 타법에 의하여 개발에 제약요인이 없는 지역
- 동일한 생활권·영농권 등으로 지역주민간 동질성과 유대감을 가지며, 인근 마을간 연계로 소규모의 권역을 이룰 수 있는 지역
-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가능 지역은 대상지 선정 시 가점 부여

4.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조사비(농특회계,국고 100%): 140백만원(예비타당성조사 20, 기본계획 120)
- 사업비(균특회계) : 권역당 3~5년간 40~70억원(국고 70%, 지방비 30%) 범위 내에서 권역의 규모에 따라 지원
 - 기초생활시설(주택 제외), 문화·복지시설 등 불특정 다수주민이 이용하는 공동이용시설 : 전액 보조사업
 - 마을주민 공동(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 소득기반시설 : 보조 80%, 자부담 20%
 - 농촌체험·관광기반시설 및 부지는 마을에서 확보(지상물, 등기료 등 부지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지 제공자가 부담)

5. 사업추진체계 및 기관별 역할분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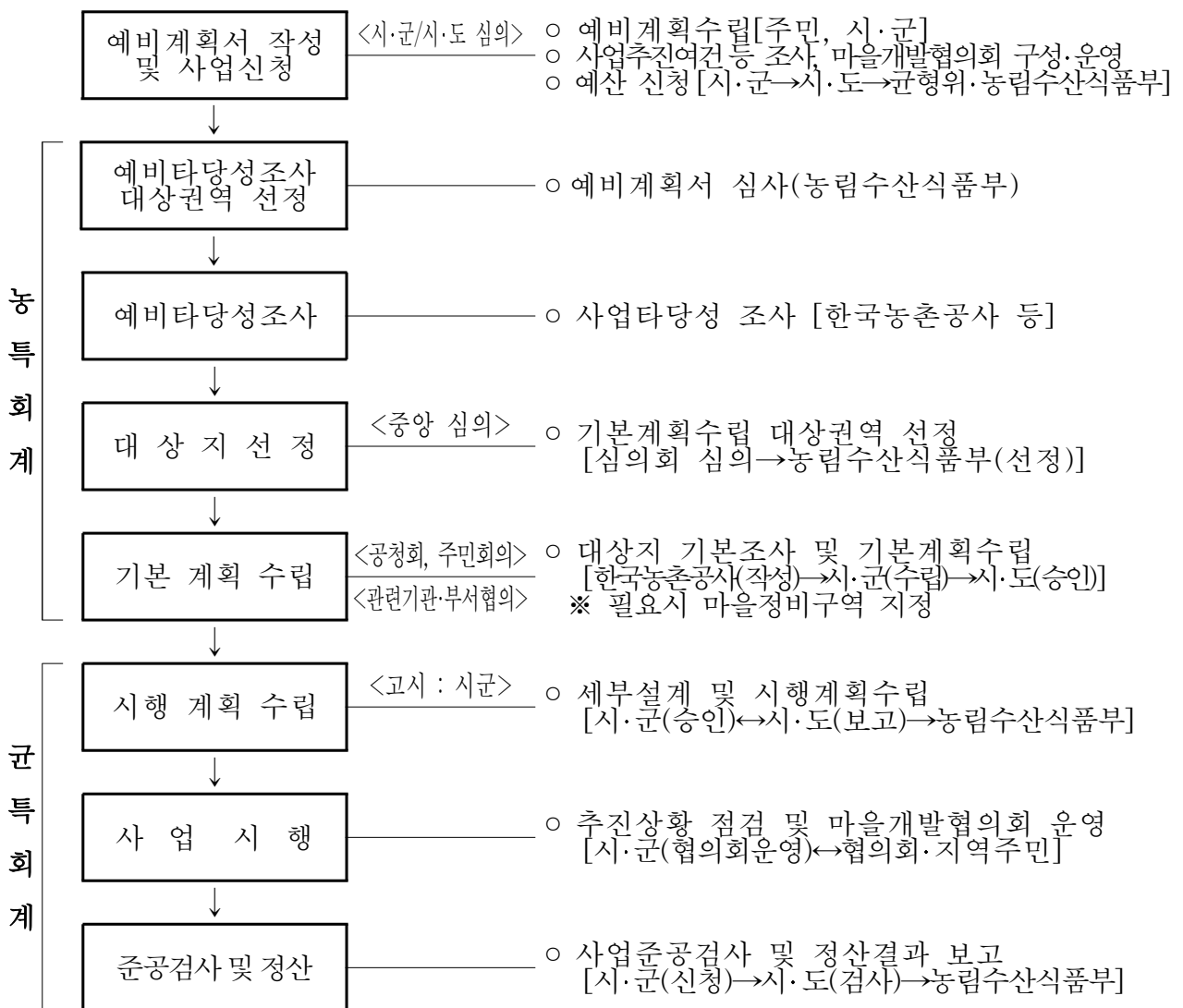
가. 기관별 역할분담

- 지역주민 : 권역별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마을개발협의회 참여, 예비계획 수립 및 사업신청, 명예 공사감독 운영, 유지관리
- 시장·군수 : 예정지조사 및 예산신청, 마을개발협의회 구성·운영, 기본계획

수립, 권역사무장 채용·운영, 시행계획승인 및 사업시행, 유지관리, 마을정비구역 고시

- 시·도지사 : 예산신청, 기본계획 승인 마을정비구역지정 승인 신청
 - 시·군의 사업시행에 대한 지도·감독하면서 연차별로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토록 지원
 - 시·군 공무원 및 주민대상 교육 및 워크숍 등 실시
 - 사업추진상황 점검·평가, 보완대책 추진 및 건의
- 한국농촌공사 : 권역별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안 작성 및 기술지원(설계, 감리, 사후관리), 지역발전컨설팅, 사업시행(계획수립), 마을주민 교육 지원 및 사업의 위탁시행
- 농림수산식품부 : 기본방침 시달, 대상지 선정, 예산 지원, 추진상황 점검·평가, 보완대책 추진, 마을정비구역지정 승인

나. 사업추진체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예비계획서 작성 및 사업 신청)

권역 추진위원회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희망하는 지역주민은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권역의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권역발전 5개년 계획(예비계획서)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사업을 신청

시·군 및 시·도(지자체)

- 시장·군수는 ‘마을개발협의회’를 구성, 주민의 예비계획수립 자문 및 지원
- 시장·군수는 지역주민(추진위원회)이 신청한 예비계획서에 대하여 자체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내용을 첨부하여 해당 시·도지사에게 사업을 신청
 - 지역주민이 수립한 예비계획서(주민제안서) 및 시·군 심의의견
 - 위치평면도(1:50,000지형도), 권역개발계획도(1:25,000지형도)
 - 타 부문 투자계획 등 기타 필요사항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신청한 예비계획서에 대하여 지역개발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체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 심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을 신청

2. 대상지 선정단계(예비타당성조사)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예비계획서를 심의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권역을 선정하고, 한국농촌공사 사장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지시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한국농촌공사 사장이 제출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수립 대상지를 선정하고, 한국농촌공사 사장에게 기본계획안 작성을 지시하고, 시·도지사에게 대상지 선정 결과를 통보

한국농촌공사

- 한국농촌공사 사장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지시에 의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제출
 - 예비타당성조사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권역설정의 적정성, 지역자원의 활용가능성,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역량, 예비계획의 적정성 및 파급효과, 지역사회유지를 위한 인구유치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 예비타당성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권역개요 : 권역개요, 권역 개황도 등
- 권역설정의 적정성 ; 동일 생활권 · 영농권 여부, 개발제약요인 여부 등
- 지역자원의 활용성 : 지역자원 활용실적, 활용가능성, 지역농업 현황 등
- 사업추진 지역역량 : 주민 및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 주민들의 사업경영 능력 등
- 예비계획의 적정성 및 파급효과 : 예비계획의 실현가능성, 타 계획과의 연계성, 성장잠재력 및 파급효과
- 지역사회 유지를 위한 인구유치 가능성 : 도시민들 인구유입가능성, 지역 활성화계획 수립 여부

시·군 및 시·도(지자체)

-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는 한국농촌공사 조사반이 예비타당성 조사시 권역 현황자료 및 증빙자료 등의 관련 자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

3. 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가. 기본계획수립

한국농촌공사

- 한국농촌공사사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시한 기본계획수립 대상권역에 대하여 예비계획서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주민 및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해당 시장·군수에게 제출
- 한국농촌공사 사장은 기본계획안 작성을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당해분야 전문기관 등을 참여시켜 시행할 수 있음
-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 대상지구의 현황 및 지역특성 및 잠재력 분석
 - 지역개발 강·약점 분석
 - 지역발전 목표(비전) 및 중장기 지표설정
 - 공간별 토지이용계획
 - 인력육성계획
 - 지역자원(토지이용, 지역산업·인적자원, 어메니티자원)활용계획
 - 기초생활기반 시설계획, 산업·소득원 확충계획, 권역특성화 시설계획, 경관정비계획
 - 지역사회 유지 등을 위한 인구유치계획
 - 도시민·은퇴도시민의 농촌정주지원을 위한 마을기반정비(마을재개발·재정비, 빈집, 주택용지공급)계획

- 리더육성 및 주민교육, 시설물운영계획, 권역발전을 위한 컨설팅 등 지역역량강화계획(S/W사업)
- 연차별, 단계별 투자우선순위 및 투자계획, 사업비 조달계획
- 타 관련사업 연계개발계획 등
- 기본계획안 작성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 농촌지역 어메니티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를 소득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계획하여야 함(농촌진흥청 어메니티자원도 활용)
 - 주민공동 소득기반확충부문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사업 타당성분석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 비닐하우스 등과 같이 내구년한이 10년 미만인 소모성의 시설은 소득사업 계획에서 제외 할 것
 - 주요시설 및 주민공동 소득기반시설 등의 사업부지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서를 징구한 후 계획수립하여야 함(공공시설부지의 동의서에는 감정평가 금액에 의하여 매수 및 보상함을 명기)
 - 특히 주요 시설부지는 개발하는데 따른 법적 제약요인이 없는 지 면밀히 확인
 - 건축물 등 주요시설물에 대하여는 지역여건과 조화되도록 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설계수준으로 계획하여야 함
 - 권역의 여건상 경관유지가 필요한 지역은 마을단위 또는 권역단위의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마을 또는 권역단위 경관형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소요경비는 별도로 사업비에 계상 할 수 있음
 - 지역역량강화사업은 권역의 특성에 맞게 분야별로 수립하되 인력육성계획에 의한 주민교육부문은 세부설계시에 추진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기본계획수립자는 기본계획수립기간 중에 주민들의 사업 참여 촉진과 사업의 이해 등 주민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함
 - * 선진지견학(1회 이상), 전문가초청교육(1회 이상) 등
- 기본계획수립시에는 토지가격의 인상 및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인상 등에 대비하여 지원한도 내에서 총사업비의 10%이내의 사업비를 예비비로 반영할 수 있으며, 예비비의 사용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집행함
- 기본계획(안) 작성이 완료되면 공청회 등을 거쳐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계획에 반영한 후, 시장·군수에게 제출

시·도 및 시·군(지자체)

- 시장·군수는 한국농촌공사로부터 기본계획서가 제출되면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시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기본계획수립 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신청한 기본계획서에 대하여 필요시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수립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시장·군수는 승인된 기본계획에 대하여 즉시 고시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계획을 수립

나. 시행계획수립

시·군(위탁시행자)

- 시장·군수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설계를 직접시행하거나,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규정에 의거하여 한국농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세부설계를 포함 사업추진 전반에 대하여 일괄위탁 가능)
 - 세부설계는 1(1~3년차), 2단계(4~5년차) 동시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1, 2단계를 구분하여 공종별, 연도별로 분리하여 추진하되, 2단계는 1단계 마지막해(3년차)에 시행
 - 세부설계를 위탁받은 자는 요구하는 수준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술을 가진 자에게 재 위탁 할 수 있음
 - 이 경우 특수한 기술을 요구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참여업체의 기술능력을 평가하여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위탁시행자 포함)는 사업추진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역량강화(S/W)사업의 시행계획 승인은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기본계획승인으로 같음 하여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조기에 시행
- 세부설계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세부설계시에는 주요 시설부지의 확보 가능성, 법적으로 제약요인 등을 면밀히 재검토한 후 시행하여야 함
 - 세부설계시(시행계획 변경시 포함)에는 기본계획수립에 참여한 계획수립자, 외부전문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시 구상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승인 신청시 의견수렴 및 협의내용을 첨부하여야 함
 - 특히, 건축물 등 주요시설물에 대하여는 지역여건과 조화되도록 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하여야 함
 - 시설부지 확보가 불가능하여 위치변경을 하는 경우 당초 기본계획수립시 시설계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부지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결정함
- 시장·군수가 시행계획(시행계획 변경시 포함)을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승인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 기본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시·도지사로부터 받아야 함. 단, 다음의 경미한

- 사항은 시장·군수가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
 - 권역명칭의 변경 및 범위의 조정(당초 권역면적의 10% 범위내 증감)
 - 사업기간의 변경과 현지 지형사정으로 인한 시설의 경미한 위치변경
 - 다른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시설의 변경
 - 공정계획의 변경 및 사업시행시기의 변경
 - 세부공종별로 분리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공종단위로 사업계획의 10/100범위 안에서의 증감 변경
 - 총사업비 내에서 단위 사업간의 사업비조정(단, 소득사업의 조정은 자부담 및 부지문제 해결 후 조정 가능)
 - 기타 단순 착오로 인한 사항의 변경
- 시장·군수는 시행계획을 승인할 경우 기본계획수립에 참여한 계획수립자, 외부전문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시·도(지자체)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보고한 시행계획(시행계획 변경 포함) 결과를 시·도지사가 승인한 기본계획의 주요내용과 비교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시·군(위탁시행자)

《사업의 발주》

- 시장·군수는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연도별 예산범위 내에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제 규정에 의거 하여 사업을 발주하여 시공자를 선정
 - 공사발주는 단계별 일괄하여 발주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공종별, 연도별로 구분하여 발주할 수 있으며, 특수 공종에 대하여는 시공업체의 기술능력을 평가하여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 있음

《용지매수 및 보상》

- 사업시행에 필요한 용지매수 및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제반규정을 따름
 -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용지매수보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

- 공사감리는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농어촌정비법 제95조에 의거 위탁할 수 있음
 - 사업(지역역량강화사업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경우 세부설계,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비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4조 「별표 5」를 준용함
 - 공사감리를 위탁받은 자는 요구하는 수준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술을 가진 자에게 공사감리를 재 위탁 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공사감리자는 공사시행 과정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시공 전·중·후의 현장사진 등을 보관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주민참여를 확대와 민원의 사전예방 등을 위해 지역주민을 명예감독원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음

《마을경관형성을 위한 주택정비》

- 사업시행자는 조례 또는 권역내 마을주민들과의 협약을 통하여 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는 사업비에서 계상 할 수 있음
 - 사업권역내에서 경관계획에 의해 기존주택을 정비 할 경우 기술지원을 하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 지원할 수 있음
 - 주택 정비시 지붕 또는 담장이 주변여건과 어울리는 재질, 색채, 형태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하여야 함
 - 주택 정비시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 활용을 권장하고, 마을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함

4. 준공 및 시설물 운영단계

가. 사업준공 등

-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처리하여야 함
 - 공사 준공은 계약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완료공종(시설)에 대하여 부분준공을 실시할 수 있음
- 사업시행을 위탁한 경우 위탁시행자는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시장·군수에게 준공검사를 요청하여 준공검서를 실시한 후 준공처리하여야 함
 - 위탁시행자는 시공회사의 준공계(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어야 함), 예비준공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내용,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9조에 규정된 서류 및 도면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신청

- 시장·군수는 위탁시행자의 준공검사요청이 있을 경우 소속지원으로 하여금 준공 검사반을 편성하여 준공검사를 실시
- 예비준공검사시에는 시설물에 대한 주인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명예감독원)을 참여시킬 수 있음
- 위탁시행자는 준공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고 준공(부분준공 포함)후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제외한 공공시설물과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를 시장·군수로 하여 등기하고 1개월 이내에 시설물을 인계하며, 시장·군수는 보완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인수를 하여야 함
- 토지 등 주민 자부담이 포함된 시설물(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한 경우)은 시장·군수와 추진위원, 법인간의 협약에 따라 마을 및 법인으로 등기 가능
- 마을 및 법인으로 등기 할 경우 등기권자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협약서에 매각 유예기간을 명시 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여야 함
- 전체사업(1,2단계)이 완료되면 시장·군수는 준공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필요시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하여 사업 준공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유지관리 과정에서 공사 하자가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시공회사 또는 위탁시행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가 완료되도록 하는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

나. 시설물 운영관리 등

- 시설물 활용 및 유지관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추진
 - 정보통신기반시설이 설치된 마을은 마을주민과 협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관리
- 시장·군수는 마을개발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사업시행지구에 대한 주민지도, 지역홍보, 시설물 이용·관리 등 전문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지역주민은 주민자체 유지관리 및 운영조직을 구성·운영하여야 함
 - 권역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별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
 -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권역(마을)기금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기금의 관리에 투명성을 확보

5. 예산편성 및 집행단계

가. 예산의 편성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의 연차별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연도별 소요사업비중 국고보조금에 대하여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신청하여 확보 및 편성
 - 권역별 총사업비는 지원규모 이내로 하며,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지방비로 확보 지원
- 시장·군수가 예산 편성시 사업시행을 한국농촌공사 등에 위탁할 경우 민간 공기업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하여야 함

나. 예산의 집행 및 결산

- 시장·군수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소요자금을 다음 달 5일까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소요자금을 교부신청을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집행을 하여 보조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특히, 사업을 일괄 위탁한 경우 교부받은 자금을 위탁시행자에게 일괄하여 교부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소득기반시설 등에 대한 주민 자부담사업의 집행은 사업시행 전에 확보하도록 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예산회계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결산 결과를 익년도 3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비의 연도말 검정 및 결산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의하여 실시

6. 기타

가. 관광·체험 및 주민공동소득기반 등

- 사업시행자(시장·군수, 위탁시행자)는 관광·체험 및 소득사업 등 사업비의 일부(토지포함)를 주민이 부담하는 경우 주민과 협약을 체결하여 '시설비'로 편성하거나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편성할 수 있음
 - 협약은 시장·군수, 권역추진위원회, 사업법인 3자간에 체결
 -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편성한 사업이라도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 한 후 시장·군수(위탁시행자)가 시행 하여야 함
 - 협약체결시에는 자부담액의 납부방법, 납부일자, 사후정산방법, 소유권 및 운영관리권, 시설물 인계방법, 수익금의 처리 및 권역 환원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함
- 시설부지를 마을에서 제공하는 관광·체험시설의 경우 소유 개인 부지를 활

- 용할 경우 최소한 10년 이상 장기 임대하여 필요시 지상권을 설정하여야 함.
- 주민 부담이 수반되는 공동 소득기반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참여주민은 자부담액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약체결시에 약정한 기간 내에 사업시행자에게 납입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주민 자부담액이 해당 시·군의 계좌에 입금된 후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주민소득사업 등의 사업완료시에는 정산확인 후 시설물을 인계 하여야 하며, 인계받은 시설물은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고, 양도·교환·대여·담보 활용 등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 (재산처분의 제한)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나. 지역역량강화사업

- 지역역량강화사업의 기본계획은 권역의 특성에 맞게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부설계(기획설계)를 생략할 수 있음
- 기본계획수립자는 주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계획수립기간중 주민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함
- 지역역량강화사업의 시행은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한국농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음
 - 위탁시행시 시행계획수립을 위한 기획설계, 사업시행에 필요한 관리비용 등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4조를 준용(세부설계, 공사감리, 사업관리비 등)
 - 사업내용중 전문분야에 대하여는 전문업체에 발주하여 추진하며, 발주시에는 일괄발주를 원칙으로 하며, 여건에 따라 여러개 전문분야 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음

다. 마을개발협의회 운영 및 추진위원회 운영·지원

□ 마을개발협의회 구성·운영

- 시장·군수는 지역주민의 예비계획수립 지원 및 지속적으로 마을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마을대표, 여성지도자(여성농업인 포함), 관내 관련기관의 직원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포함된 ‘마을개발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마을개발협의회 운영규정 마련, 회의개최 등 행정처리 지원
 - 시장·군수는 정기적(분기 1회 이상)으로 마을개발협의회를 개최하여 사업추진상황 등을 점검
- 시장·군수는 권역별 마을개발협의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권역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음
 - 마을개발협의회 운영경비(회의운영, 전문가 자문, 모니터링 등) 등을 지역역량강화(S/W) 사업비에 반영하여 실비로 지원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과 관련한 마을개발협의회 운영상황 등을 기록 유지하여야 함

□ 추진위원회 지원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 권역에 대하여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건전한 활동을 위하여 추진위원회의 운영경비와 권역주민회의 등을 위한 경비를 지역역량강화(S/W) 사업비에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음
 - 권역추진위원회 운영경비는 월 30만원 이내에서 지원
 - 권역주민회의 등 경비는 실비로 소요액을 지원
- 시장·군수는 중장기 권역발전계획의 원활한 실천을 위해 지역주민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권역의 운영·관리를 전담하기 위한 권역사무장을 운영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권역사무장 운영기간, 인원, 운영계획 등을 수립하여 권역사무장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장·군수는 권역사무장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권역별 지역역량강화(S/W)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음
- 사업추진위원회는 사업추진과 관련한 권역추진위원회 활동상황 등을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함

라. 사업추진 협약서 체결

- 사업대상권역의 개발방향에 따른 주민참여 방안과 역할, 공동이용시설 운영관리방안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실천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 주민간, 마을간 ‘사업추진 협약서’를 체결 운영하여야 함
- 사업추진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지역주민 및 마을별 역할분담을 포함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상호 협약함
 - 협약 체결내용은 지역주민이 상호 협의하여 작성함

마. 다른 법 등과의 관계

- 사업계획에 마을하수도사업(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등)이 포함 될 경우 “하수도법” 및 “마을하수도사업통합지침(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공동)”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수립, 사업추진 및 유지관리 하여야 함
- 환경정책기본법 및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 및 문화재지표 조사가 필요할 경우 사업의 인·허가 전에 실시하여야 함.
- 사업계획의 개발사업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협의가 필요한 경우 각 단위사업 시행계획 승인 전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하여야 함

바. 타사업과의 연계

- 기본계획 수립자는 권역의 장기발전을 위하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타 부문 사업으로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업을 발굴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여야 하고 시장·군수는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함
 - 농업생산기반정비, 농업농촌생활용수개발, 유통·소득·가공시설, 농촌생활환경비, 뉴타운조성, 전원마을조성, 농촌주택개량, 경관보전직불사업 등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사업
 - 농어촌도로, 소하천정비, 마을하수도, 마을체육시설 등 타부처 소관사업과 새농어촌건설 등 시·도 시책사업
- 기본계획 수립자는 지방소도읍육성법에 의한 소도읍 등 지역거점도시와 연계하여 상호 보완기능을 발휘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사. 보고사항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승인 : 권역별 기본계획확정시
- 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 : 시행계획승인(변경)시
- 사업추진상황 : 농림사업통합관리시스템(AgriX)에 등록(익월 10일까지)
- 사업준공결과보고 : 사업준공 후

6. 이행점검단계

시·군(지자체)

- 시장·군수는 매월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시장·군수는 매 분기별 1회 이상 마을개발협의회를 운영하여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
 - 마을개발협의회시에는 권역사업을 자문하는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시·도(지자체)

- 시·도지사는 매 분기별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현지점검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시·도지사는 매 반기별 1회 이상 지자체 공무원, 권역추진위원회, 한국농

촌공사 사업담당 등이 참석하는 연찬회, 점검회의,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반기별 1회 이상 사업추진상황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
 - 점검결과 사업추진상 문제점, 미흡한 점, 개선방안 등을 포함하여 사업시행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점검결과를 각 시·도에 통보

7. 성과측정단계

- 성과측정시기 : 중간평가(10~11월), 예산집행실적 평가(12월)
- 성과측정방법 :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권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조사
 - 사업시행 권역 만족도조사는 1단계 평가 대상 권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

8.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중간평가는 1단계(1~3년차)사업이 종료되는 권역을 대상으로 사업추진 전 과정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
 - 평가는 지자체주관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확인평가를 실시
 - 평가내용은 사업추진상황, 예산집행상황, 지역주민 및 지자체의 사업추진 역량, 사업추진 성과, 사업홍보추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연말평가는 12.31일자로 기준으로 지자체의 예산집행 실적을 평가

《환 류》

-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권역 및 우수지자체에게는 인센티브 부여, 부진권역에 페널티 부과
 - 권역 발전기금, 인센티브 예산, 포상 등
 - 중간평가 결과 60점 이하 또는 연말 예산 실 집행율이 기준 이하인 권역에는 페널티 부여
- 페널티 부여 받은 권역은 익년도 예산지원 중단, 신규권역선정 배제
- 3회 페널티를 받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사업포기 또는 중단을 요청한 경우 사업을 취소할 수 있음

IV. 2010년도 사업신청 및 대상지 선정

- 시장·군수 예비계획서 시·도지사에게 제출(10.31까지)
- 시·도지사 시·군이 제출한 예비계획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11.30까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신청한 예비계획서에 대하여 서류심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10년도 기본계획수립 대상 권역을 선정
 - 예비타당성조사대상구역 선정 : '09.12월말까지
 - 기본계획수립대상구역 선정 : '10. 1월말까지

V.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붙임)

별첨 목록	2008년도 사업시행 지침	
	참고목록	변경사항
1. 농촌마을 사업 메뉴	별표 1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
2. 소권역 구분 요령	별표 2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
3. 마을개발협의회 운영 지침	별표 3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
4. 권역사무장 운영지침	별표 4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 권역사무장 지원 : 월 100만원 → 120만원 국고보조금 한도내 지원 : 월 80만원 → 96만원
5.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예비계획서(주민제안서) 작성 매뉴얼	별지 제1호 서식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
6.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행계획 승인 결과 보고	별지 제2호 서식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
7.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행계획 변경 결과 보고	별지 제3호 서식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
8.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년도별 시행계획 및 공정계획(총괄)	별지 제4호 서식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
9.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상황 보고	별지 제5호 서식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
10.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준공결과 보고	별지 제6호 서식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

121	농공단지조성사업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산업과	과장 김정희 사무관 허 훈	02-500-1816 02-500-1817
시·도(시·군)	* 기업지원·유치부서(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기업유치과 등)		

I. 사업개요

1. 목 적

- 농어촌지역에 저렴한 농공단지를 조성,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일자리를 창출·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1조
- 농어촌정비법 제87조(농공단지 개발의 지원에 관한 기본방침), 제88조(농공단지개발의지원)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조, 제13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산업입지개발지침), 시행령 제3조(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4년까지 농공단지 400개소 조성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 기	측정방법
		'06	'07	'08		
· 농공단지 현지인 취업률(%)	62.9	62.3	62.5	62.7	'10년3월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합 계	1,280,751	50,120	99,090	128,752	400,000
- 국고보조(균특)	396,222	31,413	42,806	59,798	300,000
- 국고용자(농특)	265,822	-	-	-	-
- 지방비	618,707	18,707	56,284	68,954	100,000

II. 200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공영개발자 : 시장·군수, 산업입지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공단지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자
- 민간개발자 : 산업입지법 제16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농공단지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자 등

2. 지원대상 및 요건

가) 지원대상

- 시장·군수가 개발하는 공영개발 농공단지
- 민간실수요자가 개발하는 민간개발 농공단지 중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단지

나) 지원요건

- 시·군·구별 지정 제한면적 이내 지원
 - 지정제한면적 : 1,000천 m²이내(단 2개의 농공단지 지정대상면적이 통합된 시는 1,500천m² 이내), 추가 필요시 660천m²범위내에서 확대
- 단지당 지정면적 30~330천m² 이내에서 지원
- 농공단지 지정대상 농어촌지역만 지원(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지역)

< 농공단지 지원대상 농어촌 >

구 분	일 반 농 어 촌	추가지원농어촌	우선지원농어촌
강 원 도	원주시(1)	강릉시, 춘천시, 삼척시, 횡성군(4)	속초시, 태백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홍천군, 평창군, 정선군, 영월군, (12)
충청북도	충주시, 음성군, 진천군, 청원군(4)	제천시, 단양군, 괴산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7)	-
충청남도	천안시, 서산시, 아산시, 당진군, 연기군(5)	논산시, 공주시, 보령시, 예산군, 홍성군, 부여군, 서천군, 금산군, 계룡시(9)	태안군, 청양군(2)
전라북도	군산시, 익산시(2)	김제시,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4)	부안군, 고창군, 임실군, 순창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7)
전라남도	광양시(1)	순천시, 나주시, 무안군, 여수시, 영암군, 장성군, 담양군, 곡성군, 완도군 (9)	영광군, 함평군, 화순군, 장흥군, 보성군, 강진군, 해남군, 고흥군, 구례군, 진도군, 신안군(11)
경상북도	경산시, 경주시, 포항시, 구미시, 칠곡군(5)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문경시, 상주시, 성주군, 고령군(8)	예천군, 의성군, 군위군, 봉화군, 울진군, 영양군, 영덕군, 청송군, 청도군, 울릉군(10)
경상남도	김해시, 거제시, 창원시, 마산시, 함안군, 양산시 (6)	진주시, 사천시, 통영시, 밀양시, 창녕군, 하동군, 고성군, 합천군(8)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 의령군, 남해군(5)
제 주 도	-	북제주군(1)	남제주군 (1)
합 계	24 (17시, 7군)	50 (24시, 26군)	48 (2시, 46군)

* 도농복합형 통합시중 당초 농공단지 지정대상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시지역(춘천, 원주, 강릉, 충주, 제천, 천안, 군산, 익산, 순천, 광양, 여수, 여천, 안동, 포항, 경주, 경산, 구미, 진주, 창원, 마산, 거제, 김해)은 계속 제외

* 2개의 농공단지 지정대상 지역이 통합된 시(17) : 삼척시, 공주시, 보령시, 서산시, 아산시, 남원시, 정읍시, 김제시, 나주시, 영천시, 김천시, 상주시, 문경시, 영주시, 밀양시, 통영시, 사천시

다) 단지조성비 지원 제한

○ 해당 시·군의 기 조성 농공단지의 미분양면적이 분양대상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때 분양대상 면적이 확정되지 아니한 단지는 총 지정 면적을 분양대상면적으로 보며, 다음의 경우는 미분양면적으로 본다.

- 단지 지정 후 개발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분양공고를 하지 않은 농공단지 면적

- 입주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공장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의 당해 공장용지 면적
- 휴·폐업체가 입주업체수의 5분의 1 이상인 경우
- 신규조성 농공단지 분양대상면적이 4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실수요자의 입주수요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 지원내용

- 부지조성비 지원 내용(국비보조 교부조건)

용도별		세부공종내용	
부 지 조 성	용지취득비	토지보상비, 지상물 보상비(공동이용시설용지 포함)	
	단지시공비	- 정지토공, 사면보호, 집수탱크, 외곽울타리, 단지내 도로 · 수도관로, 단지내 하수시설, 공동이용시설(위락시설등) · 단지내 구조물, 조경, 시공중 발생이자등	
	부 대 시 설	진입도로	단지진입도로 편입토지의 용지매수비, 도로포장 및 구조물등
		공동이용건축물	종사원 1,000명당 330㎡이내
		전력, 통신, 용수, 기타시설	단지까지 전력인입, 통신관로, 단지외 용·배수시설, 가로등 용수 개발(또는 상수도 인입), 용배수시설 이설등
기타		측량설계비, 공사감독비, 관리비, 잡지출, 문화재조사비	

- 단지조성비 지원 3.3058㎡당 정액지원

(단위 : 천원/3.3058㎡)

구분	일반단지			전문단지·지역특화단지	
	일반농어촌	추가지원농어촌	우선지원농어촌	일반농어촌	추가·우선농어촌
· 국비보조	15	50	70	30	70
· 국비용자	10	20	20	10	20
· 지방비보조	5	10	10	10	10
합계	30	80	100	50	100

* 단지조성비의 집행은 지방비, 국비 순으로하고, 잔여소요는 지방비용자(기채)로 총당

* 국비용자조건(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연리 5.0%, 5년거치 10년균분상환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대상지구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

- 입지제외 기준, 지형적·지역적 여건 등 검토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지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 신규조성농공단지에 대하여 한국농촌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전문기술자를 참여시켜 입지의 적정성 및 개발의 기술적문제 등을 검토

2. 사업자 선정(신규 농공단지에 대한 타당성 등 심사) * 국고지원 필요시

지자체

- 신규조성 농공단지 중 국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환경부에 타당성 등 심사 요청(3월말까지)

[제출자료]

- ① 신규조성 농공단지 타당성 심사요청서
 - 일반현황, 시행여건, 지자체 의견, 지형도, 평면도, 전경사진, 지원요건 적합성, 입주의향서 등
- ② 신청예산, 단지규모, 대상입지 등의 적정성·타당성 관련 자체검토자료

농림수산식품부

- 국고지원이 필요한 신규조성 농공단지 대상지의 적정·타당성 심사를 총괄, 관련부처 등에 협조 요청(농림수산식품부 →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각 시·도)
 - 소요가 있는 지자체는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환경부에 3월말 제출토록하고, 관련부처는 검토결과를 4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회신토록 조치

3. 타당성 등 심사 진행

농림수산식품부

- 서면(농식품부)·도면심사(농식품부 등 4개부처), 현지확인조사(4개부처 합동)를 실시(4월)하고 대상지 선정(입지 등의 적정·타당성조사)

[서면심사기준] * 농림수산식품부

- ① 지정제한면적 1,000천㎡이내 여부(단 2개의 농공단지 지정대상 면적이 통합된 시는 1,500천㎡ 이내), 추가 필요시 660천㎡범위내에서 확대 가능
- ② 단지당 지정 가능면적(30~330천㎡) 이내 여부
- ③ 농공단지지정대상 농어촌지역인지 여부
- ④ 농공단지 유형(일반, 전문, 지역특화단지)이 적정한지 여부
- ⑤ 해당 시·군의 기 조성 농공단지의 분양률이 90% 이상인지 여부
- ⑥ 해당 시·군의 기 조성 농공단지의 가동률이 80% 이상인지 여부
- ⑦ 신규조성 할 농공단지의 실 입주수요자가 분양대상 면적에 75% 이상인지 여부

[도면심사기준] *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 “제외기준” 과 지형적·지역적 여건 등 사업시행의 효율화를 위한 “검토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

- ① 입지 제외기준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9조제1항1호 기준 적합여부
- ② 지형적·지역적 검토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9조제1항2·3호의 기준
- ③ 기타 고려사항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9조제2항

[현지조사] *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합동실시

→ 서면·도면심사결과 입지선정에 대한 관계부처의 부적정 의견 또는 현지조사 필요시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 실시

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환경부

- 지자체로부터 받은 대상지 선정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심사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회신(4월말)
-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정부합동 현지조사시 협조

4. 입지 등의 적정·타당성 등 검토결과 통보

농림수산식품부

- 서면·도면심사자료, 관련부처 의견·검토 및 현지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국비 지원할 대상지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5월중)

5. 차년도 예산신청

지자체

- 검토 결과를 반영한 신규단지와 계속사업 단지를 취합하여 차년도 예산 신청(5~6월)
 - 국고융자금(농특회계)소요는 4월말까지, 국고보조금(군특회계)소요는 5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 제출

6. 보조금(자금) 배정 및 운영관리

농림수산식품부

- 각 시·도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내역 통지(2월말)
- 월별 또는 분기별 요구된 자금소요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 후 자금송금 조치
 - 자금관리부서(운영지원과)에 월별 또는 분기별 자금 교부를 신청하고 자금 송부결과를 각 시·도별 담당부서에 통보

지자체

-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교부 신청(2월말)
- 분기별 소요 자금을 매분기 20일전까지 서식에 요구
 -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기 배정된 예산을 단지별로 재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조정된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보조금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을 확보
- 지자체는 농공단지조성자금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영

-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업무는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
- 시·도지사는 배정받은 보조금을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단지별로 균형있게 배정하되 용지보상비 등은 공사비에 우선하여 지급
- 시장·군수는 지방비용자금에 대한 기채를 조속히 이행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다만, 기 확보 내시된 국비소요 예산에 대하여는 기채할 수 없음
- 민간실수요자가 개발하는 경우에는 단지개발 이행을 보증할 수 있는 보증서 등을 시장·군수가 확보
- 보조금이 10% 이상 추가되는 단지조성계획 변경승인하는 경우, 사전에 농림수산식품부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

7. 사업의 시행

지자체

- 국고지원이 확정된 단지에 대해서는 산업단지계획(기본·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심의위원회(道) 심의를 요청(필요시 사전에 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여 농공단지조성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심의 승인시 조속히 공사를 실시하고 이때 공사로 인한 불편과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함
- 단지계획승인 및 농공단지 준공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8. 보조금 정산

지자체

- 시·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당해년도 사업비 집행에 대한 검정과 정산을 실시하고, 다음해 2월 10일까지 정산보고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9. 이행점검단계

농림수산식품부·지자체

- 단지조성비 신청 신규조성 대상지에 대하여 적정·타당성에 관한 조사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
-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도, 시·군에 대하여 예산집행실태 점검 및 사업진행상황 등을 점검함(농식품부→지자체, 시·도→시·군)
- 농공단지 분양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양수 등으로 지정해제에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보조금 및 지방보조금과의 차액을 환수하여야 함.
- 전문단지 등을 일반단지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는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단지는 조성후 5년 이상 경과 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산업과 연계, 관련업종유치, 계열화 등으로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

10. 성과측정단계

한국산업단지공단

-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 자료(분기별)로 분양률, 고용인원에 대한 성과측정
 - 조성 및 분양, 입주 및 고용, 생산 및 수출 현황

11.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지자체

- 시·도지사는 대상사업 지정승인부터 사업시행과정을 시·군별로 평가하고 다음연도 예산 편성시 이를 반영하여야 함

< 평가기준 >

- 사업시행중 임의 또는 과도한 계획변경 여부
-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실적(공정률, 민원, 실 집행실적 등)
- 기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지사의 평가결과, 지자체 예산 실집행 상황, 감사원 지적사항 등을 감안하여 차년도 예산 편성시 반영

IV. 201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1. 2010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는 2010년도 국고지원이 필요한 농공단지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농식품부 등 관련부처에 제출(2010년 3월말)
- 국고지원 대상자
 - 공영개발하는 농공단지 또는 민간의 실수요자가 개발하는 농공단지중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단지

[별지 1호 서식]

농공단지 예산 및 자금 요구(국비) 내역

(단위 : 천원)

농공단지명	농어촌구분	단지종류	면적 (천㎡)	지정승인일	실시계획승인일	부지조성			교부결정액 (당해년도)	
						착공일	공정(%)	준공예정일	보조	용자
계										

예산 및 자금배정 요구액									비고
전년도까지 배정액		(당해)년도							
		기배정액		금회요구액		소계			
보조	용자	보조	용자	보조	용자	보조	용자		

[별지 2호서식]

농공단지조성사업비 정산내역

가. 총괄

(단위 : 천원)

농공단지 현황				예산현액								합계
				전년도 이월액				예산액				
단지명	지정 년월	면적 (천㎡)	단지 종류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보조	용자	보조	용자	보조	용자	보조	용자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합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보조	용자	보조	용자	보조	용자	보조	용자	보조	용자	보조	용자	

나. 국고보조금 불용액 조서

(단위 천원)

단지명	불용액	불용사유
		※ 불용사유를 구체적으로 6하원칙에 의거 작성

[별지 3호서식]

자체 가26-49

농공단지 준공결과보고

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단지명	농어촌 구 분	단지 종류	지정 면적 (천㎡)	지정 년월	사 업 비				조성 면적 (천㎡)	비 고	
					계	국 비		지 방 비			
						보조	융자	보조			융자

준공현황

단지명	공사기간		시공회사	감 리 자 (감독공무원)	준 공 검사자	하자보수 기간맞기한	비고 (기타)
	착공일	준공일					

①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산업과	과장 김정희 사무관 김연백	02-500-1816 02-500-1820
소속기관/단체	한국농촌공사	평가분석팀장 최동주	031-420-3970

I. 사업개요

1. 목 적

-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낙후지역을 활력지역으로 육성하여 장기적 자립발전기반 마련

2.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

3. 성과목표 및 지표

- 지역의 내생적·자립적 발전기반 마련
 - 지역이 주체가 되어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강점을 발굴, 특화·상품화하여 지역발전을 도모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06	'07	'08		
▪ 주민교육 (만명)	7	-	7	-	'09.3	지자체에서 신활력사업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한 실적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합 계	390,000	188,219	188,219	188,219	188,219
보 조	390,000	188,219	188,219	188,219	188,219

II. 200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제2기 신활력지역으로 선정·고시된 70개 시·군
 - 지원대상 지자체는 신활력지역으로 선정된 시·군으로 하되, 동일한 지역이 3회를 초과하여 선정될 수 없다
 - 최초로 선정하는 신활력지자체의 규모는 전체 시·군·구중 낙후도 기준 하위 30%에 해당하는 지자체로 하되, 선택과 집중 및 선의의 경쟁유도를 위해 2차 이후의 선정규모는 최초로 선정한 규모범위내에서 사업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2. 지원자격 및 요건

- 제2기 신활력지역으로 선정·고시된 70개 시·군

3. 지원대상

- 농산물, 특산물, 향토자원(전통문화) 뿐만 아니라 문화·관광, 지역이미지 마케팅, 생명·건강, 교육인재 등 농업, 비농업분야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신활력지자체가 지역역량 강화 및 지역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주체와 함께 스스로 사업아이템을 선정 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신활력사업
- 가급적 기존의 낙후지역 개발사업과 차별성이 있는 신규사업으로 하되, 부가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큰 경우 기존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사업 간의 효율적 연계방안·사업내용 차별화 방안·중복투자 방지 방안 등을 강구
- 지역주체들의 역량 강화, 지역 연고산업의 육성 및 그 육성을 위한 S/W의 개발을 중심으로 하고, H/W 사업은 위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

< 지원배제 사항 >

- 투입에 비해 효과가 미약하거나 단순 배분하는 주민 보조사업은 지원 제한
 - 세부 사업별 사업비 총액이 5억원 이상인 H/W사업의 경우 사업 타당성을 철저히 분석한 후 사업 계획 수립
 - 개별 농가 및 경영체 지원은 최소화하되, 필요시 유사한 농림사업에 준하여 자부담 부과
 - * 개별농가 또는 경영체에 대한 시설(기자재)비 지원 및 민간인 해외연수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고보조비율은 50%이하로 제한
- 농정 추진방향과 맞지 않는 사업 지원 제한
 - 과잉생산으로 문제가 되거나, FTA 기금으로 폐원보상 하는 특정 농산물(예 : 소입식, 인삼, 녹차, 시설포도, 키위, 복숭아 등)에 대한 재배면적 확대 또는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사업은 지원 제한
 - 기존 농림사업, 타 부처 사업 선정에서 탈락된 사업자에 대한 동일 사업 지원 및 동일 사업에 대하여 타 지원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 제한
 - * 사업주제는 중복되더라도 내용이 중복되지 않고 타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토지·부지·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 음식점·숙박시설 설치 또는 임차관련 비용은 지원 제한
- 농촌활력증진계획 대상사업과 관련성이 적은 일반 업무추진 비용은 지원제한
 - 농촌활력증진계획 대상사업과 무관한 업무추진비, 공무원 여비, 수송비, 행사성 비용 등 지원 제한
 - 농촌활력증진계획 대상사업과 관련된 민간인 여비, 공무원 교육경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경비(비품구입, 사무실 임대 등 수송비와 업무추진비는 편성불가)는 지원 최소화
 - * 지역혁신협의회의 경우 활동이 신활력사업과 관련되어 추진될 경우에만 신활력사업비 지원가능

5.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시·군별 낙후도에 따라 19~29억원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해당사항 없음

2. 사업자 선정단계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마다 신활력 시·군을 재선정하여 고시토록 하고 있음
- * 제1기('05~'07) : '04.9월 고시, 제2기('08~'10) : '07.7월 고시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신활력사업 계획수립 세부추진지침을 마련하여 시도에 통보하고 계획서 제출 지시(3/4분기)
- 시군에서 제출된 계획을 신활력사업 자문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후 승인 또는 보완통보
 - 보완요청 시군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재작성 제출통보

시·도(지자체)

- 신활력 시군은 기 승인된 중기계획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계획서 승인을 받은 후 사업시행

4. 자금배정단계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를 거쳐 시군에 자금을 배정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수산식품부 본부 및 농촌공사 농촌활력사업본부

- 신활력 시군을 대상으로 지도점검·모니터링·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매년

신활력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 실시

- 추진실적 평가 시 국고보조금 사용내역을 점검하여 평가에 반영

6. 성과측정단계

- 매년 신활력 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인센티브 제공
 - 평가기관 : 신활력사업 자문위원으로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평가
 - 평가지표 : 전년도 평가지표 등을 감안하여 지표 설정, 설명회 개최 후 확정
 - 주요평가지표 : 성과지표 달성도, 단체장의 추진 의지 등
 - 평가일정 : 추후 별도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평가원칙 : 시군별 목표 및 성과지표의 달성도 평가
- 평가절차 : 시군 자체평가서 작성·제출 → 시·도 평가 → 중앙평가 → 심의 확정
- 평가대상 : 신활력 시군 70개
- 평가기관 : 신활력사업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환 류》

-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 제공

IV. 201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0년도 사업수요조사

- 해당없음

2. 201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계획서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별도 통보

② 향토산업육성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시설안전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산업과	과 장 김정희	02-500-1816
		사무관 최호중	02-500-1821

I. 사업개요

1. 목 적

- 농촌지역에 부존(賦存)되어 있는 향토자원을 개발하여 다양한 1차·2차·3차 산업으로 연계·발전시켜 지역경제의 활력 증진

- * 향토산업이란 재배·가공·관광 및 서비스산업이 복합 융합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보성 녹차, 함평 나비 등)
- * 향토자원은 지역성과 차별성이 있는 유·무형의 특산제품·기술·문화 등 지역부존자원을 말함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1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매년 30개 향토자원을 발굴, '13년까지 200개 향토자원에 대해 지역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산업화 지원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06	'07	'08		
향토자원 개발건수	30	-	19	30	2009.1	향토자원 발굴, 육성지원 건수(사업연도 말)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합 계	-	8,616	17,920	56,152	400,000
- 국고보조	-	4,308	8,960	28,076	200,000
- 지방비	-	4,308	8,960	28,076	200,000

II. 200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인, 생산자단체, 향토기업체, 연구단체 등

- 사업주관 : 시·도지사
- 시행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산·학·연·관 등 다양한 사업주체가 참여하는 클러스터형 사업추진단 구성 의무화
 - 사업참여 주체별 역할, 국고보조에 수반되는 지방비·자부담의 확보, 소유권 등에 대한 협약 체결

3. 지원대상

- 농어촌 지역 및 전후방 산업 전반에 경제적 파급이 가능한 대표적인 지역 자원
- 1·2·3차 산업이 연계되어 복합산업으로 육성 가능한 자원
- 전통적인 농어업자원, 전래기술·문화·관광·자연자원 등
 - 지리적 표시 등록, 지역특화발전특구 등과 관련된 경우 인센티브 부여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향토자원 개발을 위한 관련 사업 포괄 지원 (S/W, H/W 포괄지원)
 - 기존 특산제품의 고급화 및 다양화
 - 전통농어업자원, 토종 동·식물 등을 활용한 상품개발
 - 전통전래양식의 상품화
 - 농·수·축·임산물의 효능 및 약효를 이용한 신소재 상품개발
 - 향토자원을 활용한 문화상품의 개발 등
- 지원분야별 사용용도
 - S/W 분야 : 홍보·마케팅, 디자인·브랜드 개발, 제품기술 개발 연구, 향토 자원 권리화, 사업추진단 운영, 전담인력 비용, 전문교육 프로그램, 네트워크 구축·운영비용 등
 - H/W 분야 : 제품 개발·생산시설, 판매시설, 체험시설 등

< 지원배제 사항 >

- 투입에 비해 효과가 미약하거나 단순 배분하는 주민 보조사업
- 과잉생산 또는 폐원보상 하는 특정 농산물(예 : 소 입식, 인삼, 녹차, 시설포도, 키위, 복숭아 등)에 대한 재배면적 확대 또는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사업
- APC·RPC 등 타사업과 중복되거나, 타사업 선정시 탈락한 사업자에 대한 동일 사업 지원 및 동일 사업에 대하여 타 지원 기준을 초과하는 지원 등
- 토지·부지·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 음식점·숙박시설 설치 또는 임차, 해당 지역을 벗어난 판매장 등의 설치 또는 임차 관련 비용
- 향토산업육성사업과 관련성이 적은 일반적인 업무추진 비용
- 기타 농림수산식품부 정책과 배치되는 지원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사업계정 / 혁신사업계정
 - '09년 신규지원 사업 : 혁신사업계정(지역클러스터활성화지원사업 단위사업)
 - 2~3년차 계속 사업 : 지역개발사업계정(농촌활력증진사업 단위사업)
- 지원기준 : 국고 50%, 지방비·자부담 50%
 - 지방비 부담의 경우, 부담액의 일부를 사업수혜자가 부담하도록 지자체에서 자율 시행 (예시 : 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 세부단위 사업별로 사업의 공공성·형평성, 사업자의 책임확보, 특혜시비 배제 등 여건을 고려하여 자부담을 결정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기간 : 3년
- 지원한도액 : 사업추진단별 30억원(국고 15) 이내, 매년 평균 10억원(국고 5)
 - '07~'08년 신규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09년도에 2~3년차 사업이 추진되는 계속사업의 경우는 1~3년간 30억원이내 (국고 15억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도에 시달 : 전년도 7월

시·도, 시·군 (지자체)

- 시·군 향토산업육성사업계획[별지 제1호 서식] 작성·제출(시·군별 1개 사업계획) : 전년도 9월
 - 시·군 → 시·도 →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된 “향토산업육성사업계획”에 대해 사업타당성, 적정성 등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후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부실 또는 부적절한 사업계획은 제외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시·군별 향토산업육성사업계획”을 단계별로 심사·평가 : 전년도 10~12월
 - (1차) 서면평가 → (2차) 현장평가 (필요시 공개발표 평가 병행 또는 대체)
- 사업계획 평가기준
 - 평가기준 : 사업추진체계,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별도 통보)
 - 평가지원 기관 : 한국농촌공사 농촌활력사업본부
 - * 농촌활력사업본부는 산·학·연 등 분야별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평가단을 구성, 서면·현장 평가 등을 추진
- 지원대상 확정 : 전년도 12월
 - 실무평가단 평가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 향토산업육성심의회에 상정, 사업대상 확정
- 사업대상 선정 결과 통보(농림수산식품부 → 시·도 → 시·군)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대상 시·군에서 제출한 「향토산업육성사업계획」에 대해 검토·조정 및 확정
 - 향토산업육성 지원기구를 통한 전문가 검토 및 컨설팅 지원 실시

시·도, 시·군 (지자체)

- 시·군 사업계획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컨설팅 결과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을 보완·수정하여 제출
- 시·군은 여건이 변화되어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변경승인 신청
 - 시·도는 사업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기준 등 지침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하고, 그 내용을 농림수산식품부로 제출
 - 다만, 사업 기본방침, 시설사업비 증액, 세부사업비의 30%이상을 수반하는 계획 변경 등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 사전승인 후 집행
- * '07~'08년 신규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09년도에 2~3년차 사업이 추진되는 계속사업은 '07~'08년 지침 적용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각 시·도의 분기별 자금 수요를 파악, 분기별 자금배정 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자금 배정

시·도, 시·군 (지자체)

- 시·도는 분기별 배정된 국비와 함께 지방비를 포함, 시·군에 자금을 배정하고 시·군은 분기별 배정된 자금을 사업완료 후 검정, 정산
 - 지자체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기본규정 등에 따른 집행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업관리주체(시·도, 시·군)

- 시·도지사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와 사업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시·도 및 시·군은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반기별로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부진 또는 부실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지자체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의한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하여는 유사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함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등 참고)
- 사업비 집행실태 제출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군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군은 지체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하고 정산을 하여야 함
 - 시·군은 회계년도 종료시 예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3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함 (서식 별도 통보)
 - * 사업검정시에는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에 따라 사업비에서 부가세 환급금을 공제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농림수산식품부

- 지자체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상황 점검(반기별 1회)
 -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사업별 추진상황, 현장애로 사항 등 점검

6. 성과측정단계

- 농촌지역의 부존 향토자원을 지역전략 핵심산업으로 발굴·육성한 실적 등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모니터링(사업추진 중간단계 평가) 》

시·도, 시·군 (지자체)

- 시·군은 반기별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상황 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 시·도를 경유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8월말, 익년 2월말
 - 시·도는 시·군의 자료를 확인·검토하고, 진행상황 등을 종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농림수산식품부

-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상황 보고서를 취합, 사업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사업 성과 달성을 위해 필요시 컨설팅 등 측면 지원 실시 (농촌활력사업본부 지원)
 -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의 수정 등을 해당 지자체 요구

《 성과평가(사업완료 후 평가) 》

시·도, 시·군 (지자체)

- 시·군은 사업추진 완료후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결과 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 시·도를 경유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제출 : 익년도 2월까지
 - 시·도는 시·군 사업결과보고 자료에 대한 확인 절차를 종합 검토하여야 함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결과 보고서”를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 방식에 의해 성과평가 실시
 - 평가방법 :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결과 보고서”를 성과평가 지표[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평가 (필요시 농촌활력증진사업 실적평가와 연계)
 - * 농촌활력사업본부는 사업완료 시군에 대한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하고,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 지원

《 환 류 》

- 모니터링, 성과평가 결과 우수 시군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인센티브 예산 지원 등을 검토 (기획재정부 협의 필요)
- 사업 부진시에는 사업계획 수정·보완, 예산 삭감, 다음연도 사업대상 선정 평가시 감점 등 패널티 부여
 - 특히, 모니터링, 평가결과 사업의 지속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지원 중단 등 조치

IV. 201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0년도 사업수요조사

- 해당사항 없음('10년도 사업대상 선정 절차 '08.12월 기 마무리)
 - '11년 사업대상 선정 관련 사항은 추후 지자체를 통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

2. 2010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해당사항 없음

※ 향토산업육성 사업체계 개편에 따라 '09년 신규지원 대상부터 「지역클러스터활성화지원 사업」 단위사업(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됨

- '07~'08년 선정된 2~3년차 계속사업은 완료시까지 「농촌활력증진사업」 단위사업(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지원

⇒ 「지역클러스터활성화지원사업」 단위사업(향토산업육성사업) 지침은 동 지침과 동일하므로 생략

[별지 제1호 서식]

향토산업육성사업계획서(안)

I. 사업개요

1. 추진배경

- 지역여건, 현재까지 추진실적, 그간의 성과·문제점, 사업 필요성·목적 등

2. 향토자원 현황

- 가. 향토자원의 성격
- 나. 산업화 가능성

3. 사업목표(성과목표)

4. 성과지표

5. 추진전략

6. 중장기 투자계획

II. 사업추진 체계

- 사업추진단, 지원조직, 외부자문단 구성·운영 등

III. 사업계획

1. 사업내용

2. 사업기간

3. 단위사업별 추진계획

4. 기대효과

5. 연차별·보조사업별 투자계획

6. 단위사업별 설명자료

IV. '11년도 사업추진계획

< 붙임 > : 연관사업 현황, 지방자치단체·사업단·참여기관 협약서, 각종 증빙자료 등

※ 사업계획서 세부사항은 사업대상 선정절차 추진시 지자체에 별도 통보

[별지 제2호 서식]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상황 (모니터링) 보고서

시·도, 시·군 :

사업명 :

○ ‘○○년도 지원대상 사업 ○차년도 추진상황

사업 추진상황 (계획대비 진행정도를 총괄 기재)	
계 획	진 행 정 도
○ 세부사항별 계획대비 추진상황 기재	○
○	○
○	○

세부 사업별	당해연도 사업비 집행실적 (백만원)	
	계 획	집행실적
합 계		
○		
○		
○		

	사업전 (A)	현 재 (B)	증 감		비 고
			B-A	(%)	
○ 종사자수(명)					증감사유, 특이 사항 기재
○ 매출액(백만원)					
○ 방문객수(명)					
○ 수출액(백만원)					
○ 가동률(%)					
○ 교육횟수(회)					
○ 교육인원(명)					

차기년도 계획

-
-

애로사항 및 건의

-
-

시·도 검토의견

-

※ 필요시 서식 변경 활용

[별지 제3호 서식]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 결과 보고서

시·도, 시·군 :

사업명 :

사업의 성과물
○ 사업추진 성과에 대한 총괄사항을 세부적으로 기재

목표의 달성도	
목 표	달 성 정 도
○ 상과목표 및 목표 달성정도에 대해 세부적으로 기재	

	사업전 (A)	현재 (B)	증 감		비 고
			B-A	(%)	
○ 지원대상 종사자수(명)					증감사유, 특이사항 기재
○ 지원대상 매출액(백만원)					
○ 방문객수(명)					
○ 지원대상 수출액(백만원)					
○ 지원대상 가동률(%)					
○ 지원대상 교육횟수(회)					
○ 지원대상 교육인원(명)					
○ 지역 향토산업체수(개)					
○ 지역 향토산업체 종사자수(명)					
○ 지역 총산업체수(명)					
○ 지역 총종사자수(명)					
○ 지역 제조업체수(명)					
○ 지역 제조업종사자수(명)					
○ 지역 서비스업체수(명)					
○ 지역 서비스업종사자수(명)					
○ 지적재산(특허, 지리적표시) 확보 건수					

애로사항 및 기타 건의사항
○ 사업추진상 문제점, 개선사항, 기타 건의 사항 등 기재

시·도 검토의견
○

※ 필요시 서식 변경 활용

사업추진결과 성과 지표(예시)

□ 정성평가 지표

	배점	항목	배점	정성적 성과평가지표
사업수행	45	목표의 달성도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한 목표는 달성되었나? · 사업결과의 질적 수준은 우수한가? · 사용한 사업비에 상응하는 결과들이 도출되었는가?
		혁신성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관리, 경영관리 등 운영상의 혁신체계가 확립되었는가? ·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학습체계가 확립되었는가? · 지역에 소재한 다른 기업체, 교육기관, 연구소 등과의 네트워크가 확립되었는가? · 인력, 장비, 시설 등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체계가 확립 되었는가?
사업성과	55	성과의 시장성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의 시장 경쟁력은 우수한가? · 5년후 시장에서 생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가? · 기술개발 또는 제품(상품)의 질에 대한 시장리드 효과는? · 시장에서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가?
		지역파급 효과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업체수가 증가하였는가? · 관련업체에 종사하는 종사자수가 증가하였는가? · 관련업체의 매출액이 증가하였는가? · 지역을 방문하는 방문객의 수가 증가하였는가?

□ 정량평가 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정량적 성과 평가기준
향토산업활력	향토산업체 종사자수	기준시점과 평가시점간의 관련 향토산업체의 종사자수 변화
	향토산업체수	기준시점과 평가시점간의 관련 향토산업체수 변화
	향토산업체 종사자수 비중	기준시점과 평가시점간의 제조업(서비스업)에서 차지하는 관련 향토산업체의 종사자수 비중 변화
	향토산업체수 비중	기준시점과 평가시점간의 제조업체수(서비스업체수)에서 차지하는 관련 향토산업체수 비중 변화
지원대상향토산업체 매출액(방문객)	기준시점과 평가시점간의 관련 향토산업체 매출액(방문객) 변화	
지역산업활력	제조업체 종사자수	기준시점과 평가시점간의 제조업체 종사자수 변화
	서비스업 종사자수	기준시점과 평가시점간의 서비스업 종사자수 변화
	제조업체수	기준시점과 평가시점간의 제조업체수 변화
	서비스업체수	기준시점과 평가시점간의 서비스업체수 변화

③ 특화품목육성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산업과	과장 김정희 사무관 최호중	02-500-1816 02-500-1821

I. 사업개요

1. 목 적

- 농촌지역에 고유한 특화품목을 집중 육성하여 농가소득 제고

* 특화품목육성 : 지역에 고유한 농·수·축산물을 신기술, 신지식, 신유통 등을 활용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지역의 브랜드로 개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정한 품목의 육성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1조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1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사업당 재정지원 집중도를 지속 확대

(단위:억원)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06	'07	'08		
사업집중도	3.1	1.3	1.7	2.5	2009.1	지원예산/특화사업개소 (품목)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합 계	1,411,712	216,446	300,462	254,522	1,491,000
- 국고보조	705,856	108,223	150,231	127,261	745,500
- 지방비	705,856	108,223	150,231	127,261	745,000

II. 200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 농업인조직, 생산자단체, 농산물가공업체
 - ※ 국제행사의 경우에 한해 시장·군수 직접 추진 가능
- 사업주관 기관 : 시·도지사
- 사업시행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농산물가공업체는 특혜시비 방지 등을 위해 가공식품의 주원료 80%이상을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업체로서 시·도별 자체 기준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 다만, 지역내 원료확보 곤란 등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원료의 20% 범위내에서 국내산으로 대체 가능 (예 : 지역내 60%, 국내산 20%)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제조업(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이하)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지원

2. 지원대상

- 지역적인 특색이나 타 지역과 차별성을 가진 시·군 지정 특화 품목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역의 특화품목을 브랜드화해서 농가소득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생산·유통·가공 등) 지원
 - 지역고유의 농·수·축산물 등을 특화품목으로 지정하고, 「특화품목 육성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쌀 생산을 대체하는 특화작목(연근, 순무 등), 향토자원개발과 연계되는 품목을 우선 지원
 - 국제적 행사(국무총리실에서 정한 「국제행사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및 「국제행사관리지침」을 적용하여 지원)
 - 사업비 10억원이상 : 국무조정실 심의 및 승인
 - 사업비 10억원미만 : 주무부처(부서) 및 기획재정부 타당성 검토
 - = 국제적 행사 기준 : 5개국이상의 국가에서 100명이상의 외국인이 참여하는 행사

○ 지원제외 대상 사업

- 비료, 농약 등 농자재구입 지원
 - 국제 행사 이외의 축제 등 지역행사 관련 지원
 - 홍보, 컨설팅, 연구용역, 브랜드 개발, 포장재 등 일체의 경상적 성격의 사업
 - 저온저장고 등 유통시설, 미곡도정시설 등 타 사업에서 지원하는 사업 ('10년부터 미곡도정·건조·저장시설 일체 지원제외)
 - 과잉생산 우려 또는 폐원보상 하는 특정 농산물(예 : 소입식, 녹차, 인삼 등)에 대한 재배면적 확대 또는 생산량 증가 사업
 - 각종 종구·종자·종묘, 벼 육묘장 설치, 천적미생물·곤충보급, 경작로, 농수로 보수, 저수지 준설, 재해예방 등 특화품목 육성과 관련성이 적은 사업
 - 토지·부지·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 음식점·숙박시설 설치 또는 임차, 해당지역을 벗어난 판매장 등의 설치 또는 임차 관련 비용
 - 특화품목육성과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친환경농업관련 사업
 - 기타 농림수산식품부 정책에 배치되는 사업
- * 지자체에서 '06년이전 중장기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설 설치 사업의 경우는 당해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지원

4. 지원형태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자부담 50%(기준보조율)
- 지방비 부담의 경우, 부담액 중 일부를 사업수혜자가 부담하도록 지자체에서 자율 시행 (예시 : 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세부단위사업별로 사업의 공공성 및 형평성, 사업자의 책임확보, 특혜시비 배제 등 여건 고려하여 자부담율 결정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규모 : 단위사업당 총사업비 20백만원(국고 10, 지방비·자부담 10)~1,000백만원(국고 500, 지방비·자부담 500) 이내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시·도, 시·군(지자체)

- 시장·군수는 특화품목육성사업의 주요내용, 사업신청기한(1월말까지)을 정하여 지역주민에게 홍보하고 사업신청을 받아야함
 - 시·군별로 기 수립한 '08~'10 농촌활력증진계획에 반영된 세부사업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지역여건 변화 등에 따라 농촌활력증진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타당성 검토 등 절차 이후 반영 가능
- 농업인조직 및 생산자단체, 농산물가공업체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기한내(1월말까지) 사업 신청
 - 구비서류 : 특화품목육성계획[별지 제2호 서식]
 - * 시·도는 농산물가공업체 선정을 위해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48조 및 경영실적·재무구조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동 기준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사업대상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시·도, 시·군(지자체)

- 시·군은 특화품목 선정 및 특화품목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시·군 농정심의회 등 자체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되, 아래 우선지원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 신지식농업인, 벤처농업인, 선도농가, 전문 경영체 등이 포함되어 있는 농업인조직 및 생산자단체에 우선 지원
 - 특화품목에 대한 클러스터화, 구성 주체간 조직화 및 협력 네트워크 형성 계획이 수립된 사업자 우선 지원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 시·군(지자체)

- 시장·군수는 특화품목으로 육성코자하는 품목을 정하여 예산신청년도 2월말까지 특화품목지정계획[별지 제1호 서식] 및 특화품목육성계획[별지 제2호 서식]을 시·도에 제출 (시·군별 5개품목 이내 지정가능)

- 시·도는 시·군의 특화품목육성계획을 검토, 보완 후 예산신청연도 3월 말까지 특화품목을 지정하고, 지정품목에 한하여 예산 지원
 - 시·군이 육성코자 하는 지역특화품목에 대하여는 농업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지역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정
 - 시·군간 과잉생산 등의 문제가 우려될 경우에는 시·도에서 조정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협의 후 집행하여야 함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각 시·도의 분기별 자금 수요를 파악, 분기별 자금배정 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자금 배정

시·도, 시·군(지자체)

- 시·도는 분기별 배정된 국비와 함께 지방비를 포함, 시·군에 자금을 배정하고, 시·군은 분기별 배정된 자금을 사업완료 후 검정, 정산
 - 지자체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등에 따른 집행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도, 시·군)

- 시·도지사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와 사업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각 시·도에서는 소관 사업의 추진실적, 자금집행상황 등을 반기별로 1회이상 점검 하여야함

- 시·도 또는 시·군에서는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관한 점검한 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자금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관련법령과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사업자금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등의 절차를 이행 및 정산 실시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 사업완료후 1개월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37조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사업의 특성상 농림사업의 안내판을 설치한 경우 도난 등 표시의 실익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내부방침을 통해 안내판 미설치 가능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하여는 유사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함
- 사업비 집행실태 제출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군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군은 지체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하고 정산을 하여야 함
 - 시·군은 회계년도 종료시 예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3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함 (서식 별도 통보)
 - * 사업검정시에는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에 따라 사업비에서 부가세 환급금을 공제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도·감독 등을 통해 집행실태 파악

《제재》

사업관리주체(시·도, 시·군)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에 적합하지 않게 사용시 자금지원 중단 및 전액 회수
- 사업비 정산결과 집행실적이 저조한 경우(50%미만) 예산 신청시 사업비 조정

6. 성과측정단계

- 지역별 특화품목을 육성하기 위해 투입한 재정집중 정도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시·도지사는 대상사업 지정승인부터 사업시행과정을 시·군별로 평가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이를 반영하여야함
- 농림수산식품부는 집행실태 파악을 통해 제도 개선 추진

IV. 201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0년도 사업수요조사

- 해당없음

2. 201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구
- 신청자격 : 농업인조직, 생산자단체, 농산물가공업체
- 신청절차 : 보조사업자 → 시·군 → 시·도
 - 사업신청인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1월말까지 시장·군수에 제출
- 구비서류 : 특화품목육성계획

※ 2009년 지침을 준용하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통보

[별지 제1호 서식]

○○년 특화품목 지정계획

□ 농산물

시도	시군	품목	재배면적 ha	연간생산량 M/T	참여농가 호	특화품목지정사유

□ 축산물

시도	시군	축종	사육두수 천마리	참여농가 호	특화품목지정사유

□ 농산물 가공 등

시도	시군	가공품목	연간 생산량		가공에 필요한 주요 농산물 사용량		특화품목지정사유
			생산량	단위	품목	소비량	

[별지 제2호 서식]

특화품목육성계획(품목명)

구분	소 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E-mail
작성 및 검토자(시·도)					
작성자(시·군)					
작성자(시·군)					

1. 사업개요

- 사업명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사업시행기관 :
 - 사업주관기관
- 사업지역(위치) :
- 참여 농업인조직, 생산자단체, 농산물가공업체 현황
- 특화품목 지정 :
- 다른 기존 사업과의 중복지원 여부
- 주요 사업내용
 -
- 사업기간 :
- 총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등	비고
사업비					
부담율(%)	100%				

- 세부단위사업별 지원계획

(백만원)

지원 시기	세부단위사업	사업량	총 사 업 비				비고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합계							

2. 특화품목 육성여건

특화품목육성을 위한 여건

- 생산 및 판매현황
- 유통 및 소비여건
- 육성코자 하는 특화품목과 관련된 생산·가공시설, 연구기관 및 특허보유 등 현황

보조사업자의 사업추진능력

- 현재 보조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 당해 품목에 대한 기술능력
 - 재배경력
 - 영농기술
 - 기타(특허보유, 신지식농업인 여부 등)
- 자부담 가능성 :

사업부지 확보 가능성

○

3. 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내용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 보조사업자 선정
- 사업부지 확보
- 세부설계
- 공사발주 및 시공업자 선정
- 공사추진
- 공사완료

사업 완료후 운영(활용)방안

○

4. 사업효과

○

5. 기 타

전문가 의견 수렴

- 일시 및 장소
- 참여자
- 주요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내용

사업추진조직 등 네트워크 구축 상황

123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사업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과 장 이명숙 지도관 박경숙	031-299-2670 031-299-2671

I. 사업개요

1. 목 적

- 농업인의 농작업 편이화 장비 보급을 통한 농업 노동 부담 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
- 농작업 편이장비의 발굴 및 확산으로 인간공학적인 농작업 환경 조성
- 고령 및 여성 농업 인력도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농작업 여건 조성

2.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 제17조(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간 산업간 안전 불균형 해소)
- 농업·농촌기본법 제8조(농촌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 14조, 제15조(농림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지원)
- 농촌진흥법 제4조(지역농업 균형발전 추진), 제13조(농촌지도사업 실시하는 지자체에 사업비 보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농작업 편이장비 사용효과 향상
 - '2017년까지 2,000개소를 목표로 작목별, 지역별 특성에 따른 농작업 편이 장비 보급으로 농업인의 농업노동 부담경감 및 농작업 능률 향상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6	'07	'08		
▪ 농작업 능률 향상도	74	-	-	73	11월	보급장비에 대한 사업 대상자를 추출하여 관찰조사
▪ 피로감소율	75	-	-	74	11월	보급장비에 대한 사업 대상자를 추출하여 설문조사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합 계	-	-	6,550	7,350	86,100
보 조 용 자	-	-	3,275	3,675	43,050
지방비 자부담	-	-	3,275	3,675	43,050

II. 2009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마을(리) 단위, 농업인 단체

- 주작목 농가 비율이 높고 영농규모가 커서 과급효과가 큰 단체 또는 마을
- 농작업량이 과다하여 개선이 필요하고 보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단체 또는 마을
- 회장·이장·지도자 등 대표자의 지도력이 탁월하며 참여마을 및 조직의 활동이 활발하고 화합이 잘되는 단체 또는 마을

2. 지원자격 및 요건

- 전체 농업인 중 참여희망 농업인의 비율이 50%이상 높고, 참여 농업인수가 최소 20명 이상으로 개선방안을 적극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단체 또는 마을
- 사업대상 모두 공동으로 추진·관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가능한 단체 또는 마을
 - 추진·운영위원회 구성, 농업인과 공무원, 관련 전문가가 협의를 통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여건
- 사업대상은 시행지침, 사업계획서 등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농작업 환경 개선 편이장비 지원효과를 확산하는데 노력할 수 있는 단체 또는 마을을 선정

3. 지원대상

-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전문가 컨설팅비, 그 외 필요한 운영비
 - 농작업 여건 및 필요 편이장비의 조사 및 선정, 평가 등 전문가 컨설팅비
 - 추진위원회 및 사업대상자의 교육·견학 등 일체 운영비

- 지역별·작목별 특성에 맞는 편이장비의 구입비
 - 농작업 편이장비위원회에서 선정된 장비(2009년 중량물 취급작업 개선장비)
 - 작업자세 및 중량물 운반개선, 작업능률 향상, 특정부위의 반복 및 과도한 힘을 사용하는 작업 개선, 생물학·화학적 유해요인 개선 등을 위한 장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업운영 및 평가
 - 사업추진위원회 및 사업대상자의 교육, 견학 등 일체 운영(사업기반조성, 관리 운영 등)
 - 농작업 여건 및 필요 편이장비의 조사, 선정, 보완 개발, 평가 등 전문가 컨설팅
-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는 지역별·작목별 특성에 맞는 편이장비 구입
 - 지역별, 작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보완개발된 편이장비 구입
 - 지역별, 작목별 농작업 여건에 적합하게 개발된 편이장비 구입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개소당 5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구 분	세 부 내 용	비 율
사업운영 및 평가	○ 사업추진위원회 및 사업대상자의 교육, 견학 등 일체 운영 (사업기반조성, 관리운영 등)	0~5% 미만
	○ 농작업 여건 및 필요 편이장비의 조사, 선정, 보완, 개발, 평가 등 전문가 컨설팅(농업기술센터 경상사업비)	10%
장비 선정 및 보급	○ 지역별, 작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보완 개발된 편이장비 구입 ※2009년 중점 보급 장비 : 중량물 취급작업 개선 편이장비 (중점 보급 장비를 전문가 컨설팅에 의해 인간공학적으로 수정 보완하거나 개발하여 보급)	50~60% 내외
	○ 지역별, 작목별 농작업 여건에 필요한 편이장비 구입 (지역에서 시급히 요구되어 필요한 장비 보급)	20~30% 내외
합 계		100% (50백만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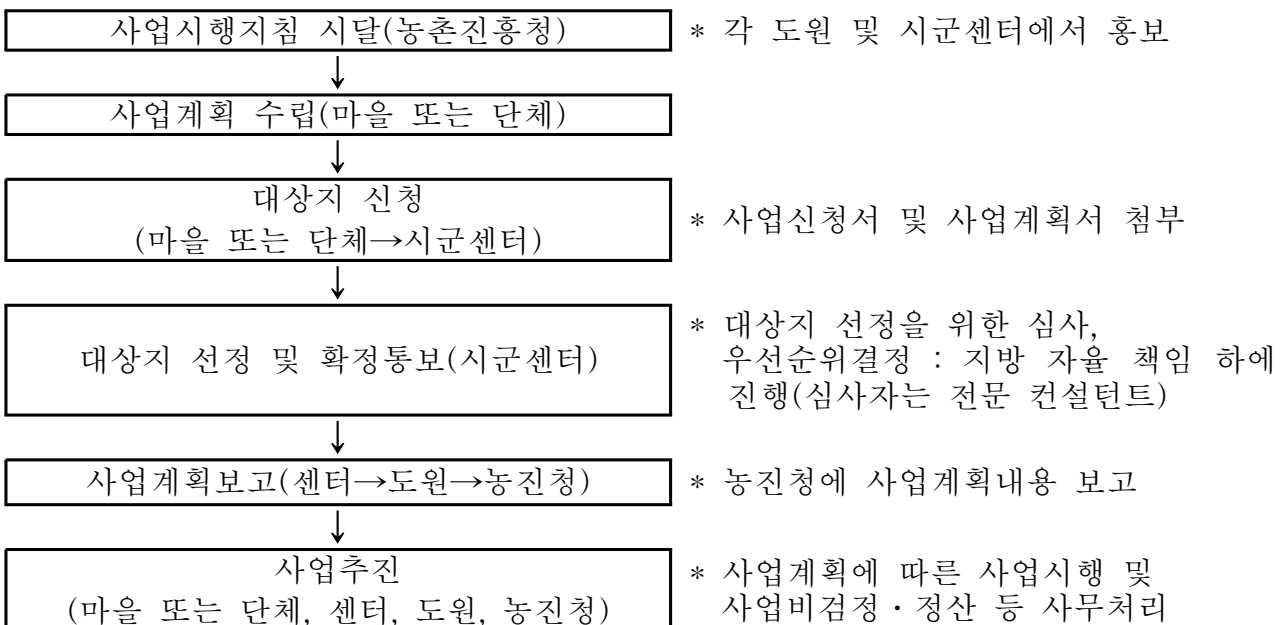
- 사업 주관기관 : 시군 농업기술센터

- 사업 담당부서
 - 농촌진흥청 : 농촌지원국 농촌자원과
 - 도 : 농업기술원 농촌생활자원(기술, 지원)과·팀
 - 시군 자치구 : 농업기술센터 농촌생활 업무 관련 팀·담당
- 사업신청서류 : 제1호, 제2호 서식

2. 사업자 선정단계

농촌진흥청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장기 방향 설정 ○ 농작업편이장비위원회 구성·운영, 장비 선정, 기술컨설팅 지원 등 ○ 지도자료 제공 및 사업 홍보, 우수자 시상 등 ○ 심포지엄, 세미나, 연찬회, 평가회 개최
도 농업기술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계획, 지역단위 홍보 ○ 사업 참가자 대상 순회교육, 컨설팅 등 지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통보↓↑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 선정 및 사업계획 협의, 점검, 조정, 자문 ○ 사업관련 교육, 홍보, 견학 등 지원 ○ 사업추진 및 평가 등 지도, 점검
사업수행 마을 또는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등 ○ 사업 추진(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 전문가 컨설팅, 사업 평가 및 분석 지원, 피드백, 사업비 집행 등

○ 사업추진 절차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 본 지침과 농촌지도사업지침(농업기술센터 비치)을 고려하여 도·시군단위 사업추진계획 수립
- 마을 및 단체에서는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에 제출
 - * 마을(작목반) 선정시 가급적 컨설턴트 참여로 사업성과 거양
- 사업대상지역의 조사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
 - * 사전교육, 농작업 현황 및 여건조사, 작목별, 작업과정별 개선이 필요한 편이장비의 선정, 평가, 보급, 관리 등
 - * 보급 편이장비 선정시 가급적 농업인·기술센터·업체 및 컨설턴트가 합의된 장비 선정으로 성과 거양
- 사업성과를 높이고 체계적인 편이장비 지원을 위하여 농작업 여건 및 필요장비 선정, 평가, 성과 분석 등 전문가 컨설팅 실시
-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추진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전환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 추진일정

세 부 내 용	추진시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대상 선정												
○ 지역농작업여건조사 및 분석 등												
○ 사업 추진 및 지원												
○ 사업평가 및 완료보고												

- 사업대상의 변경
 - 사업대상 단체 또는 지역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시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변경, 확정된 후 변경내용을 상위기관에 즉시 보고

4. 자금배정단계

-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보조금 지급규정에 의해 단체 또는 마을 대표에게 지원된 사업비를 시군 여건에 따라 편성, 관리
-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예산 집행 등 사업추진상황을 지도 점검

5. 이행점검단계

- 지원한 편이장비는 마을 및 단체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리능력과 책임감이 있는 대표가 총괄 관리하되, 파손 및 고장, 망실 등에 대한 이용 규칙을 마련하여 운영
-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3년간 사후관리 및 활용도를 점검하여 성과 및 보완 사항을 피드백
- 시도 및 시군에서는 사업계획에 의해 지원금을 집행하고, 타용도로 이용시 자금을 회수하고 금후 사업대상에서 제외

6. 성과측정단계

- 농작업 편이장비 사용효과에 대한 조사(매년 11월)
 - 농작업 편이장비 전문가 컨설팅 결과 활용 : 컨설팅 5단계별 조사표 측정 결과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성과측정결과를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사업지역별로 사용효과, 능률향상도 등 조사 및 분석
- 매년 11월 우수 농작업 편이장비 공모 및 시상으로 인간공학적으로 기능이 개선된 농작업 편이장비를 발굴하여 홍보 및 확산 계기 조성

IV. 201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0년도 사업수요조사

- 신청서 제출기관
 -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의 보급 효과를 높이고 확산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마을 또는 단체의 주소지 관할 시군농업기술센터
- 신청자격 : 2009년 지원대상 및 조건과 동일함
- 사업기간 및 지원금액
 - 사업기간 : 1년
 - 지원금액 : 개소당 5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정도)
 - * 지원금액과 비율은 지방에 따라 차등지원이 가능함

○ 사업신청절차

- 사업신청(마을 또는 단체 → 시군농업기술센터) : 2009. 1월~2월
 -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제1호, 제2호 서식)
- 대상지 추천 및 선정 : 2009. 2월~3월
- 시군에서 추천한 대상지를 자체 심사계획에 의해 지원 우선순위 결정
 - 지자체 예산신청한도 내에서 지원 대상마을 선정
- 선정기준 :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지방자체 심사계획에 의해 선정
- 예산신청(시도지사→농촌진흥청(검토)→기획예산처) : 2009. 4월~5월
- 지원대상지로 선정된 마을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사전에 추진협의회 구성, 사업계획 수립, 관리자의 리더십 구축, 참여주민의 교육 등 사업추진능력을 구축토록 함.

○ 기타사항

- 기본 사업방향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신청할 수 있음.

2. 201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9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 2010년에는 작업자세 개선장비를 중점 보급 지원장비로 선정

[제1호 서식]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사업신청서

1. 마을(단체)명 :

2. 가구 및 인구수(마을 또는 단체 중 선택)

(마을)

가구수(호)			성별 농업인수(명)			연령별 농업인수(명)				사업참여 희망농업인수 (명)
농가	비농가	계	남	여	계	49세 이하	50~ 59세	60세 이상	계	

(단체)

성별 회원수(명)			연령별 회원수(명)				사업참여 희망회원수 (명)
남	여	계	49세 이하	50~ 59세	60세 이상	계	

3. 농작업현황

대상 주작목	작업상의 문제점	해당농가 (회원) 수	비고

4. 마을(단체) 활동 현황(정부 지원사업, 작목반, 농업인단체 등)

명 칭	참여인원(명)	최근의 주요 활동

위와 같은 여건을 가진 우리 마을(단체)에서 〇〇〇〇년도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의하고 위와 같이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주소 : (전화:)
 성명 : (서명 또는 인)

〇〇 시(군) 농업 기술 센터 소장 귀하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제2호 서식]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사업계획서

1. 마을(단체) 일반현황

- 마을(단체)명(대표자명, 전화번호), 위치, 가구 및 인구(회원)수, 사업 참여 농업인(회원)수, 주요 농특산물(우선순위), 농가(단체)소득(평균, 연간) 등

2. 농작업 현황

- 영농현황(영농형태별 면적, 규모 등)
-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보유시설, 장비 등)
- 농작업의 문제점 등 여건 : 개선이 필요한 작업 등

3. 사업의 세부추진계획

- 사업추진 배경·필요성·목표
 - 현재 작업상의 문제점 및 노동부담, 개선 필요성 등 설명
-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현황 및 활동계획
 - 대표 및 추진위원의 약력 및 활동경력, 연락처 등
- 사업추진계획
 - 농작업 환경 개선작업 및 작업별 필요 편이장비 현황, 전문가 활용계획, 컨설팅 계획, 사업 참여자 교육 등
- 사업 종료후 운영계획
 - 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용계획, 운영규칙 마련 등
- 사업비 집행 계획

4. 기대효과 등

- 유형효과
- 무형효과

※ 참고 :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사업 선정 심사표(예시)

□ 마을(단체)명 :

항 목		배점	내용	점수	비고
사업추진 필요성 (40점)	농작업 문제점 (10점)	상(10)	과도한 힘의 사용, 신체 특정부위의 반복사용		1개 이상 해당 필요
		중(8)	부적절한 작업높이, 불편한 작업자세, 피로의 경감		
		하(6)	여유공간의 확보, 신체압박부위의 해소, 생물학, 화학적 유해요인		
	해당작업기간 (10점)	장기(10)	7개월 이상		년간 해당기간
		중기(8)	6~3개월		
		단기(6)	2개월 이하		
	해당농가(회원) 수(8점)	다(8)	70% 이상		해당 농가(회원)수/ 전체농가(회원)수× 100
		중(6)	69~50%		
		소(4)	49% 이하		
	해당 농업인(회원)의 평균연령 (6점)	고년령(6)	65세 이상		참여 농업인(회원) 연령/ 참여 농업인(회원) 수
		중고년령(5)	64~55세		
		중년령(4)	54세 이하		
해당 농작업자(회원) 의 여성 비율 (6점)	다(6)	50% 이상		참여 농업인(회원) 여성/ 참여 농업인(회원)수	
	중(5)	30~49%			
	소(4)	29% 이하			
사업추진 능력 (30점)	참여비율 (6점)	다(6)	60% 이상		참여 농업인(회원)수/ 전체 농업인(회원) 수×100
		중(4)	40~59%		
		소(2)	39% 이하		
	위원장의 지도력 (6점)	우수(6)	2건 이상		과거 마을(단체) 활동 추진실적
		보통(4)	1건		
		미흡(2)	실적없음		
	위원회의 추진능력 (6점)	우수(6)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분담, 활동경력이 적절		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현황
		보통(4)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분담이 적절하나 활동경력이 부적절		
		미흡(2)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분담, 활동경력이 부적절		
	장비 운영 관리계획의 적절성 (12점)	우수(12)	사업의 추진계획이 적절하며 체계적임		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
		보통(8)	사업의 추진계획은 적절하나 체계적이지 못함		
		미흡(4)	사업의 추진계획이 미흡하며 체계적이지 못함		

항 목		배점	내용	점수	비고
사업의 경제성 (20점)	편이장비의 예상가격 (5점)	저가(5)	99만원 이하		장비의 개당 가격
		중가(4)	100~299만원		
		고가(3)	300만원 이상		
	예상 성능 및 기능 (5점)	우수(5)	70% 이상		해당 문제 점의 예상되는 경감 정도
		보통(3)	50~69%		
		미흡(1)	49% 이하		
	이용율 (10점)	고(5)	500시간 이상		연간 농가구(회원) 당 사용시간
		중(3)	200~499시간		
		저(1)	199시간 이하		
사업의 기대효과 (10점)	유형효과 (5점)	상(5)	200시간 이상		연간 편이장비 사용[가구(회원)당 농작업 경감시간×해당 편이장비 사용 가구(회원) 수]
		중(4)	100~199시간		
		하(3)	99시간 이하		
	무형효과 (5점)	상(5)	3개 이상		해당 항목의 수 (근골격계 질환 등 농작업성 질환 예방, 농작업 안전 재해 예방, 피로경감, 편이장비의 확산보급홍보, 작업의 개선 중에)
		중(4)	2개		
		하(3)	1개 이하		
합계		100점			
종합의견					

※ 시군 및 도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 조정

※ 심사자 : 경험있는 전문 컨설턴트 참여

심사일 : 200 년 월 일

심사자 : 직

성명

(서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휴양등산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산림청	휴양등산과	과 장 김현수 사무관 이중락	042-481-4210 042-481-4124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경영과	연구사 전준헌	02-961-2812

I. 사업개요

1. 목 적

-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 및 휴양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과 생활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낙후된 산촌을 살기 좋은 마을로 조성하고 산림경영의 거점 지역으로 육성

2. 근거법령

- 산림기본법 제8조(산촌의 진흥), 제28조(산촌진흥지역의 지정), 제29조(산촌진흥시책의 수립), 제30조(도시와 산촌의 교류 확대)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산촌개발 사업비의 지원 등), 제29조(산촌개발사업 시행지역 사후관리 등)
- 산촌개발사업 예산편성 및 관리요령 (산림청예규 제521호)

3. 성과목표 및 지표

- 산촌생태마을 조성
 - 2012년까지 산촌생태마을 147개소를 추가 육성하여 300개소 까지 확대
- 수혜산촌주민의 만족도
 - ‘매우 만족’ 수준인 90점 달성을 목표로 연차별 목표치를 상향 설정하여 추진
- 산촌마을 소득증가율
 - 조성된 산촌생태마을의 소득증가율이 매년 7% 이상 증대될 수 있도록 설정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 기	측정방식
		'06	'07	'08계 획		
▪ 산촌생태마을 조성	33	20	15	18	2010. 1	지자체 사업실적보고서
▪ 수혜산촌주민의 만족도	86	75	84.6	85	2009.12	외부용역기관 주민만족도 조사
▪ 산촌마을 소득증가율	9.5	-	7.5	9.0	2010. 1	외부용역기관 소득증가율 조사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합 계	25,683	29,391	31,392	35,059	134,060
○ 산촌생태마을조성					
- 보 조	18,306	21,097	22,790	25,420	97,145
- 용 자	-	-	-	-	-
- 지방비	7,377	8,294	8,602	9,639	36,915
- 자부담	-	-	-	-	-

II. 200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산촌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법정리 산촌마을

* '05 산촌진흥지역 지정·고시 : 4,052개 마을(8도, 105시·군, 419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소득 수준이 낮고 생산기반 및 생활환경정비가 시급한 산촌마을
- 주변 산촌마을의 중심지로 기능이 가능한 자연부락 중 집단마을
- 산촌마을 개발에 대한 주민의 의욕과 참여도가 높은 지역

* 타 개발계획 개발예정지, 지가가 높아 수년내 개발예상 지역 제외

3. 지원대상 : 마을공동사업

사업종류		사 업 내 용	비 고
주민역량강화		· 지도자 양성 : 마을경영 및 운영관리 등 · 전문가 육성 : 특화품목재배, 산촌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 소득	생산 소득	· 생산소득기반조성 · 특화품목 개발 및 재배 · 특화품목 B.I.(Brand Identity) 개발 · 생산품 홍보, 전자상거래 기반 등	
	체험 소득	·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산촌체험시설조성	
생활환경개선		· 생활기반조성 · 마을경관개선	

* 주민역량강화 사업비는 사전설계, 마을조성 등 사업기간 동안 시·군 예산편성의 기본항목임에 유의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전설계(사전재해영향성평가용역 포함), 1년차 및 2년차 조성마을의 사업시행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형태 : 지자체 자본보조 (국고 70%, 지방비 30%)
- 사업의무량 : 생산소득사업의 마을공동 추가 부담분 (20%)
 - * 개인별 소득원 개발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 해당 품목의 관련 지침에 따름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마을조성 : 마을당 총사업비 14억(100호 미만) 또는 16억원(100호 이상)
 - 국고 70%, 지방비 30% (생산소득사업은 마을공동부담률 20%)
 - 연차별 사업비 배분 비율 : 1년차 마을조성 30%, 2년차 마을조성 70%
- 사전설계 : 65백만원 (국고 100%, 기본계획·실시설계 및 시설부대비 포함)
- 사전재해영향성평가용역 : 30백만원 (국고 70%, 지방비 30%)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사업추진 희망 산촌마을에서는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사업추진을 결의하고 시·군 지자체에 사업신청

산 립 청

- 산촌생태마을 예비선정제 추진계획 공문시행(2008.6월)

신 청 마 을

- 사업추진 희망마을에서 예비선정제 운용지침에 의거 서식을 첨부 하여 사업신청 (해당 시·군 세부계획에 따라 추진)

지 자 체

- 시·군에서는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산촌마을에 대한 현지 확인 및 관계서류 검토 후 도에 추천(2008.9.30까지)

2. 2010 사업자 선정단계

2-1. “예비활동마을” 선발

지 자 체

- 각 도에서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군 추천 마을에 대한 현지 확인 및 적지 검토 후 “예비활동마을” 선발.(2008.11.20까지)
단, 미리 공동사업부지가 확보되어야 하며, 미확보시 산림청 중앙심사에서 제외
- 시·군에서는 예비활동마을의 농한기 활동을 주관하고 가능한 예산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신 청 마 을

- 주민교육, 전문가 자문, 국내 선진지 견학 등 “농한기 예비활동” 실시 (2008.12.1~2009.1.31)
- 예비활동기간동안 예비선정마을 활동계획과 마을조성계획 등을 포함하는 「산촌생태마을 사업계획서」를 작성

2-2. “예비선정마을” 적지평가 및 중앙심사

지 자 체

- 각 도에서는 시·군에서 제출한 관계서류를 검토하고 현지 확인을 거쳐 예비선정마을 적지평가기준표의 점수를 부여 및 산림청에 결과 제출 (2009.3.10까지)
(* 적지평가기준표 70점 미만인 마을은 도 추천대상에서 배제)

산 립 청

- 중앙심사단 구성, 도 적지평가 현지 확인 및 예비선정마을 확정 (2009.4.15까지)
 - 예비활동마을 중에서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심사단의 현지 확인 및 적지평가를 통해 예비선정마을을 결정하고 중앙심사결과에 따라 예산지원 순위를 부여
- 기획재정부와 예산협의(2009.4.20 이후)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지 자 체

기본계획 → 기본설계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 사업계획 승인
→ 실시설계 → 1년차 마을조성 → 2년차 마을조성 및 준공

가. 기본계획

- 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
 - 목적, 범위, 기간 등의 사업개요, 계획수립 참여자 명단
 - 대상지 산촌생태마을의 중장기 발전비전 및 중점투자방향
 - 마을 보유자원 현황분석, 사업 전 인구통계 분석 및 소득구조 분석
 - 사업 후 삶의 질 변화, 생산소득 및 체험소득사업 수지효과 분석
 - 사업추진에 따른 법적·제도적 제약요인 분석 및 관계법령 사전 검토
 - 사업부문별 도입시설 계획 및 타당성 조사
 - 생산소득사업의 마을공동 추가부담 사업내용(부담률 20%)
 - 사업기간 중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 사업완료 후 마을운영 및 사후관리계획
 - 기타 마을조성 및 중장기 발전에 필요한 사전 검토사항
- 기본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 시·군, 도에서는 기본계획 초기단계부터 관계 전문가의 자문 실시
 - 기본계획은 주변마을과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수립하고, 시·군 농어촌 발전계획 등 타 부처 사업실행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복투자 방지
 - 활용가능성이 적은 불필요한 시설물 도입, 투자가 과도한 대형사업 또는 단편 사업의 편중은 지양
 - 지역산림의 무분별한 훼손에 유의하고, 가급적 자연친화적 조성을 추진
 - 철저한 현지조사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되 주민 개개인의 이기적인 조성수요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히 대화, 협의하여 마을주민의 과잉기대 사전방지
 - 공동판매, 가공·이용시설 등 시설물은 필요성 및 활용전망을 충분히 검토하는 등 사전 타당성 검토 후 기본계획에 포함
 - 주택개량,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등 타 부처 소관 연관사업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등 해당부처의 단위사업과 같은 지원기준 적용
 - 토지매입비(마을공동시설 부지 등)는 국고보조금으로의 집행이 어려우므로 자부담 확보 추진

- 사업대상지 사전조사 및 검토 철저
 - 사업대상지의 산림 및 휴양, 문화, 역사, 경제활동 자원(특산물 등), 주민 생활수준(가구당 평균소득) 등을 철저 조사
 - 중장기 개발계획 등 기존계획과 관련 상·하위 법규 검토
 - 타 부처 및 우리 청 소관 예산사업 중 연계사업 유치방안 검토
 - 공동판매, 가공시설 등 생산기반시설 설치시에는 생산량 및 판로확보 등 시장규모와 시설의 활용도를 충분히 분석하여 타당성 검토
 - 마을소개 홈페이지 구축 등 도농 교류 증진방안 검토
-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안) 확정 전 마을주민대표, 용역업체, 관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보고회를 2회 이상 개최, 조성방향과 사업내용 및 조성 시설의 종류·규모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전 타당성 검토 결과를 면밀히 심사한 후 확정
 - 도에 기본계획(안) 승인 요청시 관계자 검토의견 및 회의록 첨부

나. 기본설계

- 기본설계에 포함되는 업무범위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109호) 제14조 준용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본 계획 및 실시설계를 통합 발주하거나 분리 발주할 수 있으며, 분리 발주할 때에는 기본설계 소요금액의 실시설계 사업비 계상을 원칙으로 함.

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 관련규정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 별표 1(2-사-(2)),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산촌개발사업계획
- 협의절차
 - 시·군에서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실시설계) 내용을 도에 제출하여 ‘협의 및 승인’을 요청하면, 각 도에서는 시·도 재난안전 대책본부장에게 협의 요청
- 협의요청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
 - 사업의 목적, 필요성, 추진배경, 절차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계획에 포함할 사항

- 재해영향의 검토에 필요한 도면, 재해영향 예측 및 저감대책, 중점 검토할 항목으로 고시한 사항 등

라. 사업계획 승인

- 도지사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완료 후, 기본계획에 변경 필요사항이 없을 경우 사업계획을 신속히 승인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30일 내)
 - 기본계획에 변경 필요사항이 있을 경우 시·군에 그 취지와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고, 시·군으로부터 변경 완료를 보고받은 후 30일 이내에 승인
 - 기본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승인 결과 보고
 - 연관사업 지원계획과 관련된 부서가 있을 경우 사전협의 실시

마. 실시설계

- 사업계획을 토대로 시장·군수가 직접 설계하거나 농·산·어촌 지역 개발사업에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에 의뢰
- 산촌 경관에 어울리는 조성이 가능하도록 환경 친화적인 소재와 공법을 선택하고 마을경관의 사업 전·후를 비교 예측하여 설계
- 실시설계는 시장·군수가 검수(인수)함으로써 확정
 - 전문 공종별로 관계 기술직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수
 - 설계내용에 대한 마을주민대표의 의견서를 첨부
- 설계관련 추가업무비용은 관련 규정에 따라 대가를 지급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109호) 제17조 준용

바. 1~2년차 마을조성

- 사업계획에 의해 당해년도 투자계획을 포함한 연차별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우선순위 등에 따라 계획적으로 추진
- 사업시행자는 국토이용계획, 도·시·군 농어촌 발전계획, 타 부처 개발계획의 검토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관련법령의 승인 등 절차를 행하고 사업착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산촌생태마을 통합 C.I.를 활용한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
 - 마을 진입로 유도표지, 사업안내표지판을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
 - 조성된 시설물의 종류별 관리번호 부여 및 부착
 - 청정 임산물 판매, 대외 홍보에 활용
-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지원

- 1~2년차 조성사업 추진마을과 '08년 인센티브 평가결과 우수 산촌생태마을에 운영매니저(80명) 지원
- 시·군에서는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운용지침」에 따라 운영매니저를 채용하여 예산 지원
- 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을 임명하여 실시하거나 감리 능력이 있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

4. 자금배정단계

산 립 청

- 자금배정은 산림청에서 각 도 사업량에 따라 배정

지 자 체

- 각 도는 소관 시·군 지자체 재배정
 -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도비 및 시·군비) 30%는 반드시 확보
 - 지원규모를 초과하는 사업은 별도재원(지방비, 자부담 또는 타부처 소관 투융자 등)을 마련하여 추진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지 자 체

-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를 위한 조치사항
 - 시·군은 산촌생태마을 추진상황보고서를 분기별로 도에 보고하고 도는 상·하반기 추진실적을 산림청에 보고
 - 조성된 시설·장비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비치
 - 보조금으로 취득한 주요재산 증감액 및 현재액 명확히 기재
 - 산림청 및 각 도는 사업추진상황 점검 및 제도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현지 점검을 연 2회 실시

《제재》

산 립 청

- 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등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및 보조금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을 준용

6. 성과측정단계

산 립 청

- 산촌생태마을 조성
 - 마을조성 완료연도의 다음해 1월 말까지 제출되는 지자체 사업실적보고서를 기준으로 측정
- 수혜산촌주민의 만족도
 - 외부용역기관이 수행하는 주민만족도 조사 방법에 따라 측정하되 매년 1월 말까지 측정
- 산촌생태마을 소득증가율
 - 외부용역기관이 수행하는 소득증가율 조사 방법에 따라 측정하되 마을조성 완료연도의 다음해 1월 말까지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지 자 체

- 각 도에서는 관계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분야별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우수마을 추천

산 립 청

- 사업평가
 - 상반기중 「우수 산촌생태마을 평가 및 인센티브 지원지침(안)」에 따라 우수 산촌생태마을 인센티브 평가 실시
- 평가환류
 - 경영, 조성, 특화 등 3개 부문별 우수마을에 대한 인센티브 예산지원 조치 및 상훈 수여, 대외 홍보지원
 - ※ 2009년 우수 산촌생태마을 평가 및 인센티브 지원지침(안)은 별도 수립
- 관계 전문가로 중앙평가단을 구성하여 우수마을 최종확정, 인센티브 예산 지원 및 대외 홍보지원

IV. 201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0년도 사업 수요조사

- 산촌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산촌마을을 대상으로 예비선정제 및 사업 내용에 대한 홍보 실시
 - 2010 산촌생태마을 예비선정제 리플렛 5천부 배부 완료(2008. 5월, 8개도 등)
 - 산림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숲에 On의 “산촌마을” 소식란 등 온라인 홍보
- 각 도에 예비선정제 실시계획 공문 시행 (2008. 6월)
 - 시·군 지자체에서 산촌마을에 사업내용 홍보 및 사업신청 수요파악 협조

2. 201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읍·면 시·군	- ‘예비활동마을’ 신청(마을 ⇒ 읍·면, 시·군) <신청시 제출서류> · 사업신청결의서, 사업신청서, 예비활동계획서 - 신청서류 검토 및 ‘예비활동마을’ 추천(시·군 ⇒ 도) <추천시 제출서류> · 사업신청결의서, 사업신청서, 예비활동계획서, 현황조사서	’08.9.30 까지
각 도	- ‘예비활동마을’ 선발(도 주관) · 추천시 제출서류 검토, 필요할 경우 현지 확인 병행	’08.11.20 까지
예비활동 마을 및 시·군	- 농한기 예비활동 추진 · 주민교육, 전문가 자문, 선진지 견학 등 · 산촌생태마을 사업계획 구상 및 초안 작성 - 산촌생태마을 사업신청(시·군 ⇒ 도) <사업신청시 제출서류> · 산촌생태마을 사업계획서, 적지 평가기준표 및 산출내역 (평가점수는 도에서 부여), 농한기 예비활동 실적 등 사업 추진역량 관련 증빙자료	’08.12. 1 ~ ’09.01.31
각 도	- ‘예비활동마을’ 적지 평가(도 주관) · 시·군 지자체의 사업신청시 제출서류 검토 · 필요할 경우 도 자문(전문)위원 검토 및 현지 확인 병행 · 적지 평가기준표 점수 부여(70점 미만은 예비선정 배제) - 적지 평가 결과 제출(도 ⇒ 산림청)	’09.03.10 까지
산림청	- ‘예비활동마을’ 중앙심사(산림청 주관) · 적지 평가 결과 검토, 필요할 경우 현지 확인 병행 · 자문위원, 산촌지원센터 전문위원으로 ‘중앙심사단’ 구성 · 2단계 중앙심사 실시(1차 권역별 심사, 2차 종합심사) - 국고지원 대상 ‘예비선정마을’ 및 지자체 확정	’09.04.15 까지
	- 차년도 예산편성 추진 · 지자체에 대한 부처 국고지원 검토의견 작성(균특회계)	’09.04.20 이후
예비선정 마을	- 사업준비 활동 추진 · 사업계획서 보완, 주민자치규약 수립, 사업조직 구성, 도 및 산림청 주관 권역별 산촌주민 교육 참여 등	’09.04.20 ~ ’09.12.31

125	수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과 장 서재연 사무관 윤영호	02-500-2302 02-500-2313
지자체(시·도,시·군)	해양수산과 등 수산관련부서		

I. 사업개요

1. 목 적

- 수산물의 신속한 처리·저장과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식품 공급체계 구축
- 굴박신장을 현대화하여 수출 및 내수제품 안전성 확보
- 젓갈의 저장·가공시설, 체험, 젓갈거리조성으로 젓갈의 부가가치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근거법령

-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및 제16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젓갈타운조성, 굴박신장시설 지원 등을 통한 수산물가공시설의 현대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6	'07	'08		
▪ 수산물가공품생산량	1,400천 톤	1,546천 톤	1,384천 톤	-	'10. 5월말	시도로부터 수산물가공 업체 생산량 확인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합 계	60,578	32,900	71,558	74,741	222,547
보 조	19,951	11,390	26,159	27,896	74,788
지방비	17,522	10,790	24,389	25,796	72,058
자부담	23,105	10,720	21,010	21,049	75,911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 수산물산지가공시설	19,345	20,233	45,100	45,673	161,833
- 보조	6,711	6,070	13,530	13,702	49,291
- 지방비	5,182	6,070	13,730	13,702	48,881
- 자부담	7,452	8,093	17,840	18,269	63,961
○ 수산물처리저장시설	27,100	6,000	19,700	21,000	28,600
- 보조	9,000	3,000	9,850	10,500	12,100
- 지방비	8,100	2,400	7,880	8,400	9,780
- 자부담	10,000	600	1,970	2,100	6,720
○ 굴박신장공장 시설	14,133	5,067	3,000	200	12,000
- 보조	4,240	1,520	900	60	3,600
- 지방비	4,240	1,520	900	60	3,600
- 자부담	5,653	2,027	1,200	80	4,800
○ 젓갈타운조성		1,600	2,358	4,046	13,186
- 보조		800	1,179	2,023	6,548
- 지방비		800	1,179	2,023	6,548
○ 전북진주산업센터			1,400	822	4,778
- 보조			700	411	2,389
- 지방비			700	411	2,389
○ 김가공공장현대화사업				3,000	2,150
- 보조				1,200	860
- 지방비				1,200	860
- 자부담				600	430

II. 2009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가. 수산물산지가공시설

- 수협(중앙회), 어촌계, 어업인후계자, 영어조합법인, 어업인, 일반인

나. 수산물처리·저장시설

- 수산업협동조합

다. 굴박신장공장시설

- 굴간이박신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또는 수출용 생굴을 가공하고자 하는 자

라. 젓갈타운조성

- 강원도(속초시), 전북도(부안군), 전남도(신안군)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젓갈 가공시설 각 1개소

마. 전북진주산업센터

- 전남 진도군 지산면 보전리 전북진주산업센터 1개소

바. 김가공공장현대화사업

- 마른 김 가공업체 종사자로서 어업인, 영어조합법인, 생산자단체 등
 - 김 가공업 미 종사자로서 신규 사업자 제외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수산물산지가공시설

- 가공공장 시설부지를 확보한 자
 - 신청당일까지 당해부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사용권(지상권) 확보
 - 공장입지기준확인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9조) 단, 건축연면적 500㎡미만 사업장에 한하여 미제출
- 어업인후계자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및 조합원 명부
 - 사업계획에 대한 총회의 의결을 거친 의사록(참석자 명단 포함)
 - 출자금 증빙서류(관할 수협외 조합장이 확인한 조합원별 출자내역)
- 기타사항
 - 수협 및 법인 어촌계는 반드시 이사회, 비법인 어촌계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

나. 수산물처리·저장시설

- 시설부지 확보한 자
 - 신청당일까지 당해부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사용권(지상권) 확보
 - 공장입지기준확인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9조)
- 자담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 사업 신청자는 반드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
- 구비서류
 - 수산사업지원신청서 : 농림수산수산사업실시규정
 -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및 의사록 사본
 - 공장예정지 : 토지대장 및 지적도, 기타 토지사용권 관계서류(타인 소유의 경우 사용승락서 및 인감증명서)

다. 굴박신장공장시설

-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2명이상 굴간이 박신장을 현대화 시설하여 내수 및 수출코자 하는 자(건물분할)

- 1개소 현대화사업으로 2명이상 협업 신청하여 건물 분할 사용코자 하는 자
- 허가 및 부지 확보가 가능한 자(단독 현대화)
- 자담 능력이 있는 자
- 동 순위자에 대하여는 사업자 선정기관이 별도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
- 선정절차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의거 사업자를 선정

라. 젓갈타운조성

- 젓갈의 원료 주요 생산지인 연안 시군으로 지방비 확보 가능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마. 전복진주산업센터

- 전복 주요 생산지인 연안 시군으로 지방비 확보 가능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바. 김가공공장현대화사업

- 기존 마른김 가공공장을 운영하면서 노후화된 시설 중 현대화사업이 필요한 마른김 가공공장

3. 지원대상

가. 수산물산지가공시설

- 수산물을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고 대규모 수산물 원료 소비가 가능한 가공시설
- 산지 특산물을 가공하여 어업인 소득증대 및 국민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수산가공 부문
- 지원내용
 - 건물 및 시설 : 가공공장, 원료 및 제품보관시설, 수산물처리장, 소포장시설, 기타 부속건물 및 전기시설, 오폐수처리시설 등(부지구입비 제외)
 - * 원료 및 제품보관 등 저장시설 면적이 총시설 투자 면적의 40%를 초과하는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가공 기계류

나. 수산물처리·저장시설

- 냉동·냉장시설 신설
 - 냉동·냉장시설, 오폐수처리시설등(부지 구입비 제외) 수산용얼음제조시설이나 수산물처리저장시설 등을 동시에 시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최소 규모의 냉동·냉장설비를 갖추어야 함(냉동 5T/D, 냉장 500M/T)

다. 굴박신장공장시설

- 굴박신장공장 신설
 - 박신장과 알굴처리장(세척)은 구분되어야 함
 - 화장실 및 탈의장은 박신장 및 처리장과 격리되어 설비되어야 함
 - 화장실과 탈의장은 환기시설을 갖추고, 화장실은 수세식이어야 하며, 손세척시설(온·냉수 : 자동 또는 페달식)을 설치하여야 함
 - 박신장 및 처리장, 화장실 출입구에는 소독수조(깊이 20cm이상)를 설치
 - 폐수배출시설, 사용용수 살균설비(염소투입기 또는 자외선 살균설비)를 설치
 - 박신장 및 처리장 바닥은 불침투성 재료로 시설하고, 오수유입이 되지 않도록 지면보다 높아야 하며, 내벽은 바닥에서부터 1m이상 내구, 내수성재료로 시설
 - 출입문 및 창문 등은 해충과 쥐 등의 침입방지 시설 설치
 - 건물형태 및 색상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음

라. 젓갈타운조성

- 젓갈타운 건축, 젓갈가공시설, 젓갈숙성·보관시설, 기타 부대시설 등

마. 전북진주산업센터

- 바이오 문양 진주핵 제조, 전북 일시보관시설 및 저장고, 전북진주 가공 및 세공시설, 전시판매시설, 가공공장(육가공, 내장, 패각)

바. 김가공공장현대화사업

- 원초세정시설, 자동이물질선별기, 숙성기, 조합기, 절단기 등 품질개선 및 고급화를 위한 전처리 시설 설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3. 지원대상 시설」에 명기된 용도로써 수산물의 안전성확보와 우량제품 공급을 위한 가공기반시설 등을 확충하는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수산물처리·저장시설, 굴박신장공장시설, 젓갈타운조성, 전북진주산업센터, 김가공공장현대화사업을 대상으로 국고 보조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
- 자금의 재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원기준

구 분	지원조건
수산물산지가공시설	국고 30%, 지방비 30%, 자담 40%
수산물처리·저장시설	국고 50%, 지방비 40%, 자담 10%
굴박신장공장시설	국고 30%, 지방비 30%, 자담 40%
젓갈타운조성	국고 50%, 지방비 50%
전북진주산업센터	국고 50%, 지방비 50%
김가공공장현대화사업	국고 40%, 지방비 40%, 자담 20%

○ 지원규모

구 분	사업량(개소)
수산물산지가공시설(38)	부산시(2), 강원도(2), 충남도(3), 전북도(2), 전남도(15), 경북도(5), 경남도(6), 제주도(3)
수산물처리·저장시설(8)	경기도(1), 강원도(1), 전남도(2), 경남도(2), 제주도(2)
굴박신장공장시설(1)	전남도(1)
젓갈타운조성(3)	강원도(1), 전북도(1), 전남도(1)
전북진주산업센터(1)	전남도(1)
김가공공장현대화사업(14)	전남도(14)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해당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시·도

- 시장·군수가 제출한 사업계획안(사업내용, 사업대상 선정의 적정성, 사업 효과, 사업 시행상 문제점)을 종합 검토하고, 그 검토 결과를 토대로 수립한 시·도 단위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사업대상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도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매년 4월말까지)

시·도

- 시장·군수는 사업자이 사업계획안 검토 결과를 토대로 시·군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매년 3월말까지)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지사가 보고한 사업물량 및 중장기 투자계획을 토대로 익년도 예산요구
-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따라 시·도별 사업량 및 예산안 통보

시·도(지자체)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배정한 사업량을 토대로 지방비 및 자담 확보
- 시·도지사의 사업 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에 의거 시군 수산조정위원회 심의결과에 의거 사업자에게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지자체)

- 사업대상자의 중도포기 또는 사업추진 의지 등이 없다고 판단되어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비 집행계획 및 사업추진 일정 등 세부추진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로 제출하여야 하며, 동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강구

4. 자금배정단계

지자체

-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시·도지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및 자금송금 요청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국고 송금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지자체 및 농림수산식품부

- 지자체 및 농림수산식품부는 해당 사업의 추진상황, 시설 적정여부, 지방비 및 자담 확보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예방 및 부실을 사전 방지
- 시·도지사는 사업추진 실적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사업비 정산(지자체)

- 당해연도 정산보고 : 당해연도에 국고지원을 받은 금액에 대하여 익년도 2월말 까지 교부신청 서식에 의하여 정산보고(지자체 → 농림수산식품부)

사후관리 책임자(지자체)

-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보조로 설치한 시설물은 타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시장, 군수는 타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6. 성과측정단계

-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등 신축을 통한 수산물 가공품의 생산량 변화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최근 3년간 수산물가공품 생산량 대비 당해연도 가공품 생산량 변화 추세를 감안하여 익년도 사업비 배정시 반영

IV. 201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0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주관 기관(시장·군수)은 관내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산지가공 시설 등 사업 수요조사 실시 및 필요사항 파악

2. 201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9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126	수산물 거점단지조성사업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물부 수산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물부	수산정책과	과장 서재연 사무관 윤영호 사무관 최덕부	02-500-2302 02-500-2313 02-500-2356
지자체(시·도, 시·군)	해양수산물과 등 수산관련부서		
수협	수산물유통시설 건립 관련부서		

I. 사업개요

1. 목 적

- 지역별로 풍부한 해양수산물자원을 활용한 고품질의 수산물개발과 브랜드화로 지역특화산업의 전략적 육성 도모
- 수산물 유통시설 확충을 통한 수급 및 공급 기능 강화, 유통단계 축소로 어업인의 소득증대 기여

2. 근거법령

-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및 제16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 제2항
- 수산업법 제53조 제1항 제10호

3. 성과목표 및 지표

- 수산물 가공·유통시설 확충을 통하여 생산어업인 안정적 판로기반 확보 및 수산물의 원활한 공급 도모
 - 이에 따라 '09년도 수산물가공품생산량 및 위판장 취급물량을 성과지표로 설정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6	'07	'08		
▪ 수산물가공품생산량	1,400천 톤	1,546천 톤	1,384천 톤	-	'10. 5월말	시도로부터 수산물가공 업체 생산량 확인
▪ 산지위판장 취급 물량(천톤)	890	917	928	900	'10. 4월	어업생산통계(통계청) 확 인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합 계	-	-	3,044	19,868	87,932
보 조	-	-	1,522	9,734	42,666
지방비	-	-	1,522	9,737	42,643
자부담	-	-	-	397	2,503
○ 수산식품가공산업 산업학관연구센터(부산)	-	-	-	1,000	5,600
- 보 조(50%)	-	-	-	500	2,800
- 지방비(50%)	-	-	-	500	2,800
○ 수산물종합유통물류기반시설 (부안)	-	-	-	1,000	9,000
- 보 조(50%)	-	-	-	500	4,500
- 지방비(50%)	-	-	-	500	4,500
○ 고기능수산식품지원센터건립 (목포)	-	-	3,044	6,900	7,100
- 보 조(50%)	-	-	1,522	3,250	2,350
- 지방비(50%)	-	-	1,522	3,650	4,750
○ 수산물종합센터 조성(여수)	-	-	-	3,968	25,032
- 보 조(50%)	-	-	-	1,984	12,516
- 지방비(40%)	-	-	-	1,587	10,013
- 자부담(10%)	-	-	-	397	2,503
○ 염산향화도바다 매체타워시설 (영광)	-	-	-	1,000	9,000
- 보 조(50%)	-	-	-	500	4,500
- 지방비(50%)	-	-	-	500	4,500
○ 과메기산업화가 공단지조성(포항)	-	-	-	6,000	32,000
- 보 조(50%)	-	-	-	3,000	16,000
- 지방비(50%)	-	-	-	3,000	16,000

II. 2009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어업인,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및 지자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수산가공품 개발을 위한 연구, 가공, 유통시설 확충이 필요한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및 지자체

3. 지원대상

- 수산가공품 개발을 위한 연구, 가공시설 신축 및 수산물 위판장, 직매장, 유통센터, 복합공간단지 조성 등 수산물 유통시설 신축, 증·개축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3. 지원대상 시설」에 명기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
- 재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단, 수산물종합센터조성사업 국고 50, 지방비 40, 자담 10%)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어업인,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 수산물 유통시설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매년 2월말까지)

지자체

- 시장·군수가 사업대상자로서 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해당 시·군에서 직접 수산가공품 개발을 위한 연구, 가공시설 및 수산물 유통시설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도지사에게 추천 또는 신청(매년 3월말까지)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추천(신청)한 사업량을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매년 4월말까지)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지사가 보고한 사업물량 및 중장기투자계획을 토대로 익년도 예산요구
-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에 따라 시·도별 사업량 및 예산안 통보

지자체 및 수협

- 시·도지사(시장·군수) 및 수협 등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배정된 사업량을 토대로 지방비 및 자담 확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수협 및 지자체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자로 확정된 수협에서는 자담 확보 방안 등 사업계획을 수립, 시장·군수에게 제출
- 사업계획 변경 : 수협, 시·군에서는 사업대상 지역, 시설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

시·도(지자체)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중도포기 또는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4. 자금배정단계

지자체

-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시·도지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국고 송금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지자체 및 농림수산식품부

- 지자체 및 농림수산식품부는 시설공사 추진상황, 시설 적정여부, 지방비 및 자담 확보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예방 및 부실화 사전 방지
 - 점검일정 :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필요시)
 - 점검반 : 농림수산식품부, 지자체 및 수협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시·도지사는 사업추진 실적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사업비 정산(지자체)

- 당해연도 정산보고 : 당해연도에 국고지원을 받은 금액에 대하여 익년도 2월말 까지 교부신청 서식에 의하여 정산보고(지자체 → 농림수산식품부)

사후관리 책임자(지자체)

-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보조로 설치한 시설물은 타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시장, 군수는 타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6. 성과측정단계

- 수산물가공시설, 유통시설 확충을 통한 수산물 가공품의 생산량과 산지위

관장 등의 취급물량 변화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최근 3년간 수산물가공품 생산량, 취급물량 대비 당해연도 가공품 생산량 , 취급물량 변화 추세를 감안하여 익년도 사업비 배정시 반영

IV. 201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0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주관 기관(시장·군수)은 관내 어업인, 수협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유통시설사업 수요조사하고, 시·군에서 직접 추진하고자 하는 시설내역 파악
- 수산물 유통시설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 수협 등이 있는 경우와 시·군에서 직접 수산가공품 개발을 위한 연구, 가공시설 및 수산물가공유통시설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출(매년 1월말까지)토록 유도 및 작성

2. 201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9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127	양식어장정화사업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과장 사무관 최완현 이병용	02-500-2375 02-500-2384

I. 사업개요

1. 목 적

- 연안어장의 환경을 보전·개선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생산·공급 기반을 조성

2. 근거법령

- 어장관리법 제15조(어장정화·정비의 실시 등), 같은 법 제16조(어장정화·정비의 대행), 같은 법 제25조(국고보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연안 양식어장 등을 대상으로 어장정화사업 실시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6	'07	'08		
▪ 어장정화 진척율	73%	68	68	71	'08.12	[어장정화 누계실적면적/대상면적68만ha]×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합 계	280,710	9,521	6,432	6,139	
- 보조	221,323	7,617	5,150	4,911	
- 용 자	-	-	-	-	
- 지방비	26,148	952	1,194	1,160	
- 자부담	33,239	952	88	68	

※ 균특회계 제주계정 포함

II. 2009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어장정화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어촌계, 수협 및 양식어업, 마을어업, 정치망 어업면허 또는 해상종묘생산어업, 정치성 구획어업 허가를 득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자 자격
 - 어촌계, 수협 및 양식어업, 마을어업, 정치망 어업면허 또는 해상종묘생산어업, 정치성구획어업 허가를 득하고 어장정화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

3. 지원대상

- 사업대상지 선정
 - 사업주관기관은 어장정화사업의 효과제고와 효율적 추진을 위해 어장오염현황, 면적 등을 고려,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 가두리양식어장의 경우 사업의 효과제고와 효율적 추진을 위해 어장오염현황, 면적, 어업인의 참여 등을 고려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대상지 선정
 - ※ 이미 어장정화사업을 실시한 어장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동사업을 실시할 수 없음. 다만, 어장관리(특별)해역으로 지정되거나, 어장오염이 심화되었거나 정화사업구역내 포함이 불가피하여 시·도(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조사·설계
 - 사업주관기관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거 해양수산분야로 신고된 업체를 조사·설계업체로 선정하여 시행하되, 「조사」는 공신력있는 기관(해양수산분야의 대학부설연구소 및 정부출연연구소)도 포함한다. 또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상 어장의 오폐물량 조사·설계를 일괄 발주하여 실시할 수 있음.
 - ※ 다만, 어장바닥의 노출이 현저한 해역이나 청정해역으로 오·폐물이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지역은 시장·군수 주관으로 자체 조사·설계 가능
 - 대상수역 어업실태 : 어업종류, 어장면적, 시설(살포)량, 살포 및 채포시기 등
 - 사업내용, 사업시기, 추진방법, 사업실시설계, 소요경비 내역
 - 사업대상지의 오폐물 실태 및 수거·인양된 오폐물의 처리방안
 - 기타 어장정화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사업주관기관이 정하는 내용

○ 가두리 양식어장 환경조사

- 오염해역 준설에 따른 효과분석, 오염퇴적물 제거공사로 인한 2차 오염과 해양환경 변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해양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함
- 조사지점은 동 사업해역과 인근 해역을 포함하여 사업 실시에 동반되는 수질의 변화와 효과를 검정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점들을 선정
- 해수와 퇴적물 환경 및 저서동물은 사업의 영향을 고려하여 필요한 정점을 선정하고 효과분석을 위해 대조구 1개 정점 선정
- 퇴적물 수거·처리로 인한 부유퇴적물 영향 모니터링에서는 당해연도 사업구역과 사업구역 경계면에 보조 감시점과 처리시설의 방류수 배출지점을 선정함
- 조사기간 : 조사시점은 어장여건을 판단하여 집행주체가 기간을 정하여 시행
- 조사항목
 - 해수수질 : 수온, 염분, 수소이온농도(pH),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용존산소(DO), 부유물질(SS), 투명도, 총질소(T-N), 총인(T-P), 총무기질소(DIN), 무기인(DIP) 등 일반항목과 오염된 퇴적물로 인하여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항목
 - 공사현장 및 처리시설 방류수 감시항목 : 탁도 또는 SS
 - 해저퇴적물조사 : 강열감량, COD, 황화물, 유기탄소, 질소 및 중금속(Cr, Cu, Cd, Zn, Pb, Hg, Ni, Al), 유기주석화합물
 - 저서동물 : 저서동물군집 및 현존량
- ※ 조사항목 수는 사업비, 연구분석장비 보유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시료채취 및 시험분석방법
 - 해수 및 해저퇴적물에 대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은 「해양환경공정시험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해양환경공정시험방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조사목적에 적합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의 시험방법에 의하며 이 경우 측정분석 방법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조사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대학교, 전문연구소, 환경평가대행업체 등 공신력이 있는 기관 선정
- 사업시행으로 인한 2차오염의 저감대책 강구
 - 준설작업에 동원되는 선박 및 장비 등에서 발생하는 폐유, 폐기물 등이 해양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제반 오염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오니 흡입관 이음부분의 이완·과열 등으로 오니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오탉방지막으로부터 부유물질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 처분하는 경우, 배출해역의 지정 및 배출방법 등은 해양환경관리법 등의 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로 인한 민원이 없도록 사전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시공자 선정

- 사업주관기관은 어장관리법령에 의거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여야 함
- 가두리 양식어장정화사업의 경우 어장정화·정비업에 등록된 업체 중 동사업시행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정화기술을 갖추고, 사업시행계획서 평가결과 상위 점수 획득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함
- 가두리 양식어장 바닥환경개선사업 기술방식은 사업시행방법이 특별한 정화기술 방법이 요구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심사기준(적격심사기준)에 반영 시행하여야 함
 - 기술방식(오니류 수거 처리방법) : 강제흡입식(정화조방법, 원심분리방법 등)
 - 시설, 장비 : 원심분리기 시스템 장비 등이 탑재 설치된 정화선 및 부선, 정화조가 설치된 바지선, 기타 부속 장비 등
- ※ 위의 기술방식 및 시설장비 기준은 정화사업에 의해 수거된 폐기물 및 배출수를 해양환경관리법, 하수 및 폐수종말처리장의 배출수 허용기준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처리 허용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처리시스템을 말함
- 사업주관기관은 견실한 시공업체 선정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음.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8호 아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집행주체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사업관리

- 사업주관기관은 수거된 오폐물을 재활용 또는 재생처리에 우선 활용하는 등 오폐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처리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본 사업의 추진상황을 수시 확인할 수 있도록 일일작업일지를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신청자, 사업수행업체 등과 사전협의를 실시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사업주관기관은 수거된 오폐물을 재활용 또는 재생처리에 우선 활용하는 등 오폐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처리하여야 함

- 어장정화사업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공사감독 강화를 위하여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 주요공정에 대하여 ‘감독공무원 확인제’, ‘민간감독관’ 위촉제 등을 도입하여 시행할 수 있음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퇴적물 수거, 바닥갈이, 객토, 저질준설, 수로개설, 어장재배치, 해적생물 구제 등 어장정화 및 이를 위한 조사·설계·감리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국고 보조 80%(균특), 지방비 10%, 자담 10%(자담을 지방비로 대체 집행할 수 있음)
- 사업자의 자격 박탈
 -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기준 : 사업비 지원단가는 전문 조사·설계업체의 조사·설계 단가를 적용할 것
- 사업비 집행
 - 사업비라 함은 설계·조사, 시설비, 기타 집행주체가 인정하는 부대비를 말함
 - 저질개선 객토사업비는 정화사업비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70%를 초과하여 집행하여야 할 경우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를 조사비(설계조사, 환경조사), 시설비 등으로 구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 당해연도 사업 집행잔액을 다음연도 사업예정지구의 조사·설계비로 사용할 수 있음. 다만, 사업주관기관은 시·도지사의 협의를 거쳐야 함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산조정위원회가 시설물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 철거비 시설지원(어장재배치 시설지원을 포함)은 당해 수산조정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사업비는 예산회계 관계법령,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등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함
 - 감독, 감리, 준공검사 등은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시·도(시·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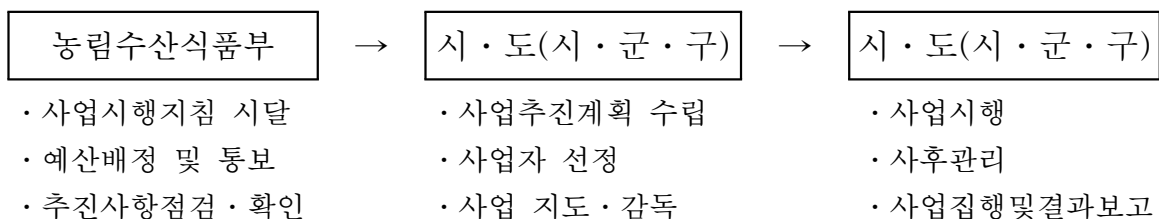
- 사업관리주체 : 시·도(시·군·구)
- 공고시기 : 사업관리주체가 결정
- 신청절차 : 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사업실시요령에 따라 시·군·구청장에게 농림수산사업지원신청서를 제출
- 사업홍보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희망자 및 어장정화·정비 업체에 대하여 사업자 선정 전 또는 후에 홍보(설명회)를 실시

2.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자 선정주체 : 시·도(시·군·구)
- 선정절차
 - 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심의결과에 따라 시·군·구에서 선정
- 선정기준
 - 어장관리해역, 어장관리특별해역 및 어촌계(수협)어장(동 어장에 영향을 미치는 인근 개인어장 및 공유수면 포함)을 주 대상으로 하되,
 - 다수어장이 설치된 해역으로 사업주관기관이 정화선박을 이용하여 정화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개인어장(어장과 어장사이의 공유수면 포함)도 신청에 의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시행 가능함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09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농림수산식품부) : '08.12월
 - 시·도(시·군·구)에 지침 통보
- 사업희망자 선정 모집 공고(시·군·구) : '09.1월
- 사업설명회 실시(시·군·구) : '09.1월
- 사업 추진체계



4. 자금배정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당해연도 사업시행 계획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월별 또는 분기별 배정
 - 해당 지자체에서 제출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등 심사

시·도(지자체)

- 시·도지사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지방비(사업비 20%, 자담포함)를 확보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자금배정 요청
-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 시·도지사는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따라 사업추진상황을 매분기가 끝나는 다음달 10일까지, 회계연도 및 보조사업이 종료될 때에는 사업실적보고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사업 확정시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의거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등을 포함하여 정산 보고하여야 함

5. 이행점검 단계

《사후관리》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집행점검은 연2회 이상 실시하고, 집행실적이 부진한 기관 등 문제 발생 시 즉시 시정 조치
 - 실시시기 : 5, 10월
 - 실시방법 : 당초 계획대비 집행실적이 부진한 기관 등에 현장 실태조사

시·도(시·군·구)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시행전 및 사업준공 익년도부터 2년간 사업대상 어장의 품종별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조사하여 사업전후의 효과를 분석하여야 함
 - 사업시행후의 생산량 조사시에는 정화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주변의 비교어장을 선정하고 생산량을 함께 조사하여 정화사업해역과 비사업해역과의 효과를 비교분석하여야 함

《제재》

시·도(시·군·구)

- 지급 보조금의 환수 등

- 사업집행주체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

6. 성과측정단계

- 성과지표 달성여부는 시·도에서 제출하는 분기별 추진실적 자료를 근거로 12월말까지 확인한다.

구 분	기 관 별	보고기한	보고서식
사업추진상황보고	시·도→ 농림수 산식품부	분기말 익월 5일한	별지 서식
사업완료보고	”	사업완료시, 회계연도 종료시	별지 서식

- 보고 주체 : 시·도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내용과 진척상황이 적정한지 점검 평가

《환 류》

- 점검결과 사업지연 및 부당집행 등을 점검하여 해당 지자체에 시정토록하고 이를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함

IV. 201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0년도 사업수요조사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추진 성과 및 예산확보 추이 등을 감안하여 기본 지침을 마련
- 시·도지사는 2010년 추진할 사업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예산 신청
-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시·도 예산 요구안을 기초로 2010년 예산 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2. 201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9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128	수산물유통시설건립사업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과장 서재연 사무관 최덕부	02-500-2302 02-500-2356
지자체(시·도, 시·군)	수산물유통시설 건립 관련부서(수산과 등)		
수협	수산물유통시설 건립 관련부서		

I. 사업개요

1. 목 적

- 수산물 유통시설 확충을 통한 수급 및 공급 기능 강화, 유통단계 축소로 어업인의 소득증대 기여

2. 근거법령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4조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73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 제2항
- 수산업법 제53조제1항제10호

3. 성과목표 및 지표

- 수산물 유통시설 확충을 통하여 생산어업인 안정적 판로기반 확보 및 수산물의 원활한 공급 도모
 - '99.4.15 수산업법 개정으로 산지위판장에서의 강제상장 의무폐지에 따라 매년 위판율이 줄어들고 있어, 유통시설 확충을 통해 안정적인 거래물량 확보 필요
 - 이에 따라 '09년도 산지위판장 취급물량을 890천톤으로 설정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6	'07	'08		
▪ 산지위판장 취급 물량(천톤)	890	917	928	900	'10. 4월	어업생산통계(통계청) 확인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합 계	40,032	8,428	23,472	31,535	52,772
보 조	14,120	3,204	10,223	13,714	24,286
지방비	10,116	2,554	9,190	11,241	19,416
자부담	15,796	2,670	4,059	6,580	9,070
○ 수산물 위판장	21,105	2,900	5,530	8,133	5,000
- 보 조(40%)	8,442	1,160	2,212	3,253	2,000
- 지방비(30%)	6,331	870	1,659	2,440	1,500
- 자부담(30%)	6,332	870	1,659	2,440	1,500
○ 수산물 직매장	18,927	3,600	4,800	5,200	5,000
- 보 조(30%)	5,678	1,080	1,440	1,560	1,500
- 지방비(20%)	3,785	720	960	1,040	1,000
- 자부담(50%)	9,464	1,800	2,400	2,600	2,500
○ 해양수산물복합공간	-	1,928	7,000	6,300	21,772
- 보 조(50%)	-	964	3,500	3,150	10,886
- 지방비(50%)	-	964	3,500	3,150	10,886
○ 수산물물류유통센터	-	-	6,142	4,000	1,000
- 보 조(50%)	-	-	3,071	2,000	500
- 지방비(50%)	-	-	3,071	2,000	500
○ 임자전장포옛명성복원	-	-	-	1,000	-
- 보 조(50%)	-	-	-	500	-
- 지방비(50%)	-	-	-	500	-
○ 친환경김물류기지	-	-	-	600	450
- 보 조(50%)	-	-	-	300	225
- 지방비(50%)	-	-	-	300	225
○ 전북일류회상공개발기지	-	-	-	3,800	11,200
- 보 조(50%)	-	-	-	1,900	5,600
- 지방비(25%)	-	-	-	950	2,800
- 자부담(25%)	-	-	-	950	2,800
○ 전통발효식품용기현대화	-	-	-	400	5,350
- 보 조(50%)	-	-	-	200	2,675
- 지방비(30%)	-	-	-	120	1,605
- 자부담(20%)	-	-	-	80	1,070
○ 소형저온저장고설치	-	-	-	1,102	-
- 보 조(50%)	-	-	-	551	-
- 지방비(40%)	-	-	-	441	-
- 자부담(10%)	-	-	-	110	-
○ 수산물도소매장조성	-	-	-	1,000	3,000
- 보 조(30%)	-	-	-	300	900
- 지방비(30%)	-	-	-	300	900
- 자부담(40%)	-	-	-	400	1,200

II. 2009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어업인,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및 지자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수산물 유통시설 확충이 필요한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및 지자체

3. 지원대상

- 수산물 위판장, 직매장, 유통센터, 복합공간단지 조성 등 수산물 유통시설
신축 및 증·개축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3. 지원대상 시설」에 명기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
- 재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원조건

- ①수산물 위판장 : 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②수산물 직매장 : 보조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 ③해양수산복합공간조성, ④수산물유통물류센터, ⑤임자전장포옛명성회복,
⑥친환경김물류기지조성 : 보조 50%, 지방비 50%
- ⑦전북일류화상품개발기지 : 보조 50%, 지방비 25%, 자부담 25%
- ⑧전통발효식품용기현대화 : 보조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⑨소형저온저장고 설치 : 보조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⑩수산물도소매장 조성 : 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어업인,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 수산물 유통시설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시장·군수에게 제출(매년 2월말까지)

지자체

- 시장·군수가 사업대상자로서 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해당 시·군에서 직접 수산물 유통시설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도지사에게 추천 또는 신청(매년 3월말까지)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추천(신청)한 사업량을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매년 4월말까지)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지사가 보고한 사업물량 및 중장기투자계획을 토대로 익년도 예산요구
-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에 따라 시·도별 사업량 및 예산안 통보

지자체 및 수협

- 시·도지사(시장·군수) 및 수협 등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배정된 사업량을 토대로 지방비 및 자담 확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수협 및 지자체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자로 확정된 수협에서는 자담 확보 방안 등 사업계획을 수립, 시장·군수에게 제출
- 사업계획 변경 : 수협, 시·군에서는 사업대상 지역, 시설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

시·도(지자체)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중도포기 또는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4. 자금배정단계

지자체

-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시·도지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보조금 교부신청서(국고보조금 송금요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경우 즉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국고 송금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지자체 및 농림수산식품부

- 지자체 및 농림수산식품부는 시설공사 추진상황, 시설 적정여부, 지방비 및 자담 확보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예방 및 부실화 사전 방지
 - 점검일정 :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필요시)
 - 점검반 : 농림수산식품부, 지자체 및 수협 합동 현지방문 점검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사업비 정산(지자체)

- 당해연도 정산보고 : 당해연도에 국고지원을 받은 금액에 대하여 익년도 2월말 까지 사업정산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정산보고(지자체 → 농림수산식품부)

사후관리 책임자(지자체)

-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6. 성과측정단계

- 수산물 유통시설 확충을 통한 산지위관장 등의 취급물량 변화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최근 3년간 취급물량 대비 당해연도 취급물량 변화 추세를 감안하여 익년도 사업비 배정시 반영

IV. 201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0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주관 기관(시장·군수)은 관내 어업인, 수협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유통시설사업 수요조사하고, 시·군에서 직접 추진하고자 하는 시설내역 파악
- 수산물 유통시설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 수협 등이 있는 경우와 시·군에서 직접 유통시설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별지 제1호 서식)을 수립하여 제출(매년 1월말까지)토록 유도 및 작성

2. 201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9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수산물 유통시설건립 사업 계획서

사업명	
사업위치	○
현시설 또는 사업규모	○ 부지 m ² , 연면적 m ²
사업비	○ 원(국비 원, 지방비 원, 자담 원)
시행주체	○
사업내용	○
사업완료후 기대효과	○ ○
현재시설 전경사진	신축일 경우 '부지' 사진

《별지 제2호 서식》

수산물 유통시설건립 사업 정산서

1. 보조금 정산 신청 현황

(단위 : 원)

보 조 사업자	교부결정 및 국고수령액				집행액				잔액 (C=A-B)
	계	국비(A)	지방비	자담	계	국비(B)	지방비	자담	

2. 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위치	
시행주체	
사업내용	

3. 공사 세부내용

(단위 : 원)

세부공사명	공사 규모	집행액
계		
	m ²	

사진			
공사전	부지	공사후	건축물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어항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어항과	과 장 서장우	02-500-2330
		서기관 신순균	02-500-2336

I. 사업개요

1. 목 적

- 어선안전수용으로 자연재해로부터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보호
- 어획물 양육·유통 원활 및 어촌 정주 기반조성

2. 근거법령

- 어촌·어항법 제49조제2항, 수산업법 제84조제1항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23년까지 289개 지방어항 개발 완료('07년까지 134개항완공)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6	'07	'08		
▪ 어선안전 수용률(주)	9.94	9.94	10.27	10.61	2월	- 지방어항 어항시설량 조사 - 지자체보고자료 및 계산서
▪ 지방어항이용자만족도 (부)	77	-	73	75	2월	- 사업 지역 주민대상 설문 조사 - 결과 보고서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합 계	896,410	99,182	68,155	65,308	869,074
보 조	352,357	49,500	53,194	50,251	695,259
지방비	544,053	49,682	14,961	15,057	173,815
○ 지방어항건설	895,710	97,696	63,721	58,658	869,074
- 보 조	352,007	48,757	50,977	46,926	695,259
- 지방비	543,703	48,939	12,744	11,732	173,815
○ 소형어선인양기설치	700	1,486	4,434	5,250	계속
- 보 조	350	743	2,217	2,625	계속
- 지방비	350	743	2,217	2,625	계속
○ 복합다기능부잔교시설사업	-	-	-	1,400	계속
- 보 조	-	-	-	700	계속
- 지방비	-	-	-	700	계속

II. 2009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위임가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방어항건설

- 개발계획수립 완료 항 : 어촌어항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항개발계획수립 등의 협의 및 고시가 완료된 항
- 신규투자항은 개발계획 수립 후 5개년이 경과되지 않은 항(단, 개발계획 수립 후 5개년 이상 경과한 현재, 추정어선수 대비 어선척수 감소규모가 10%이하인 경우 제외 [개발계획 수립시 추정어선수 및 현재 어선척수 비교 검토서 첨부])

※ 개발계획 수립후 5개년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변화된 재적어선척수 등을 감안하여 개발계획을 변경(접안시설 및 외곽시설 규모 축소)후 사업 신청

- 소형어선인양기설치, 복합다기능부잔교시설사업

-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및 소규모항·포구

3. 지원대상

- 지방어항

- 시설비 및 실시설계비(기본설계는 미포함)
- 시설비는 지방어항의 기본시설(방파제, 물양장, 준설 등 어촌어항법 제2조 제5호 가목에 의한 기본시설)에 한하여 지원

- 소형어선인양기설치, 복합다기능부잔교시설사업

-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유지·운영 장비포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대상항 시설비 및 실시설계비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집행잔액은 당해연도 사업대상항에 사용가능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사업비(균특회계) : 지자체 보조/Matching Fund

- 지방어항건설 : 국고 80%, 지방비 20%
- 소형어선인양기설치 : 국고 50%, 지방비 50%
- 복합다기능부잔교시설사업 : 국고 50%, 지방비 5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방어항건설
 - 해당 최소투자금액
 - 강원도 : 해당 최소 12억원(총 15억원)이상
 - 기타 시·도 : 해당 최소 10억원(총 12.5억원)이상
 - ※ 예외)신규 투자항 없이 계속 투자항에 투자하는 경우
 - 신규투자 억제
 - 해당 최소투자금액 이상으로 예산투자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신규투자 가능(신규투자항이 1개항인 경우 최소투자금액의 50%이상 투자가능)
- 소형어선인양기설치
 - 1개소 당 25백만원(국비)이하
 - 시설기준 : 인양하중 3톤이상, 인양기 높이 6m, 회전반경 360°(좌우180°)
 - ※ 연안 어촌의 특성을 감안하여 위 시설기준 이상 사양 인양기 설치가능
- 복합다기능부잔교시설사업
 - 1개소 당 50백만원(국비)이하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성과목표, 재정투입 계획 및 지급요건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시·도지사에게 시달(전전년도 12월)

시·도(지자체)

- 지방어항건설
 - 예산신청(사업전년 4월)시에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협의하여 사업년 초기에 조기사업 착수
- 소형어선인양기설치 및 복합다기능부잔교시설사업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필요시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제16조에 따라 사업신청방법 등을 작성, 자체 공고문 형식에 따라 30일 이상 공고 지역내 사업수요 조사
 - 어촌계 등으로부터 사업 건의 및 신청 등을 통하여 사업수요 조사
 - ※ 시장·군수·구청장이 접수하는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재 접수
 - 시·도지사는 우선순위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로 사업신청

2. 사업대상지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성과목표, 재정투입 계획 및 지급요건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시도지사에게 시달(전년도 12월)

시·도(지자체)

- 지방어항건설
 - 대상사업선정 주체는 시·도지사이며, 우선순위에 의하여 결정
 - 우선순위
 - 1) 계속투자 항(전년도에 국비투자한 항)
 - 2) 신규투자항(어선 척수, 어업인 수, 어항여건 등 고려)
- 소형어선인양기설치, 복합다기능부잔교시설사업
 - 대상사업선정 주체는 시·도지사(시·군·구)이며, 당해 시·도(시·군·구)에서는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등에 의하여 사업대상항 선정(당년 1월 이전)
 - 일반적 평가기준
 - 기반시설이 미약하고 5톤 미만 소형어선이 다수인 어항
 - 어업인력 고령화 및 어업인력 부족한 어항
 -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
 - 선정방법 : 시·도(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경쟁이 없는 경우 심의 생략가능)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계획 수립 및 협의》

시·도(지자체)

- 지방어항건설
 - 시·도지사는 항별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비를 배정하되 신규투자를 억제하고 완공위주 집중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사업계획수립시에는 사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예산의 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 첨부포함)에 따라 당

해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10년 사업은 예산신청 단계에서 협의)하여야 하며, 항별 예산배정 등 주요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단, 보조금의 집행잔액을 계속투자 중인 어항의 완공촉진을 위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신규투자 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규투자계획”을 작성제출

○ 소형어선인양기설치, 복합다기능부잔교시설사업

- 다목적 인양기 설치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설치 예정지에 대한 사전 적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소형어선(5톤이하), 등록척수, 활용가능 여건 등

- 인양기의 사양은 설치 대상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선택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당해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 대상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시행단계》

시·도(지자체)

○ 조사·설계

- 자료조사 : 설계자는 설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현황, 재료, 지세조사 및 측량, 기타설계도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확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 단, 이미 조사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설계 및 심사자 : 사업계획서 작성, 설계도서 작성 및 심사 등은 전문 기술직 공무원이 수행토록 하여야 함. 단, 공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속공무원이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설계도서작성

· 건설기술관리법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노임단가, 조달청가격정보지 또는 재경부 등록 전문가격조사기관의 물가 조사가격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야 함

· 조사된 자료가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내용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 현재의 여건과 변경된 관련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구조물의 안전성, 시공성, 경제성을 고려한 적절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심사 : 설계도서의 내용이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 관계법령,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설계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4. 자금배정단계

시·도(지자체)

- 보조금의 교부신청
 - 시·도지사는 당해연도 사업계획협의를 완료된 경우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하여야 함
- 교부결정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지사가 제출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확인하고 적정할 경우 교부결정 통지
- 사업비 송금요청 및 송금
 - 교부 결정된 보조금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집행일정을 감안 사업비 송금요청 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확보된 자금 내에서 송금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도)

- 사업관리
 -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선량한 관리자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사집행 및 공사감독자의 업무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훈령 “어항건설공사 업무규정” 및 “공사감독자복무지침”을 준용함
- 보고
 - 시·도지사는 다음과 같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명	보고 기한	보고 서식
투자사업 추진상황보고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4호』 서식
보조사업 실적보고	사업종료, 회계연도종료시	『별지 제5호』 서식

농림수산식품부 본부

-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상 하반기 년 2회 집행실적, 집행부진사유, 집행제고방안, 건의사항 등을 서면 또는 방문 점검 실시

《제재》

사업관리주체(시·도)

- 보조된 사업비는 교부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함

6. 성과측정단계

- 어선안전수용률 : 12월말까지 시·도지사로부터 지방어항 완공현황과 다음해 1월말까지 어항시설 설치현황을 제출받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어선안전수용율 산출
- 지방어항이용자 만족도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외주용역 등을 통하여 사업대상항에 대한 이용자 인식도(정책 인지도, 정책 이해도, 내용 명확성), 인정도(정책 필요성, 수준 적절성, 목적 부합성), 유효도(예산가용성, 집행효율성, 목적달성도)를 년 중 조사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 산출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시·도에서 제출한 보조사업실적보고에 의하여 예산집행실적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평가

《환 류》

- 예산집행실적이 부진한 시·도에 대하여는 다음해 예산 지원금액을 감액하고, 집행실적이 우수한 시·도에는 증액지원 검토

IV. 201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0년도 사업수요조사

- 지방어항건설 : 해당없음
- 소형어선인양기설치, 복합다기능부잔교시설사업
 - 연안 시·군·구에서는 필요한 경우 공고문(시기, 양식, 제출기관, 제출방법 등을 제시)의 형식으로 사업을 공모
 - 사업이 필요한 어항의 어촌계, 수협 등에서는 관할 시군구에 사행시행신청 또는 건의

【 별지 제1호 서식 】

2009년 지방어항 사업계획서

시·도명 :

(단위 : M, 백만원)

어항명	총 계획			기투자 (2008까지)		잔 량		2009 계획				투자 우선 순위	완공계 획년도
	시설명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계	국비	지방비		
○개항	합계												
○○항	계												
○○항	계												
○○항	계												

주 1』 기투자('08까지) : '08예산 중 '09년으로 이월된 예산은 기투자에 포함 작성

【 별지 제1호 서식 첨부】

어항명		항 종		지정년월일	
관리청		관할수협		착공년도	
개	위치			준공년도	
	항내수면적	m ²	정온수면적	m ²	수용능력
요	어항 구역				

조 사	구분	년도	조사자	설 계 파			조 위		
				시설명	파 고	파 향	대조평균고조위 (H.W.o.S.T)	평균해면 (MSL)	대조평균저조위 (L.W.o.S.T)

구 분		전년도	금년도	기 능 시 설						
어 업 현 황	전 업	인 구			제 빙	냉 동	냉 장	저 빙	급 수	
		가 구								
	겸 업	인 구			급 유	위관장	공동창고	기 타		
		가 구								
	계	인 구			인 근 향	어항명	항 종	관리청	거 리 육 해	
		가 구								
지방어선	동 력	척(톤)	척(톤)							
	무동력	척(톤)	척(톤)							
	계	척(톤)	척(톤)							

1. 시설 현황

(단위 : M, 백만원)

시설명	총 계 획		기시설(전년까지)		금년계획		잔 량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계								
방과제								
물양장								
.								
.								

2. 시설계획평면도 1부

- 기시설 : 청색
- 금회 : 적색
- 잔량 : 황색

【 별지 제2호 서식 】

○○항 신규투자 계획

- 1) 개발필요성 :
- 2) 개발방향 :
- 3) 투자우선 순위 :
- 4) 년차별 투자계획

(단위 : m, 백만원)

시 군	어항 명	시설	총 계획		년도별 투자계획								비고 (완공 년도 등)	
			물 량	금액	기투 자 (‘07까지)	‘08 실적	‘09	‘10	‘11	‘12	‘13	‘14		
		합계												
		방파제												
		물양장												

주 1』 년도별 투자계획은 금액만 명기

【 별지 제3호 서식 】

20○○년 ○○○○○○사업계획서

시·도명 :

(단위 : 대, 백만원)

시군 구	항종	사업대 상 항명	어촌계		소형어선 (5톤이하) 등록척 수	설치 대수	사업비			비 고
			이름	계원 수			계	국비	지방 비	
합계										

※ 작성요령

- 1) 시군구 : 사업시행 시군구명(시군구별 소계 작성)
- 2) 항 종 :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소규모항포구로 구분
- 3) 어촌계 : 지원대상항의 어촌계
- 4) 소형어선 등록척수 : 동항을 이용하는 소형어선 등록척 수

【 별지 제4호 서식 】

투자사업 추진상황보고 (/4 분기)

□ 사업명 :

(단위 : 천원)

시군 별	어항 명	사업 내용	금회계획			집행실적(누계)			일정		당해년도 사업공정 (%)			부진 원인 또는 문제점	대책 또는 건의 사항
			보조 금	지방 비	계	보조 금	지방 비	계	원인행위기준	최종집행기관 자금 지출기준	작공 일	준공일 (예정 일)	계획		
합계															

주 1』 예산집행실적의 원인행위기준은 계약체결 금액을 말하고, 최종집행기관 자금지출기준은 최종발주기관에서 자금을 지출(선금, 계약금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2』 부진사업(계획대비90%미만)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부진원인과 해결방안을 기술한다.

3』 전년도 이월사업 또한 사업명(사업년도)을 분리 표기하여 작성하여야 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어항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어항과	과장 서장우 사무관 전성래	02-500-2330 02-500-2338

I. 사업개요

1. 목 적

- 어촌지역의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정주환경시설 개선을 통한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도시/어촌간 교류확대로 어업외 소득증대를 도모

2. 근거법령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8조(농산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 어촌어항법 제9조, 제23조, 제49조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

3. 성과목표 및 지표

- '13년까지 363개소(권역) 선정 개발('94~'07 : 160, '08~'13 : 72)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6	'07	'08		
▪ 계획수립(지자체)	18	24	42	14	2월	당해연도 계획대비 추진 실적
▪ 사업추진(누계)	281	229	242	260	2월	누계 계획대비 누계추진 실적(完)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합 계	584,253	67,794	60,741	44,399	296,654
국비(균특)	314,715	44,622	42,007	27,366	198,853
지방비	243,591	22,335	17,572	15,312	85,174
자 담	25,947	837	1,162	1,721	12,627

※사무장채용지원(180백만원)은 인건비지원으로 상기계획에 미포함.

II. 200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 대상자

-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어촌특화형**은 『2차 어촌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에서 권역 선정
- 대상권역은 미개발 권역과 기 지원된 권역중 재정비가 필요한 권역에 대해 타사업과 중복여부 및 개발타당성 등을 심사·평가 후 선정.
- **어촌체험형**은 시·도별 배정물량 내에서 타 사업(녹색농촌체험마을, 아름마을가꾸기, 농촌전통테마마을, 산촌체험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선정.
- 시·도(시·군)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대상마을을 선정.
- **관광모델형**은 지자체(시·도)에서 추천한 총 28개소(시 2개소, 도 3개소)를 대상으로 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현지실사를 통해 선정.(2004. 12.14일 선정)
-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11개 시·도에 1개소씩 선정
※ 지자체 추천(28개소) : 부산 1, 인천 2, 울산 2, 경기 2, 강원 3, 충남 3, 전북 3, 전남 3, 경북 3, 경남 3, 제주 3개소.
- **어촌체험마을사무장채용지원**은 농림수산식품부 선정 어촌체험마을중 체험방문객 유치로 소득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마을 지원(1식≒30개 마을)

3. 지원대상

- 어촌종합개발 : 시설비 지원
- 어촌어항관광개발 : 시설비 지원, 어촌체험마을사무장인건비 지원

4. 지원형태 및 사업물량

- 사업비(균특회계) : 지자체보조/Matching Fund
- 어촌종합개발(232개 권역) : 국고70% + 지방비25% + 자담5%
- 어촌어항관광개발(130개소) : 국고50% + 지방비50%
- 사업비(농특회계) : 지자체보조/Matching Fund
- (경)어촌어항관광개발(1식, 30명) : 국고50% + 지방비40%, 자담10%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어촌종합개발 : 대권역(50억이내), 중권역(40억이내), 소권역(30억이내)으로 차등지원 → 생산/소득기반시설, 생활환경개선·복지시설
- 어촌어항관광개발 : 유형별 구분지원[어촌체험형→단년도, 지구당 5억원이상, 관광모델형→3~5년간, 50억규모(7개소) 및 60억규모(11개소)]
- 어촌체험을 위한 생태체험장, 관광안내센터 등 기반시설 : 보조50%, 지방비50%
- 체험마을사무장지원[최대 3년간, 월100만원/1인당] : 보조50%, 지방비40%, 자담10%

지원대상마을 선정 (시·도)	(전년도 11월)	- 지원대상마을 선정·통지(시·도→시·군→마을) ·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 농림수산식품부에 선정결과 보고(시도→농림수산식품부)
↓		
사무장 채용대상자 공모·선정 (시·군)	(전년도 11~12월)	- 채용대상자 공모(시장·군수) - 채용대상자 신청(희망자→시·군) - 채용대상자 선정·통지(시·군→마을, 사무장) - 농림수산식품부에 선정결과 보고(시·군→시도→농림수산식품부)
↓		
협약 체결 및 승인 (마을·사무장·시군)	(전년도 12월말)	- 시·도별 사업량 최종 확정 배정(농림수산식품부→시·도→시·군) - 협약체결 및 승인요청(마을, 사무장→시·군) - 협약승인(시·군→마을, 사무장)
↓		
사업 시행 (마을)	(년중)	- 이행상황 점검(시·군, 월별 1회) · 협약내용 이행·준수 여부 등 - 보조금 지급(시·군, 월별 1회) · 이행상황 점검후 지급(시·군→마을→사무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대상지 선정단계(어촌체험마을 및 사무장채용지원에 한함)

1-1. 공통사항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별 어촌체험마을사업 지원수를 배정한다.(전국 112개소 기확정)
(단위 : 개)

구 분	계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배정 물량	112	2	5	10	9	11	6	31	10	18	10
2008까지 선정	95	2	5	9	8	7	4	29	7	18	6
2009 선정계획	7				1	1		2			3
장래 선정계획	10	-	-	1		3	2		3	-	1

- 시·도별 어촌체험마을사무장채용지원 사업수를 배정한다.

구 분	총계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9배정	30명	1	1	3	2	3	2	8	3	5	2

1-2. 어촌체험마을

시·도(지자체)

- 시·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어촌체험마을 조성을 위해 배정한 물량의 배수이내에서 대상마을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 시·도별 배정물량을 변경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와 사전 협의(농림수산식품

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

- 시·도지사는 어촌체험마을 선정시 마을선정 이전에 해당 마을의 어촌계장(또는 이장)과 해당 시·군·구의 관계공무원에게 어촌관광 가이드교육과정(교육기관)을 이수토록한 후 어촌체험마을로 지정하여야 함.
- 어촌체험마을 선정 시 타 사업(녹색농촌체험마을, 아름마을가꾸기, 농촌전통테마마을, 산촌체험마을)으로 선정된 마을과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지역실정상 사업간 연계추진으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경우, 선정 가능
- 어촌체험마을 선정 시 정보화마을과 연계 추진이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대상마을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음.
- 어촌체험대상마을 선정은 시·도(시·군)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시·군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독 신청시, 시·도수산조정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를 거쳐 시·도지사가 선정하고, 결과는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별지 제8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의 별첨1, 2는 단독 및 경합선정 모두 작성하여야 함.

1-3.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사업시행자(체험마을)

- 지원대상마을로 선정 받고자 할 경우, 어촌계 의결(또는 주민총회)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 지원서[별지 제11호 서식] 및 운영계획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 시장·군수에게 제출

시·군(지자체)

- 시장·군수는 신청내용의 사실여부를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한 후, 운영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대상마을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추천
※ 추천 대상마을과 협의하여 신청서 및 운영계획 수정 가능
- 시장·군수는 선정결과를 마을에 통지
※ 지원 대상마을 및 후순위마을 목록을 관리, 향후 사업변경시 활용

시·도(지자체)

- 시·도지사는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등을 위해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선정위원회를 구성(10인 내외), 서면검토 및 운영계획 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쳐 시·도별 사업물량내에서 적합한 마을을 지원대상마을로 선정

- ※ 지원대상마을은 평가표[별지 제21호 서식]를 참조하여 평가·선정
- 시·도지사는 대상마을 선정결과를 사업전년도 11월 중순까지 농림수산물품부에[별지 제16호 서식] 보고하고, 시·군에도 통지하여야 함
- ※ 시·도지사는 지원대상마을을 시장·군수에게 통보시, 미 선정된 신청마을 중 향후 지원이 적합한 후순위마을 목록을 함께 통보

추진절차상(대상자 선정 및 협약체결 등)

- 대상자 자격요건
 - 채용공고일 현재 19세 이상인 자로써 담당업무를 원활하게 수행 가능한 자
 - ※ 사무장 주요 담당업무(예시) :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체험활동 지도, 마을홍보·마케팅, 홈페이지 관리·운영, 마을사무관리, 주민교육 등
 - 상근직으로 근무가 가능하며, 타 업무를 겸직하지 않아야 함
 - ※ 지원대상마을 및 시장·군수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영어는 겸직 가능
 - ※ 동일조건일 경우, 여성, 저 연령 자, 어업계학교 졸업자순으로 순위 적용
 - ※ 대상마을 대표의 직계존비속은 대상에서 제외, 마을대표와 사무장 겸임 불가
- 채용대상자 공모
 - 시장·군수는 사무장 담당업무, 직무수행내용 등을 대상마을과 협의 후 공모
 - 시·군 홍보지 및 지방지 게재, 시·군 및 마을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공모
 - ※ 시·도지사는 시·도 지방지 게재, 시·도 홈페이지공고 등 협조
 - 사무장 채용대상자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는 채용희망마을을 방문한 후, 지원서[별지 제13호 서식] 및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작성 관련 증빙서류(졸업증명서, 교육수료증 등)를 첨부, 시장·군수에게 제출
- 채용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는 객관성·공정성을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10인 내외), 직무수행계획 설명회 및 면접 등 절차를 거쳐 선정
 - ※ 선정위원회 구성은 반드시 대상마을 대표 및 주민이 30%이상 심사위원으로 참여토록 하여야 함
 - ※ 채용대상자는 평가표[별지 제22호 서식]를 참조하여 평가·선정
 - ※ 채용대상자는 농림수산물품부에서 지정하는 교육과정을 지정기간 내에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채용대상자 통지 및 보고
 - 시장·군수는 채용대상자 선정결과를 지원대상마을 및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선정결과[별지 제17호 서식]를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장·군수는 채용대상자에게 농림수산물품부에서 지정하는 교육과정을

지정기간 내에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을 통지

※ 시장·군수는 채용대상자 목록과 신청자 중 향후 지원이 적합한 후보자 목록을 관리하여 사무장 채용 포기자 발생 및 사업변경시 활용

- 시·도지사는 사업전년도 12월 중순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선정결과[별지 제17호 서식]를 보고

○ 협약체결 등

- 지원대상마을과 채용대상자는 가 협약을 3부 작성하고, 시장·군수는 협약체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적정화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등 지원

- 시장·군수는 필요시 일시·장소를 정하여 협의회 개최

※ 협약기간은 매년 12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협약내용에는 복무 및 활동 등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

- 지원대상마을은 가협약서와 함께 채용대상자와 협의, 필요시 제출한 사무장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재작성 시장·군수에게 협약 승인 요청

- 시장·군수는 대상마을로부터 가협약서(첨부분서)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 후, 협약서에 날인하고 쌍방에 통보함으로써 협약 승인 조치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마을, 채용대상자와 협약체결시 지원금액 결정

※ 시장·군수는 협약승인 및 지원금액 통보시 본 지침상의 협약 무효·해지·변경사유를 지원대상마을과 채용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 협약의 무효·해지·변경 등

- 중대한 허위 사실로 체결한 협약은 무효가 되며, 기지원금액 전체를 회수

- 시장·군수는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협약을 해지·변경하고 필요시 추가 협약체결 추진

- 협약서 상에 정해진 사정 변경사유 또는 협약 쌍방의 합의에 따라 중요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협약 체결의 예에 따름

· 중요협약사항 변경 : 지원금액, 담당업무 및 주요내용, 추진목표, 기타 협약의 본질적 요소라고 인정되는 사항

· 지원대상마을은 협약서 변경안 및 첨부분서 사본, 협약변경이유서(서식 자유, 협약쌍방 서명날인) 각 1부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 협약의 무효·해지·변경 및 이에 따른 자금회수조치를 취한 경우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고, 시장·군수는 재 선정절차를 거치거나 관내 후순위마을(자) 등에 대해 신규 협약 체결 가능

※ 신규 협약의 종료기한은 전임자(마을)의 종료기한을 승계

○ 협약체결후 사업이행

- 지원대상마을과 채용대상자는 협약서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 사업수행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채용대상자와 지원대상마을은 사업집행 1개월 단위로 추진상황보고서 [별지 제19호 서식]를 익월 5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제출

2. 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가. 사업계획수립¹⁾(기본설계 포함, 이하 같음) 및 협의

시·도(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관내에 어촌·어항관광조성사업 대상 지역이 선정되면 예산(안) 요구이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계획은 전문용역기관(어촌체험마을은 관광분야 연구기관 포함)에 의뢰 수립해야 하며, 계획수립은 사전에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사업개발계획²⁾에 따라 수립한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이전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협의결과를 반영해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사업계획에 따라 당해연도 대상권역의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사업착수 전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시행에 따른 매립 또는 공유수면 점·사용, 사전환경성검토 등 관련법에 의한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주체가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를 완료하고, 사업부지 또한 사전에 확보하여야 함
- 사업계획수립 용역비는 시·도지사가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여야 함.
- 사업계획은 어항개발 및 수산분야진흥사업, 타 부처 유사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 투자 효율성을 높여야 함.
- 사업계획에는 사업개요, 일반현황, 기본구상 및 부문별 세부계획, 투자계획, 개발효과, 전망 등을 포함하고, 어촌체험마을은 마을현황(방문객, 체험객, 체험소득, 체험외소득 등), 장래목표, 4계절 체험프로그램, 운영조직구성 등도 포함.
- 사업계획수립시 유의사항
 - 지원대상은 개발유형(어촌특화형, 어촌체험형, 관광모델형, 문화전시형)의 목적에 부합되고, 1개 이상의 개발유형을 추진할 경우 세부내역이 중복되지 않아야 함.

1) 사업계획 : 어촌어항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권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계획

2) 개발계획 : 어촌어항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하는 어촌종합개발계획

- 사업대상지역내 이미 시설된 수산시설(특히 어업인회관, 어업인복지회관 등 유사시설)과 중복은 제외하고, 위락단지 및 단순 식사·숙박시설, 목욕탕 등 개인이 운영하는 직접소득시설도 지원 제외
- 다수의 공동이용시설의 경우에도 당해지역의 여건, 기술, 경영능력, 어촌계 사업계획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경제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원
- 축제식·육상수조식양식장과 살포식양식, 종묘방류, 투석 등 자원조성사업은 어민자율사업 또는 시·도(시·군)사업으로 실시하도록 지원사업에서 제외함
- 지정어항(국가어항·지방어항)의 기본시설은 지원대상사업에서 제외함.

나. 시행계획³⁾ 수립 및 협의

시·도(시·군)

- 시행계획(세부사업계획) 수립은 당해 사업계획 중 국비투자계획에 반영된 부분에 한함. 다만, 사업계획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조정.
 -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사업 중 예산지원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문
 - 사업계획서에 반영되지 않고 당해 개발유형의 목적에 부합되는 부문
- 시·도지사는 내시된 어촌어항관광조성사업비 범위내에서 시행계획을 확정 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서의 예산지원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내역 또는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내역에 대해 시행계획(대상 개발유형)을 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 시행을 사업착수 전에 미리 협의하여야 함.
- 당해연도 배정사업비 내에서 시행계획 협의가 완료된 사업이 해당공종 사업비 10%이내의 경미한 변경이 수반된 경우 변경내용을 농식품부에 통보.

다. 사업시행

시·도(시·군)

- 공공사업부문은 사업집행주체가 직접 수행하고, 자부담이 수반되는 사업 중 시설운영주체가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집행주체가 설계서 작성, 공사입찰, 계약체결업무를 대행하고, 선금급, 기성급, 정산금지급시 입회·확인하여야 함. 이 경우에는 사업자 확정시 보조사업자에게 통지 하여야 함
- 어촌계직접수행사업의 계약에 관한 업무는 수산업협동조합계약규정(예)에 따라야 하며, 사업집행주체는 보조금교부결정시 이를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하고 보조금지급 및 정산 시 이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함.

3) 시행계획(세부사업계획) : 어촌어항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립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계획

- 사업집행주체는 예산회계법규 및 건설공사표준품셈, 정부노임단가, 물가조사기관의 조사가격 등 공신력 있는 기준에 따라 전문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계획서, 설계도서를 심사하게 하고 공사를 감독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 필요시 지방어업지도사무소(어항사무소)에 조사,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 사업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지원되는 개별수산사업과 같은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이 지침이 정하는 사항외의 사업실시에 관한 사항은 사업년도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 중 대상사업의 관련 규정을 준용함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계획중 사업비 또는 사업물량이 30%이상 변경될 경우 사전에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함.

3. 준공 및 시설물 운영단계

가. 사업준공 등

시·도(시·군)

- 사업시행자는 공사완료시 소속직원이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처리해야 함
 - 준공은 계약단위로 실시하되, 필요시 완료공종(시설)에 대한 부분준공도 가능.
- 사업완료시 시장·군수는 준공 정산서를 작성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필요시 소속직원에게 현장을 확인 사업 준공을 확정하여야 함
- 완료(준공)된 시설물은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하자발생시 즉시 보수하는 등 시설물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

나. 시설물 운영관리 등

- 시장·군수는 시설물을 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할 경우 소요경비를 위탁관리자에게 지불하여야 함
 - 시설물을 수시 점검하고 미흡한 경우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추진
 - 정보통신기반시설이 설치된 마을은 마을주민과 협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관리
 - 수질검사는 용도별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마을개발협의회를 운영 사업지구에 대한 주민지도, 지역홍보, 시설물 이용·관리 등 전문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지역주민은 자체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조직을 구성·운영하여야 함
 - 주민전체가 참여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별 관리담당자를 지정 운영
 - 권역발전을 위하여 권역(마을)기금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조경(경관), 정보화, 체험프로그램운영자 등 각 분야별 유지관리자(운영자)를 육성

4. 예산편성 및 집행단계

가. 예산요구

시·도(지자체)

- 시·도지사가(시장·군수·구청장)는 대상사업지에 대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 협의가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을 신청하여야 함.

나. 사업비 및 자기자금

시·도(지자체)

- 세부사업계획(실시설계) 수립시 기본설계 사업내용 이외 사업집행주체가 필요한 경우,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다만 공공사업부분의 자부담금은 반드시 사업집행주체 부담으로 함
- 어촌계 집행부분의 경우 집행주체는 보조금교부신청서 접수시 어촌계가 부담하는 자기자금은 어촌계총회 의결사항, 자기자금 예치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고, 보조금확정(정산)시 증빙서류에 의거 집행상황을 철저히 확인.

다. 예산의 집행 및 결산

시·도(시·군)지자체)

[공통사항]

- 시·도지사는 당해연도 세부사업계획 협의완료 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조금교부신청 [별지 제3호서식] 및 국고자금요구서 [별지 제4호서식] 를 제출.
- 보조금 및 자부담금의 집행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등 관계규정에 의하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을 마친 자(이하 "사업자등록증소지자"라 한다)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 기타 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에 의하여야 함
- 자부담금은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집행하며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에 따라 사업비의 지원비율을 일치시켜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함
- 어촌계 직접집행사업은 현지 확인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계약서와 어촌계 작성 작업일지(또는 공사 감리일지) 등을 확인한 후 보조금 교부확정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에 한함]

- 시장·군수는 채용대상자와 지원대상마을에서 별지 제19호의 추진상황보고서(종료이후에는 결과보고서) 제출후, 1주 이내 현장을 방문 증빙서류를 확

인 허위사실, 협약불이행 등 보고서와 상위점이 없을 경우 보조금 지급
 ※ 지원대상마을 추진상황(결과) 보고서에 대한 시·군의 현장 확인시 추진
 상황(결과) 점검 보고[별지 제20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마을의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토록 한 후 지원대상마을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지원대상마을에서 사무장에게 채용비용 지급
- 채용대상자와 지원대상마을은 시장·군수에게 사업추진결과를 사업추진 종료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 서식]으로 작성·제출
 -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에게 사업추진결과[별지 제20호 서식]를 보고
- 지원대상마을은 사업추진상황(결과)보고서[별지 제15호 서식] 제출(통장사본 또는 입금확인서를 첨부)시 시장·군수에게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
- 지원대상마을이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사무장채용을 조작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정취소 및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대상마을 지정 배제
- 추진상황(결과)보고서가 제출되면, 시장·군수는 현장을 확인 협약서 이행 여부를 점검, 협약서(변경협약서) 및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사업지침이 정한 증거자료 검정후 사업비를 집행하고, 분기말 익월 15일까지 시·도에 실적보고
- 시·도지사는 시·군의 실적을 종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로 20일까지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비 집행결과에 의거 회계연도 종료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사업비를 정산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시·군의 실적을 종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정산보고

라. 어촌계에서 직접사업 집행시 집행기관에 제출서류

사업시행자(어촌계)

- 사업자선정 신청시 : 사업계획서, 자기자금 조달계획서, 부지확보증명서 또는 사용승인서
- 보조금교부 신청시 : 보조금교부신청서, 설계도서, 자기자금조달 관련 어촌계 총회 회의록 및 자기자금 예치증명서
- 공사착공시 : 착공계, 입찰내역서, 도급계약서, 공사예정공정표, 착공전 사진
- 준공 및 기성부분급 신청시 : 준공(기성)검사원, 준공(기성)검사조서, 공사비 정산서 또는 사업비정산서(관련법령이 인정하는 영수증 및 어촌계 작업일지 또는 공사감리자의 감리일지 포함), 준공 또는 기성 부분사진

마. 기 타

- 사업집행주체는 지침의 기본목적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에서 사업추진 효율성 및 합리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별도의 세부요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기타 사업집행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서 정한 규정에 따름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시·군(지자체)

[공통사항]

- 어촌·어항관광조성사업비로 지원된 모든 시설물 및 사업장의 사후관리는 사업집행주체의 책임하에 하여야 함.
- 어촌·어항관광조성사업비로 지원된 민간(어촌계 포함)소유의 시설물 또는 재산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은 보조금 교부목적 달성까지로 하되 최소기간은 5년으로 하고, 이외의 공공시설물 등의 관리기간은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의함
- 어촌계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시설물은 준공후 30일 이내에 총사업비중 국고보조금(지방비포함)과 자담의 비율에 맞게 지분등기를 하거나, 시설의 사업자와 이를 유지·관리하는 자(이하“관리자”라 한다)가 공동으로 등기를 필하여야 하며, 재해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시설의 사업자 또는 이를 유지·관리하는 자가 시설물을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의 처분승인권자(이하“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사전에 승인을 득 하여야 하며, 매각대금은 당초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시설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기존 지원사업 포함)
- 관리자는 총사업비가 1억원이상 지원되는 건축물, 공작물, 사업장 등 중요 시설에는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별표3에 의한 표지를 시설설치장소 등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부착하여야 함. 다만, 실익이 없는 경우는 제외
- 사업집행주체는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어촌·어항관광조성사업 추진실태와 시설관리실태를 조사, 기록 유지하여야 함.
- 사업집행주체는 세부단위사업 완공 후 매 반기별 1회 이상 운영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부실운영·관리시 필요한 경영지도, 행정조치 등을 취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기록 유지하여야 함
- 운영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지역특산물판매장, 숙박시설 등 어촌계운영 소득시설을 관계규정에 의거 임대 승인할 경우, 지원목적 대로 운영될 수 있는지의 여부, 지역실정에 맞는 적정한 임대료 산정 등 제반사항을 신중히 검토한 후 승인하여 당초 지원어촌계의 소득이 증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특산물판매장 등 유통시설은 지역어업인이 생산한 수산제품의 판로에 어려움이 없도록 당해 어촌계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우선수집, 판매하는 등 수

산물 유통시설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함

시·도(지자체)

- 시·도지사는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 사업별 사업추진 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당해연도 사업이 종료한 때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 실적을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함.
- 어촌체험마을 운영책임자는 어촌체험마을로 지정되면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어촌체험마을 운영실적 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매년 1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운영실적 대장을 제출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사업이 착수되거나 준공된 어촌체험마을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작성, 매년 1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시·도지사는 시·군에서 보고한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추진상황(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로 분기말 20일까지 보고

시·군(지자체)

- 시장·군수는 매월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상황 점검결과를 시·도지사에 제출
- 사업집행주체(시장·군수)는 어촌계가 집행하는 사업을 포함한 단위사업마다 소속 직원중에서 공사감독관을 임명하여 책임부여.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추진상황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
 - 점검결과 사업추진상 문제점, 미흡한 점, 개선방안 등을 포함하여 사업시행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점검결과를 각 시·도에 통보

7. 성과측정단계

- 성과측정시기 : 2월
- 성과측정방법 : 계획대비 추진실적(기본계획, 사업시행 등)
 - 매 년도 말을 기준으로 연차별 추진계획에 대한 달성 정도를 측정

8.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업이 종료되는 권역을 대상으로 사업추진 전 과정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

- 평가는 지자체주관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확인평가를 실시
- 평가내용은 사업추진상황, 예산집행상황, 지역주민 및 지자체의 사업추진역량, 사업추진 성과, 사업홍보추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환 류》

-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권역 및 우수지자체에게는 인센티브 부여
 - 차년도 예산 최우선적 배정(신규권역 포함), 포상 등
- 사업추진이 부진한 권역 및 지자체에게는 페널티 부여
 - 차년도 예산지원 중단 또는 감액, 신규권역에 대한 지원 보류 등

IV. 201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신청

“ 기하 사업대상 권역 및 개소수가 확정되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음”

2. 사업대상지 선정[어촌체험마을에 한함]

- 시·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어촌체험마을 조성을 위해 배정한 물량의 배수이내에서 대상마을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 ※ 시·도별 배정물량 중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배정물량 조정(농림수산식품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
- 시·도지사는 어촌체험마을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 해당 마을의 어촌계장(또는 이장)과 해당 시·군·구의 관계공무원에게 어촌관광 가이드 교육과정(교육기관)을 이수토록한 후 어촌체험마을로 지정하여야 함.
- 어촌체험마을 선정 시 정보화마을과 연계 추진하는 것이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대상마을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음.
- 어촌체험마을 선정은 시·도(시·군)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시·군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독 신청한 경우, 시·도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를 거쳐 시·도지사가 대상마을을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결과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 [별지 제8호서식]의 별첨1, 2는 단독 및 경합선정 모두 작성하여야 함.
 - 사업대상 선정 : 예산요구 전
 - 사업계획 수립 : 예산요구 전
- ※ <별첨> 및 <별지>는 별도 작성 관리

